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2-01

www.mifaff.go.kr

www.gap.go.kr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08. 6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림수산식품부
유통 정책 단



1. EUREPGAP 운영 실태조사 결과	1
(영국·독일, 2007. 6. 13~6. 22)	
2. EU농산물안전성 관리제도 조사 결과	67
(프랑스·네덜란드, 2006.6. 13~6. 21)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실태조사 및 MACFRUIT전시회 참석 결과	137
(이탈리아, 스페인 2006. 5. 2~5. 11)	
4. 이력추적제·GAP 운영 실태조사 결과	163
(프랑스, 2005. 4. 23~4. 30)	
5. GAP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7
(일본, 2007. 9. 10~9. 14)	
< > :	251
1. EU,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매뉴얼	253
2.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EUREP-GAP 일반규정 및 인증기준	277
3. EUREP-GAP 벤치마킹 시스템 절차(Benchmarking System Procedure)	299
4. 일본 GAP 운영·심사·인증의 규칙 제2.1판	321
5. 일본 농림수산성 기초 GAP 체크리스트	347
6.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추진	363
7.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유해미생물의 서페이런스·모니터링 중기계획	369

1. EUREPGAP

(□ , 2007. 6. 13 ~ 6. 22)

GAP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I. 출장개요	5
II. 출장 조사 내용	7
1. EUREP-GAP 관리제도	7
2. EUREP-GAP 동등성 인정 절차	21
3. EUREP-GAP 사후관리	27
4. 농산물 생산·수확후 처리	32
5. 대형 유통업체 농산물 유통실태	38
III. 출장자 의견	61
IV. 수집자료 목록	
1. EUREP-GAP 인증기준	277
2. EUREP-GAP 벤치마킹 시스템 절차	299

□ EUREPGAP

1. 출장목적

- EUREP-GAP가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아 유럽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 GAP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한국 GAP와 EUREP-GAP와의 동등성인정 추진 가능성을 조사
 - 동등성인정 추진을 위한 절차와 필요조건,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
- 대도시에서의 GAP 인증품 등의 생산, 수확후 관리 및 판매·유통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내 GAP제도 보완 발전

2. 출장기간 : 2007. 6. 13 ~ 6. 22(10일간)

3. 출장국 : 영국(TESCO), 독일(EUREP-GAP본부, DAP)

4. 조사단 : GAP업무 관계기관 직원

- 농림부 : 소비안전과 사무관 조동근
- 농진청 : 연구관리과 연구사 이승돈
- 농관원 : 안전성관리팀 주무관 이민용, 부산출장소 사무관 강호룡
- 유통공사 : 수출컨설팅팀 차장 이정섭
- 한식연 : 유통연구단 단장 김병삼
- 농협 : 산지유통부 차장 홍재호
- 이마트 : 품질관리팀 과장 김봉규, 사원 이석주
- 롯데마트 : 품질관리팀 사원 정기훈

5. 조사일정 및 기관별 주요 조사내용

일자	방문국	방문기관	기관별 조사내용
6.13 (수)		-	○ 인천→영국 이동(13:25~현지시간16:55)
6.14 (목)	영국	대형유통업체	○ 대형유통회사 방문 유럽 값 표기 유무 및 이력추적 관리 등 추진현황 조사 - TESCO, Sainsburys, LiDL, ASDA
6.15 (금)	런던 → 동부 Ely 이동	TESCO (부설농산물품 질관리소) G's marketing Ltd	○ 영국의 GAP 제도와 TESCO의 GAP 운영 현황 조사 - Nick Ball (신선농산물 분류 기술부장) - Jeremy Hooper (해외교역 운영관리 부장) - Monika Kosinska (해외업무 협력부장) ○ 신선농산물 생산·유통, 종묘생산 공장 및 Packing house 운영 실태조사 - Ed Moorhouse(관리기획이사 등 3명)
6.16 (토)	영국→ 독일	-	○ 이동(LH4787편 런던 15:05 ~ 쾰른 17:25)
6.17 (일)	독일 쾰른	-	○ 영국에서의 조사내용 토의·정리 ○ EUREP-GAP 본부방문 상담자료 점검회의
6.18 (월)	쾰른	EUREPGAP 본사	○ 한국 GAP과 EUREP-GAP의 동등성 인정관련 벤치마킹, 준비사항, 절차에 대한 문의 조사 ○ 글로벌 마케팅 전문 업체 “Bohmer” 방문, GAP인증품 생산·선별·유통 실태조사
		이동	○ 이동(LH 0283편 쾰른 19:45→베를린 20:45)
6.19 (화)	베를린	DAP	○ DAP(동등성인정업무대행기관)에서 인증업무 수행 실태조사 ○ 한국의 GAP 제도는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동등성 인정 추진에 제약여부 및 정부 기관이과 동등성 인정협약 체결사례 조사 ○ 일본의 동등성 진행상황 등
6.20 (수)	베를린	대형유통업체	○ 인증품 유통실태조사(Plus, ALDI, LiDL, METRO) ○ 열차 이동(베를린→프랑크푸르트)
6.21 (목)- 6.22 (금)	프랑크 푸르트 한국		○ 방문기관별 상담 결과 등 최종 토의·정리 ○ 이동(KE0906 /프랑크푸르트 20:25→인천13:30)

1. EUREP-GAP 관리제도

□ EUREP-GAP본부(독일 쾰른 소재) 상담자

- 방문업체 : EUREP-GAP 본부
- 면 담 자
 - EUREP-GAP : Kristian Moller(본부 비서, Foodplus관리부장)
 - Angelo Lazo(유럽갭 인증기관 동등성 교관)
 - Frederik Callens(유럽갭 세계화 전담관)

□ EUREP-GAP란?

- 유럽에서 개발된 GAP제도로서 유럽의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유럽 이외에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 GAP는 농산물에 대한 최소생산표준으로 과일, 과채류, 화훼류, 축산, 양곡, 수산물(양식새우)의 생산표준 시스템임.
- EUREP + GAP
 - EUREP은 '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의 약자로서 유럽의 농산물 소매업계에서 활동 중인 선도적인 소매업체로 구성된 단체임.

□ EUREP-GAP 민간인증제도 생성 배경

- 유럽지역에서는 광우병, 유해물질 검출, GMO 농산물 증가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를 거치면서 식품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농산물 유통업체는 자기업체가 유통시킨 농산물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량 급감, 업체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존폐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 자기업체에 납품하

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단계부터 안전성 관련 기준준수를 요구

- 민간주도의 유통업체별 자체 품질 및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됨

○ 현재 유럽지역의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은 EUREP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

□ EUREP-GAP 조직 연혁 및 구조

○ EUREP-GAP은 1997년 유통업체에 의해 발의

○ 본 사 : 독일(Cologne)

- 파 전 : 독일, 영국, 스페인, 남아프리카, 중국

○ 조정위원회 :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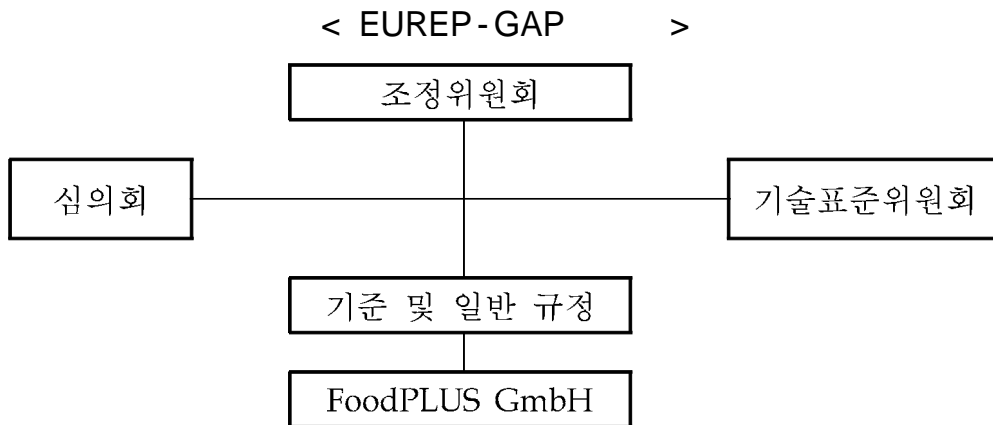
○ 기술표준위원회 : GAP 표준과 일반규정을 최종 승인

○ 심의회 : 조정위원회와 기술표준위원회에 자문

○ FoodPLUS GmbH : 표준(Standard)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래의 역할 수행

- EUREP-GAP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 규범문서의 법적소유자, EUREP 사무국 역할



□ EUREP-GAP의 인증분야

- Fruit and Vegetables(Sep. 2001; revised 2004)
- Flower and Ornamentals(9 Jul. 2004)
- Coffee and Tea (2004)
- Animals(Integrated Farm Assurance) (9/10 Nov. 2004)
- Fish(Integrated Aquaculture Assurance)

□ 인증의 종류

- option 1 : 개별농가가 인증을 받음(Individual Certification)
- option 2 : 농민단체가 인증을 받음(Farmer group Certification)
- option 3 : 개별농가가 벤치마킹을 통해 인증 받음(Individual Certification Benchmarked Scheme)
- option 4 : 농민단체가 벤치마킹을 통해 인증 받음(Farmer group Certification Benchmarked Scheme)

□ 인증기준 구성(Control points & Compliance Criteria)

-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인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 포인트 및 방법 기술
-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과 세부적인 방법을 기술한 표
- 필수(Major Must, Minor Must), 권장(Recommendation)의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됨(총 214개 기준)
 - Major Must(49항목) : 100% 준수
 - Minor Must(99항목) : 95% 이상 준수
 - * {총 항목수(99) - 해당없는 항목수(x)} × 95% =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항목
- Recommendation(66항목) : 단순한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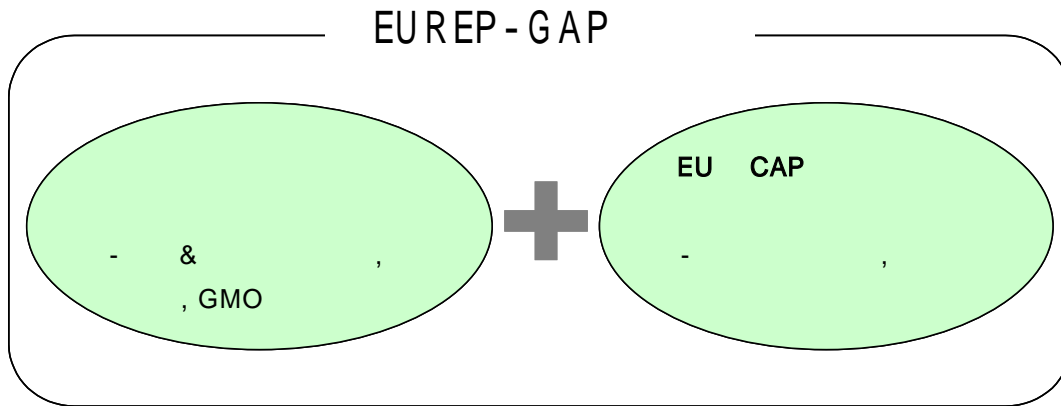
□ EUREP-GAP기준의 특징

- EUREP-GAP기준은 농산물 생산과정의 안전성, 친환경성, 농작업자 복지, 야생동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동 기준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인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임

EU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에게는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농업농촌의 유산과 가치를 보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최근에는 식품안전성 확보, 환경보전, 농가수익보장, 바이오연료 개발 등의 실행목표가 추진되고 있으며, ● 특히,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식품안전, 환경보전, 동물복지 관련 기준 이행 시 직불금의 형태로 보조하고 있음 - 농가수익의 약 40%가 직접지불금에 의한 보조 - 식품안전, 환경보전, 동물복지 관련기준 미 이행 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하는 정책(Cross-Compliance)을 시행 ● 따라서, 농가는 안정적 수입을 위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동물복지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스템임 	

- 따라서 EUREP-GAP기준은 CAP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농가가 손쉽게 실천하고 인증업체가 실천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성한 영농실천규범의 성격임
- EUREP-GAP 참여농가는 해당국가에서 사용이 허용된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 및 수확 후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EU 직불금을 받기 위해 환경보전 기준, 동물복지 기준 등 CAP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EUREP은 당연히 EU가 요구하는 이행기준과 자기업체가 강조하는 기준을 종합하여 EUREP-GAP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개별농가 및 영농단체, EUREP-GAP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개별농가 및 영농단체
- 신청농가 조사 : EUREP-GAP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신청 농가를 방문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인증서 발급
- 인증유효기간 : 1년
- 인증취소 : 경고, 보류, 취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인증취소
- 인증절차도

AB(인정기관) : Accreditation Body

↓ ISO guide 65 : accreditation & surveillance(인정 및 감독)

CB(인증기관) : Certification Body(inspection & certification)

↓ EUREP-GAP General Regulations(일반규정)
↓ EUREP-GAP Control Point & Compliance Criteria(인증기준)

Farmer(농가)

□ 인증의 유지 및 관리

- 매년 인증농가는 인증기관과 등록상황 및 인증작물을 확인해야 함
- 감사관은 매년 인증과정에서 전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함
- 1년차 감사
 - 첫째 외부감사시 모든 자료는 수확 전 3개월 이내이거나 처음 등록한 날짜로부터의 자료만 유효함
 - 수확과 수확 후 취급은 EUREP-GAP등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2년차 이후의 감사
 - 감사시 어떤 형태로든 인증작물이 현장에 존재해야 함
- 모든 관리는 외부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 감사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제재는 경고(Warning), 일시 자격정지(Suspension), 취소(Cancellation)로 구성됨
 - Major Must 항목 미 이행경우
 - 즉각적인 완전 또는 부분정지 : 인증의 사용이 일시 정지됨
 - 6개월 안에 시정이 없을 시 인증 취소
 - Minor Must 항목이 5%이상 이행되지 않았을 때
 - 인증의 사용정지를 28일 동안 유예
 - 이 기간 중 시정이 없을 시에 최악의 경우 인증이 취소됨

□ 인증기관 지정

- 인증기관은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국제다자간 상호인정 협정(MLA / Multi-lateral Agreement)을 체결한 AB(Accreditation Body)로부터 ISO 65 (농산물 인증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EUREP-GAP 본부의 인허가 계약서 작성
 - 인허가 계약서 작성 후 4주 안에 인증항목에 대한 EN 45011이나 ISO 65 인증을 AB에 신청
 - 인증기관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통상 6개월)안에 인가를 받아야 함

□ 인증기관의 요건(인력)

- 인증기관내에서 지정한 한 사람의 “EUREP-GAP scheme manager”는 EUREP - GAP사무국과 의사소통을 전담하며 인증기관을 대표하여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 인증기관의 감사관(Auditor)이나 조사관(Inspector)은 1년에 1번은 반드시 EUREP-GAP 인증기관 워크샵에 참가해야 함
- 최종 인증을 결정하는 사람은 감사관(Auditor)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감사관이나 조사관의 자격
 - 관련 분야와 관련된 2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자
 - 정식 품질관리 과정 이수(HACCP, 식품위생, 농약 및 비료)
 - 졸업 후 최소 2년의 원예 분야에서의 경험
 - 영어 구사 능력
 - 최소 15일의 실제 감사 경험(감사관의 추가요건)
 - AB에서 인정하는 37시간 이상의 감사관 교육에 참가(감사관의 추가요건)

□ 인증기관의 요건(독립성, 공정성, 자료보호)

- 인증기관은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EN 45011에 근거)
- 인증기관의 요원들은 인증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함
- 감사과정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됨
- 인증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되며 허가 없이 유출이 금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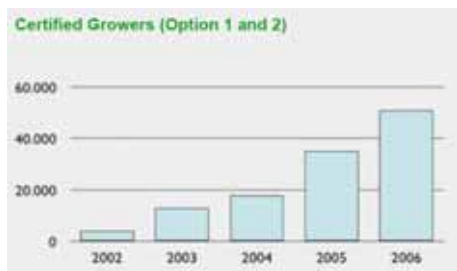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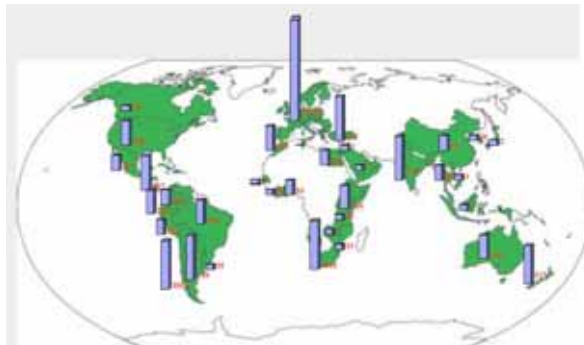
< (2006) >

범 위	Approved	Provisionally Approved	합계
Fruit & Vegetables('07.3)	97	14	111
Integrated Farm Assurance	22	8	30
Flower and Ornamentals	6	7	13
Coffee	2	8	10
Integrated aquaculture	1	8	9
합 계	128	45 ¹⁾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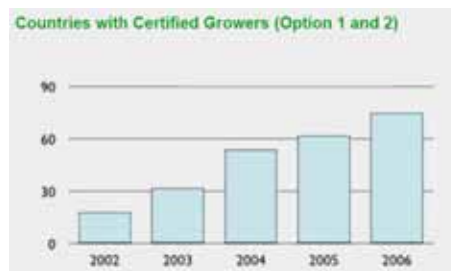
1) F&V 2개 인증기관, IFA 1개 인증기관은 일시 자격정지 상태임

□ 인증현황('07.6)

○ 인증농가(option 1, 2)



<인증농가 수/57,000>



<인증농가 국가 수/82>

□ 국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특징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추진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산물에 잔류 또는 오염될 수 있는 주요 위해요소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영농실천규범을 관리기준으로 고시('06, 농진청)하고 있음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민간주도의 EUREP-GAP기준과는 달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진청이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화학적 위해요소

- 최대잔류농약허용기준(MRL)을 초과하는 잔류농약
-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허용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오염물질 등

생물적 위해요소

-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 일부 곰팡이가 분비하는 허용기준치 이상의 곰팡이독소

물리적 위해요소

- 돌, 유리조각, 나무조각, 쇳가루 등 이물질

- 재배단계별 주요 위해요소 발생원인

단계	주요 위해요소 발생원인
포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 및 급수원 오염 ● 오염원이 포장 인근에 위치 ● 미등록/기준량초과 토양소독제 사용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기준량초과 종자소독제 사용
육묘 및 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상 상토 및 관개수 오염
재배관리 (관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된 관개수 사용 ● 수경재배시 오염된 원수 사용
재배관리 (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사용 관련법상 허용되지 않은 비료 사용 ● 기타 허용되지 않은 농자재의 사용 ● 시비처방에 의한 추천사용량 초과 ● 하수오니, 미부숙퇴비, 기타 출처불분명 유기물퇴비 사용 ● 부적절한 보관 (유출방지 없음, 다른 품목과 동일장소 보관 등)
재배관리 (병해충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사용 관련법상 허용되지 않은 농약 사용 ● 기타 허용되지 않은 농자재의 사용 ●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주의사항 미준수 ● 살포후 잔량의 부적절한 폐기 ● 부적절한 보관 (유출방지 없음, 다른 품목과 동일장소 보관 등)
수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물의 부적절한 보관 (이물질 혼입, 야간 야외방치) ● 부적절한 수확장비/도구/운반상자 사용 (오염, 비위생) ● 비위생적인 작업자
수확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기준량초과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수확후처리제 사용 ● 비위생적인 작업자
수확후관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생적인 수확후관리시설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하는 쓰레기의 부적절한 폐기 (폐비닐 조각 등)

□ 우리나라와 EU의 GAP 비교

구 분	한 국	E U	
추진방식	민간주도(정부 기준설정)	민간주도	
농가의 접근방식	가격보장에 관심	시장원리에 적응하기 위한 생사(生死)의 관점	
인 증 기 관	형 태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대학 등	제3자(사업자와 독립적인 전문 인증기관)
	지정기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품인증기관의 일반요건 (ISO guide 65)
	운영방식	○인증기관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 - 분석업무는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위탁 ○인증기관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담당	○인증기관이 모두 담당 ○검사기관이 검사업무 분담하는 경우 - 인증기관과 검사기관 계약 - 검사기관은 ISO 17020(검사기관에 관한 요건)을 획득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	별도의 지정절차 없고, EUREP GAP 기준에 포함(10. Produce Handling)	
인 증	인증기준 (소유자)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EUREP-GAP(FoodPLUS)
	참여유형	- 개별농업인 - 농업인단체	- Option 1 : 개별농업인(EUREP-GAP) - Option 2 : 농업인단체(EUREP-GAP) - Option 3 : 개별농업인(벤치마킹) - Option 4 : 농업인단체(벤치마킹)
	수수료	5만원	450유로(네덜란드;국가마다 다름)
	인증마크	포장지에 표시	○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유통업체와 출하자간 품질관리계약의 확인수단
사후관리	○생산과정조사 : 반기 1회 이상 (인증기관) ○시설조사 : 반기 1회 이상 (농관원) ○시판품조사 : 반기 1회 이상 (농관원)	○내부감사 : 회원2회, 작업장 3~5회(협회) ○외부감사 : 협회4회, 회원의 10%, 작업장1회 (인증기관) ※감사비용 : 800~1,000유로/1일(프랑스)	
제재조치	시정명령, 표시정지, 인증취소	경고, 정지(Suspension), 취소	

EUREP - GAP

□ EUREP-GAP은 제3자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GAP 제도는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① 동등성 인정 추진에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점 또는 제약은 없는지?

☞ 동등성 인정은 EUREP-GAP의 관리기준과 인증절차에 대한 한국GAP과의 일치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소유자가 정부 또는 개인여부에 무관함

② 정부기관과 동등성 인정협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 멕시코는 동등성 인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인도, 태국 등은 현재 동등성 인정을 추진 중에 있음

③ EUREP-GAP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할 때 지적재산권 등의 제재와 비용은?

☞ 관리기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제재조항과 비용은 없음

□ 동등성 인정절차 관련 세부내용 문의

① 기준 소유자(standard owner)가 동등성 인정신청이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농림부(정책추진), 농관원(인정기관, 사업추진), 농진청(기준수립) 어느 기관을 기준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농림부 총괄하에 농진청이 추진

② 초기 계약협정(initial contractual arrangement) 체결 방식과 의미는?

☞ EUREP-GAP 보조사무국에서 한국의 대표와 JAS-ANZ 또는 DAP간에 동등성 인정 추진과 관련하여 서류상 계약체결

- ③ 신청서류 중 공식 감수에 관한 자료제출 부분(officially authenticated translation)의 '공식'이 의미하는 범위와 언어는?
- ☞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법인으로 영어로 작성
- ④ 동등성 인정 절차의 각 단계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 기초 정보교환은 이메일(online)로 추진하며, 벤치마킹과 관련된 관리 기준, 동등성 비교 등의 자료는 홈페이지(EUREP-GAP. org)에 직접입력
- ⑤ 방문 평가(independent witnessed assessment)의 목적과 추진 절차는?
- 실제로 모든 동등성 신청기준에 대하여 방문평가가 이루어지는지?
- ☞ 방문평가는 동등성 인정 대행기관의 담당자 1인과 국내인증기관이 동행하여 동등성 신청 단지의 10%를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며,
 - ☞ 국내인증기관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심사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관찰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질적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으며,
- ⑥ 동등성 인정 총 소요기간이 1년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기준 및 규정 보완 등의 이유로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의 조치는?
- ☞ 규정의 보완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 추진가능
- ⑦ 동등성 인정업무 대행기관(DAP, JAS-ANZ)에 납부하는 수수료 외에 EUREP-GAP 사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나 준수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 ☞ 동등성 인정 최종 계약체결 후 EUREP-GAP 사무국에 3,500유로를 지급해야 회원자격획득하며, 이 비용에는 300농가까지의 인증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301 ~ 1000농가의 경우 인증수수료 추가 납부(5 EUR/농가)
 - 1001농가 이상의 경우 인증수수료 추가 납부(1 EUR/농가)

□ 한국GAP과 EUREP-GAP를 이원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① 내수용 GAP와는 차별화된 로고 사용 등 예상가능한 문제점은?

② 농관원의 인정기관 자격획득 시점까지 제3국의 인정기관에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한시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EUREP-GAP의 표기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소 포장단위에는 불가하며, 수출농산물 인증을 위해 제3국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은 가능

□ EUREP-GAP 본부 방문 사진



<유럽갭 본부현판 >



<Angelo Lazo와 기념사진>



<유럽갭 개요 설명>



<유럽갭 개요 설명>



<인증현황 등 문의>



<인증현황 등 문의>

2. EUREP-GAP 동등성 인정 절차

□ 동등성 인정 평가

- 대행업체 : **DAP(Deutsches Akkreditierungssystem Profwesen GmbH)**
- 담당자 : Kurt Ziegler(관리소장), Tilman Denkler(동등성 평가담당관)
- **DAP(독일 베를린 소재)역할**
 - 동등성인증 신청자들의 벤치마킹 절차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DAP와 JAS-ANZ(호주 소재)가 **EUREP-GAP**위원회로부터 선정되었음
 - 벤치마킹 5단계 중 2~4단계(사전기술검토, 방문평가) 평가담당

□ EUREP-GAP과의 동등성 인정이란?

- 자국의 GAP 인증을 위한 관리기준과 인증방법이 EUREP-GAP의 기준과 절차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절차로서,
- EUREP-GAP에서 요구하는 동등성 인정 신청 등 5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FoodPLUS사와 협약체결로 성립되는 제도
 - 스페인, 칠레, 화란, 뉴질랜드, 프랑스 등 15개국이 동등성 인정체결
 -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케냐 등 12개국은 진행 중에 있음

□ EUREP-GAP 동등성 인정 벤치마킹이란?

- 국제간 물류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식품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하여
- EUREP-GAP이 관리기준·점검내용·인증절차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생산시스템이 없는 생산자나 국가 또는 Tesco, BRC와 같이 자체인증 시스템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등이 무료로 도입·활용할 수 있으며, EUREP-GAP의 동등성 인정을 받기위한 측정 기준 임

※ 벤치마킹 세부 절차 붙임참조

□ 각 국의 동등성 인정 및 진행현황

- EUREP-GAP 동등성 인정 15개 국가현황('07.5말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칠레	덴마크	멕시코	독일	스위스	화란	케냐	계
1	1	3	1	1	1	1	1	1	1	2	1	15

- EUREP-GAP 동등성 인정 진행 12개 국가현황('07.5말 현재)

영국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일랜드	스웨덴	케냐	스위스	일본	중국	태국	인도	계
2	1	1	1	1	1	1	1	1	1	1	12

※ 현재 ChinaGAP(중국, '06.4.12), JGAP(일본, '06.4.27)은 심사 중으로 7월 완료예정

□ 각 국의 동등성 인증분야 내역

<EUREP-GAP benchmarked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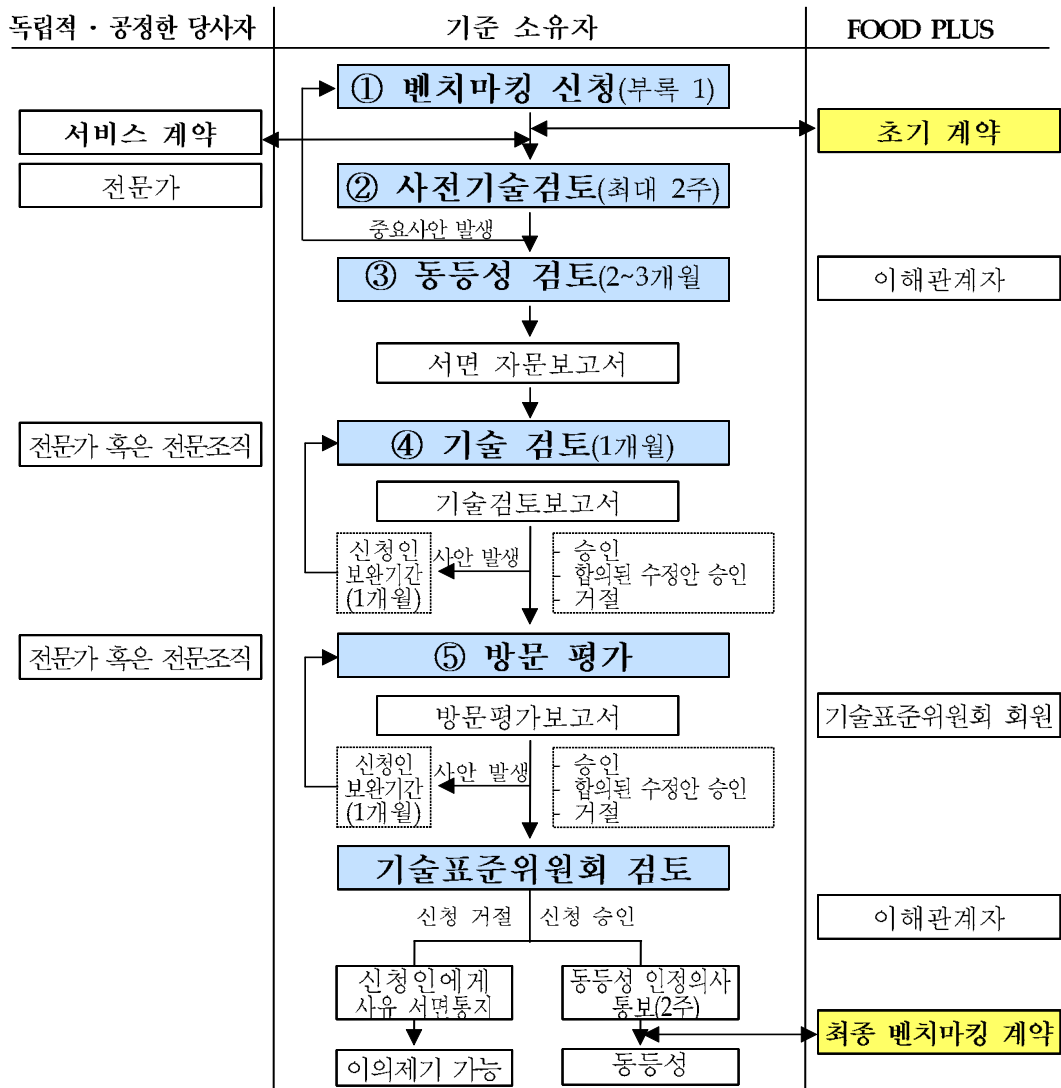
Approved Schemes		
AMA GAP	오스트리아	Fruit and Vegetables
BOPP	영국	Flower and Ornamentals
ChileGAP	칠레	Fruit and Vegetables
DanishGAP	덴마크	Fruit and Vegetables
KFC	케냐	Flower and Ornamentals
Mais Doux	프랑스	Fruit and Vegetables
Mexico Supreme Quality	멕시코	Fruit and Vegetables
MPS GAP	네덜란드	Flower and Ornamentals
Naturance	스페인	Fruit and Vegetables
Natursense	스페인	Fruit and Vegetables
New zealand GAP	뉴질랜드	Fruit and Vegetables
QS GAP	독일	Fruit and Vegetables
UNE 155000	스페인	Fruit and Vegetables
Utzkapeh	네덜란드	Coffee
SwissGAP	스위스	Fruit and Ornamentals
계	15개	

Aplicant Schemes in progress		
Assued Produce	영국	Fruit and Vegetables
ChinaGAP	중국	FV/IFA
CNMP	우루과이	IFA
Florverde	콜롬비아	Flower and Ornamentals
Irish Quality Salmon	아일랜드	Integrated Aquaculture Assurance
Integrated Production	스웨덴	FV
JGAP	일본	FV
KenyaGAP	케냐	FV/FO
Scottish Salmon	영국	Integrated Aquaculture Assurance
SwissGAP	스위스	FO
계	10개국	

※ 현재 ChinaGAP(중국, '06.4.12), JGAP(일본, '06.4.27)은 심사 중으로 7월 완료예정

Compound Feed Manufacturing Schemes		
Sindiracoos	브라질	Approved
UFAS	영국	Approved
GMP+	NL	Approved
OVOCOM	벨기에	Applicant
CESFAC	스페인	Approved
계	5개국	

(PRODUCT CERTIFICATION STANDARD BENCHMARKING)



②~⑤단계는 동등성(DAP, JAS-ANZ) 대행기관에서 추진

DAP

□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관련

① 동 기구 가입 시 한 국가에 1개 기관만 회원등록 가능한지?

- 한국인정원(시스템 인증분야) 및 한국제품인정기구(제품 인증분야)가 IAF 회원으로 기 등록된 상황에서 농관원의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는 1국에 복수의 인정기관 지정이 가능하나 2010년 이후 1국에 1개의 인정기관 유지를 위한 법을 제정 중에 있어 독일 내에서도 인정기관 간에 흡수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

②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와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가입절차, 소요기간 및 회원 자격유지 조건, 연간회비 등은?

☞ 동 기구에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신으로 직접 확인

③ 동등성 인정을 획득한 규정 및 기준으로 향후 한국이 GAP 인증업무를 수행할 시 인증심사,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한 역할분담은?

☞ EUREP-GAP 일반규정에는 경고, 정지(Suspension), 취소 등의 규정이 있으나, DAP는 3개월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수정보완이 안될 경우 인증기관과 인증농가에 대한 인정과 인증 취소 조치

□ 동등성 인정신청 분야 관련

① EUREP-GAP은 최근 통합농장인증(Integrated Farm Assuran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분야를 도입하였으나 한국 GAP는 신선농산물에 국한되어 어느 분야로 동등성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 'Fruit and Vegetables' 분야에 신청으로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에 유리

※ 일본은 'Fruit and Vegetables', 중국은 'IFA' 분야에 동등성 신청

※ IFA란 한 농장의 재배 및 사육현황 전체를 개별적 다수인증이 아닌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화훼 및 축산물 범위까지 확대되어 있음

<

DAP

>



<DAP 현판 1>



<DAP 현판 2>



<Kurt 소장 DAP 개요설명>



<Tilman Denkler 동등성 설명>



<Tilman Denkler 동등성 설명>



<면담 후 단체 기념 촬영>

3. EUREP-GAP 사후 관리

가. DAP(Deutsches Akkreditierungssystem Prufwesen GmbH)

□ 면담자

- Kurt Ziegler, Managing Director, German Accreditation System for Testing, Ernst-Augustin-Stra e 15, 12489 Berlin-Adlershof, Germany, Phone) +49 (0) 30 670591 10 E-mail) ziegler@dap.de
- Tilman Denkler, German Accreditation System for Testing, Ernst-Augustin-Stra e 15, 12489 Berlin-Adlershof, Germany, Phone) +49 (0) 30 670591 33 E-mail)denkler@dap.de
- Barbara Voon, Case Manager, German Accreditation System for Testing, Ernst-Augustin-Stra e 15, 12489 Berlin-Adlershof, Germany, Phone) +49 (0) 30 670591 51 E-mail)voon@dap.de

□ 개요

- 1988. 12. 08 독일 연방재료검사청(국가기관)으로 시작하여 1989. 4. 28 인정기관으로 되면서 민영화되어 지금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인증시험 연구소로 매년 100~150개의 시험소를 인증하고 정도 관리도 하는 국제적인 EUREP-GAP인정기관 임.
- DAP는 인증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이 분야에 수년의 경험 있으며 처음에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했으나 지금은 국제적으로 관청, 중소기업체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비스기관 임

□ 인증기관(CB) 사후 관리

① 인증기관 인증유효기간

- DAP는 인증기관을 5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신청을 받아 사람, 시설, 장비 등 모든 인증조건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없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설보완 등 이루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5년 단위로 재신청을 받아 인증조건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필요함.

② 인증기관 사후관리

- 인증기관의 감사관이나 조사원은 1년에 1회 반드시 EUREP-GAP주관하는 인증기관 워크샵에 참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야 함
- DAP는 1년에 1회 인증기관의 장비, 사람, 인증기관 운영상황을 감사하며 해당인증기관이 인증한 농가를 무작위 표본을 선정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점검 및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관원은 반기 1회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 인증을 받기위해 분석한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석기관의 시험성적이여야 함으로 우리나라분석기관도 국제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나. TESCO

□ 면담자

- 1) Nick Ball, Produce Group Sourcing Category Technical Manager,
Tesco Stores Ltd, New Tesco House, Delamare Road,
Chesnut, Hertfordshire EN8 9SL, Phone) +44 (0) 1992
644274, E-mail) nick.ball@uk.tesco.com
- 2) Monoka Kosinska, International Corporate Affairs Manager, Tesco

Stores Ltd, New Tesco House, Delamare Road,
Chesnut, Hertfordshire EN8 9SL, Phone) +44 (0)
1992 644332, E-mail) monika.kosinska@uk.tesco.com

3) Jeremy Hooper, International Trading Law & Technical Manager,
Tesco Stores Ltd, Cirrus Building A, Shire Park,
Welwyn Garden City, Hertfordshire AL7 1GA, Phone)
+44 (0) 1707 678768, E-mail)
jeremy.hooper@uk.tesco.com

□ 개요 : 유통업체의 TESCO쪽을 참조

□ 인증농가 사후 관리

① 인증의 유지 및 관리

- 매년 인증농가는 인증기관과 등록상황 및 인증작물을 확인해야 함
- 감사관은 매년 인증과정에서 전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함
- 1년차 감사
 - 첫째 외부감사시 모든 자료는 수확 전 3개월 이내이거나 처음 등록한 날짜로부터의 자료만 유효함
 - 수확과 수확 후 취급은 EUREP-GAP등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2년차 이후의 감사
 - 감사시 어떤 형태로든 인증작물이 현장에 존재해야 함
- 모든 관리는 외부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 감사 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제재는 경고(Warning), 일시 자격정지(Suspension), 취소(Cancellation)로 구성됨
 - Major Must 항목 미 이행경우
 - 즉각적인 완전 또는 부분정지 : 인증의 사용이 일시 정지됨

- 6개월 안에 시정이 없을 시 인증 취소
- Minor Must 항목이 5%이상 이행되지 않았을 때
 - 인증의 사용정지를 28일 동안 유예
 - 이 기간 중 시정이 없을 시에 최악의 경우 인증이 취소됨

② 인증농가 인증유효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별 인증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EUREP-GAP의 214개항의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그 이상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으며 심사원의 재량이 많이 주어져 지역별 품목별 여건에 맞게 운영 함.
- 우리나라도 인증유효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모든 인증기관이 농촌 진흥청장이 고시한 인증기준 110개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증 기준은 없으며 심사원의 재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지역 및 품목별 여건에 맞지 않을 수 있음

③ 상품에 대한 인증표시

- EUREP-GAP은 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는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보고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구분을 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인증농업인이 GAP인증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확후 위생적으로 세척, 선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우수한 농산물임을 홍보하여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인증품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④ 인증농가 사후관리

- 추적관리 생산농가부터 인증농산물의 번호가 부여되어 유통과정의 순 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단계별 번호를 부여하여 전단계와 다

음단계 추적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EUREP-GAP보다 우리가 더 강화되어 있음.

- EUREP-GAP은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 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를 농산물이 있는 시기에 내부 자체 조사를 인증농가에 연 2회 협회 작업장 3~5회 실시
 - 외부인 인증기관 감사는 연 협회 4회 인증농가회원의10% 작업장 1회 실시
-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은 인증품 생산, 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판품 조사를 농관원이 반기 1회 이상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 사후관리관련 질의응답

- EUREP-GAP인증기관으로 농가관리 어려운 점은?
 - 농가에서 작업내용 기록을 싫어한다. 꾸준한 설득

- EUREP-GAP의 인증을 받은 상품에 로고나 GAP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
 - EUREP-GAP은 농산물생산, 유통 하는 시스템에 대한인증이지 상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직접 인증표시 및 홍보문구 표시 안함. 다만 매대에 GAP홍보물 설치 가능 함

- DAP에서 인증기관(CB)의 사후관리?
 -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받아 일제 심사를 한다. 그리고 1년에 1회 인증기관과 인증농가까지 조사
 - 기준위반시 처리는 시정명령, 경고, 최종 인증취소지만 취소 후 언제라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재신청이 가능

- 인증기준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은데 심사원이 그런 조항은 어떻게 조사하나?
 - 품목과 지역실정 감안하여 EUREP-GAP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심사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심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인증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는?
 - 문제의 상품은 전량회수하고 문제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농가 또는 인증기관을 처벌



<인증기관에 농장 확인>



<추적관리 번호 KG45>

4. 농산물 생산·수확후 처리

가. 농업회사법인(G's Marketing Ltd, www.gs-marketing.com)

<면담자>

Ed Moorhouse, Head Office Barway Ely Cambs CB7 5TZ, UK.

Phone) +44 (0) 7770 327672,

E-mail) ed.moorhouse@gs-marketing.com

<개요>

- 회사주소 : Ely Cambs CB7 5TZ, UK.
- 독립된 가족 사업체(independent family business)로 1952년에 설립된 농업회사격인 회사임. 자체(임대 포함) 농장에서 생산과 팩킹업무, 출하 업무를 겸하는 농가역할과 한국의 APC역할(마케팅 포함)을 겸하고 있음.

- 기업 목표는 안전하고(safe), 위생적이며 건강에 좋은(wholesome) 나아가 품질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임.
- 여름철은 영국과 체코에서 그 외 계절에는 스페인에서 직영 및 임대 농장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영국, 중부유럽, 스페인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250%의 성장을 기하고 있음.
- 특히 Tesco가 가장 큰 고객이며 2006년의 경우 140억유로 매출을 기록함. 최근 들어 'Organic' 농산물의 생산, 판매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음 (현재 300ha에 organic 재배중이며 추가로 300ha 추진중임).
- 이 회사의 경우 검고 가벼운 흙을 자체 생산하여 농지에 공급, 토양 개량을 하고 있음. 매월 인력 사용은 5,000여명 정도이며 대학생 등 훈련된 노동력을 사용함.

< 양상추 수확 및 수확후 관리>

① 수확

- 양상추 수확기를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대가 작업중임.
- 수확기계는 양상추 받음 전진하면서 수확, 다듬기, 플라스틱필름 개체 포장, 골판지 상자 포장이 미리 훈련된 작업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인력에 의해 이루어짐. 수확작업중 골판지 상자 제함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포장이 완료된 양상추 상자는 수확기에 부착된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짐.
- 수확 작업중의 위생 관리
 - 밭에는 작업중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 * 손 세척 시설은 보이지 않음
 - 수확 작업 및 밭에 들어갈 때는 별도의 작업화 및 작업복 착용

<

, , >



② Packing House 처리

○ 예냉

- 골판지 상자에 포장이 완료된 양상추는 팩킹하우스로 옮겨 진공냉각 처리를 행함(본사 사무실과 인접해 별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 밭에서 10여분 거리에 있음)
- 3대의 진공냉각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30분 이내에 3℃까지 냉각이 가능함.



Packaging store 전경



양상추 진공냉각작업

○ 수확후 관리시설

- 건물 구조 : 철골빔과 조립식 판넬로 건설되었으며 철골빔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내부 시설 구획화 : 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입구 측 1실은 집하 및 예냉처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내측 1실은 포장,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짐
- 시설의 관리 상태 : Packing house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서 외부인 견학을 꺼려하여 작업장 내부를 자세히 보기 어려웠으나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였을 때 보통 수준의 관리 상태로 여겨짐.
- 작업중 출입구는 개방되어 있어 작업중 설치류 침입의 우려가 보임.

< , >



나. 팩킹하우스(BOHMER GmbH Und Co. KG, www.kartoffel-boehmer.de)

<면담자>

Edgar Stollenwerk, Phone) +49 (0) 171 972 17 53,

E-mail)e.stollenwerk@kartoffel-boehmer.de

○ 개요

- 감자와 양파를 세척, 선별 포장해서 출하하는 팩킹하우스

- 독일 내에 5곳에 branch가 있으며 이 곳 시설이 중심임.
- 1일 200~500톤 처리. 연간처리량 350-400만톤/감자+양파로 전 독일 수요량의 30% 취급
- 원료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매하나 독일에서만 판매
- 독일에서는 감자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팩킹하우스가 줄어들고 있음.
- 소비자 용도별 감자를 생산자에게 주문하여 납품받아 처리하여 포장하여 납품함. 즉 매취사업 형태임.
- 처리물량의 90%는 예년 기준으로 농가와 계약함. 자체 저장은 하지 않음.

○ 감자 작업 공정

원료감자 반입(1,250kg 톤백에 포장) → 계량 → 해체 → 덩핑 → 1차 물세척(먼지 비산 방지) → 이송(콘베어) → 물세척 → 이송 → 저온 공기로 건조(10~20℃) → 선별(크기선별, 육안선별:녹변, 발아, 부패과) → 포장 → 보관 → 출하

* 원료 덩핑과정에 물을 스프레이 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공정이 특별함. 따라서 특별히 집진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이력관리 : 톤백에는 고유 번호가 부착되어 출하시까지 이력관리함 보통 20개 톤백이 한 차에 수송되어 오며 이를 1 LOT로 취급하고 무작위로 1백개 견본을 채취하여 품질 검사

○ 건축물

- 건물구조 : 콘크리트와 조립식판넬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며 천정은 1층은 콘크리트, 2층은 갈바처리된 철판 사용. 바닥은 기계미장을 하였고 에폭시 처리는 하지 않음. 벽체는 조립식 판넬, 간벽은 콘크리트벽체와 갈바판넬을 혼용하여 사용. 가로 철골빔을 벽체에 1-2개만 사용

함. 천정에는 철골빔 대신 나무판으로 마감함. 형광등(조명)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트렌치 : 별도의 트렌치 설치는 없고 세척수 사용 공정은 구획화 되어 있어 다른 작업장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하였음.
- 방충망 : 작업장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시설은 IFS(International Food Standard) 기준에 따라 관리함.



<감자 선별장 전경>



<감자 선별 작업>

○ 시설 운영 및 관리

- 선별은 격자형 크기 선별기로 단계별로 크기를 선별함. 선별은 PC로 자동 선별을 시도하였으나 처리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반자동으로 처리함.
- 청소 상태 :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바닥에 먼지가 거의 없음(청소 상태 양호). 쓰레기통을 곳곳에 설치하였음.
- 형광등의 경우 덮개가 설치됨
- 폐기물(불량품)은 사료로 이용한다고 함.
- 완제품의 경우 발아 억제를 위해 조명을 어둡게 유지함
- 출고는 dock shelter가 설치된 출하장을 통해 출하
- 출입문 ; 저녁은 차단, 낮에는 차량 반입등으로 개방
- 설치류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덩을 놓고 문제점등을 조사함

○ 품질관리

- 실험실(관리실)에서는 품질 검사, 컴퓨터에 의한 원격 제어 및 데이터 저장/관리, CC카메라에 의한 작업공정 감시
- 감자는 용도별로 구매하여 관리함(물량, 현재 작업상태, 포장 요구사항 등)
- 품질 관리 : 품질검사는 초기 덩핑시, 중간 검사, 완제품 검사 등 3회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이물질, 흙, 내부결점, 반점, 외부변색, 상처, 벌레먹은 흔적, 갈리진 것, 크기, 젖은(건조) 정도, 색택, 태양 노출 정도, 발아, 부정형과 등
- 반입되는 감자는 EUREP-GAP 인증 여부만 확인하며 대부분 인증을 받고 있음

5. 대형 유통업체 농산물 유통실태

가. EU의 농산물 유통실태 개요

□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방법

- 생산자가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획득이 기본 조건임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받아야 함
-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는 납품할 능력을 지닌 출하업체의 리스트를 먼저 작성 후 이들과 협상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함
-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과 계약을 하여 상품을 파는 것은 다른 문제임

□ 생산자/출하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 경쟁자들의 상품과 비교하여 자기상품의 치장, 가치올리기라고 할 수 있으며, 출하조직의 상표이미지 상승 및 상품가격 상승효과 기대
- 그러나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생산 농가가 직접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은 어렵고, 시장이 평가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 대형유통업체들은 AOC, 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출하조직이라도 다른 출하조직과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함
-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량 증대를 통해 전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출하조직이 임의로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다고 함

□ 유럽 대형유통업체의 인증관리

1) Nature's Choice(Tesco)

- GAP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미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 경작지 주변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REP-GAP과 거의 유사하지만, Nature's Choice는 EUREP-GAP보다 몇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음
- Tesco는 Nature's Choice와 EUREP-GAP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 단계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음
- ※ 최근에는 자체인증(Nature's Choice)에 대한 홍보와 표기를 하지 않고 EUREP-GAP인증을 요구하여 비용감소와 부담완화 도모

2) 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 '마크 앤 스펜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여 1998년부터 BRC라는 의무이행기술 메뉴얼을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 생산조직이 BRC에 가입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리스트(reference)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BRC인증을 받아야만 함
- BRC의 특징
- 영국이 광우병사태를 겪은 이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엄격하고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음

- HACCP, ISO 9000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BRC 인증을 받으면 ISO 9000 인증도 받게 됨
 - 선과장,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작업장의 설계와 위치에 관련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으며, 과일을 시식할 때 문구류 칼을 사용하면 안되고, 반드시 과도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는 항상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음
 - 품질관리사는 과도의 정위치 여부와 청결여부를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하여 기록해야 함
 - 작업인원의 개인위생과 안전 등도 규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과일을 다루는 여성들은 결혼반지를 제외한 다른 반지는 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음
- 선과장에서는 이러한 BRC의 규정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으나,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BRC의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IFS(International Food Standard)

- 독일의 유통업체들이 BRC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여 IFS를 만들
 - BRC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BRC보다 기술이행규범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BRC와 80%이상 유사
 - BRC의 검증이 '예'와 '아니오'의 시행여부의 판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IFS는 a, b, c, d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IFS는 2002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까르푸도 IFS에 참여하고 있음
- BRC와 IFS는 식품위생에 관한 품질관리인 동시에, 생산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함

4) CQL(Carrefour Quality Line)

- 현재 치즈, 쇠고기, 포도주, 생선, 청과물, 유기물까지 포함하여 250개 품목에 대해 실시 중이며 3만 5천 농가가 참여 중임
 - 프랑스 내의 까르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까르푸에 모두 적용하고 있음
- CQL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의 내용
 - 친환경적인 농사를 존중할 것
 - 수확 후 화학적인 물품을 쓰지 말고 보관할 것
 - 상품의 품질, 특히 당도와 속도에 관한 사항
- ※ 모노프리도 까르푸와 같이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까르푸의 CQL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함
 - CQL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농사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비료의 사용, 화학 농약의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밭 옆의 쓰레기통의 위치까지 규정하고 있음
 - 모노프리의 의무이행 기술 매뉴얼은 농장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음
 - 시설물의 배치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옷을 담아 놓는 탈의실과 장비실은 밭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있음 (EUREP-GAP, Nature's Choice)
 - 현재 청과물에 대한 의무이행 기술 매뉴얼의 분량만 100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윤리, 즉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경우 월급은 적절한가, 사회보장은 해주는가 까지 규정하고 있음

5) EUREP-GAP

- EUREP-GAP 활용
 - Tesco의 “신선농산물 분류 기술부장 Nick Ball”에 의하면 Tesco는 취급하는 신선농산물 중 **95%내외가 EUREP-GAP을 획득한 것으로**

- EUREP-GAP의 표기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소 포장단위에는 불가
- EUREP-GAP과 Nature's Choice는 상품, 식품위생, 생산과정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음
- EUREP-GAP의 주인은 FoodPlus로 1997년부터 시행하여 검증회사들이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음
- EUREP-GAP의 기초가 되는 것은 GAP이며, 기본적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EUREP-GAP의 내용은 종자, 농약, 비료, 작업장환경 및 개인위생, 청결 등이며 관련서류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 마크 앤 스펜서, 맥도널드, 모노프리 등
- 프랑스의 유통업체는 모노프리만 참여하고 있음

□ 대형 유통업체의 인증농산물 차별화 내역(독일)

- 독일은 유기인증제품과 일반농산물의 판매가격이 방울토마토 188%, 양상추 151%, 바나나 134%, 당근 115%, 파프리카 82% 차별화하여 판매

< PLUS

가 >



< PLUS

EUREP - GAP >



※ 보드내용 : 독일에서 첫 번째로 과일 등 신선품목에 EUREP-GAP 인증 판매

□ 영국·독일의 인증품에 대한 이력관리 현황

○ 선별장에 입고된 감자에 대한 이력 및 로또 관리



<입고 당시 이력관리번호>

○ 대형 유통매장 영양표시 및 이력관리



- 열량, 당, 지방, 포화지방, 염도 등 영양표시



이력관리



※ 이력관리 번호 자리수와 표기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부 유통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상세내용을 검색토록 표기



(제품에 대한 요리 용도표기로 소비자 편의 제공)



(터키인이 운영하는 마켓 전경)



[터키 마켓 인증제품]

[중국산 후지사과]

※ 인증된 감자는 생산일자별로 유통 관리번호를 부여

나. Tesco Extra(영국)

□ 일반현황

- 설립년도 : 1919(설립자 : Jack Cohen)
- 점포수 : 1,800개
- 고용원수 : 260천명
- 수익(2005) : 2,029million파운드

□ 특징 및 매장관리

- 1997년 최초로 Extra(매장면적 60,000평방피트이상) 개점
- 중장기 영업전략은 핵심 UK 사업에서의 성장, 국외 진출 확장, 비식품분야의 강화, 새로운 소매서비스 제공임
- 구매성향 및 매장 규모에 따라 엑스트라(3,000평), 슈퍼스토어(500평) 메트로(300평), 익스프레스(주유소 위치 50평) 4가지 형태
- 1999년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50% 구성
- 전체 매장중 약 1/5이 농산물 취급 매장이며, 나머지는 공산품 및 잡화 취급
- 대부분 1차 농산물은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주류이며, 소포장화 되어 있음.



<TESCO 전경>



<농산물 매대>

□ 인증상품 운영 실태

- 상품 및 생산농가에 따라 영국에서 통용하는 농산물 인증과 Natural Choice 인증 상품을 복합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영국의 농산물 주요 인증제도
 - EUREP-GAP, Natural Choice, AP, Organic, Leaf, BRC 등
- 소포장 농산물에 인증마크(올가닉, AP), 이력추적 번호, 생산지, 생산자, 품종, 등급, 중량 진열기한 이외에도 별도 칼로리 표시를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상품 표기사항>



<칼로리 표시>

1) EUREP-GAP 인증

- 생산농가와 유통업체간의 기본적 basic line으로 EUREP- GAP에서 상품에 별도 로고 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품별 인증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시판 상품 90% 이상.

2) Natrural Choice 인증

- 테스코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테스코 농산물 인증
- 1992년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테스코에서 기준 제정 EUREP-GAP의 제정 근간이 되었음

- EUREP-GAP 과 비슷하나 평가항목에 있어 강화되어 있으며, Technical Advisory Committee에서 관리하며 CMI라는 제3자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 대행.

*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구성멤버

(테스코 테크니컬팀+생산농가+분야별 전문가+CMI)

- 농가를 인증 등급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로 나누어지며 현재 41개국 7600농가에서 등록 운영 지도관리
- 인증후 상품의 품질(선도,당도,사이즈)에 따라 Value(저가형), Tesco (중저가형), Finest(고가형)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
- 테스코에 시판되고 있는 농산물 95% 이상이 GAP 인증상품임
- 초기에 Natural Choice 로고를 사용하였으나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한 반응으로 현재 별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3) Organic 인증

- Soil Association에서 인증한 유기농 상품을 Organic 으로 표기하여 별도코너 및 연관진열 판매.
- Organic 상품은 Tesco 품질기준 등급의 Finest로 운영.
- 일반 농산물 가격과 많게는 2배정도 차이를 보임,
- 벌크, 소포장, 손질상품으로 유기농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유기농 매대>



<유기농 손질 상품>

4) AP (Assured Produce)

- 1990년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 관심고조로 UK farming industry 에서 제정.
- EUREP-GAP이 유통업체의 품질관리 필요성에 만들어진 반면 유통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품에 인증 로고 표시가 되어있어 소비자가 쉽게 구별 할수 있음

다. Sainsbury's Supermarket(영국)

□ 일반현황

- 설립년도 : 1869년(설립자 : John James & Mary Ann Sainsbury)
- 점포수(2006.3월 기준) : 752개
- 고용원수 : 153천명
- 취급품목수 : 농식품, 잡화 등 약 30,000점(자사 브랜드 50%)
- 이용고객수 : 16백만명/1일주

□ 특징 및 농산물 매장관리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 소매체인점
- 영업전략은 고품질 제품 공급, 가치 창출, 최상의 서비스 및 친절도임
- 전체 매장중 약 1/4이 신선 농산물 취급매장이며, 나머지는 가공식품 및 공산품 취급
- 대부분 1차 농산물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주류이며, 소포장화 되어 있음
- 소포장 농산물에 이력추적 번호, 생산지, 생산자, 품종, 등급, 중량 진열기한 등을 표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매장 전경>



<농산물 매대>

□ 인증상품 운영 실태

- EUREP-GAP은 제품에 표시되지 않아 상품별 인증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EUREP-GAP 은 basic line으로 운영)
- Organic : 유기농 상품은 SO(Sainsbury Organic)라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별도 코너 및 유사한 상품군에 연관하여 진열
 - 2004년 SO 매출액 : 130million 파운드
 - 2005년 9월 100여 가지 상품으로 시작하여 확대 운영 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의 유기농 전환을 위하여 일부분 스폰서로 지원.
 - 경쟁점보다 유기농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잘 되 있고 구색도 다양한 편임
- 일반농산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잔류허용치의 5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함



<유기농 상품>



<유기농 매대>

라. ASDA(영국)

□ 일반현황

- 설립년도 : 1965년(설립자 : Dairies & Asquith brother)
- 점포수(2007.6월 기준) : 313개
- 고용원수 : 93천명
- 취급품목수 : 농식품, 잡화 등 약 20,000점(자사 브랜드 40%)

□ 특징 및 매장관리

- 1999년 미국의 Wal-Mart에 인수됨
- 입지조건 및 상권규모에 따라 Smaller stores (25,000 평방피트), Superstores (47,000평방피트), Supercenters(85,000평방피트), Living 등으로 구성
메트로(300평), 익스프레스(주유소 위치 50평) 4가지 형태
- 현재 시장점유율 16%로 Sainsbury's와 함께 영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음(Tesco 31%, Sainsbury's 16%)
- 경쟁사에 비해 최저가격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음, 최근 '그로서(The Grocer)' 지에 의해 10회 연속 최저가 슈퍼마켓으로 선정되었음
- 최근 영국 슈퍼마켓 중 최초로 자사의 식품과 음료 제품에서 모든 인공 색소와 감미료를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함.(친환경적 정책시행)
- ASDA 또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여러가지 PL을 운영중에 있음 (Smartprice, ASDA Brand, Good for you, Extra Special, Great Stuff 등)
- 경쟁점과는 달리 90%의 농산물/식품을 영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영국내의 8개의 식품/농산물 지역 물류 허브를 가지고 있음



<매장 전경>



<농산물 매대>

□ 인증상품 운영 실태

- EUREP-GAP은 상품에 표시되지 않아 상품별 인증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EUREP-GAP은 basic line으로 운영)
- 유기농(Organic) 상품은 별도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점에 비하여 프로모션이 약하고 매대 구성이 크지 않음
-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에 대하여 '구식 야채가게' 형태의 포장되지 않는 벌크개념의 농산물 판매를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유기농 상품 또한 상당량을 벌크로 운영하고 있음
- 소포장 농산물에 이력추적 번호, 생산지, 생산자, 품종, 등급, 중량, 진열기한 등을 표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유기농 매대>



<유기농 상품>

마. ALDI(독일)

□ 일반현황

- 설립연도 : 1948년 독일의 알브레히트 형제가 Essen 타운에 첫 오픈
- 점포수 : 유럽, 미국, 호주등 전세계 5,000개 이상 매장 운영
- 1960년대 self-service concept로 크게 성장

□ 특징 및 매장관리

- Exclusive range of products : 생활에 필수적인 700sku 구성, 대부분 이 자체 브랜드
- Stringent quality standards(엄격품질기준) : 독립적인 분석실을 갖추고 자체 검품을 지속적으로 함
- A unique shopping experience : 매장내 레이아웃이 거의 동일 (표준화) → 편리한 쇼핑
- Surprises in store : 매주 목요일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non-grocery items 파격행사, 트렌드 파악 통한 시기별 기획상품 구성
- 원가 절감에 의한 초저가 정책, 철저한 현금 중심 경영
- 매장면적 1,000~1,500m²
- 슈퍼형 매장으로 대량 단위의 상품 보다는 소량 단위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장(손질)된 상품 보다는 벌크 위주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매장 전경>



<농산물 매대>

□ 인증 상품 운영실태

- EUREP-GAP 상품에 대한 별도표시 및 홍보물을 사용하지 않아 GAP 상품 운영여부는 확인 불가
- 유기농 상품의 별도 판매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일반상품과 연관하여 진열하고 있음
- 자체 유기농 브랜드가 아닌 BIO-BIO라는 팩킹 하우스 유기농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 유기농 상품의 가격은 일반상품보다 약 2배정도의 가격으로 운영

(※참고 : 예시 1)



<앤드 매대 박스진열>



<일반/유기농산물의 가격차 ※예시 1>

바. PLUS(독일)

□ 일반현황

- Tengelmann Group의 자회사
- ※ Tengelmann Group : 다국적 소매기업, 15개 국가에 15,000명 이상의 종업원과, 7,600개 이상의 outlets가 있음
- convenience store chain 형태임

○ 연매출 및 나라별 매장 수

구 분	Sales (단위: million Euro)	Outlets(매장 수)
Plus Germany	6,757.0	2,840
Plus Greece	9.0	18
Plus/ Zielpunkt Austria	672.7	355
Plus Poland	348.1	183
Plus Portugal	138.6	55
Plus Romania	35.4	18
Plus Spain	524.3	234
Plus Czech Republic	445.5	121
Plus Hungary	384.1	165
합 계	9,314.7	3,983

□ 특징 및 매장관리

- ALDI와 비슷한 개념의 매장구성
- 원가 절감에 의한 초저가 정책, 철저한 현금 중심 경영
- 생활에 필수적인 소포장 아이템으로 구성, 대부분이 자체 브랜드



<매장 전경>



<농산물 매대>

□ 인증상품 운영실태

- 금번 영국, 독일의 6개 유통업체 중에 유일하게 농산물 매대에 EUREP-GAP 홍보물을 고지하고 있다. 역시 상품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매대 위의 행잉 우드락으로 EUREP-GAP 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음
- ALDI와 마찬가지로 자체 유기농 브랜드가 아닌 BIO-BIO라는 팩킹하우스 유기농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 유기농 상품의 구색은 많지 않으며 일반 농산물과 연관진열 되어 있어 유기농 상품에 대한 구성이 크지 않아 보임



<EUREP-GAP 홍보물>



<유기농 상품>

※ EUREP-GAP 홍보문구 :

- 모든 과일과 야채는 EUREP-GAP에 의해 인증됨
- EUREP-GAP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안전 시스템
-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관리함
- PLUS는 EUREPGAP인증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고 있음
- PLUS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철저히 관리함

사. 메트로 그룹(독일)

□ 일반현황

- 설립년도 : 1964년(Metro SB-Großmarkte GmbH로부터 시작)
- 점포수 : 30개국, 2400개 ,세계3위 유통그룹(2006년기준)
- 점포형태 : 매장크기/형태에 따라 Metro cash & Carry, Real, Extra, Media Market, Pratikar 등으로 세분화 운영
- 매출규모 : 59.9 billion 유로
- 고용원수 : 270 천명

□ 특징 및 매장관리(Metro cash & Carry)

- The cash & Carry 는 독일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 메트로 그룹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로 그룹 내 가장 큰 회사임.
 - 28개국, 585개 매장, 29.9 billion 유로(그룹내 50% 비중)
- Cash & Carry는 직접 물건을 골라서(Self-Service) 현금지불하고 배송하라는 의미의 상호명으로 일반 유통업체와는 달리 회원제
- 회원 자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이들이 주 고객임.
매장 운영 방향 - " From Professionals for Professionals"
- 접근성이 용이하며 타 유통업체 보다 매장 운영시간을 늘려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
- 각 나라 및 지방 여건을 감안하여 매장별 독립적으로 운영.
 - 각 국가 및 지방에서 요구하는 법적기준 준수(지역 친화작업)
- 매장 자체가 소매업자에게 물류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매장을 냉장 스토어로 운영하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매일배송(신선도 유지 최적화 운영.)
- 신선 매장(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냉장 운영형태로 운영중이며 특히 소매업자들을 위하여 식자재용으로 대용량 상품들을 별도 연관 진열하고 있음

- 농산 매장의 경우 카테고리별 상품군을 형성, 다양한 구색상품 진열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열대과일, 뿌리채소, 편이채소, 양채류, 허브류, 유기농 코너 등.



<매장 전경>



<회원제 카드>

□ 인증상품 운영 실태

- EUREP-GAP retailer 멤버로 기본적으로 EUREP-GAP 상품을 운영.
- 2005년부터 유럽에 의무적으로 traceability를 의무적으로 시행
- Metro 그룹은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Online Service Food Safety" 시스템(OS-FS)을 운영하여 상품의 결함 발견시 즉시 처리 리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음
- 인증 상품 운영 현황
 - 다국적 기업인 메트로는 해당 국가별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각국에 선호하는 인증 상품들을 복합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The Bio - Siegal : 유기농 상품으로 독일정부에서 인증한 상품
 - Green country : EU 연합 및 독일에서 인증한 유기농 300여 가지 상품에 자사 브랜드(Green country)로 운영
 - The blue angel : 상품성 보다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환경 위해요소를 최소한 생산품에 인증

- 상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
 - 1) 농장 및 농산물 : Eurep - Gap 인증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 운영
 - 2) 패키징하우스 : IFS(International Food Standard)의 기준을 적용.
 - 3) 물류 : IFS 기준의 물류시스템을 적용하여 물류의 안전성 검증
 - 4) 매장 : 자체적 검품기준에 의하여 진열전 선도, 잔류농약, 온도상품 표시 등 최종점검

- 그밖에 일반 농산물의 경우 자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후 Cali 라는 자체 브랜드를 품목별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고객 인지도 강화

Ex) 일반야채 - 녹색, 버섯류 -자주색, 열대과일- 빨강색 등

아. LiDL(독일, 영국)

□ 일반현황

- 설립년도 : 1930년(Kaufland란 이름으로 설립 1973년에 개칭)
- 점포수(2007.6월 기준) : 380개(영국)
- 고용원수 : 93천명
- 취급품목수 : 농식품, 잡화 등 약 12,000점

□ 특징 및 매장관리

- ALDI와 비슷한 개념의 유통업체로 독일에 본사가 있으며 전 유럽에 진출해 있다.
- 원가 절감에 의한 초저가 정책, 철저한 현금 중심 경영
- 평균 매장면적 1000~1.500m²
- EUREP-GAP은 상품에 표시되지 않아 상품별 인증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EUREP-GAP은 basic line으로 운영)
- 슈퍼형 매장으로 인근 주택단지에 위치하여 판매 구성비가 높은 필

수품 위주의 상품 구성.

- 자체 브랜드 상품 보다는 팩킹하우스 브랜드를 주로 판매.
- 상품 구성에 있어 품질보다는 Price 위주의 매장운영.
- 타 유통업체에 비하여 벌크위주의 판매로 상품에 비용절감 우선



<매장 전경>



<농산물 매대>

□ 인증상품 운영 실태

- EUREP-GAP Retailer 멤버로 GAP 상품 운영.
- 유기농은 별도 코너 등이 전무하며, 상품에 법적기준 표시 준수
- 이력추적 번호, 중량, 원산지, 상품명 등



<행사 전단>



<농산물 매대>

III. 출장자 의견

1. EUREP-GAP 관련

□ 유럽국가의 EUREP-GAP과 동등성 인정 추진실태

- EU에는 다양한 형태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국의 유통업체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
 - 국가인증으로는 AOC(지리적통제명칭), CCP(모범농산물), Label Rouge(최우수농산품) 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EUREP-GAP, Carrefour Quality Line, BRC, IFS 등이 있으나 유통업체간 품질관리 시스템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복수 유통업체에 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는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나, 유통업체 대부분의 품질관리시스템 내용이 유사하여 몇 가지 서로 다른 점만 보완하면 상호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두 시스템이 동등함을 인정하기 위하여 EUREP-GAP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생산되는 제품은 상호 인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 생산자의 부담 완화와 유통업체의 비용절감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법적인 리스크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실제로 EUREP-GAP에서는 EUREP-GAP의 몇몇 기준을 조정(벤치마킹)하여 인증을 하고 있음(Option 3, 4)
 - 영국의 Tesco는 Nature's Choice와 EUREP-GAP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증과 관련된 비용절감과 안전성에 대한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자체인증(Nature's Choice)에 대한 홍보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Tesco가 취급하는 신선농산물 중 95% 내외가 EUREP-GAP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EUREP-GAP 동등성 인정현황

- 15개 국가 중 스페인 등 유럽의 12개국이 인정('07.5말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칠레	덴마크	멕시코	독일	스위스	화란	케냐	계
1	1	3	1	1	1	1	1	1	1	2	1	15

- 향후, 일본·중국·태국·인도가 EUREP-GAP 동등성 인정을 취득하여 대외 홍보 강화 또는 수입국의 바이어나 대형유통업체가 동 인증서를 요구할 경우 우리의 GAP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아, 수입국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타 국가의 인증서와 상대적인 비교절차로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감소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EUREP-GAP간 동등성 인정의 문제점

- EUREP-GAP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른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안전성 인증프로그램 운영업체를 EUREP 회원사로 등록하여 EUREP-GAP을 실시
 - 다른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을 EUREP-GAP으로 호환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적합할 시 EUREP-GAP으로 전환
 - 다른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을 EUREP-GAP과 동등한지를 판단하고 적합할 시 인증내용을 상호인정
- EUREP-GAP기준은 유럽지역의 특수성과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이 반영된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수성이 반영된 우수농산물관리기준과의 동등성 인정은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EUREP-GAP은 유럽지역의 여러 민간 품질&안전성 인증프로그램 중 한 종류이지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총괄운영과 관리기준을 국가기관 주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호인정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 상호인정후 우리나라 농업인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이행

→ EUREP-GAP기준을 동등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 EUREP-GAP 기준은 유럽지역의 민간인증프로그램 중 하나일 뿐으로 EU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EU와 별개의 협상을 진행하여야 함

□ 한국 GAP와 EUREP-GAP와의 동등성 인정 추진방안

- 한국 GAP의 관리기준을 EUREP-GAP기준으로 점진적 상향 발전시켜 국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 한국 GAP 110개 관리기준과 EUREP-GAP의 214개 기준을 비교하여 아직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기준을 생산농가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도록 추진
- EUREP-GAP 동등성 인정과 국제적 상호인정은 추진절차와 방법이 서로 다른 인증으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으나 2~3년간의 기간 소요
 - 동등성 인정은 우리의 GAP와 EUREP-GAP 기준과 인증방법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시스템으로 소요기간은 6 ~ 12개월이 예상됨
 - 국제적 상호인정은 자국의 GAP와 타 국가의 GAP가 동일한 인증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ISO 65에 의거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에 회원가입과 국제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이 과정에 IAF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후 IAF의 회원 국가 중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회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정부에서 EUREP-GAP과 동등성 협약 체결 및 인정기관(AB)을 지정받아 국내인증기관(CB)을 지정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애로사항 해소 방안으로
 - 국내 인증기관이 타 국가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을 인정받아 수출농산물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 * 외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 추진에 따른 법 개정이나 EUREP-GAP과의 동등성 인정은 불필요

□ EUREP-GAP 기준에 대한 의견

- 우리의 GAP기준과 EUREP-GAP기준은 설정배경 및 목표가 상이하
여 직접적 비교는 곤란
 - 우리의 GAP기준은 지속가능한 농업추진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농산물에 잔류 또는 오염될 수 있는 주요 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영농실천규범을 관리기준으로 설정(국가주도)
 - EUREP-GAP기준은 민간소매유통업체인 EUREP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반응하여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 각국의 다양한 안전성 관련기준을 종합하고, 여기에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불금 지급조건인 식품안전성, 환경보전, 동물복지 관련기준을 반영하여 만든 기준(민간주도)

2. GAP 사후관리 실태 관련

- EUREP-GAP 인증품 사후관리는 우리의 제도와 유사함

3. 수확후처리시설 기준 관련

- EUREP-GAP의 경우 수확후 처리약제에 대한 기준 항목이 15개 항목이며, 농산물 작업자의 사전 위생 교육 증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 국내는 수확후 처리약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작업자의 사전 위생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우리의 GAP는 수확후처리시설에 대한 위생기준이 강화되어 수확후에 발생하는 2차 오염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외국 GAP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봄.

- ☞ EUREP-GAP의 경우 GAP인증시 시설 관련 부분을 함께 인증하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으며 수확후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세척 농산물과 비세척농산물의 구분이 없음.
- ☞ 우리의 GAP는 수확후처리시설 측면에서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유럽의 경우 건물 구조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미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 참고로 태국의 경우 채소 APC에 HACCP을 도입한 사례도 있음.

4.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관리 관련

- 유럽의 유통업체 들은 현재 국내 유통업체와 달리 EUREP-GAP 상품에 대한 상품자체의 표기를 하지 않으며 그것과 관련된 홍보나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 EUREP-GAP 제도가 농산물 납품을 위한 최소 안전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 요소로 이용하지 않음
국내도 향후 영농이 규모화 되고 GAP 제도가 정착되면 GAP 제도는 영농의 필수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ASDA를 비롯한 유통업체는 농산물의 포장재를 줄이기 위하여 벌크 상품을 늘리고, 물류차량의 공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환경경영을 90년대 초반부터 실시 해오고 있음
- ☞ 국내의 유통업체도 포장재를 줄이고 물류과정의 패키지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더 근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음
- 영농규모가 기계화, 기업화 되어 있는 유럽은 EUREP-GAP의 기준이 유통업체의 납품 최소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
- ☞ 한국의 농업현실이 아직 EUREP-GAP의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향후 농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EUREP-GAP의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TESCO , CARREFOUR 등 세계 유수의 유통업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UREP-GAP의 기준 이외의 업체 고유의 특성을 살린 민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 현재 국내의 유통업체가 유럽과 같은 자사 기준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유통업체의 환경적/윤리적 책임, 농가 복지 등의 기준을 강화한 민간 표준 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IV. 수집자료 목록

1. EUREP-GAP 인증기준 (277Page 참조)
2. EUREP-GAP 벤치마킹 시스템 절차(299Page 참조)

2. EU농산물안전성 관리제도 조사 결과

(프랑스·네덜란드, 2006. 6. 13 ~ 6. 21)

목 차

I. 출장개요	71
II. 출장 조사 내용	73
1. EU의 품질관리체계	73
2. EU의 이력추적관리제도	90
3. 프랑스 농식품의 품질인증	96
4. 이력추적 및 품질관리 사례(프랑스)	109
5. EurepGAP 인증	119
III. 출장자 의견	127
IV. Q & A	133

1.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EU의 농산물안전성 관리제도(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EurepGAP 등)을 조사하여 우리의 농식품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시행 기초자료로 활용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보완·발전과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활용

2. 출장기간 : 2006. 6.13 ~ 6.21(9일간)

3. 방문국 및 방문기관

- 방문국 : 프랑스, 네덜란드
- 방문기관
 - 프랑스 : 농업부 식량총국(DGAL), 공정거래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형지스 도매시장, 국립농업연구원(INRA), 국립청과물기술센터(CTIFL), 청과물사업자조합(INTERFEL), 업체류조합(Val Nantais), 품질인증기관(Certipaq)
 - 네덜란드 : 품질인증기관(FoodCert, SGS), Nak Agro농장 및 농가

4. 조사단 구성(8명)

구 분	조사단 명단	인원
농림부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명한식, 농업주사 최은철	2
농관원	품질관리과 농업주사 한상국, 홍천출장소 농업주사보 김태완	2
농협	식품안전팀 과장 미준호, 풍기농협 전무 서동석, 화천농협 과장 최진규	3
유통공사	수출컨설팅팀 차장 이정섭	1
계		8

5. 조사일정 및 내용

일정	방문국	방문기관	조 사 내 용
6.13 (화)	프랑스 (인천→파리)	인천→파리	○ 출국
6.14 (수)	프랑스(파리)	Rungis 도매시장, 프랑스 농업부, CTIFL	○ 도매사업자의 이력추적관리현황 조사 - M. GANNEAU (SEMMARIS Rungis 도매시장 사무총장) - J-C Reverdy (청과도매사업자협회장) ○ 프랑스 농업부: 청과 유통구조 및 이력추적 - Daniel BOISSIER (농업부쌍무협력과장) - Raul GREEN (INRA 연구부장) - Audrey AUBAED (INAO 법률담당) ○ CTIFL/ INTERFEL: 이력추적기술, 사업자교육 - R. LEPRETTE(interfel 사무국장) - D. SOARES (interfel 생산부장) - F. RINALDI (Ctifl 사무국장) - D. VESCHAMBRE (Ctifl 기술부장)
6.15 (목)	프랑스 (파리→낭트)	Val Nantais조합, 농가	○ VAL NANTAIS 조합: 이력추적, 품질인증 관리 - Anne Schneider (품질관리부장) - Philippe GOUIN (조합전문) ○ Certipaq : 품질인증회사
6.16 (금)	프랑스(파리)	농업부 식량총국	○ 프랑스 농업부 식량총국(DGAL): 법규 및 시행감독 - 필립 마띠노(DGCCRF 과장보)
6.17 (토)	프랑스(파리)		○ 조사결과 정리 및 토론
6.18 (일)	프랑스 →네덜란드	파리→암스테르담	○ 프랑스 출국 → 네덜란드 도착
6.19 (월)	네덜란드	Nak Agro농장	○ Nak Agro농장 : EurepGAP 인증, 이력추적 - Rolf Grijpma(네덜란드 FoodCert)
6.20 (화)	네덜란드	인증농가 방문	○ VDN, 네덜란드 SGS : EurepGAP 인증, 이력추적 - Peter van der Veeken(VDN) - Remco Veelenturf(네덜란드 SGS)
6.21 (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천)	네덜란드→인천	○ 네덜란드 출국 → 인천 도착

II. 출장 조사 내용

1. EU의 품질관리체계

(1) 제도와 법

- 유럽연합은 60~70년대에 품질의 표준 규격화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 75~85년 사이에는 생산자 단체 대표와 유통사업자 대표가 모여 사업자간 연합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협의기구의 창설로 품질규격에 대한 더 본격적이고 자세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음
- 1990~2000년 사이에 제정된 EU법 852/04, 178/02는 품질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종합하고, 특히 이력추적을 모든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시키고 있음
 - 사회의 관심이 보기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을 넘어 깨끗한 과일로 변화해 간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현재는 품질규격화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키지 않으면 소비법과 형법에 근거하여 벌금과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됨

□ 품질의 표준 규격화

- 청과물의 모양(흠의 여부) 및 규격에 따라 특등(Extra), 1등급, 2등급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규격이 특히 중요시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직경단위로 구체적인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음. 규격의 오차 허용범위는 5~10mm정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한 상자 안에 포장된 과일이나 채소는 동일한 모양, 규격 등 일관성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토마토 크기 선별판>

- 대형 유통업체는 특등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 전체물량의 20%정도만 취급하고 있음. 대형유통업체가 선호하는 품질은 1등급이며, 2등급은 상품가치가 적어 취급하지 않음.
-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15개국도 법으로 품질규격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제화도 소비자들의 요청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음
 - 규격을 정하기에 까다로운 면이 있는 청과물 품목이 있는데, 법에는 규격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격 기준을 좀더 명확히 규정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사업자간 연합이 구성되어 애매한 품목의 규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게 되었음
 - 예를 들어 복숭아의 경우, 법으로는 “충분한 속도를 가진 과일이어야 할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그래서 청과물사업자연합(INTERFEL)에서는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과 속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였음

□ 식품안전

1) 식품안전법

- 유럽연합은 식품안전법(Food law: EU Regulation 178/2002)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식품, 사료 등 몇 가지 시행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APC, 조합, 출하자, 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 수송업체도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능은 DGCCRF(공정거래, 소비, 부정방지 총국)이 담당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의 4가지 원칙
 - ① 투명성의 원칙: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정부 통제관이 감독을 나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모두 얘기해야 함
 - ② 정당성의 원칙: 안전관리, 위험관리에 관한 서류 등 증거를 통해 식품안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함
 - ③ 모두의 책임성 : 식품안전은 생산에서 최종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예방의 원칙 : 위험이 있는 요소는 미리 점검해야 함
- 이러한 식품안전법에 대응하여 유통사업자들이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여 만들어 낸 것이 품질관리시스템임
 - 이러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정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것임

2) 이력추적제

- 식품안전법(EU Regulation 178/02)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상품을 공급받았고, 누구한테 상품을 판매하였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력추적은 상향식 이력추적과 하향식 이력추적의 2가지 방식이 있음
 - 상향식 이력추적: 소매상에서 밭(생산)까지 상품의 유통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것이 상향식 이력추적임
 - 만약 소매상에서 구입한 토마토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느 유통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하향식 이력추적: 생산지에서 소매상까지 상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하향식 이력추적임
 - 예를 들어 사과선과장의 품질관리사가 소매상의 구매 바이어에게 어제 보낸 어떤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소매상은 그 물건이 누구에게, 언제 판매되었는지를 추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유럽연합 식품안전법은 이력추적제는 수단은 자유롭게 정하되 결과를 반드시 보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관없으나 이력추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됨
 - 이력추적의 수단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대형유통업체는 취급하는 물량이 많으므로 종이에 숫자를 써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바코드와 같이 자동화되고 체계화된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 바코드에는 원산지, 규격, 품종, 품질인증 여부, Lot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음

3) 위생

- 식품안전법에서는 GHP(Good Hygiene Practice)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
 - GHP는 선과장에서 최종 소매에 이르기까지 냉장시설을 이용하고, 선과장은 HACCP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또한 모든 APC, 식품가공공장, 대형유통업체는 HACCP 등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법규를 충분히 공부하고 교육받은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위생안전에 관한 점검장부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 그 동안 위생에 관한 규칙은 주로 가공공장에 적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신선식품에도 위생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 신선식품의 위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약문제이며, 생산자는 발생한 병충해의 명칭과 대응조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도매상/대형유통업체의 위생에 관한 사항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장청결, 쓰레기 처리, 상품 가공/포장의 청결, 물의 청결, 노동자의 청결과 건강상태, 직원들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유통조직들은 위생 관련 법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생과 관련한 사항들을 작업의무일지로 매뉴얼화 하여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매뉴얼들은 식품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구체적이며 강도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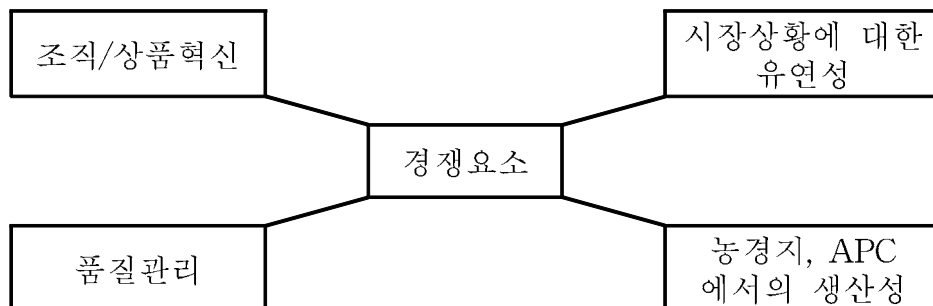
(2) 대형유통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응과 품질관리

- 대형유통업체가 개별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 자신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산지의 APC 등이 복잡하고 엄격한 매뉴얼에 반발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함께 품질관리시스템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것이 EurepGAP으로 여기에는 40여 개의 유럽 지역 대형유통업체가 참가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는 단체로 품질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공급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음
-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출하조직에게서 상품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다시 적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므로 공통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출하조직에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품질관리시스템은 규격, 시스템을 동일화하여 출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대형유통업체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에 관한 소송에 대응하여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것임
- 만약 출하조직이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거나 이력추적을 통해 잘못된 조직을 밝힐 수도 있음
-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브랜드로 판매할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는 BRC, CQL, IFS, EurepGAP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출하조직과 엄격한 품질관리 계약을 맺는 것임

(3) 생산자/출하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응과 품질관리

- 생산자/출하조직들은 대형유통업체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경쟁하게 되며, 그러한 경쟁을 위한 요소들은 아래와 같음



- 출하조직들은 위의 4가지 요소를 철저히 조직화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임
- 결국 생산조직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품질관리 메뉴얼 중 어느 것을 도입할지 생각하게 됨
 - 생산자는 어느 것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상품을 가장 잘 팔 수 있는지, 즉 어느 것이 가장 상업적으로 유리한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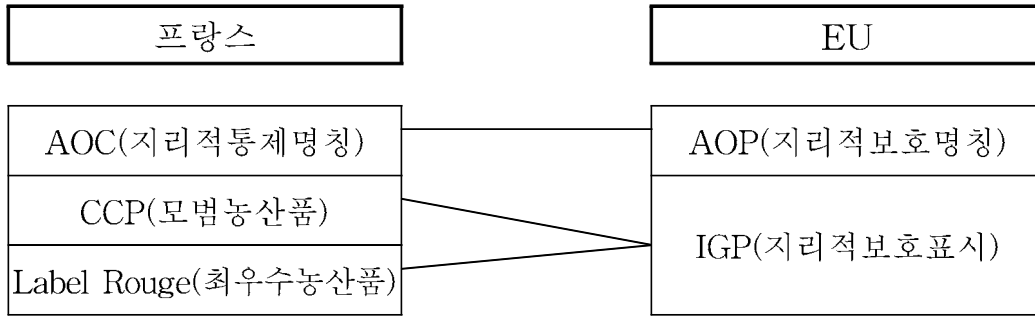
(4) 품질관리시스템의 종류

< 품질관리시스템의 종류 >

구 분 적용대상	법적 강제	생산자/출하자의 자발적 의지	대형유통업체가 요구
상 품	품질규격화 (사업자간 협약)	AOC, CCP, Label Rouge	
위생/이력추적	식품위생법 852/04 HACCP 178/02	GBPH, ISO 22000	BRC, IFS, EAN128
생산과정 (품질관리과정)		ISO 9000 Agri Confiance	BRC, IFS
환 경		Agri Confiance Green ISO 14000 Qualification Agriculture Raisonnee	EurepGAP Nature's Choice

□ 생산자/출하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는 품질관리시스템

1) 농업부가 관장하는 국가 품질표시



가) 지리적통제명칭(AOC)

- 자연적 요소, 품종, 전통적 생산방식의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 생산하는 상품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맛을 가질 경우 인증 받을 수 있으며,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대개 포도주, 치즈, 쇠고기, 올리브 등의 농산물에 사용하고 있음
 - 자연적 요소 : 햇빛, 토양, 날씨 등 총체적인 자연조건
 - 품종 : 그 땅에 적합한 품종
 - 전통적 생산방식(사람의 능력)

나) 모범농산품(CCP)

- 지리적 표시제는 재배 품종이 정해져 있어 그 품종만을 재배해야 하지만 CCP는 품종의 종류를 생산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농민이 나름대로 생산규범을 만들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2) 위생/이력추적

가) GBPH(Good Hygiene Practice Guide)

- 프랑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부가 함께 만든 위생에 관한 모범 가이드북으로 생산자와 출하자만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북임
- 농업부, 보건복지부, 상공부가 공동으로 인증해준 모범 위생가이드북으로 실행 여부는 자율임
 - 하지만 프랑스 유통업체의 80%가 HACCP 혹은 GBPH 를 사용하고 있음

나) ISO 22000

- 2005년 9월에 출시된 새로운 국제 표준 인증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집으로 내용은 HACCP와 ISO 9001을 통합한 것임

3) 생산과정에 대한 인증

가) ISO 9000

- 품질서비스 체계에 관한 규정으로 작업장의 활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 하지만 대다수의 출하조직들은 ISO인증을 받기보다는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BRC나 EurepGAP을 선호하고 있음. BRC나 EurepGAP에는 ISO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로 전처리공장이 ISO인증을 받고 있으나 도매상 중에도 ISO인증을 받은 사람이 있음
 - 또한 도매시장 전체가 ISO 9000인증을 받을 수도 있음

나) Agri-Confiance(프랑스 협동조합연맹의 품질관리기준)

- 주체 : 프랑스 협동조합 총연맹
- 성격
 - 대형유통업체에 대항하여 조합원과 조합간의 규칙을 정해 놓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관계임
- 목적 : 생산농가의 능력향상 독려
- 도입이유
 - 다양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Agri Confiance를 갖추고 있으면 조합이 필요에 따라 EurepGAP 등으로 변경하려 할 때 쉽게 전환·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1992년 시행, 2000년 표준규격으로 인정(AFNOR) NF V01-005
- 생산품인증보다는 생산→선과장→출하와 같은 과정관리에 대한 인증임
- ISO 9001과 유사하며, 품질관리 및 친환경관리(ISO 14001) 체계를 따름
- Agri Confiance의 특징
 - 생산자→조합 : 규정된 경작지침준수, 경작/출하예고, 관련정보, 관련 규정
 - 조합→생산자 : 경작기술지도, 농자재, 경제경영기술 및 정보 제공
 - ※ 조합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조합이 구매자(도매, 유통업체)에게 신뢰를 주는 농업관리시스템으로서, 이것을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Quali Prince(칼리프린스) 브랜드 작성
 - 생산자측 품질기준임
 - 친환경요소(ISO 14001) 도입 : 공기중 먼지, 포장상자, 기계청소기준 등
 - 추적성은 기본이며, 감독회사가 불시점검
 - EurepGAP으로도 쉽게 변경가능하며, 산업안전을 추가
 - 공공규범이며, 상품인증이 아닌 시스템인증으로서 향후 향상계획 포함 필수
 - Agri Confiance 자체를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인증

- 2004년 현재 10개 품목분야에 44개 조합인증(청과 6개), 14천농가(청과 179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150개 조합(3만5천 농가)이 준비중임
- 협동조합연맹 품질기준으로 부족해서 프랑스규격협회(ANOR)에 등록하여 조합인증 이상의 공인품질기준임. 즉, 생산자측 Agri Confiance 만으로는 대외적 신뢰성면에서 부족해(내부 품질관리시스템을 인증받아도 내부관리기준을 구매자가 어떻게 믿는가라는 문제) 깔리프린스 작동 중지
- 앞으로 EU에 품질관리시스템으로 등록예정임
- EurepGAP은 AFNOR등에 미가입 상태이므로 민간품질관리 성격임, 공식인증 받으면 변경시 각종 통제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 고려
- 외부독립기관인 스위스 제3자 인증회사 SGS를 선택하였음

4) 환경

가) Agri-Confiance Green

- Agri-Confiance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만든 것임

나) ISO 14000

- ISO 9001과 거의 유사하나 친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다) 합리적 농업을 위한 국가인증

- 국가가 마련한 품질인증 시스템이나 EurepGAP에 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음
- 대형 유통업체들이 합리적 농업을 위한 국가 인증 보다는 EurepGAP이나 자신들의 품질 관리 매뉴얼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인증기능은 반드시 독립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

으며 유통업체가 요구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검증해 주는 제3의 독립적 검증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인증 시스템

-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인증은 그 내용 안에 상호간의 의무이행 기술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음

1) CQL(Carrefour Quality Line)

- 현재 치즈, 쇠고기, 포도주, 생선, 청과물, 유기물까지 포함하여 250개 품목에 대해 실시 중이며 3만 5천 농가가 참여 중임
 - 프랑스 내의 까르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까르푸에 모두 적용하고 있음
- CQL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의 내용
 - 친환경적인 농사를 존중할 것
 - 수확 후 화학적인 물품을 쓰지 말고 보관할 것
 - 상품의 품질, 특히 당도와 숙도에 관한 사항
- ※ 모노프리도 까르푸와 같이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까르푸의 CQL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함
 - CQL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농사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비료의 사용, 화학 농약의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밭 옆의 쓰레기통의 위치까지 규정하고 있음
 - 모노프리의 의무이행 기술 매뉴얼은 농장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음
 - 시설물의 배치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옷을 담아 놓는 탈의실과 장비실은 밭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있음 (EurepGAP, Nature's Choice)

- 현재 청과물에 대한 의무이행 기술 매뉴얼의 분량만 100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윤리, 즉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경우 월급은 적절한가, 사회보장은 해주는가 까지 규정하고 있음

2) 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 '마크 앤 스펜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여 1998년부터 BRC라는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집을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 생산조직이 BRC에 가입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리스트(reference)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BRC인증을 받아야만 함
- BRC의 특징
 - 영국이 광우병사태를 겪은 이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엄격하고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음
 - HACCP, ISO 9000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BRC 인증을 받으면 ISO 9000 인증도 받게 됨
 - 선과장,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작업장의 설계와 위치에 관련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으며, 과일을 시식할 때 문구류 칼을 사용하면 안되고, 반드시 과도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는 항상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음
 - 품질관리사는 과도의 정위치 여부와 청결여부를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하여 기록해야 함
 - 작업인원의 개인위생과 안전 등도 규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과일을 다루는 여성들은 결혼반지를 제외한 다른 반지는 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음
- 선과장에서는 이러한 BRC의 규정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으나,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BRC의 의무이행기술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IFS(International Food Standard)

- 독일의 유통업체들이 BRC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여 IFS를 만들
 - BRC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BRC보다 기술이행규범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BRC와 80%이상 유사
 - BRC의 검증이 '예'와 '아니오'의 시행여부의 판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IFS는 a, b, c, d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IFS는 2002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까르푸도 IFS에 참여하고 있음
- BRC와 IFS는 식품위생에 관한 품질관리인 동시에, 생산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함

4) Eurep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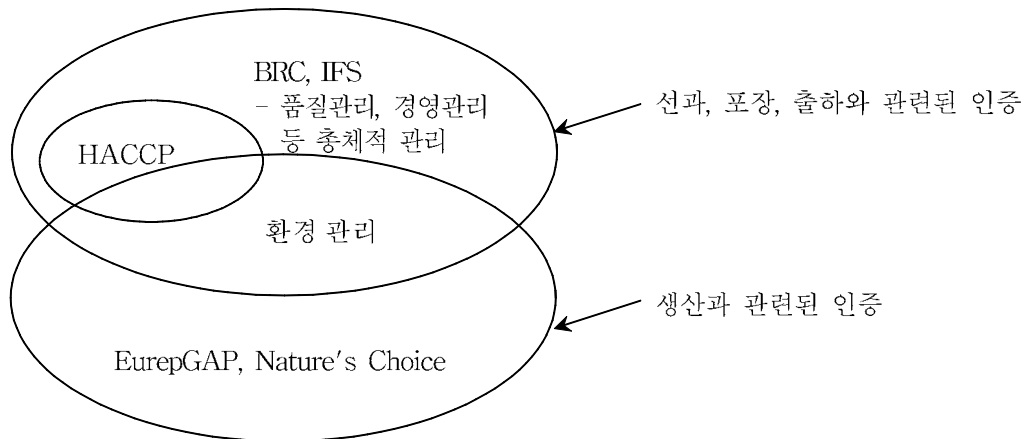
- EurepGAP과 Nature's Choice는 상품, 식품위생, 생산과정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음
 - EurepGAP의 주인은 FoodPlus로 1997년부터 시행하여 검증회사들이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음
 - EurepGAP의 기초가 되는 것은 GAP이며, 기본적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EurepGAP의 내용은 종자, 농약, 비료, 작업장환경 및 개인위생, 청결 등이며 관련서류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음
 - 마크 앤 스펜서, 맥도널드, 모노프리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영국,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 프랑스의 유통업체는 모노프리만 참여하고 있음
- EurepGAP의 내용
 - 시행된 경작내용을 기록과 이력추적 (5년간 보관)
 - 품종과 품목 구별

- 지표 토양과 지하 토양 관리
- 비료사용 관리
- 관개관리
- 작물보호 관리
- 수확시 및 선과장 위생관리
- 수확후 관리
- 폐기물, 오염상태, 재활용 관리

5) Nature's Choice(Tesco)

- GAP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미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 경작지 주변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repGAP과 거의 유사하지만, Nature's Choice는 EurepGAP보다 몇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음
- Tesco는 Nature's Choice와 EurepGAP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 단계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음

(5) 품질관리 규범간의 비교



- BRC, IFS는 선과, 포장, 출하와 관련된 인증으로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환경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HACCP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Nature's Choice와 EurepGAP은 GAP에 기반한 생산과 관련된 내용임
 - 환경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HACCP의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3. 품질관리체계와 상업적 부가가치와의 관계

(1) 국가의 규정

- 국가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반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임
 - 프랑스는 공정경쟁, 소비, 부정방지총국(DGCCRF)에서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규정 위반시 소비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과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됨

(2)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

-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팔기 위한 기본 조건임
-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는 납품할 실력을 지닌 출하업체의 리스트를 먼저 만든 후 이들과 협상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함
 -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과 계약을 하여 상품을 파는 것은 다른 문제임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받아야 함
 - 그와 같은 품질관리체계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할 수 밖에 없는 것임
- 결국, 현재 출하조직간 경쟁의 첫번째 요소는 어떤 인증을 받았느냐 하는 것임
 - 일단 인증을 받은 후에야 다른 조직과 경쟁할 수 있는 것임

(3) 생산자/출하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품질관리

- 경쟁자들의 상품과 비교하여 자기상품의 치장, 가치올리기라고 할 수 있으며, 출하조직의 상표이미지 상승 및 상품가격 상승효과가 있음이 실제로 관찰되었음
 - 프랑스 지리적표시 인증 : 포도주는 최대 230%, 치즈 30% 가격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생산 농가가 직접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은 어렵고, 시장이 평가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임
- 대형유통업체들은 AOC, 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출하조직이라도 다른 출하조직과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함
 -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량 증대를 통해 전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출하조직이 임의로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다고 함

2. EU의 이력추적관리제도

(1) 식품안전과 이력추적의 필요성

- 광우병 발생 등 소비자 신뢰의 위기
- 대형유통업체들의 요구
- 새로운 관련 법규들의 강화
- 기업과 조직들의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

(2) EU 이력추적 법규

- EU 식품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 제18조
 - 식품, 사료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과 식품이나 사료와 관련이 되는 어떠한 물질에 대한 추적가능성은 반드시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식품·사료 영업자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식품 등을 공급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된 영업자를 확인하는 체계와 절차가 있어야 함
 - 시장에 위치하는 식품이나 사료는 더 상세한 규정의 관련된 조건에 따라서 관련된 서류 혹은 정보를 통하여 적절히 표시되고 확인되어 추적가능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적용대상
 - 모든 농식품과 사료의 모든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실시
 - 수입 및 원료부터 저장, 수송, 판매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 실시
- 종합법규
 - 사업자들의 책임과 감독당국을 명시
 - 이력추적의 의무적 실시 명시(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품목, 모든 단계)
 - 위험이 노출된 상품의 시장철시와 관련 감독당국에 통보 의무화

(3) 이력추적의 시행

- EU 식품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 제18조
 - 이력추적은 모든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함
 - 사업자는 상품의 공급자(전방)의 식별, 상품의 구매자의 식별(후방), 상품철시 또는 위험사항공지 등이 실시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갖추
- 시행방법
 - 모든 농식품은 각 포장단위에 대한 LOT 번호에 의해 식별되어야 함
 - 위험사항공지 과정은 문제 상품에 대한 명확한 철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EU Regulation 178/2002는 시행방법과 수단은 의무화하지 않음
 - 이력추적가이드 : 각 단계에서 추적되어야 할 공통적인 정보들과 기초적인 시행기술 수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자들은 대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이력추적 가이드의 수준보다 발전된 기술을 시행하고 있음.
- 이력추적의 두 방향
 - 하향방향 : 생산 → 선별 → 저장 → 운송 → 소매에 이르는 진행방향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공시 절차진행
 - 상향방향 : 소매 → 운송 → 저장 → 선별 → 생산에 이르는 역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품과 처리절차에 대한 원인 분석
- 출하사업자의 이력추적의 전개
 - 전방의 이력추적 : 생산자 → 1차 원료상품 → 운송자
 - 내부의 이력추적 : 집하(집하검사) → 저장(통제) → 선별(통제) → 출하(통제)
 - 후방의 이력추적 : 운송자 → 저장 → 유통자
- 이력추적과 출하시업자의 내부관리
 - 최적 내부관리체계 조직 (시행된 활동들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축적, 재고관리)

- 경영 및 품질관리 목표들과 시행결과의 비교 분석
- 발생한 문제 점들에 대한 원인파악과 지식축적
- 품질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사전체계의 완비
- 공급자 (생산자) 및 구매자(유통업체)와의 상업적 기술적 협상의 요소
- 마케팅의 수단

(4) 이력추적체계의 시행과 적용준비

- 전방 이력추적의 준비
 - 적정품질의 상품확보
 - 생산자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의 신속한 입수
 - 문제 발생시 위험요소가 확대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마련
- 내부 이력추적의 준비
 - 기본적인 정보의 신속한 발견
 - 식품안전에 대한 관련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 완비
 - 다양한 생산수단들의 운영계획을 토대로 최적 가동
- 후방 이력추적의 준비
 - 상품이 출하된 지역과 장소에 대한 식별 체계
 - 출하된 전체를 상품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 재고관리의 효율성 증진
- 이력추적을 위한 작업체계의 적용 절차
 - 필요한 사항들의 파악과 결정
 - 현재의 체계에 대한 평가
 - 문제점 해결방법 제안
 - 이력추적체계의 실시
 - 시행체계의 가동과 점검

(5) 단계별 이력추적의 실시

- 생산, 출하, 운송, 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핵심요소
 - 추적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 Lot의 식별
 - 식별 방법
- ex) 생산자, 경작지, 수확일, 상품특성(품종), 품질규격(크기), 포장상태
- 생산단계의 이력추적의 정보
 - 품질관련 의무이행서(품질인증에 필요한 Cahier des Charges)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음
 - 경작지, 식물성 자재, 토양, 합리적 경작 관찰, 농약, 비료, 수확 등
- 선별단계의 이력추적
 - 팔레트, 저장, 출하준비, 출하
 - Lot의 구별 번호와 포장상자 구별의 번호의 구성
- 출하단계의 이력추적
 - 하향방향 이력추적이 조직되는 단계
 - 출하되는 상품의 포장상자 별 식별번호 표시 및 기록
 - 출하되는 팔레트 식별번호와 포장상자 별 식별번호 연계 기록
 - 집하 되는 벌크상자(생산) 식별과 출하되는 포장상자별 식별번호 연계 기록
- 도매단계의 이력추적
 - 어떻게 입하상품의 Lot 구성방법을 정의하나?
 - 어떻게 입하상품과 출하상품의 Lot간에 연계방법 정의하나?
 - 어떻게 저장고에서 출하되는 상품의 식별방법을 구축하나?
 - 어떤 정보들을 추적해야 하나?
 - 추적정보들의 비밀을 어떻게 보장하나?
 - 도매사업자는 출하자가 수록한 Lot 번호를 확보해야 하나?

(6) 선별장의 이력추적에 필요한 수단

- 세가지 형태
 - 청과물 크기 구별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다양한 목적)
 - Lot의 구성과 교체를 위한 수단
 - 식별 수단
- Frulog : C2G : 선별장의 독립적, 상호적 이력추적 모듈들로 구성
 - 입하관리
 - 생산자 식별 및 샘플에 의한 품질통제
 - 예비선별
 - 선별작업
 - 팔레트 작업
 - 벌크 또는 포장 형태의 저장
- 통합모듈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 경작지
 - 입하 및 검사
 - 선별
 - 저장
 - 투입자재
 - 이력추적(하향, 상향)
 - 팔레트 및 출하
 - 통신판매 및 영수증 처리

(7) 포장상자의 표시 방법

- 가장 단순한 형태: 식별번호
- 가장 발전된 형태: Lot 번호의 코드화 (ENA 128)

(8) 이력추적의 경제적 측면

- 고려해야 하는 요소
 - 비용의 규모?
 - 누구를 위한 투자?
 -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 수익성 있는 투자?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품질과 관리체계의 개선 여부?
- 추적된 상품을 위한 비용구조
 - 생산에서 소비단계로 갈수록 이력추적의 비용은 증가
 - 그러나 유통시스템 관리비는 절감됨
 - 이력추적의 비용 = 직접비(장비 등 고정투자비) + 운영비
 - 이력추적의 직접비용= f(이력추적의 수준)
 - 이력추적의 수준 = h(작업수준, lot의 크기, 상품의 특성, 적용기술, 추적요소, 기타)
- 비용의 구조 : 구성과 요소




이력추적	품질관리	작업
시스템	HACCP	생산
조직	ISO	선별
감독	위기관리	물류
라벨표시	보험	공급체계
관련 서류	인증	

- 이력추적의 수익성
 - 수입 = 위험발생시 대처비용 절감 + 상표보호에 대한 기여
 + 기업조직관리에 대한 기여 + 감독과 인증 비용 절감
 - 비용 = 시스템 운영관리비 + 위기발생비(확률)
 - 투자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설치 + 교육훈련 + 인증비용

3. 프랑스 농식품의 품질인증

- 1990년대 이후 EU에서 농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공공개입정책이 발전하게 된 것은 농산물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 농식품의 생산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농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은 물론 원재료의 원산지 및 품질에 대해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
-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의 농식품업계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장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격경쟁력 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에 접근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
- 프랑스의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유럽연합의 품질인증표시 제도의 모태가 되었음
- 1992년 이후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품질인증제도를 서로 조화시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CEE 2081/92 et 2082/92)
- 유럽연합의 원산지보호(Appellation d'origine proteg/AOP : 일종의 AOC), 지리적 표시(Indications gographiques proteges/IGP), 전통상품 보증(Specialits traditionnelles garanties/STG) 제도 등은 프랑스의 유사한 품질인증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음

< EU의 품질인증표시 >

로 고	품질인증 표시	내 용
	전통상품보증표시: Specialit Traditionnelle Garantie/STG	원산지 인증보다는 상품에 전통적 구성요소 또는 전통적 생산방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임.
	원산지호칭보호: Appellation d'Origine Protge/AOP	어떤 한 제품의 생산과 가공, 제조과정이 그 지역의 생산노하우와 함께 지리적으로 구획된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진 품질을 인증하는 표시임
	지리적표시 : Indication Gographique Protge/IGP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과의 연관성이 AOP보다 덜 엄격한 인증표시임. IGP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해진 품질이나 명성, 또는 어떤 특성이 해당지역의 지리적 고유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특정지역 내에서 이루어 것을 인증하는 표시임.

(1) 프랑스 품질인증제도에서의 원산지의 개념

- 프랑스 농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핵심은 원산지에 대한 개념과 '원산지의 특징들'에 관한 개념에 관한 것임
- 특히 원산지의 특징들이 농식품의 품질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프랑스 관련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중있게 다뤄져 온 주제로서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 '품질'에 관한 프랑스적 관점과 독특한 인식이 형성

□ 원산지의 특징

- 프랑스의 품질정책에서 이뤄진 혁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원산지의(originaux)', '전형적인(typique)', '진정한(authentiques)', '고품질의(de qualit superieure)' 또는 '자연상태의(naturel)'와 같은 용

어들로 표현되는 상품의 특성들을 원산지의 준거내용들과 관련해 이를 법률적 또는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을 창안했다는 점임

- 프랑스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특성과 그것이 생산되는 장소, 즉 원산지의 특징들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있음
- 여기서 원산지란 프랑스어로서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르 테르와 (땅/le terroir)'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원산지의 특징들이란 단순히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의 자연적 특성은 물론 특수한 생산양식(mode de production)이나 관습, 전통적 생산관행, 실증적 지식(savoir empirique)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
- 따라서 최종생산물의 품질은 생산물 자체의 고유한 특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산물을 있게 한 여러 조건들과 수단들이 관계하는 명세서(specifications)로서, 원산지 명칭은 이들 수단과 조건들을 하나의 정보요약(rsum d'information)을 통해 종합하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원산지 명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특징들의 유형(types de caractrisques d'origine)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품질을 상징하는 표시(signal de qualit)임
- 원산지표시가 이렇게 품질표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지식의 농축물(concentr de savoir)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한해서만 원산지 명칭은 품질표시로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원산지 명칭의 적절성과 체계화

- 역사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체계화한 첫번째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1919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호칭보호(AOC)제도임

- AOC 제도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개정 및 수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새롭게 정비된 AOC 제도는 1960년의 붉은 상표(Label Rouge), 1980년의 유기농업인증표시(AB/Agriculture Biologique), 1990년의 상품적합인증(CCP / Certification de Conformit des Produits) 등의 준거모델이 되었음
- 프랑스 품질인증제도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농식품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농식품에 대한 시장조건 및 소비자들의 기대가 변화하면서 원산지명칭의 종류를 다양화시킴
- AOC 제도에 있어서 원산지의 특징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포도주임
- 특히 상파뉴 지방의 포도주에 대한 AOC는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사례로서, 여기서 AOC가 인증하고자 하는 품질은 해당지역의 토양과 원산지의 땅(le terroir) 밖에서는 그러한 품질의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처럼 AOC 품질인증의 경우 원산지의 특징들은 무엇보다도 원산지의 '땅'의 특수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
- 관련법에 따르면 AOC는 해당 농식품이 생산되는 원산지의 자연적, 인문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품질을 인증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원산지란 생산물이 생산되는 한 지방 또는 지역 및 구역(locality)을 가리킴
- AOC가 원산지의 특징들에 기초해 인증하고 있는 품질은 전형성(typicity)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여기서 전형성이란 '단일한' 또는 '독특한' 혹은 '원조'라는 개념을 의미
-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 생산물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져온 오래된 경험과 수세대 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결과물로서, 그러한 생산물이 구상되고 실현되기까지는 해당 지역사회가 일궈온 전문적인 지

식과 함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오래된 관행이 토대로 되고 있음

- 프랑스의 품질인증제도를 대표하는 AOC의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개념은 공리화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AOC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생산지역과 품목을 제한하는 경향을 가져왔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초까지 AOC가 적용된 품목 수는 4개에 불과했으며, 이들 4개 품목에 대한 품질개념은 모두 동일한 차원에서 정의되었음
- AOC 품질인증을 토대로 이후 다양하게 나타난 프랑스의 품질인증제도는 이와 같은 AOC 품질인증에 따른 제약을 벗어나 특정계층의 소비자들에게 문화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품질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
- AOC를 비롯한 Label Rouge, AB, CCP 등은 각각의 품질인증이 제기하는 원산지 특징의 특수한 유형들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이들 품질인증 표시들은 강조하고자 하는 품질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목적은 생산물에 내재된 비상품적 특성(사회가 일정한 정도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유사한 일반상품에 비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음
- 즉, 품질인증을 통해 해당 농식품의 비상품적 특성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품질인증제도는 또한 생산자들에게 반대급부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것임
- 품질인증 표시의 신뢰성의 문제는 원산지 특징들의 상품화 메커니즘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2) 프랑스 품질인증제도와 조직

□ 품질인증기구

- 프랑스의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는 두 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 감독되고 있음
 - 국립원산지표시원(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 INAO)으로서 AOC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있으며,
 - 국립농식품상표및인증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 CNCL)로서 Label Rouge, Agriculture Biologique, Atout Qualit Controle 등의 공식인증 표시를 감독하고 있음

□ 품질인증표시들

1) AOC

- AOC는 농식품의 품질을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땅'(le terroir : 특정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환경)의 특성들과 생산자의 지식(le savoir) 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파악
- 즉, 특정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이를 활용하는 생산자들의 지적 노력의 결합물로서 농산물의 품질을 이해하고 있음
- AOC 품질인증이 적용되는 품목은 포도주, 생수, 유제품, 올리브유, 과일 및 야채, 꿀 등이나 주로 포도주와 생수에 관한 것이 대부분
- AOC 관련 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20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포도주가 156억 유로로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AOC 포도주는 프랑스 전체 포도주 매출액의 85%를 점하고 있음
- 포도주 다음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은 치즈 등 유제품과 생수로서 각각 20억 유로와 15억 유로 규모이며, 최근에 AOC 제도가 적용된 과

일 및 야채, 꿀 등 기타 품목 등의 경우는 모두 1.5억 유로 규모

- AOC 품질인증과 관련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 수는 1999년 현재 11만 3천 농가로 여섯 농가 가운데 하나가 AOC 품질인증과 관련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인증표시별 품질의 개념>

인증표시	품질의 개념
<p style="text-align: center;">AOC</p>	<p>AOC '땅(terroir)'의 특징들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으나 전통과 일치하는 방식에 따라 얻어진다는 의미에서 '땅의 산물'만이 가질 수 있는 맛의 진정성(got authentique) 또는 전형성의 특징(typicit)을 품질로 내세움</p>
	<p>Label Rouge '기술적 요구사항(referential technique)'에 의해 체계화될 수 있는 생산기준을 토대로 '고품질 산물'을 인증하기 위한 것이며, '농민적 특성(caractristique fermire)'을 강조하고 있음.</p>
	<p>AOC(CCP) 제품명세서와 일치된 품질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정의된 기술적 규정 또는 기준과 일치된 품질을 보증하고 있음.</p>
	<p>Agriculture Biologique 환경을 중시하는 생산방식에 따라 얻어진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생산물의 '자연적 특성(caractre naturelle)'을 강조하고 있음.</p>

2) Label Rouge

- Label Rouge는 1960년 농업기본법에 의해 창안된 품질인증 표시로서 주로 축산관련 제품에 적용

- AOC가 포도주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에 대해 품질의 개념을 생산물의 자연지리적 및 인문학적 특성의 결합물로 파악하는데 반해, Label Rouge 표시는 어떤 농산물이나 식품이 사전에 정해진 우수품질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인증하는 표시임
- 따라서 Label Rouge 인증상품은 생산과 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맛과 품질과 관련하여 엄격한 통제 및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품질을 지니고 있음을 인증하고 있음
- Label Rouge의 품질인증분야는 주로 축산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금류, 토끼고기, 햄소시지,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유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음
- 이밖에도 수산물, 과일 및 야채, 기타 가공품 등에도 적용됨
- Label Rouge의 전국적인 라벨은 농림부가 인증하는 상표로서 집단적 상표로서 명명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6개의 지역라벨이 존재
-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들 지역라벨은 몇몇 전통상품 또는 지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품들에게 적용되고 있음

3) AQC

- AQC 품질인증은 199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품질인증 표시로서 특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식품의 품질을 인증
- 일반 공산품의 품질인증과 마찬가지로 농식품의 품질을 엄격히 통제된 제조공정에서 구하기 위한 인증표시임
- 따라서 AQC 인증은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하고 있음
- AQC 품질인증 농식품 시장규모는 최근 들어 급팽창 추세이며, 2000년도에만 총 매출액 규모가 128억 프랑에 달했음

- AQC 인증 관련업체는 협동조합, 법인경영체, 중소기업, 유통업체 등으로 200 여 업체에 이르고 있음
- AQC 품질인증이 적용되는 농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승인 건수는 264 개에 이르고 있으며, AQC 인증 정부공인기관은 19개소에 달함

4) Agriculture Biologique

- AB 표시는 198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품질인증 표시로서 복합화학제품의 사용을 피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품 및 가공품을 인증하고 있음
- AB 표시 유기농산품 생산농가들은 자연보호에 대한 노력과 함께 생산활동에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축후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증하고 있음
- 프랑스에는 약 1만여 농가가 유기농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기농 관련 가공업체가 5천5백 개에 이르고 있음

(3) 품질정책의 전망

- 원산지 명칭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와 품질인증표시를 생산자단체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과연 '원산지의 특징들'을 포함하는 상품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인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만족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질적으로 보호주의의 또 다른 수단인가?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진보수단인가 그렇지 않으면 혁신에 대한 억압 또는 자유무역의 굴레인가?
-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폐지문제와 관련한 국제협상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으며, EU의 관련위원회가 1992년 원산지명칭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완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독

- 특한 품질인증제도는 유럽단일시장 구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품질인증표시의 부착(etiquetage) 문제를 둘러싸고 EU 국가간에 논쟁이 가열되었음
 - 일부 국가들과 프랑스, 그리고 다소 덜한 경우이지만 스페인과 이태리 등은 원산지가 갖는 '특별한 특징'들을 포함한 생산물을 인정하기 위해 장소이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EU 규정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음
 - 이들 국가들은 소비자에게 충실한 상품정보란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상표 이상의 것이며, 특수한 품질 혹은 상표의 품질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명칭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밖에도 특별한 질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게 시장경쟁에서 제기되는 경쟁은 이러한 특별한 상품 특성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영국과 네덜란드는 원산지 인증규정 자체가 불법적이며, 비효율적이고(보호주의 수단), 부정적(혁신에 대한 장애)이라고 주장
 - 이들 국가들은 적절한 상표부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생산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상품의 품질수준은 자유경쟁 논리를 통해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
 - 이러한 논쟁은 유럽 내 국가들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음일
 - 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상품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생산방식과 산업적 규정을 통해 조직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적 의미(식품안전성)에서의 품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남부유럽 국가들은 식품의 미각적 차원에서 품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지역개발 차원의 목표가 품질정책에 반영돼 있음

- 농식품의 품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논쟁은 향후 국제무역협상에서 되풀이될 전망
- 원산지 명칭에 대한 EU규정은 Codex 범주의 다국간 협상과 WTO 협상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위협받을 수 있음
- 한편, EU 차원에서는 원산지 명칭사용을 특정 생산자 단체에게 배타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경쟁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두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첫째는 원산지 명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원산지의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전형성이 땅(terroir)의 특수한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처럼)
- 이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의 특징들에 대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소비자들이 느끼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
- 이 점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미각적 전통과 농업관행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통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해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화되지 못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는 생산자단체의 조직형태가 제기하는 합법성의 문제
-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92년 EU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취약성을 안고 있음

- EU 관련 규정은 원산지 명칭을 생산자 단체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칭의 이용을 위한 생산자 간의 조직이나 계약방식에 있어 많은 문제를 남겨놓고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카르텔이나 담합 등 반경쟁적 양태(anticoncurrentiel : entente, cartel, coalition)라고 판단되는 상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규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 때문에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사실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여있음
- 이러한 문제는 EU 여러 나라에서 최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
- 공적인 품질표시권을 사용하는 일부기업이나 생산자단체는 각종 송사에 휘말리고 있으며, 경쟁법위반 판결을 처분받기도 했음

(4) 각 인증 별 관장 국가기구

□ AOC

- INAO :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 지리적 통제명칭 국가기구로 1935년 창설
 - 사업자(생산자-유통자)단체 대표 및 국가(농업, 경제) 대표로 구성
 - 생산자 중심의 광역지역 조직
 - 포도주 등 품목별 위원회

□ Label Rouge, Certification de Conformite, BIO 등

- CNCL: Commission Nationale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 농식품 라벨과 인증 국가위원회

- 농촌법 646-1에 근거 인증에 대하여 농업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며, 인증제도의 원활한 기능과 인증상품의 가치 증진을 추진함
- 농업부와 소비보호 부처와 연계되며, 3개 부서로 구성
 - 기술검증: 의무이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인증기관의 허가 및 감독: 인증기관들의 능력검증, 허가, 감독
 - 유기농: 유기농에 관련된 법령 및 기술 검토, 관련단체 조정
- CNCL의 운영
 - 생산자, 공급사업자, 가공사업자, 유통사업자, 수공업자, 소비자, 행정 대표들로 구성하여 관련 주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조율
 - 상임위원회 : 품질인증제도의 발전, 인증상품의 가치증진, 인증정책의 방향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의사결정기구
 - 사무국은 농업부 경제정책 및 국제농업국, 품질인증 및 유기농과에 설치
 - DPEI/Bureau des signes de qualite et de l'agriculture biologique
 - 인증기관 허가 및 감독은 농업부 식량국 품질 및 통제조정국
 - DGA/Bureau de la qualite et de la coordination des controles
 - 인증기관 연합회
 - comite Francais d'Accreditation
 - Centre de developpement des Certifications des Qualites agricoles et Alimentaires(CERQUA)

4. 이력추적 및 품질관리 사례(프랑스)

(1) 생산단계(수확후 관리)

□ Val Nantais 조합(마쉬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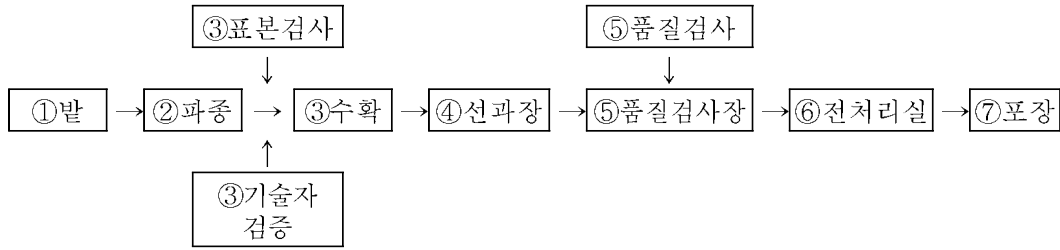
1) 조합소개



- 40년전 4개 협동조합이 통합하여 설립
 - 위치 : 프랑스 낭트
 - 농가수 : 60농가
 - 농가규모 : 2ha~40ha
 - 농가는 주로 조합 선과장 근처에 위치하며, 제일 먼 곳은 80km
 - 재배작물 : 마쉬, 토마토, 파, 오이, 샐러드, 레디쉬, 셀러리 등
 - 직원 : 7명(5명은 국내시장 담당)
- 판매량의 60%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
 - 수출 : 독일(50%),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체코, 폴란드 등
- 선과장 내부에 품질관리사를 두고 있으며, 경작기술지도사 5명이 농민들 기술지도
 - 생산지도위원회를 구성, 매년 영농지침을 정해 운영하며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따라춤
 - Val Nantais 조합원은 100% 소속조합에 출하(프랑스 조합법에는 80% 이상으로 규정)
- '97년 Agri Confiance를 시행하면서 이력추적, 경작합리화 추구(농약사용 등을 체계화)
 - 그러나, 북유럽에서 EurepGAP을 요구해와 수출하는 11농가에서 '04년부터 EurepGAP 시작(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 최근에는 유통업체에서 BRC, IFS를 요구하고 있음

2) 마쉬(Mache) 품질관리 및 이력추적

가) 작업 프로세스



① 밭

- 파종 전에 밭에 번호를 부여
- 농가는 토양장부를 작성하고 조합 전산망에 모두 기록

② 파종 이후



- 종자 정보 및 영농정보 기록
 - 품종, 로트번호, 파종밀도, 모래 깔 시기, 비닐 씌운 날짜, 농약·비료 사용내역 등

③ 수확 전 표본검사 및 기술자검증



- 기술자검증 전 농가 자발적 표본검사
 - 등급 선별방법에 따라 파종량 대비 적정량 검사
 - 기술자검증 전 농가 스스로 부적합 통보
 - ※ 부적합인데 적합으로 출하하면 벌금

④ 선과장



- 선과장에 입고할 때는 파레트에 농가번호와 Lot 번호를 부착
 - 1389 : EurepGAP 농가번호
 - 표지 하단부에 해당농가에서 부여한 Lot번호 기입

⑤ 품질검사장에서의 품질검사



- 마쉬 등급 기준표에 따라 벌크당 100개씩 표본검사
 - 문제의 종류에 따라 0.1~2.0점씩 벌점 부과
 - 총 점수가 25점을 넘으면 그 벌크는 부적합 (수확 전에는 20점을 넘으면 그 벌은 부적합)



- 품질검사결과는 Counting 기계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입력
 - 농가 1부, 조합 1부씩 보관

- 전처리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생산지역, 생산자, 표본검사, 수확 후 8시간 이내 도착 여부, 18℃ 이내로 보관여부, 수확전 표본검사 점수 20점 이하인지 여부 등을 확인

⇒ 이러한 품질관리체계를 홍보함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을 알림

⑥ 전처리실



- 영업사원이 주문량에 따라 Lot 별로 전처리장으로 들어옴
 - 한 Lot 작업이 끝나야 다음 Lot 작업을 실시하며, Lot 구분을 위해 컴퓨터가 전처리 기계를 통제함
- Lot별로 작업을 시작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농가고유번호, 농가 Lot 번호, 포장방법, 물량, 조합출하 Lot번호, 인증종류, 전처리장 온도, 저온저장고 온도 등을 기록

⑦ 포장



- 소포장에 정보제공 사이트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보제공은 생산농가, 홍보자료 수준
 -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전화로 문의
- 품질결과서 등을 첨부해서 거래처로 보냄

(2) 도·소매단계

□ 형지스(Rungis) 도매시장 청과물사업자

1) 도매시장 소개



○ 일반현황

- 위치 : 프랑스 파리 남쪽 경계 8km지점에 위치
- 시장규모
 - 시장부지규모 : 232 ha
 - 건축 연면적 : 550,000m² (상업시설: 470,000m²)

○ 특징

- 유럽의 최대규모의 시장이며 시설규모면에서 세계최대
- 청과, 수산, 축산, 화훼시장, 유가공품 등 관련 상가, 및 정부기관 (농림, 보건, 공정거래국, 세관), 철도, 운송회사, 사업자단체 등 종합 입주
- 운영체계 : 일반거래 방식(경매제도 없음)
- 점포배치 : 중앙통로 형식의 점포 배치
- 각 점포마다 저온 저장시설설치및 Deck 시설을 통한 하역 기계화
- 4.4m기준의 임대단위, 각 도매상은 여러 개의 단위를 임대
- 철도운송시설을 유지하여 트럭 수송회사들의 파업 시에 대비
-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하여 도로 이용비용을 지불, 시장 내 사업자는 회원카드를 가지며 비용은 관리비에서 부과됨, 소매상 등 구매사업자는 정기권을 구매하여 사용 (할인함) (카드발급 : 약 65,000매)
- 개장시간: 청과, 화훼시장 06~12시, 축산시장05~10시, 수산시장 전날 11시~0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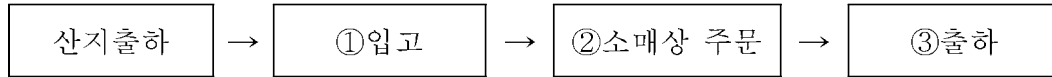
○ 거래규모

- 거래물량 : 식품류 200만톤, 화훼류(절화류 3,590만 묶음, 분화 2,000만분)

- 총매출액('01) : 65억 유로
- 수도권지역 시장점유 : 청과 45%, 수산 50%, 축산 35%, 화훼 50%

2) 품질관리 및 이력추적관리(청과물사업자 회장)

가) 업무프로세스



① 입고



- 산지에서 농산물이 도착하면 도매상 자체적으로 로트번호를 부여함
 - 품목, 등급, 크기, 산지, 날짜 등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 왼쪽 사진은 입고내역 출력용지이며 빨간색 안이 자체 로트번호임(아래 사진은 번호부분을 확대한 것임)

※ 자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산지에서 부여한 로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음

- 농산물 입고시 도매상에게는 어느 출하자로부터 왔는지가 제일 중요
 - 출하자는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농약 등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줄 의무는 없음

② 소매상 주문



- 소매상이 물건을 주문하면 왼쪽 사진 가운데 있는 분홍색 전표에 Lot번호, 수량 등을 기록
 - 경리는 전표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고 영수증 발행
 - 영수증을 보고 해당 Lot에서 물건 출고

③ 출하



- 라벨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며, 유통업체의 요구로 왼쪽의 딸기 포장케이스처럼 바코드를 표시하기도 함

<라벨표시 사례>



조합명칭 주소 전화 EU법규 자율통제인증번호	원산지	표준등급
	상품명 품종	
	크기	포장단위

- 이탈리아 메론 등 일부 품목에서는 농가ID 및 조합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정보제공 내용이 농가나 조합소개에 그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잘 활용하지는 않음
 - 정보제공은 일종의 광고이며, 농업부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음
- ※ 이력추적의 목적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도매상의 창고관리



- 청과물 도매상들은 자율적으로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음
- 도매상의 창고관리는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HACCP, GMP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위생·안전은 생선·육류시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으며, 거래장소 자체가 저온저장고(4℃~16℃)

(3) 정부의 관리 감독

□ 공정경쟁, 소비, 부정방지총국(DGCCRF)

1) 기관소개



○ 주요 업무

- 공정경쟁 감독(정부발주 공공입찰)
- 기업간 공정경쟁, 특히 대기업 독점적 지위 남용 감독
- 가격의 투명성 보장
- 소비자보호 : 경제적 이익 보호(과다한 월세, 통신판매 등)
- 청과물 유통 규율

2) DGCCRF의 이력추적관련 주요 사항

- 경찰의 지위를 가지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물건 동결 조치 가능
- 조합에서 출하된 이후의 농산물을 관리하며, 조합 및 대형유통업체 감독
 - 대형유통업체는 1달에 5~6회 방문
 - 조합·출하자에게 자율품질감독 승인을 해주며(3년마다 갱신), 이런 조합의 경우 3년에 3~5회 감독
 - 도매상들은 도매상연합회와 협정(FEL engagement)을 맺어 도매업자들이 자율통제 ⇒ 단속을 적게 나감
 - ISO에 가입한 기업들은 인증회사가 감독을 다니므로 아주 유용함
- 대형유통업체들은 간단한 조치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 생산자에게 Traceability를 요구
 - 정보공개시에는 개인사업자들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 영업비밀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이와 관련 대형유통업체들의 법 위반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역추적에서는 문제가 있는 동일상품을 찾아내서 유통금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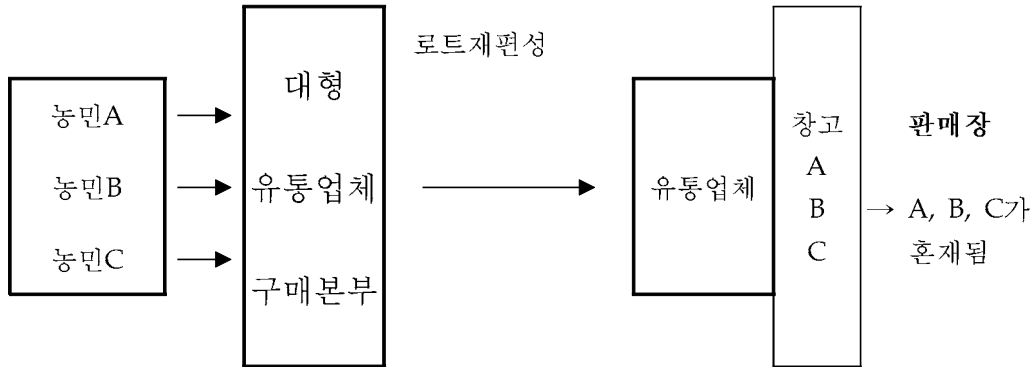
- 빨리 조치가 안되거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관계장관에게 직접 보고
- 장관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유통중단을 즉각 명령 가능
- 조치 후 수사를 통해 사태가 심각하면 검찰에 고발
- 유통금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는 사업자간에 해결해야 함
- 필요시 농약구입영수증, 농약상 판매영수증까지 다 조사하게 되므로 농가들이 평소에 영농일지 등을 잘못 기록하면 나중에 문제발생시 큰 타격을 입게됨
- 판매금지, 이동금지 조치시 EU, 미국 등은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움직임

3) 청과물유통규율 및 이력추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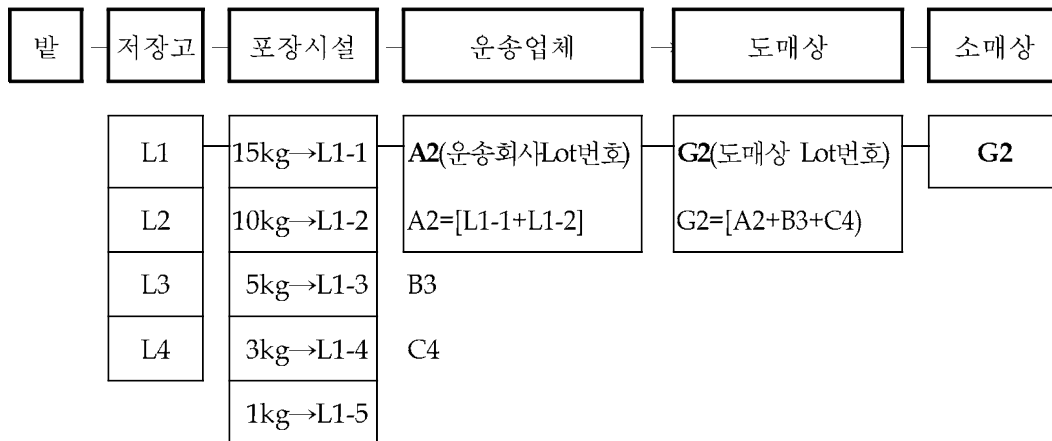
- EU 공동시장에는 청과물유통에 관한 단일법이 있으며, 이 법규의 핵심은 Quality Norm(품질규범)임
 - 품질규범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Label 표시(소비자전달, 유통업자간 전달내용 표시)
 - 출하자이름, 등급표시, 크기, 품종과 판매형태, 실중량 등
-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 중 이력추적관리
 - 모든 사업자들이 내 물건을 누구에게서 사서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이력추적관리의 핵심개념
 - 결과의 의무사항 : 기록방법(수단)에 대해서는 법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음
 - 그러나 결과를 보여주는 속도가 매우 중요함
 - 기록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Lot 구성시 유통단계 모두가 Traceability의 경제적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임
 - Lot의 구성단위를 크게 하면 관리비용감소, 문제발생시 처리비용 증가

- Lot의 구성단위를 작게 하면 관리비용증가, 문제발생시 처리비용 감소

<이력추적관리단계 모형(저장하지 않는 청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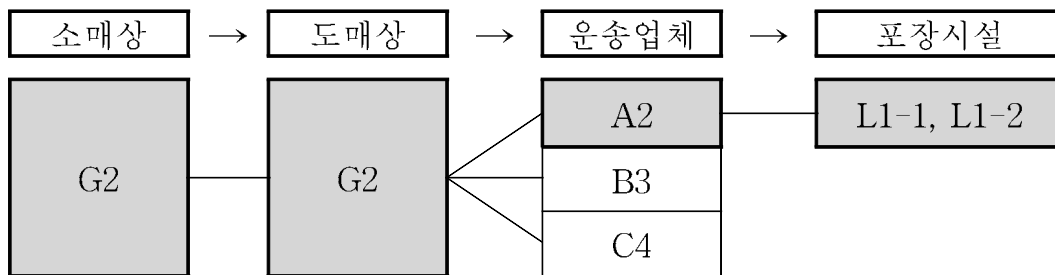
<이력추적관리단계 모형(저장성이 있는 청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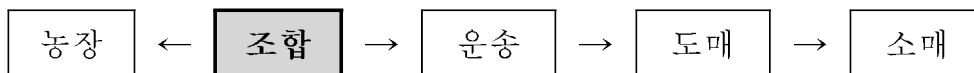
- 기록내용 :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Lot 구성
 - 큰 밭을 하나의 Lot로 짤 수도 있고, 밭이랑에 따라서 Lot를 구성할 수도 있음
 - Lot 구성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상품의 동질성

- 이력추적은 소비자 판매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매대에서는 이력추적은 존재하지 않고, 창고에서까지만 가능
- 청과물의 이력추적은 이론적으로는 쉬울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어려움
 - 다행스러운 것은 육류에 비해 안전하므로 유통과정의 추적만 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4) 역추적



- 먼저 전화상으로 추적하며, 유통과정상 최대 8단계 정도 거침
- G2에서 문제가 발생, 역추적 결과 L1-1, L1-2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포장시설에서 문제가 없는 한 농가의 저장고에 있는 L1은 다 잘라내야 함
- 역추적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Label을 보고 조합을 찾아내서 양쪽을 다 가보는 것임



- 따라서 현재는 Label 표시를 강조하고 있음
- 가끔 EU에서 식품경보가 울리는데 청과물은 이미 소비된 상태
 - 그러나 역추적 해서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조치는 가능

5. EurepGAP 인증

(1) EurepGAP 소개

- **EUREPGAP®** : EUro REtail Produce working group Good Agricultural Practice
 - EurepGAP의 분야
 - Fruit and Vegetables(Sep. 2001; revised 2004)
 - Flower and Ornamentals(9 Jul. 2004)
 - (Green) Coffee (2004)
 - Animals(Integrated Farm Assurance) (9/10 Nov. 2004)
 - Fish(Integrated Aquaculture Assurance)
 - Background
 - HACCP, Codex 기준에 근거
 - 국내 법규 준수
 -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기준(영농조건이 다른 나라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일부 기준 조정)
 - 소비자를 위한 브랜드가 아님
 - 신뢰향상
 - 인증기관
 - 인정기관이 ISO Guide 65에 의해 인증기관 인정
- * 네덜란드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 Dutch Accreditation Council

지 역	Approved	Provisionally Approved
아프리카	3	2
아메리카	7	-
유럽	34	16
호주	3	2
아시아	-	-

○ 인증현황

Country	Number of certified growers			Certified area/hectares (until June '04)
	2002	2003	2004/06	
Argentina		50	104	14,999
Belgium	163	636	317	14,409
Brazil	5	31	77	11,916
Chili	34	34	424	34,210
Costa Rica		26	96	36,062
Cyprus	3	12	186	1,277
France	10	268	108	6,733
Germany	43	344	136	9,490
Greece	114	411	14	6,321
India			12	94
Israel	1	75	544	14,863
Italy	142	235	359	6,116
Kenya	15	8	20	1,676
New Zealand		423	409	16,506
South Africa	255	926	735	110,327
Spain	1,011	1,844	1,105	66,721
Netherlands	2,015	3,382	NA	81,978
United Kingdom	12	3,400*	NA	Approx. 230,000
U.S.A.	2	10	33	14,316
Zimbabwe		19	24	4,270

- 인증농가가 있는 다른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자메이카, 몰타, 멕시코, 모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안틸레스,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스웨덴, 탄자니아, 태국, 터키, 우루과이, 잠비아

○ 인증방법

- option 1 : EurepGAP 인증 농업인
- option 2 : EurepGAP 인증 농업인 단체
- option 3 : EurepGAP을 벤치마킹한 농업인
- option 4 : EurepGAP을 벤치마킹한 농업인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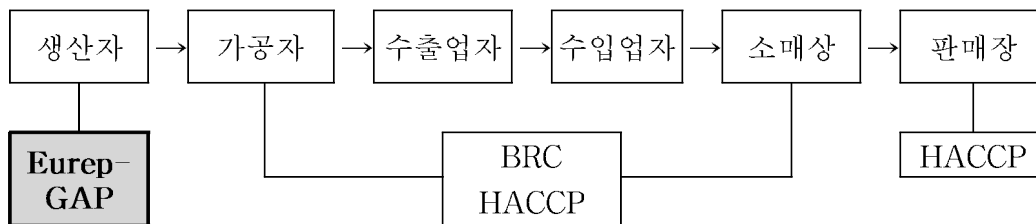
○ 관리기준 : 14개 영역 210개 기준

- 관리기준(210개)
 - Major Must : 47개, 100% 준수
 - Minor Must : 98개, 95% 준수
 - Recommend : 65개, every question must be handled

- 관리영역(14영역)

- | | |
|-----------------|------------------|
| ① Traceability | ② 기록유지 및 내부 자체감사 |
| ③ 품종 | ④ 농장 내역 및 관리 |
| ⑤ 토양, 배지 관리 | ⑥ 비료사용 |
| ⑦ 관개/시비 | ⑧ 작물보호 |
| ⑨ 수확 | ⑩ 생산물 관리 |
| ⑪ 수질, 오염관리, 재활용 | ⑫ 작업자 건강, 안전, 복지 |
| ⑬ 환경보호 | ⑭ complain form |

○ EurepGAP의 위치





<농작업도구 관리1>



<농작업기계 관리>



<농작업도구 관리2>



<농약 관리>



<퇴비 관리1>



<퇴비 관리2>

(2) CERTIPAQ(프랑스 인증회사)

※ 인증기관은 제3자 민간기관에 맡긴다.



- 민간인증회사의 핵심 4요소(법에 규정)
 - ① 독립적이어야 한다.(특히 자금에 대해)
 - 국가,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받으면 안됨
 - ② 직원들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효율성 : 감독관이 현장방문시 적합·부적합, 잘된 것 등 가장 적합한 인증·감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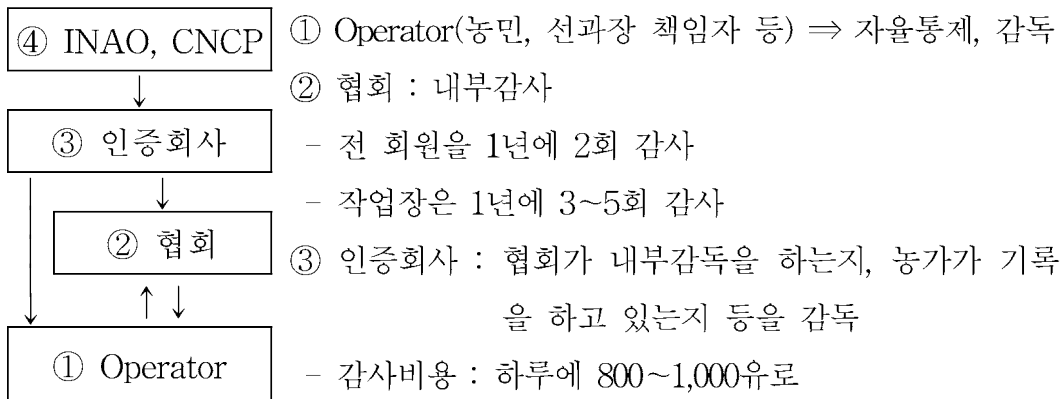
④ 결정권은 인증위원회에

- 내가 결정권자처럼 행사하면 안됨(심사원은 보고서만 쓰고 결정은 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함)

○ 인증기관의 구성 : 이사회, 인증위원회

- 이사회 : 일반 회사운동을 위한 이사회
- 인증위원회 : 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인증, 감사
- 인증위원회 구성원칙 : 생산자대표1, 이용자대표1, 전문가1 이상

○ 감독(통제)



- 협회 : 1년 4회 감사

- 1회(내부감사 준비여부), 2~3회(잘 하고 있는지), 4회(결산)

- 회원 : 무작위로 10%감사(감사비율은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10% 이상)
- 작업장 : 1년에 1회
- ※ 감사 준비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

④ 권위기관 감독

(3) FoodCert/IsaCert, 네덜란드 SGS(네덜란드 인증회사)



<FoodCert 프리젠테이션>



<네덜란드 SGS 프리젠테이션>

□ FoodCert & ISA 소개

1) FoodCert

- 1991년 설립, 2004년 Nak Agro 인수
 - 2006년 ISA 인수(감사업무)
 - Dutch Accreditation Council(RvA)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
- 업무범위 : 농업, 식품산업, 운송, 외식, 소매 등
- 인증업무 종류
 - ISO Guide 62 - accreditation(시스템인증)
 - ISO 9001(60개소), HACCP-NL(200), ISO 14001(5), ISO 22000 (finalising accreditation)
 - ISO Guide 65 - accreditation(생산물 인증)
 - Branch Hygienic Codes(BHC)(600개소), EurepGAP(2,650), BRC(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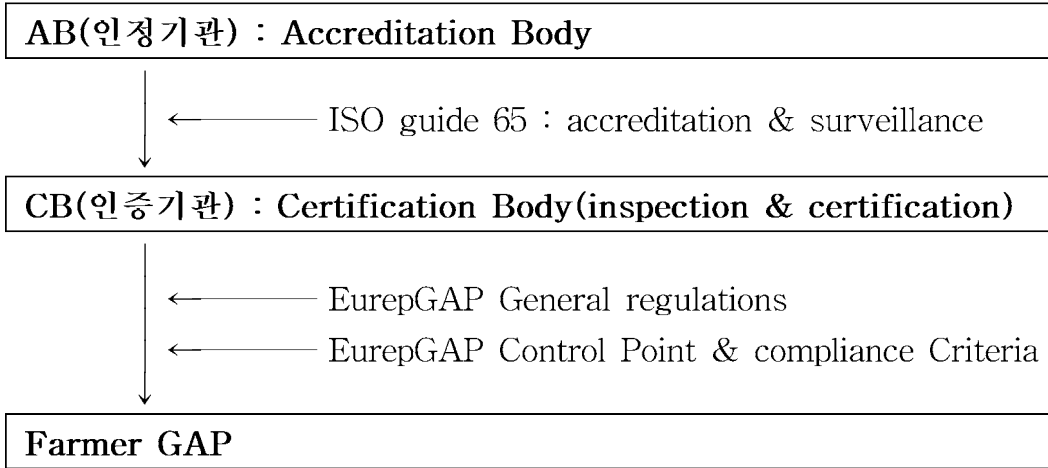
※ ISA는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ystem)으로부터 인증 기관 지정(ISO Guide 65)

- BRC(720개소), IFS(875), BRC IoP(packaging)(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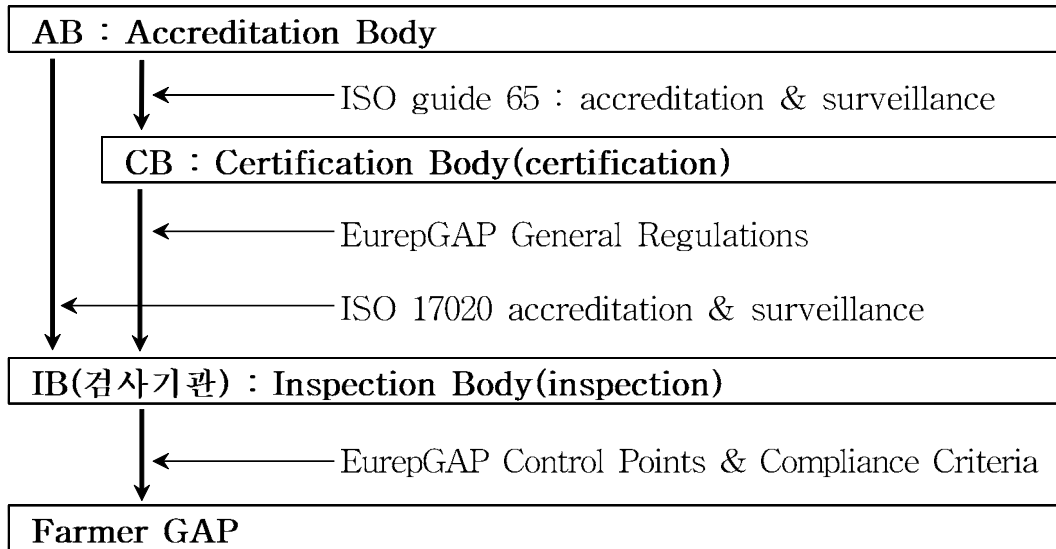
○ 인력 : 네덜란드 10명 + 외부감사 20명

2) 인증 구조

○ Accredited Certification(third party)



○ Subcontracting Inspections



3) 지역파트너(LP)와 인증 절차

○ LP(Local Partner)

- 마케팅과 세일즈, 조사, 평가, 리포팅작성 등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으로 ISO 17020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과 계약을 통해 현장업무 수행

○ 인증절차 - Option 1

- LP : 조사/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FC; FoodCert)로부터 승인
- LP : 조사업무 수행
- LP : 결과+NC(Not Compliance)/NA(Not Applicable) facts(3장) 작성
- LP : 조사자 recommendation 1장 작성
- LP : 4장 + 신청서를 메일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FC로 송부
- FC : Qualifica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 FC : 인증서 + 송장을 LP로 송부

○ 인증절차 - Option 2

- LP : assessment certification application을 FC로부터 승인
- LP : 조사, 평가업무 수행
- LP : 결과+NC facts(15장) 작성
- LP : 보고서에 recommendation 작성
- LP : 보고서 + 신청서를 메일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FC로 송부
- FC : Qualifica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 FC : 인증서 + 송장을 LP로 송부



<EurepGAP 인증서 by SGS>



<EurepGAP 인증농가1>



<EurepGAP 인증농가2>

III. 출장자 의견

1. GAP 및 품질관리시스템

- EU에는 다양한 형태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국의 유통업체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
 - 국가인증으로는 AOC(지리적통제명칭), CCP(모범농산물), Label Rouge (최우수농산물) 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EurepGAP, BRC, IFS 등이 있음
 - 프랑스 협동조합연맹에서는 다양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Agri Confiance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대형 유통업체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족시켜야 하며, 유통업체간 품질관리시스템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들은 주로 EurepGAP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유통업체들은 BRC, 독일의 유통업체들은 IFS를 요구
 - 따라서, 여러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거래 대상자에 따라 여러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고, 이는 생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프랑스에서는 Agri Confiance와 EurepGAP을 벤치마킹하여 두 시스템이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 대부분의 품질관리시스템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서로 다른 점만 보완하면 상호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실제로 EurepGAP에서는 EurepGAP의 몇몇 기준을 조정(벤치마킹)하여 인증을 하고 있음(Option 3, 4)
- 우리나라 GAP는 인증기관의 형태, 인증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EurepGAP과 상호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 민간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EU와는 달리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인증형태는 대외적 신뢰성면에서 부족
 - EU의 경우처럼 제3의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해주는 제3자 인증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현재보다 막대한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임
 - 따라서, 우리의 GAP는 국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자가 수출 등 필요에 따라 EurepGAP, BRC 등으로 변경하려 할 때 쉽게 전환·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즉, GAP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국내현실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민간인증체계의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향후 인증기관간에 협의체가 조직되면 정부에서는 인증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증기관 협의체에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의 관리기준 및 시설기준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APC등의 시설·관리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업무는 폐지해도 무방할 것임
- GAP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및 조합의 내부검사 및 인증기관의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표준규격에 따라 선별·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와 EU의 GAP제도 비교 >

구 분	한 국	E U	
추진 방식	민간주도(정부 기준설정)	민간주도	
농가의 접근방식	가격보장에 관심	시장원리에 적응하기 위한 생사(生死)의 관점	
인증기관	형태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대학 등	제3자(사업자와 독립적인 전문 인증기관)
	지정기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기준(농산물품질관리법)	제품인증기관의 일반요건(ISO guide 65)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 - 분석업무는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위탁 ○ 인증기관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모두 담당 ○ 검사기관이 검사업무 분담하는 경우 - 인증기관과 검사기관 계약 - 검사기관은 ISO 17020(검사기관에 관한 요건)을 획득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	별도의 지정절차 필요없고, EurepGAP 기준에 포함(10. Produce Handling)	
인증	인증기준(소유자)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관원)	EurepGAP(FoodPLUS)
	참여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농업인 - 농업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tion 1 : 개별농업인(EurepGAP) -Option 2 : 농업인단체(EurepGAP) -Option 3 : 개별농업인(벤치마킹) -Option 4 : 농업인단체(벤치마킹)

구 분	한 국	E U
수수료	5만원	450유로(네덜란드;국가마다 다름)
인증마크	포장지에 표시	○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유통업체와 출하자간 품질관리 계약의 확인수단
사후관리	○ 생산과정조사 : 반기 1회이상(인증기관) ○ 시설조사 : 반기 1회 이상(농관원) ○ 시판품조사 : 반기 1회이상(농관원)	○ 내부감사: 회원2회, 작업장3~5회(협회) ○ 외부감사: 협회4회, 회원의 10%, 작업장1회(인증기관) ※ 감사비용: 800~1,000유로/1일(프랑스)
제재조치	시정명령, 표시정지, 인증취소	경고, 정지(Suspension), 취소

2. 이력추적관리

- EU 식품안전법은 이력추적의 수단은 자유롭게 정하되 결과를 반드시 보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는 상품의 공급자의 식별, 상품의 구매자의 식별, 상품의 철시 또는 위험사항공지 등이 실시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이런 수단과 절차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관없으나 이력추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됨
- 우리나라에서는 이력추적 표준시스템 구축·활용, 이력추적관리번호 규정 등 어느 정도 시행방법을 강제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사업자간 이력추적 발전속도의 격차를 좁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이미 이력추적을 시행해 오고 있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 EU에서는 '05년부터 모든 식품 및 사료에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거래관행 및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력추적을 실시해 오고 있었음
 - 이력추적시스템을 기본으로 사업자별로 GAP, BRC, IFS 등 다양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 이력추적제를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에 비유한다면, GAP, BRC, IFS 등은 Windows 기반 하에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 이력추적제는 생산이력제라는 이름으로 GAP 도입과정에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GAP의 일부요소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품질관리시스템인 GAP와 이력추적제는 명백히 다른 제도이며,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력추적관리는 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추진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
 - 청과물은 축산물에 비해 위험발생요소가 아주 적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음
 - 따라서 청과물에 대한 이력추적은 엄격한 정보관리보다는 유통과정의 추적만 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력추적의 목적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을 통한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이 목적이 아님
 - 소매매장에서 이력추적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으며, 제품 홍보를 위해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 이력정보의 확인은 소비자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통업자 및 출하자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정부는 이력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Label 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와 EU의 이력추적관리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E U
법 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식품안전법(EU Regulation 178/2002) 제18조
이력추적대상		희망자에 한해 정부에 등록 (96품목)	모든 식품, 사료에 의무화(2005.1.1 부터)
이력추적범위		생산·유통·판매 단계	생산·가공·유통·판매의 모든 단계
사업자의 접근 방식		○B2C의 개념으로 접근 - 소비자에게까지 정보제공 - 상품 및 가격차별화 수단	○B2B의 개념 - 유통자간에만 정보공유
Lot 구성방법		관리비용 및 상품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체 결정	관리비용 및 상품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체 결정
이력추적관리 번호		등록번호(5),연도(2), 일련번호(5)등 12자리로 구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 ※프랑스는 세법에 의해 누구나 영수증No와 주문No를 가지고 있음
정 보 관 리	기록내용	단계별 이력추적을 위한 필수내용 기록(법에 규정)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록방법	종이기록, 전산관리(권장)	종이기록, 전산관리
	전산관리	정부 표준시스템 개발, 활용유도	○사업자간 필요에 따라서 자체 구축 -관리항목이 많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산관리하는 곳이 증가 추세
	소비자 정보제공	생산자 및 관리내용 등을 제공하여 제품홍보수단으로 활용	정보제공은 하지 않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제한된 수준의 정보 제공 (주로 출하자 소개 수준)
사 후 관 리	점검	○점검주체 : 농관원 - 시판품조사 : 반기 1회 이상 ※시판품 조사는 필요시 수시 점검	○점검주체 : DGCCRF(프랑스) - 1달에 5~6회(대형유통업체) ※표시내용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임

IV.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Q & A

1. 청과물에 대해 이력추적시 단가 대비하여 비용부담이 크고, 문제가 발생하여 역추적을 할 경우 이미 해당 상품이 소비가 되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굳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력추적을 하는 이유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임
-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은 사업자의 몫임

2. 최근 대형유통업체는 이력추적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 대형유통업체는 “경쟁”과 관련하여 이력추적제 적용을 환영하고 있음
- 이력추적을 적용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품질, 재배지, 재배정보 등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가 농가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명목으로 산지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유통업체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자에게 이력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공정거래법 위반임
- 농가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중요한 정보임
-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홍보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얘기이며, 생산자로부터 가격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음

3. 청과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 농가가 이력추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관련 영수증 미비, 부실 또는 허위기재 등) 나중에 문제 발생시 면책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이력추적관리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임

4. 농가단위에서 이력추적관리를 하기 위한 기록양식이나 전산관리시스템은 있는가?

- 청과물은 축산물에 비해 이력추적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음
 - 축산물에 비해 위험발생요소가 아주 적으므로 최대한 노력만 기울이면 됨
 - 재배기록양식은 조합마다 다르며, 전산관리를 하는 농가도 있고 일지에 기록하는 농가도 있음
 - 현재, 경작지번별로 재배기록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 가급적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컴퓨터 작성시 로그인 날짜가 나오므로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5. 농산물의 출하시 Lot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로트는 출하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로트관리 단위로 인하여 유통업자와 출하자 사이에 갈등이 있음
 - 출하자(생산자)는 파레트단위로 Lot번호를 부여하기 원함
 - 유통업자는 박스단위로 로트관리를 해주기를 원함(거래처별로 소량씩 출고할 때 Lot관리하기 어렵기 때문)

6. 소비자들은 소매매장이나 집에서 이력추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이력추적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으며, 소매매장에서 정보확인을 위한 장비는 설치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일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수준은 농가소개 정도임
 - 유통업자와 출하자간에 EurepGAP, BRC, IFS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통업자를 믿고 구입하고 있음

7. 농업인들이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힘들어 할텐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 농업인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음

8. 인증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사이에 가격차이는 얼마나 있는가?

- EurepGAP, BRC, IFS 등은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농가들도 가격차별화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음
 - 소매매장에서는 다양한 인증표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우려하여 인증종류별로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음
- 다만, AOC, Label Rouge, AB 등 국가인증품은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며,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 프랑스 AOC 인증 : 포도주는 최고 230%, 치즈 30% 가격상승
- ※ 그러나 한국에서는 GAP,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시 특품 위주로 선별함으로써 가격차별화를 기대하고 있기도 함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실태조사 및 MACFRUIT전시회 참석 결과

(이탈리아, 스페인 2006. 5. 2 ~ 5. 11)

목 차

1. 출장개요	141
2. 출장일정	143
3. 방문기관별 조사내용	143
가. 정부기관	143
나. Packing House	145
다. Macfrut 전시회 참관	155
라. 대형소매점	158
4. 출장소감 및 건의사항	160
5. 수집자료 목록	161

1. 출장개요

□ 목적

- 유럽(이탈리아, 스페인)의 이력추적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분석을 통하여 이력추적관리제도 정착에 활용
- 농업박람회(MacFrut)를 참관하여 세계 농업관련기술의 변화 동향을 체득
- 한-이탈리아간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한국 이탈리아 무역관의 공식초청에 의한 출장

□ 여행국가 : 이탈리아, 스페인

□ 출장기간

- 2006. 5 02 ~ 5. 11 (9일간)

□ 출장자 (7명)

소 속	직급	성명
농림부 소비안전과	농업주사보	한태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농촌진흥청 농업경영담당관실	농업연구사	이병서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관리과	농업연구사	김석철
세계농정연구원	부원장	조방환
세계농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윤용
세계농정연구원	연구원	장진웅

□ 방문 기관 및 업체

- 정부기관 및 Packing House 등
 - 에밀리아 로마냐주정부
 - Unitec - Group (가공시설 업체)
 - Soma - Group (포장기계 제조 회사)
 - MacFruit 전시회
 - Salvi Fruit , Royal Fruit , Cabana Fruit, FruitRaDa

- 식품판매 대형 유통현장
 - * 이탈리아 식품판매 대형유통업체 1개소 (Coop)
 - * 스페인 식품판매 대형유통업체 1개소

□ 출장수행 내용

- 이탈리아, 스페인의 패킹하우스 중심 농산물 이력추적 현장 적용 조사
- 이탈리아 주정부 담당관을 통한 에밀리아-로마니아 지역 이력추적관리 활동 상황 및 적용 현황 조사
- 패킹하우스 설계·제조사 : 유니텍, 소마 그룹 방문
- 스페인 지역 패킹하우스 중심 농산물 이력추적 현장 적용 조사
- 이탈리아 , 스페인 대형 판매장 이력추적,GAP 시판품 조사
- 국제적인 농산물 전시회 마크플러트 참관

2. 출장일정

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 견학내용	비고
5/2(화)	인천공항	이탈리아 볼료냐	○ 현지도착 - 오후 22시		
5/3(수)		이탈리아 볼료냐	○ Unitec사 방문 ○ 패킹하우스견학	○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정부 담당관 회의 ○ SALVI	
5/4(목)	볼료냐	이탈리아 체제냐	○ macfrut 전시회	○ 세계농업전시회 - 시설,장비,종묘,약재 ○ Soma 사 방문	
5/5(금)		이탈리아 체제냐	○ macfrut 전시회 ○ 지역 할인마트	○ 대형할인마트 - 이력추적 시행 여부조사	
5/6(토)	체제냐	로마	○ 현장체험	○ 이탈리아 주재 - 농무관 미팅	
5/7(일)	로마	스페인	○ 이동	○ 이동	
5/8(월)	마드리드	바다호스	○ 패킹하우스견학	○ Royal , CabanaFruit	
5/9(화)	마드리드	발렌시아	○ 패킹하우스견학 ○ 지역할인마트	○ FruitRaDa ○ 할인마트	
5/10(수)	스페인	인천공항	귀 국		

3. 방문기관별 조사내용

가. 정부기관

(1)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정부

□ 방문목적

- 2005. 1. 1부터 유럽식품법에 의해 의무화된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현황 조사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5. 3 10 : 00 ~ 14 : 00
- 장소 : UNITEC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Cestaro Marco(Emilia-Romagna 주정부 농업담당관), DR. Luca Monttanari (UNITEC Corp. 부사장) 및 UNITEC Corp. 기술팀, 체코 패킹하우스 견학팀

□ 주요내용

- EUGAP 및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에밀리아 - 로마니아 주정부 담당관 설명회(Presentation) 및 간담회
 - 이탈리아의 EUGAP,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개요 설명
 - 이탈리아 볼로냐지역의 농산물 인증제도
 - 이탈리아 내부의 농산물 안전에 대한 조사 내역 설명
- 에밀리아 - 로마니아에서 실행 중인 이력추적, EUGAP관련 소개 웹사이트 소개
- 에밀리아 - 로마니아 주정부에서 발간한 소개 자료를 수집

□ 수집자료

- 회의내역 VCR촬영(90분), UNITEC Corp. 브로셔



<농업담당관회의 및 강연자료>



< Unitec Corp. 본사 >

나. Packing House

(1) Salvi Fruit(Italy)

□ 개요

- 위치 : Via Bologna,714-44040 Ferrara, Italy
 - 홈페이지 : www.salvi.it
 - 주요품목 : 사과,배,살구,자두,키위,복숭아,딸기
 - 연평균생산량 : 15만톤
 - 연평균매출액 : 1,500억
 - 지역별 3개 선과장 운영 : Ferrara / Battipaglia / Bergamo

○ 특징

- 700ha, 200ha 규모의 농장운영
-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현재 가업으로 운영
- 설비 시스템의 자동화 및 DATA관리로 상품투입 후부터 선별, 포장까지 일관된 정보관리

□ 방문목적

- 이력추적 및 인증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을 견학하고 이력추적정보 발생에서 상품정보의 관리의 절차를 조사

- 자동화된 이력추적정보의 관리체계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기기의 운용에 대한 조사
- 생산에서 가공/유통, 판매장까지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실제 소비자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환경 조사

□ 현장견학내용

- Salvi - 키위 상품화 작업



대규모 처리규모를 가진 Salvi Fruit은 전공정에 대하여 바코드를 이용한 정보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작업지시에 따른 원료의 투입, 상품화과정, 오류검출, 상품저장이 전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때에 따라 정보의 오류에 의한 재포장 작업도 시스템에 의한 이력추적의 결과가 상품재포장 지시로 전달되어 작업자는 해당 포장 상품을 재처리 하는 과정으로 공정이 완료된다.

○ 바코트라벨 오류로 인한 재작업



방문당일 재포장 작업지시에 관하여 작업자가 지시서에 따라 소포장 처리 공정을 다시 행하는 모습

○ 이력추적정보 운용 환경



원료의 입고이후 선별계획공정의 수립과 함께 원료투입 시 자동으로 가공이력초기 정보가 발생되고, 작업자는 작업지시에 따른 바코트라벨을 출력기에서 출력하여 원료 덩핑 시 라벨부착으로 원료의 가공이 시작된다.

이후의 상품제조 공정 후 발생하는 상품이력번호는 자동화 시설에서 상품제조 시 부여하여 상품출고와 함께 이력추적번호로써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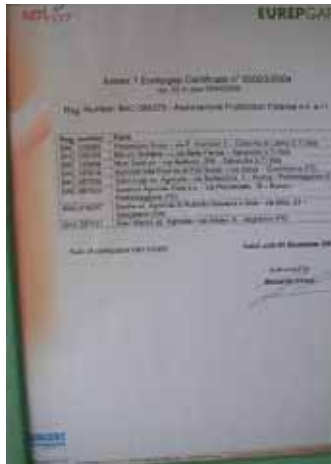
각 단위의 정보는 선별,포장,재선별,저장 등으로 부류되면서 정보의 흐름이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 수집정보

현장 운영 VCR 촬영 , 몇 종의 운영보고서 촬영
보유 인증서 촬영, 실험분석 검사기록 양식
생산상품 라벨(키위), 소개 브로셔



<SALVI 선과장 정문, 선과장 전경>



<SALVI 선과장의 각종 인증서>

(2) Royal Fruit(Badajoz, SPAIN)

□ 개요

- 위치 : Badajoz SPAIN
- 주요품목 : 복숭아



□ 견학내용

- SPAIN 지역의 일반선과장 수준의 규모이며 현재 선과장의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본 시설중의 특징은 원료의 입고와 동시에 세척과 비세척의 원료 이송을 시설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고 원료 이송장소를 저온처리 시설로 만들어 원료를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도록 처리한 특징이 있음. 이력추적정보의 취득을 위한 자료취득은 어려웠으며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는 복숭아 단지가 인상적이었음



<포르투갈 접경지역에 위치한 Badajoz 외곽의 선과장>

(3) Cabana Fruit(Badajoz, 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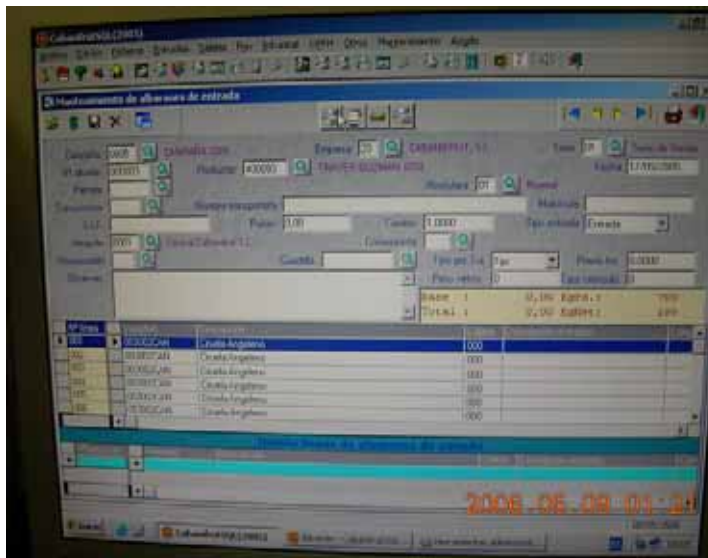
□ 개요

- 위치 : Badajoz SPAIN
- 주요품목 : 오렌지



□ 현장전학내용

- 스페인 바다호스지역 외곽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패킹하우스로 이력 추적체계를 적용하여 가공/유통을 시행하고 있음.
- 농가 원료 입고에서부터 시설을 통한 각 단계별 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설명하여 이력추적정보의 발생, 가공 공정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었음.
- 특히 , 128 bit 체계가 도입된 바코드 체계와 정보 ERP에 의한 관리 상황이 눈에 띄는 부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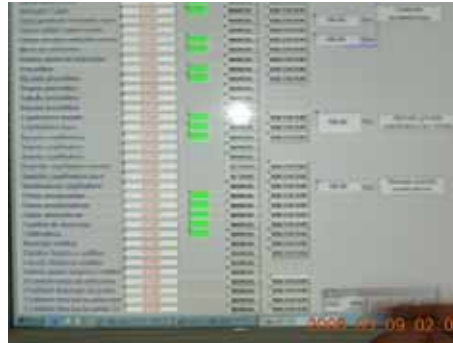
<생산/가공의 공정을 ERP에 의해서 관리함>

- 농가와의 정보교환체계도 입고전표에 바코드 확인 라벨을 부착하여 전산운용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확인 체계를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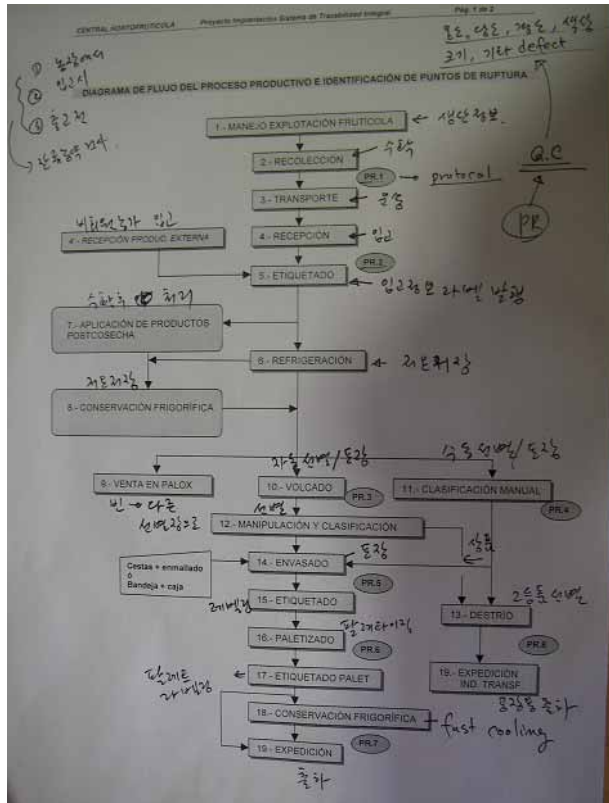
바코드로 입고기본 정보를 출력하여 부착하고 원료의 농가 확인을 위한 표시라벨을 2중화 출력을 통하여 관리함

- 전체가공이력은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한 처리로 관리되며 원료의 투하와 상품의 생산, 상품의 이동 까지 전산화된 정보체계로 운용관리됨



- 자동화 시설 및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의한 이력추적정보의 생성, 128BIT 체계를 이용한 사례는 스페인 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현장임
 - 이력추적 정보 기록장





<Cabana Fruit 이력추적정보관리 흐름도>



<Cabana Fruit가 보유한 인증서>

- Cabana Fruit 은 품질과 관련된 인증서를 상당히 많이 보유한 패키징 하우스로 EUGAP, ISO인증, 품질인증 등 규모에 비하여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었음.
- 인증서의 수량보다는 이력정보를 관리를 해야만 하는 인식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담당자의 의견은 인증을 시행하는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농가정보는 특별히 인증을 위한 농가재배정보, 이력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약재의 구입 시 해당 구입목록이 약재 판매소에서 관리되어 농가농약 사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농약사용 등의 안전기준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위협한 발상이란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 - Cabana Fruit 현장회의 VCR 촬영 (2시간 내용)
 - 현장 사진 촬영자료 , 패키징하우스 제공 농가거래 양식지
 - 원료, 상품 부착 바코드 라벨
 - * 정보시스템 사용자메뉴얼을 요청하였으나 oo까지 벗으라는 거냐며 거부

(4) FruitRada(Valencia, SPAIN)

□ 개요

- 위치 :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 주요품목 : 오렌지 외

□ 현장견학내용

- 스페인 발렌시아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의 처리시설로 이력추적과의 관련성 보다는 특수한 농산물 처리공정을 시행하고 비파괴검사, 오렌지 표면처리 등의 색다른 상품처리가 인상적인 패키징하우스임

- 패키징하우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농산물의 상품화 공정이 복잡하여 **FruitRada**와 같은 특수한 처리공정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인지시켜줌.



<복잡한 농산물 처리 흐름을 가진 FruitRada 패키징하우스>



<일반적인 형태의 바코드, 상품포장>

다. Macfrut 전시회 참관

(1) 개요

□ 소개

MACFRUT는 세계최고의 농산물 전시회 중 하나로서 농산물의 생산, 선별, 포장, 팔레타이징, 운송, 보관을 위한 신기술과 가공식품, 친환경 유기농산물 까지 생산자 및 유통 종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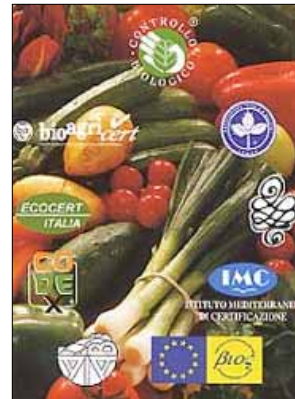


:30,000 sq m

가 :687

: 30,000 ('05)

: 60 6,000



□ 전시회 주요내용

- 생산자-유통바이어 협의회
- 조립식 저온 저장고
- 선별기/제함기
- 포장기기 및 자재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자재
- C/A 패키징
- 프라스틱 패키징
- C/A 플랜트
- 야채가공 플랜트
- 감귤류 가공 플랜트



건과일 가공 플랜트
 농산물 라벨링
 신선식품 markets
 각종 측정 장비



○ 전시회 참관 주요 내용

- macfrut는 해마다 세계유수의 기업들이 저장,선별,포장,유통에 관련한 농산물 관련 신기술을 전시함.
- 세계최고의 선별기 회사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중량, 규격, 색상, 당도, 흠집, 경도 선별기들의 최신시스템을 관람.
- 포장재, 포장기계 등은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되고 있는 모습이며 소비자 마케팅을 고려한 농산물 포장기술은 좋은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음
- 국내 적용 가능한 포장자재 및 포장 기술에 대한 최신정보 취득, 각종 샘플 수집 , 자동화된 포장설비에 대한 관람.
- 이외에 CA,입출고 배송, 케미칼, 종묘 등에 대한 세계의 다수 정보를 취득





<이력추적정보 관리 시스템 및 상품>

□ Macfrut 참가업체 SOMA Group 견학

○ 견학내용

- ITALY 체제냐에 위치한 포장,선별 기계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일부 시설에 장비가 운영중인 회사임
- 주요 개발 장비의 시연과 각종 포장에 대한 신기술을 소개

○ 주요사항

- SOMA Corp. 는 단순 포장기계 개발이 아니라 포장재료의 원가 절감방안과 소비자의 마케팅을 고려한 포장기술의 연구는 눈에 띄는 부문임.



자동화된 설비시설과 포장제의 개발을 통한 다양한 상품군의 제조는 보다 높은 마케팅 효과를 발휘 한다고 본다.



SOMA Group 은 체제나 지역의 굴지의 업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농업기계분야의 국내현실과 비교 하였을 경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음.

○ 수집자료

SOMA 포장기계류 VCR촬영 , 포장형태에 대한 사진촬영

라. 대형소매점

(1) 개요

□ 목적

- 국내 유통업체(이마트 등)와 동일한 형식의 마트에서 이력추적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조사. 상품에 부착된 라벨조사, 인증품의 표시형식, 바코드 형식, RFID 적용 여부, 식품안전에 관련한 홍보운영 실태, 소비자의 상품구매 조사

□ 조사결과

- ITALY Emilia-Romagna 주정부 담당관의 소개에 나왔던 지리적 표시인증 마크 1종과 EU GAP 마크가 부착된 상품 1종(축산물) 발견.

- 기타 농산물은 14코드형 바코드를 사용하는 라벨이 모두 부착, 대체적으로 국내 실정과 유사한 농산물 표시의 환경운영이 특징.
- 키오스크나 이력추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은 찾지 못함.
- Coop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농산물 표시형식과 생산정보, 성분등이 표시된 홍보물이 판매 가판에 놓여져 있음.(홍보물 수집자료 참조)

□ 현장적용 사례



- Coop는 국내의 E-마트와 같은 형식의 판매장으로 상품진열이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국내의 실정과 비슷하거나 동일함.
- 농산물은 주정부 담당관의 설명과 같이 일반 농산물 상품과 EUGAP 등의 인증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음
- 인증농산물의 경우 상품진열의 차별성이 없으며 다른 비인증 상품과 동일한 위치에서 판매되고 있음.
- 표시라벨에서는 추적번호는 13자리 코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판매장의 고유코드를 사용하는 부문도 있음.
- 로트의 사이즈는 일자별 로트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라벨에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표현 되어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하였음.



<Coop 진열대에 판매되고 있는 EUGAP 농산물>

- Coop 판매점에서 일반벌크형 농산물에 상품에 대한 친환경적인 홍보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Coop 자체의 홍보물로 친환경 재배지침을 기록하여 소비자가 현장에서 확인 하면서 구매.



□ 수집정보

- 판매점 농산물, 축산물 코너 촬영 VCR
- 농산물 부착 라벨
- Coop 품질관리홍보물

4. 기타 출장소감 및 건의사항

- 이탈리아, 스페인의 농산물 packing house를 운영하는 주체는 소규모 조합이 연대해서 대규모의 시장교섭력을 가진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개인회사에서 출발하여 지역조합과 연대하는 방식의 2가지 발전형태를 가짐

- 이탈리아, 스페인은 Packing house가 실질적인 농산물의 안전성관리, 이력추적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출하계획에 의해 생산관리를 통제하고 있고 자체 지도사를 통하여 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음
-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제제조치는 매우 단호했으며, 각 주체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또한, 이탈리아의 지방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생산, 포장, 유통을 결합한 프로젝트 단위로 재정지원(약 60개)함으로써 해당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에서도 산지유통센터(APC, RPC 등)를 농산물유통의 핵심으로 성장시키고, 작목반 등 생산조직과 협력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성관리의 책임을 지는 체계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임
- 또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력추적관리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가야할 것으로 봄

5. 수집자료 목록

- 에밀리아-로마니아 주정부 담당관 이력추적, 인증 회의 VCR 자료
- 패킹하우스 방문지 별 VCR 자료 Tape 5개
- 현장 사진 및 상품 촬영 자료
- Unitec -Group 홍보 팸플릿
- Salvi 사 홍보팸플릿 , 상품 바코드 라벨
- Mac Fruit 전시회 수집자료
- Cabana Fruit 제공 농가거래 전표, 바코드 라벨
- 인증표시 농산물 상품 현장 사진 , 인증상품 바코드
- 방문지별 관련 소책자

4.

□ GAP

(, 2005. 4. 23 ~ 4. 30)



I. 공무국외여행 개요	167
II. 출장목적 및 일정	168
1. 출장목적	168
2. 출장일정	168
III. 출장조사내용	169
1. 유럽연합의 이력추적제 요약	169
2. 이력추적제 도입배경	174
3. 이력추적시스템(TraceFel) 사례	175
4. 브레파뉴의 이력추적관리	178
5. 유통업체의 품질관리기준 : EurepGAP	180
6. EurepGAP 참여농가 사례	182
7. 프랑스협동조합연맹의 품질관리기준 : Agri Confiance ..	184
8. 토마토 생산농장 사례	185
9. 브레파뉴의 품질관리시스템 : Agri Confiance와 EurepGAP	187
10. CERAFEL, ISFEL(농업위원회)의 청과물 품질관리전략 ..	190
11. 프랑스 농업회의소 : CERQUA	192
12. 합리적 농업규범 : 프랑스 FARRE 인증시스템	195
IV. 자료수집	203
V. 시사점 및 건의사항	203

□ GAP

1. 여행국 : 프랑스

2. 여행목적 : 프랑스의 이력추적제 및 GAP 운영현황 조사

3. 여행기간 : 2005. 4.24~4.30 (7일간)

4 여행자 인적사항

- 농림부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농진청
 -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농업연구사 이병서
 -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농업연구사 김석철

5.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이력추적제

- EU 이력추적제 관련법규
- 이력관리시스템 사례(TRACE FEL)
- Eurep GAP, 아그리퐁피앙스 농가에서의 이력기록
- APC에서의 이력관리 현황
- 유통업체 매장 및 도매시장에서의 이력관리 현황 등

나. Eurep GAP 등 농산물품질관리시스템

- 프랑스 청과물의 품질관리시스템 현황 교육
- Eurep GAP, 아그리퐁피앙스 농가에서의 품질관리체계
- 합리적농업 국가인증체계
- 품질인증연합의 국가인증 등

1. 출장목적

- 06년 부터 본격시행 예정인 이력추적제·GAP의 올바른 정책추진체계와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국 사례 조사분석
- 농산물 이력추적제의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현장운영사례 벤치마킹
- 농산물 이력추적제가 다양한 품질관리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영노하우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

2. 출장일정

구 분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4.24 (일)	인천	파리		○인천공항 출국 ○파리 샤를드골공항 도착	
4.25 (월)	파리	브레 따뉴	헝지스도매시장 브레따뉴 이동	○시장운영관리, 도매시장 이력추적관 리방식, 포장 및 표시실태 등 ○프랑스 청과물 이력추적제 및 품질 관리체계 소개	지 역 아카데미
4.26 (화)	브레 따뉴	브레 따뉴	브레따뉴조합/ 농업위원회 아그리쾡피앙스 도입농장 GAP실천농가	○조합품질관리체계, 조합경매장 ○APC견학/이력추적시스템 파악 ○농장품질관리 (토마토) - 이력추적, 품질관리 등 ○이력관리 및 품질관리 현황	Mr Gerard ROUE 부장 Mme Marie LaureMARC
4.27 (수)	브레 따뉴	LAVAL	ISFFER(브레따 뉴농업위원회) 기술연구소	○청과물 품질관리정책과 전략 교육 -퀵리프린스(통합품질관리시스템) -이력추적, GAP, 유기인증, 유통업체 인증 -품질인증성격 비교 ○프랑스 이력추적제 교육 -이력시스템, EU이력추적제 관련법	Mr JEAN FRANCOIS PROUST Mme NEFUSSI
4.28 (목)	LAVAL	파리	프랑스청과물 인증기관연합(C ERQUA) 까르푸 매장	○프랑스 국가인증 종류 소개 -라벨후즈 등 ○이력추적, 라벨후즈 등 확인	Francoise FOCQUE
4.29 (금)	파리	인천	합리적 농업 포럼 (FARRE)	○합리적농업 국가인증체계	CLARE CHAMBRIER
4.30 (토)		인천		귀 국	

1. 유럽연합의 이력추적제 요약

가. EU 이력추적 법규 (EU Regulation 178/2002)

- 적용대상
 - 모든 농식품과 사료
 - 모든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실시
 - 수입 및 원료부터 저장, 운송, 판매에 이르는 전체 단계
- 종합법규
 - 사업자들의 책임과 감독당국을 명시
 - 이력추적의 의무실시 명시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품목, 모든 단계)
 - 위험이 노출된 상품의 시장회수와 감독당국에 통보 의무화
- 이력추적의 시행 (제 18 조)
 - 이력추적은 모든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함
 - 사업자는 상품의 공급자(전방) 식별, 상품의 구매자 식별(후방), 상품 회수 또는 위험사항공지 등이 실시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갖추
- 시행방법
 - 모든 농식품은 각 포장단위에 대한 LOT 번호에 의해 식별되어야 함
 - 위험사항공지 과정은 문제상품에 대한 명확한 회수가 가능해야 함.
- 이력추적의 두 방향
 - 하향방향 : 생산 ⇒ 선별 ⇒ 저장 ⇒ 운송 ⇒ 소매에 이르는 진행방향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공시 절차진행
 - 상향방향 : 소매 ⇒ 운송 ⇒ 저장 ⇒ 선별 ⇒ 생산에 이르는 역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품과 처리절차에 대한 원인 분석

나. 출하사업자의 이력추적의 전개

- 전방 이력추적 : 생산자 ⇔ 1 차 원료상품 ⇒ 운송자

- 내부 이력추적 : 집하(집하검사) ⇒ 저장(통제) ⇒ 선별(통제) ⇒ 출하(통제)
- 후방 이력추적 : 운송자 ⇒ 저장 ⇒ 유통자

다. 이력추적과 출하시업자의 내부관리

- 최적 내부관리체계 조직 (시행활동들에 대한 정보·지식 축적, 재고관리)
- 경영 및 품질관리 목표들과 시행결과의 비교 분석
-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파악과 지식축적
- 품질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사전체계의 완비
- 공급자 (생산자) 및 구매자(유통업체)와의 상업적 기술적 협상의 요소
- 마케팅의 수단

라. 프랑스 청과물 이력추적

- 청과물 이력추적 가이드
 - EU Regulation 178/2002 는 이력추적의 의무적 시행을 명시
 - 시행방법과 수단은 의무화하지 않음
 - 이력추적가이드 : 각 단계에서 추적되어야 할 공통 정보들과 기초적 시행기술을 수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자들은 대개 필요에 따라 이력추적가이드 수준보다 발전된 기술을 시행

마. 이력추적체계의 시행과 적용준비

- 전방 이력추적의 준비
 - 적정 품질의 상품 확보
 - 생산자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의 신속한 입수
 - 문제 발생시 위험요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마련

- 내부 이력추적의 준비
 - 기본적인 정보의 신속한 발견
 - 식품안전에 대한 관련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 완비
 - 다양한 생산수단들의 운영계획을 토대로 최적 가동
- 후방 이력추적의 준비
 - 상품이 출하된 지역과 장소에 대한 식별 체계
 - 출하된 전체를 상품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 재고관리의 효율성 증진
- 이력추적을 위한 작업체계의 적용 절차
 - 필요한 사항들의 파악과 결정
 - 현재의 체계에 대한 평가
 - 문제점 해결방법 제안
 - 이력추적체계의 실시
 - 시행체계의 가동과 점검

바. 단계별 이력추적의 실시

- 생산, 출하, 운송, 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핵심요소
 - 추적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 Lot 식별
 - 식별 방법
- ex) 생산자, 경작지, 수확일, 상품특성(품종), 품질규격(크기), 포장상태
- 생산단계의 이력추적의 정보
 - 품질관련 의무이행서(품질인증에 필요한 Charges)의 유무에 관계없음
 - 경작지, 식물성 자재, 토양, 합리적 경작 관찰, 농약, 비료, 수확 등
- 선별단계의 이력추적
 - 팔레트, 저장, 출하준비, 출하

- Lot 구별 번호와 포장상자 구별 번호의 구성
- 출하단계의 이력추적
 - 하향방향 이력추적이 조직되는 단계
 - 출하되는 상품의 포장상자별 식별번호 표시 및 기록
 - 출하되는 팔레트 식별번호와 포장상자별 식별번호 연계 기록
 - 집하되는 벌크상자(생산) 식별과 출하되는 포장상자별 식별번호 연계 기록
- 도매단계의 이력추적
 - 어떻게 입하상품의 Lot 구성방법을 정의하나?
 - 어떻게 입하상품과 출하상품의 Lot간에 연계방법 정의하나?
 - 어떻게 저장고에서 출하되는 상품의 식별방법을 구축하나?
 - 어떤 정보들을 추적해야 하나?
 - 추적정보들의 비밀을 어떻게 보장하나?
 - 도매사업자는 출하자가 수록한 Lot 번호를 확보해야 하나?

사. 선별장의 이력추적에 필요한 수단

- 세가지 형태
 - 청과물 크기 구별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다양한 목적)
 - Lot의 구성과 교체를 위한 수단
 - 식별 수단
- Frulog : C2G : 선별장의 독립적, 상호적 이력추적 모듈들로 구성
 - 입하관리
 - 생산자 식별 및 샘플에 의한 품질통제
 - 예비선별
 - 선별작업
 - 팔레트 작업
 - 벌크 또는 포장 형태의 저장

- 통합모듈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 경작지
 - 입하 및 검사
 - 선별
 - 저장
 - 투입자재
 - 이력추적(하향, 상향)
 - 팔레트 및 출하
 - 통신판매 및 영수증 처리

아. 포장상자의 표시 방법

- 가장 단순한 형태 : 식별번호
- 가장 발전된 형태 : LOT 번호의 코드화 (EAN 128)

자. 이력추적의 경제적 측면

- 고려해야 하는 요소
 - 비용규모?, 누구를 위한 투자?,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 수익성있는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품질과 관리체계 개선 여부?
- 추적된 상품을 위한 비용구조
 - 생산에서 소비단계로 갈수록 이력추적비용은 증가하나, 유통관리비는 절감
 - 이력추적 비용 = 직접비(장비 등 고정투자비) + 운영비
 - 이력추적의 직접비용 = f (이력추적의 수준)
 - 이력추적수준 = h (작업수준, lot크기, 상품특성, 적용기술, 추적요소, 기타)

- 이력추적의 수익성
 - 수입 = 위험발생시 대처비용 절감 + 상표보호에 대한 기여
+ 기업조직관리에 대한 기여 + 감독과 인증 비용 절감
 - 비용 = 시스템 운영관리비 + 위기발생비(확률)
 - 투자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설치 + 교육훈련 + 인증비용

2. 이력추적제 도입배경 : 국립농업대학원 자크 네피시 교수

가. EU예전법규 : 식품위생안전법, 93년 작성하여 98년 본격 시행

- ① 식품안전을 위해 **결과를 의무화** : 결과를 준수치 못하면 처벌(대표자)
- ② **과정 의무화**
 - 사업자는 과정기록이 필요 : GAP, HACCP, Traceability 등 적용
 - 법에 안전성 결과를 의무화하면, 기업은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법에서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 결과를 책임지기 어려워 기업이 과정을 강화해두면 문제발생시 재판에서 불가피성 입증 가능함

나. 유럽연합법 178/2002(이력추적제)

- ① 유럽식품안전기구 창설 : 식청, 약청 구분
- ② 식품안전책임은 기업대표가 책임
- ③ 식품안전 문제발생시 국가가 개입
 -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해결하고 완료했으나 당국에 통보해야 함
- ④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함
 - ㉠ 이력추적
 - 상향이력추적 : 문제원인 파악,
 - 하향이력추적 : 상품구입자식별, 내상품이 어디있는지 확인가능
 - ㉡ 문제발생시 요구하면 이력자료 제출 준비를 갖추어야 함

㉔ 법에는 구입자, 공급자만 식별 명시 : 일자, 번호, 로트 등은 사업자 자율. 도소매단계에 가면 출하형태 다양하여 복잡해짐

* 소비자(문제발생)→소매점(유통매장)→공급자→미확인 : 전량폐기

- 로트번호 확인될 경우 해당 Lot만 폐기

* 이력추적관리 여부확인(DGCCRF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경제부정방지 총국)

- 도매시장 추적성수준 : 구입처식별은 용이하지만, 판매처식별은 어려움
- 프랑스에서 축산물은 100% 추적가능하지만, 청과는 대부분 품목 추적가능
- 추적성은 로트만 잘 정의하면 가능하지만, 찾는 시간이 문제임
 - 리콜해도 상품 회수가 어려움

3. 이력추적시스템(TraceFel) 사례 : 국립농업대학원 자크 네피시 교수

○ TraceFel : 청과물이력추적시스템이며 조직명임

- 프랑스 청과물수입사업자연합/도매사업자연합을 위해 개발한 청과사업자간 시스템으로 출하자와 도매상간 정보교류 목적이 큼

- 시스템은 생산자(품목별 이력정보)→APC(팔레트별 정보)→수집상/출하자(품목 다양)→도매상(상자별 혼합)→대형소매상(다양)이라는 단계별 추적성을 연결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음

- 시스템 구성상의 문제

· 전산정보시스템이 단계별 사업자간 상이하여 접속이 곤란하며, 각 사업자가 코드/언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음. 즉, ①상품, ②고객/공급자, ③수입상 부르는 방식이 상이하여 일관된 교류코드 관리가 어려움. 따라서 상품간, 고객과 공급자간, 국가별 수입상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일하였으며, 시스템 각 단계에는 기술적인 경로정보가 들어 있으며, 팔레트단위로 정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팔레트는 통상 섞여 출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매상 경우는 더 복잡하여 상자별로 섞일 수도 있음

○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 시스템은 달라도 프랑스는 세법에 의해 누구나 영수증번호/주문번호는 가지고 있으므로 공통사항은 상업정보(영수증No.,주문No.)이며, 필수정보임
- 품질정보 (농약, 등급, 물류정보, 거래정보 등)는 선택사항임
- 출하자는 APC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자와 도매상간의 협약

- 우선 수입상, 도매상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단계별로 준수토록 함
- 자신의 고객(대형도매상과 수입상)과 공유할 정보항목을 선정.
 - 정보의 상호비밀보장, 전산시스템적 보안장치, 정보누출방지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제공할 항목 선정.
- 정보에 대한 사업자간 규칙을 만들어야 함 (내부규칙이 중요)

○ 시스템구축 방안

-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한번 작동으로 후단계가 전단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단계간 정보를 공유가 시간 들지 않고 자동적으로 가능해야 함
- 정보는 언제나(24hrs) 가능해야 하며 실시간 제공가능해야 하나, 정보 운영방식 구축이 어려움
- 동일단계 사업자간에는 경쟁관계임 : 과거에는 공통 시스템 사용했으나 경쟁원리에 부합치 않아, 공통사항 외에 사업자별 차별성 표현여지를 둠

○ 정보관리

- 청과물은 아직 국가 Data Base에서 관리하지 않으나, 축산은 국가관리
- 인터넷 관리시스템(www.Tracefel.com) : 20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
 - 각 사업자는 개인 통신서버에 등록, 입력 : 개인서버→ 중앙D/B로 이동
 - 출하자→ APC정보 확인가능 : 상위주체는 하위주체 정보확인 가능
 - 각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된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 생산자 송장번호→ APC내 정보보관(APC는 사업자간 차별화정보 제공)
 - 정보는 상호협정하에 공유가능하도록 함 (문제발생시 Feed Back가능)
- 축산적용(www.c-haral.com) : 광우병 문제로 실시적용
 - 소비자→ 제품구입→ Lot No.클릭 : 생산자, 도살자, 가공자, 수집상, 품종, 무게, 식별정보 등
 - 축산농가, 동물거래상, 도축장, 가공업자, 유통업체, 소비자 순으로 정보공유
- * 이력추적제 인터넷 적용시 장점 : 다른 국가에 대해 직접 확인가능

○ 정보검색

- 팔레트번호 검색결과(www.Tracefel.com) : 수집상이 조합검색
 - 생산자번호, APC번호, 품질관리정보(인증), 경작면적, 품목, 품종, 파종일자, 전작물, 수확일, 비료사용, 농약사용, 농약일자, 팔레트당 상자수 등
 - 수집상의 접속을 조합에서도 알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가 선과장을 검색할 경우
 - 팔레트번호, 품질, 선과장번호, 생산자번호, 수확일, 파종일 등
 - 농약일자 없음 (수집출하자는 검색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 비밀사항).
- 소비자가 상품검색시 결과 (소의 경우)
 - 생산자, 도살자, 가공업자, 수집상, 축종, 무게 등 확인 가능
- 청과물은 조합에서 가급적 상세정보를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피
 - 축산물에 소비자에 적극적 정보제공 : 광우병 등으로 소비자 입증 필요
 - 프랑스 국내에서 보다 수입농산물 경우 자세한 정보는 더 중요

- INTERFEL 시스템은 소비자가 접속못하는 사업자간 시스템임
 - 시스템장착 및 교육 : 2000유로 (연간사용료는 600유로)

4. 브레따뉴의 이력추적관리

- 이력제 도입상황
 - 96년 광우병으로 이력제 도입 여론 확산.
 - 브레따뉴조합은 92년에 시작하여 98년에 이력추적제를 완성하였음
 - 98년 이력추적제 자율도입이나 2005년 의무도입시 기본은 동일함
 - 기록내용의 대부분은 품질관리용이고, 몇가지만 이력추적목적에 활용
- 농가기록양식
 - 패스포트는 이력추적의 출발이 되는 경작노트로서, 의무사항이고 품질 관리시스템의 기초가 됨.
 - 선과장에는 기록양식과 출하상품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내부감독관 있음
 -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석실로 상품을 가져감
 - 발포장은 일련번호, 비료농약은 코드화
 - 필지번호, 경작품목번호, 품종, 면적, 수확기간, 농약(일자,도스등/면적당)
 - 농약허용 DB구축
 - 날짜, 상품명, 농장(밭)번호, 이유(무엇을 위해) 등의 이 기록은 제공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고 보관/관리하는 것임
 - 물량, 허용치 등 기술적 사항은 조직의 계약책임자가 자세히 작성하고, 유통업체 등과 협상시 준수를 약속하는 것으로 처리.
 - 농약사용은 수확 며칠전 인지만 기록하고, 사용량은 기록안하기로 협상
 - 기본적인 기록사항은 나중에 거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브레타뉴 기록방법 : 40%는 컴퓨터, 60%는 장부기록만 함
 - GAP농가에서의 기록 : 매일 컴퓨터로 5분 정도 기록함
- 전산기록의 장점은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어 일부만 입력하면 나머
지항목이 자동기록된다는 점이지만, 기록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기록된 상세자료는 모두 공개하지는 않으며, 감독관 방문시 제시.
- 기록은 문제발생시 근거로 사용되거나, 이력시스템 작동여부 테스트용

○ 생산자 이력서

- 생산자 고유번호, 지번, 품목 등의 기록내용은 산지→APC센터까지 전달
- 선과장 입고전 팔레트확인, 상품검사, 서류확인
- 상품의 생산이력서는 선과장 입고전 인터넷 또는 서류로 접수
 - 지적No, 지적도, 품목No., 품종, 면적, 수확시작/종료일 등 작성
 - 농약사용여부 : 품목, 시비량 등을 인터넷상에서 입력.

<추적성 확보를 위한 필수기록사항 >
 ① 수확일(재배시작과 종료기간), 농가명, 말번호
 ② APC입고일, 선과일자, 선과장번호, 출하일, 식별번호(로트번호) 등.

○ 이력추적관리 사례

- 농가기록 장부(이력내용) 제출 ⇒ 전산 입력
- 아티초크는 필드에서 직접 출하하는 상품이므로 이력추적 어려움
 -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용이함
- 역추적 위해 상자마다 식별번호 넣어둠 : 고유번호, 상자번호, 선과장
번호 등 중요
- 비포장 품목은 바코드방식 곤란 : 스티커나 식별번호를 박스에 넣어둠
- 팔레트별로 EAN128(GEN코드) 부착 : 팔레트별 바코드부여 (하향
추적)→2개 붙여 1개 출하장보관
- 소비단계에서 이력은 팔레트단위로 부착 경향

- 이력정보공개 (까르푸와 거래)
 - 확인을 원하는 농가에 대한 정보 요구시 조합은 농가명을 공개하지 않음
 - 개인정보 비밀로 까르푸는 모르며, 자동으로 정보 공개시 법으로 규제
 - 소비자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까르푸가 조합에 요구하면 조합은 다시 농가를 확인할 수는 있음
 - 매장에서는 문제발생 상자가 어느 생산자 소유인지 모름
- 이력추적제 지원자금
 - EU에서 이력제를 의무화할 때 시작단계에서 지원
 - 대부분 현장교육을 위한 전문가 교육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
 - 공공기관인 농업회의소가 재배면적 기준으로 일부 지원

* EurepGAP은 유통업체 요구기준이므로 GAP 도입시 농가지원 없음

- 조합이 GAP비용을 유럽연합에 자금신청하여 예산확보하기도 함
- GAP농가의 컴퓨터구입·컨설팅에 사용. 컴퓨터 있으면 현금지불하기도 함

5. 유통업체의 품질관리기준 : EurepGAP

- EurepGAP
 - Euro-Retail Produce Working Group -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을 말하며, GAP범주에서 구축된 품질관리 체계임
 - 1997년 소매업체 주도로 시행되어 점진적으로 인증시스템으로 발전중이며, 민간규범이고, 생산품인증 성격이 강함. 이 조합은 2003년에 참여하였음
 - 대형유통업체 그룹인 Foodplus가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SC(운영위원회)와 TSC(기술위원회)가 관장

- GAP 참여는 다음 유형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옵션 1 : 개인별 참여
 - 옵션 2 : 그룹으로 참여. 브레따뉴 경우(04.10-)
 - 옵션 3 : 어떤 인증과 EurepGAP을 비교해 인정여부 판단 : 2003년 이전

○ EurepGAP의 표준지침

- 시행된 경작내용을 기록과 이력추적 가능 (5년간 보관)
- 품종과 품목 구별
- 지표 토양과 지하토양의 관리
- 비료사용 관리
- 관개 관리
- 작물보호 관리
- 수확시 및 선과장 위생관리
- 수확후 관리
- 폐기물, 오염상태, 재활용 관리

○ 관리기준 등

- 요소별 준수 수준 : 권고사항, 필수사항(붉은색), 중요치 않음 등으로 구분
- 프랑스에서도 GAP해설서 작성을 위한 관련자회의 : 농약잔류량이 어려움
- 잔류농약 기준
 - EurepGAP은 상품의 소비국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05.5)
 - 자세한 잔류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나라별 기상 등 차이). 이 경우 국가별 자체기준과 다르게 되는 사례가 있음

예) 한국인삼이 프랑스기준을 통과해도 독일수출시 기준은 다름.

→ 나라마다 다른 기준설정 어려움 → "수출국 기준"에 따라 시행

예) 애살롯 수출 : 미국기준에 따르면 프랑스 GAP 기준을 따르지 못함

- 이러한 논란으로 기술위원회가 방안수립(생산자, 유통업자, 전문가 협의)
- EurepGAP 210가지 요소중 50%가 농약/비료등 화학적인 내용에 중점
 - 농약사용시 살포일, 품명, 포장번호, 수확머칠진, 살포이유 등 작성
 - 품질관리요원이 세부사항작성 : 사용량은 작성치 않지만 계산서 등으로 판단
 - 잔류농약검사는 연간 800 Lot검사 : 기준치보다 50% 초과시 처벌대상
- ※ 카리브국가들은 EurepGAP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비판하나, 유럽국가는 민간기준이라고 대응함

○ 폴란드, 중국 등은 사회제도차원에서 EurepGAP 어려움.

- EurepGAP은 사회보장제 등으로 정규시간과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노동시간 착취는 어려움.
- 정규직 관리(근로기준 준수 : 출하일, 시간 등)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는 비정규직 관리로 출하시간 유동성가능.

6. EurepGAP 참여농가 사례

○ 농가 현황

- 브레따뉴 지역, Mr. salaun (36세)
 - 30ha 경작(애살롯 4.5ha, 꽃배추 16ha, 아티초크 3ha, 브로콜리 12ha 등)

- 현재 그 지역에서 100여 농가가 EurepGAP 참여 : 자발적 참여
 - 자발적 참여 : GAP 하지 않으면 출하(수출) 어려워 선택아닌 필수로 인식
 - 토마토는 내수시장용이므로 아그리퐁피앙스 준수
- 본인 순수입 : 2만 유로 정도(약 3천만원 정도)
 - 3인 경작 (아버지, 본인, 아들, 비정규직) : 퇴직연금이 많고, 부인은 회사근무
- 인건비 : 프랑스 12유로/hr, 폴란드 2.5유로/hr, 스페인 4유로/hr

○ EurepGAP 실행

- '04. 10월경부터 자발적으로 EurepGAP 시작
 - GAP도입에 따른 가격효과는 가격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
- 스위스 소재 SGS(제3자 인증회사)에서 검사, 인증
 - SGS가 무작위로 검사농가를 선정하여 방문검사 : 10% 표본농가
 - 검사는 4시간에 2농가 정도이며, 비용은 1일 1,000유로 정도임
- 농약횟수는 시즌당 2회 정도이며, 농약안전검사는 적어도 년 1회 정도
 - 농약담당자와 협의한 농약만 사용
- Traceability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나 정리가 어려움
- 농가지도 : 초기에는 지역 농업회의소, 개별적으로 조합기술자가 지도

○ 기타

- 재배포장의 화장실 문제
 - 계약당시 해당지역의 포장거리가 멀지 않아 집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EurepGAP 측과 합의로 문제해결
- 프랑스 농약관리법 관련 : 예외사항은 사전검토하여 적용가능하도록 규정
 - ex) 해당 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지역단체 또는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반영하여 농약관리법에 등록할 수 있음

7. 프랑스협동조합연맹의 품질관리기준 : Agri Confiance

○ Agri Confiance

- 주체 : 프랑스 협동조합 총연맹
- 성격 : 고객요구에 조합원이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 ⇒ 조합과 조합원간 관계를 분명히 하는 시스템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한 인증임. 품질관리를 위한 조합과 생산자간 조직화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함.
- 목적 : 생산농가 능력 향상을 독려
- 도입이유 : 다양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아그리퐁피앙스를 갖추고 있으면 조합이 필요에 따라 EurepGAP 등으로 변경하려할 때 쉽게 전환/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1992년 시행, 2000년 표준규격으로 인정(AFNOR) NF V01-005
- 생산품인증보다는 생산 → 선과장 → 출하와 같은 과정관리에 대한 인증임
- ISO9001과 유사하며, 품질관리 및 친환경관리(ISO14001)체계를 따름

○ Agri Confiance의 특징

- 생산자 → 조합 : 규정된 경작지침준수, 경작/출하예고, 관련정보, 관련 규정
- 조합 → 생산자 : 경작기술 지도, 농자재, 경제경영기술 및 정보 제공
- ※ 생산자-조합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조합이 구매자(도매, 유통업체)에게 신뢰를 주는 농업관리시스템으로서, 이것을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Quali Prince(퀄리프린스)브랜드 작성
- 생산자측 품질기준임.
 - 친환경요소(ISO14000) 도입 : 공기중먼지, 포장상자, 기계청소

기준 등.

- 추적성은 기본이며, 감독회사가 불시점검.
- EurepGAP으로도 쉽게 변경가능하며, 산업안전을 추가
- 공공규범이며, 상품인증 아닌 시스템인증으로서, 향후 향상계획 포함 필수
- 아그리퐁피앙스 자체를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인증

- 2004년 현재 10개 품목분야에 44개 조합인증(청과 6개), 1만4천 농가(청과 179농가)가입하고 있으며, 150개 조합(3만5천 농가)준비중임.
- 협동조합연맹 품질기준으로 부족해서 프랑스규격협회 ANOR에 등록하여 조합인증 이상의 공인품질기준임. 즉, 생산자측 아그리퐁피앙스만으로는 대외적 신뢰성면에서 부족해 (내부 품질관리시스템을 인증받아도 내부관리기준을 구매자가 어떻게 믿는가라는 문제) 깔리프린스 작동 중지
- 앞으로 EU에 품질관리시스템으로 등록예정임.
- EurepGAP은 AFNOR등에 미가입 상태이므로 민간품질관리 성격임. 공식인증 받으면 변경시 각종통제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 고려.
- 외부독립기관인 스위스 제3자 인증회사 SGS를 선택하였음

8. 토마토 생산농장 사례

- 유리온실 재배, 총면적 2.8ha, Agri Confiance 인증 참여
- 생산자는 조합과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ISO9001, ISO14001에 의거 프로세스를 관리
 - 생산농가 능력 저하시 조합에서 교육, 지도 등을 실시하여 품질향상
- 조합이 EurepGAP에 등록시 현재의 Agri Confiance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생산자와 조합은 유통업체 요구에 항상 준비" 상태

- 교육과 ISO14001(친환경요소)를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 EurepGAP(식품안전+작업자안전)에 적용 가능함
- 이력관리의 기본은 농약/비료 관리이며, GMO, 포장재질, 기계청결, 청소시기, 작업장환경 등을 기록관리 (SGS점검)
- 이력추적 관리
 - 바코드 : 선과장, 중량, 등급, 생산자번호
 - 상품입고시 조합이 생산자이력서 대조(확인후 입고)→품질검사→입고(선과장)
 - 선과장의 검사결과를 구매업체에 통보함
- 청결유지 : 구분적재, 음식물 반입금지, 출입문관리, 비료등 사용자재관리 등
- 잔류농약은 외부분석기관 의뢰, 영농일지는 전산 관리, 회계관리 업무

- 토마토상자 : 감독관이 상품 확인후 APC로 운송(선과장 보낼때 바코드 부착)
 - 농가 선과장에서 팔레트당 일련번호 1개 부착, APC로 이력이 연계
 - 내부감독관이 검사확인후 리포트 작성
- 품질/기록검사
 - 내부감독관 : 전수조사. 내부감독관이 검사후 보고서 작성
 - 외부감독관 : 샘플검사. 내부감독관이 작성한 자료를 확인
 - 물, 토양검사 : 내부검사+외부검사

- < APC >**
- 무게측정(샘플-로트당 3상자이상, 문제발생시 10상자 추가확인)
 - 적재 상자(팔레트)중 상이한 상품이 섞여있는 경우 자동으로 처리 어려움
 - 관리절차명시 : 기능별 담당자역할 지정
 - 검사결과는 연말 회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9. 브레타뉴의 품질관리시스템 : Agri Confiance와 EurepGAP

○ 브레타뉴지역에서의 품질관리 배경

-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과물 품질관리를 시작함.
- 과거에는 생산자·구매자간 인간관계가 중요했으나, 상품·프로세스가 중요
- 국내 산지와 유통업체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어 거래시 큰 문제없으나, 국가간 거래가 늘어나 수출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향

○ 품질관리 준수 이전에 농가가 조합에 제출해야 할 의무이행지침서

- 품목별 의무이행지침서는 조합에 가입하면서 농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생, 시비, 농약, 폐기물처리, 허용농약리스트 등이 포함
- 농가는 경작면적, 품목, 종자, 비료, 농약, 수확방식, 관리기술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 양식에 이행지침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명
- 종자는 조합이 선택범위를 제시하고, 비료도 허용리스트와 연중 시기별 사용법과 물량·공급업체를 제시함. 농약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토마토의 경우는 대부분 천적을 사용함.
- 처벌규정 마련 : 100만원 정도가 기본수준이고 여러가지 형태로 부과됨.
 -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50% 이상 초과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상품은 폐기. 통상 적발비율은 1-3% 정도(샘플검사).
 - 브레타뉴조합에서는 연초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예산도 편성함

○ 품질관리시스템간 차이점과 도입실태

<EurepGAP>

- EurepGAP은 210가지 사항을 관리하며(일반GAP기준보다 엄격), 식품

안전에 집중하고 있음 (50% 이상이 농약비료지침 관련사항)

- EurepGAP가입 유통업체들이 모두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하지는 않음
- 까르푸도 모두 퀄리티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 EurepGAP >

Agri Confiance	Eurep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준 ○ 시스템 인증 (품목 무관) - EurepGAP과 다른 관리code사용 ○ 향상계획(Plan de progress) 포함 ○ 공급자규범 : BRC 등과 거래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준 ○ 생산품 인증 (품목별 차이) - 상품code 사용 ○ 요구사항 List(항목중심) 준수 ○ 수요자 요구조건

- SGS 검사관이 방문검사시 아그리퐁피앙스는 시스템검사하고, EurepGAP는 상품코드 사용. 전자는 시스템인증, 후자는 상품인증 성격이 강함
 - 그러나 GAP 요구사항에는 품목별로 매우 시스템적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인증인지 상품인증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음
- 아그리퐁피앙스는 정보교환, 교육방식, 품질관리실천이 중요한 반면, EurepGAP은 특정생산물에 대한 농약, 비료, 기록 등이 핵심
- 아그리퐁피앙스는 공급자기준이나, EurepGAP은 구매자(수요자)기준임
 - CQL(까르푸 퀄리티라인), N.C.등도 구매자측 규범임
- 아그리퐁피앙스는 농가 개인인증이 아닌 조직/단체로 인증받는 것임
- EurepGAP은 생산(경작)단계에 적용되고 APC단계는 HACCP, ISO등이 적용
 - BRC : 선과장 위생이 중요. 선과장 HACCP을 요구
- 브레따뉴 지역에서는 아그리퐁피앙스를 선호함.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품질요구에 대응하여 조정하기 위함

- 공급자(생산자)가 수요자요구에 대해 교섭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음
- 기타 품질관리시스템간의 성격/기준 차이
 - N.C는 영국 유통업체들의 품질기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에 적합한 편.
 - EurepGAP은 노동고용까지 규정하는 등 서유럽형임.

<여러가지 품질규범을 도입하는 이유>

- 꽃양배추 생산량의 50% 수출 : 수입국인 독일/영국이 EurepGAP 요구
- 토마토는 10% 정도 수출, 대부분은 내수시장 : Agri Confiance 중심
- 상추는 맥도날드에 판매하므로 100% EurepGAP : 브레따뉴조합
- 브레따뉴 조합원농가중 30%만이 EurepGAP
- 농가자발적 참여로 조합원중 20% 참여. 참여 독려중 : 향후 80%목표

< : >

구 분	종 류	주 체
강제조항	국가품질규범	국가
	이력추적제	국가
국가인증	FARRE	국가
	라벨후즈	국가
	AOC	국가
	BIO	국가
	적합성(conformity) 인증	국가
민간인증	아그리퐁피앙스	협동조합연맹
	EurepGAP	유통업체
	BRC	유통업체
	NC	유통업체
	CQL	유통업체

10. CERAFEL, ISFEL(농업위원회)의 청과물 품질관리전략

<브레타뉴 지역농업>

- 프랑스 제1의 채소생산지역
 - 채소농가 4,000농가(온실농가 300), 총재배면적 45,000ha(온실면적 550)
 - 가공용 채소생산 농가 2,500 농가, 재배면적 25,000ha
- 고용효과 1,500명
- 채소류 생산량 연 70만톤, 이 가운데 30만톤은 수출, 25만톤은 가공용 생산
 - 모블레지역 협동조합 소속은 4개 조합, 1,800농가.

<3가지 전략 추진>

① 공급관리측면

- 품질관리 + 친환경관리→AgriConfiance로 관리(소비자신뢰)
 - 품질관리 : ISO9000과 유사. 96-97년 작성, 당시는 내부품질관리기준
 - 품질관리 + 친환경 : ISO14000과 유사
- 프랑스협동조합총연맹이 표준기구에 가입, 유럽인증기관에 등록중
 - 1999-2000에 선과장중심으로 아그리퐁피앙스를 국가인증 받음
- 6개 조합 모든 농가 참여 : 의무적 준수 + 자발적 의지 도출.
 - 이행노트작성, 윤작방식도입, 장부기록, 내부감독기관 통제 등을 준수의무

- Agri Confiance : 국가표준규격 + 유럽연맹 표준규격 등록 (2006년)
- COFRAC : 프랑스 인증본부. 국제인증기구
- SGS : Agri Confiance, EurepGAP, ISO 등을 인증해주는 기관
- AFNOR : 국가표준기구 인증기관→프랑스 AgriConfiance 공인인증기관
- EurepGAP : 민간품질관리(대형유통업체 및 단체에서 요구함)

② 수요관리 : 브랜드마케팅, 홍보 등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 소비자는 퀴리프린스는 모르지만, 프렌스브레따뉴라는 브랜드 알고 있으므로 구매자에게는 퀴리프린스를, 소비자에게는 브레따뉴브랜드만 홍보
- 소비자에게 품질관리 홍보는 중요 : 사소한 문제발생시 사회적 파장 큼
 - 리스크관리(커뮤니케이션) 노력 :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가 멀어졌음
 - 농업분야가 아무리 잘해도 소비자홍보 필요 : 농민들의 현장설명방식
- 3가지 홍보유형
 - 프렌스드브레따뉴 : 소비자홍보
 - 퀴리프린스 : 구매자, 수입상사 홍보
 - 농업과 만나세요(CD/비디오) : 학생, 정부, 박람회, 소비자연맹 등 소개용

③ 기술관리

- 국가기술연구소가 협조해야 품질관리시스템 정착 가능

<참고> 프랑스 CERAFEL 조직과 운영

- 시장조절 기능
 - 산지경매장 운영 3개소, 경매장 승인 중개상 50여명 활동
 - 경매장 처리물량 연간 60만톤, 연간 출하금액 3억 유로
 - 회원조합중 2개는 경매장 미이용, 브랜드(Prince de Bretagne)는 공동이용
- 조직
 - SICA de Saint de Pol Leon 협동조합 등 4개 조합과 산지경매장을 이용치 않는 2개조합 및 3개농민단체(FNSEA등) 등이 협회형태로 결성
 - 23명의 이사회, 이 가운데 3명은 중개인
 - 직원수 15명, 이중 9명은 마케팅 전문, SICA와 공동업무 추진
 - 연합 마케팅 감독관 3명, 연구원은 INRA와 공동연구 수행
 - 품목별 20개 위원회 조직, 10개 품목에 대한 품질규정 확립

11. 프랑스 농업회의소 : CERQUA

1) CERQUA의 역할

- 원산지, 상품, 지역적 특성, 관리품질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인증
- 품질관리, 지리적특성 인증 : ①소비자신뢰감, ②농민/가공자 부가가치 향상

2) 소비자 만족을 위한 3가지 특징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 프랑스는 오랜 품질관리역사 있음 : ①품질관리정책 ②지역특성
- 품질관리 목적 : (a)소비자만족 (b)농민/가공업자 부가가치 제고
- 품질관리수단
 - ① 지리적표시제(AOC) : WTO에서 IGP(지리적보호명칭)으로 사용. 포도주 등에 적용
 - ② 라벨루즈(Label Rouge) - 소비자들이 최고의 맛을 판정
 -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낄 정도의 고품질 (프랑스적 표시제도)
 - ③ 유기농(Bio) : 전세계 인증
 - ④ 합리적농업 : 사업자/특징을 지닌 다른 것을 국가가 검증하여 인증 (상품에 적합적 인증)
 - 동일 제품중 다른 제품과 차이가 발생할 때 인증을 해줌
 - ⑤ 상품적합성 인증 : 사업자가 남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 국가가 차별적 특성을 인증. 준민간성격

3) Label Rouge

- ① 농산물/공산물 모두에 적용되며, 기준이 매우 복잡함
 - 전통종자, 전통적이고 고급의 사료, 방목(방사), 도축시 특징 등.
- ② 개별농가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직 또는 협회단체로 구성
 - 조직/집단이어야 하는 이유는 고가판매가 특정층이 아닌 생산자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생산자를 집단으로 유도.

- ③ 특징 : 품질적 측면, 상품에 대한 인증, 명품인증성격, 가격 30%상승
- ④ 신청 : 서류준비 2-4년 소요(우수성 입증 서류준비 : 아주 상세히 기록)
- ⑤ 소비자Test결과첨부(Test는 인증기관→농림부에서 적합성 검정→정부간행물게시→관람자의견 받음(투명성관리)→전문검정기관→라벨과인증에관한국가위원회(CNLC) 송부(생산,소비,유통,가공관계자 모여 인증)
 - ※ CNCL : 전문가 의견 등 토론기관-문제점에 대한 코멘트
- ⑥ 초기에는 프랑스만 인증실시, 현재 스코틀랜드(연어), 노르웨이(새우)
 - 예) 닭 : 소비자가 인증하여 15% 비쌈
 - 대형유통-도살장(가공업자)-생산자(농민단체 조합) 간의 그룹을 형성
- ⑦ 인증 받으면 농림부(경제정책국/식량총국) 및 지방정부에서 전폭 지원
 -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음. 농업회의소가 기술자파견을 지원하는 정도
 - 인증에 합격하면 국가가 홍보지원. 지방정부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
- ⑧ 인증수수료는 없음, 품목별 기준을 가짐.
- ⑨ 인증기간은 국제인증기관에 등록 4년간 유효
 - 1차 인증은 12-15개월 후 점검결과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 검사결과 : 즉시철회, 벌금형, 경고(즉시시정)
- ⑩ 라벨후즈 유통량 : 가금 20%, 육류 5%, 기타는 거의없음. 청과물은 일정치않아 인증어려움. 바이오인증은 3-4%

< CNCL >

- CNCL은 농림부장관령으로 운영. 1개월에 1회 회의
- 3개의 인증기관인 Label Rouge, Bio, 인증회사 인증
-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장관에 통보
- 품목별 핵심 기준치 설명
- 전문가요청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자율, 봉사적)-식품업계 요원들로 구성
- 위원 30명 3년. 월급/수당없음, 자원봉사. 농림부에 사무국 설치
- 라벨분야: 신청서류 검토하여 장관에 제출, 기준설정역할(전문가의뢰등)
- 바이오분야, 인증회사 인정분야

○ **AOC**

- 땅의 특징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으나, 전통과 맛이 일치하는 방식에 따라 얻어진다는 의미에서 '땅의 산물'만이 가질 수 있는 맛의 진정성/전형성의 특징을 품질로 내세움. 자연지리적/인문학적 특성의 결합물로 파악
- 품목 : 포도주, 생수, 유제품, 올리브유, 과일, 야채, 꿀 등. 주로 포도주, 생수 등
- 농가수 : 11만 3천농가('99)

○ **Rabel Rouge(붉은 상표)**

- 정해진 우수품질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표시. 생산·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맛·품질과 관련하여 엄격한 통제 및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렇게 생산품은 일반상품보다 질적으로 높은 품질을 지니고 있음을 인증
- 품목 : 가금류, 토끼고기, 햄소시지,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유제품 등에 적용되며 이밖에도 수산물, 과일, 야채, 기타 가공품 등
- 농림부가 인증하는 상표이며, 6개의 지역라벨이 존재

○ **AQC(상품적합인증/CCP ; Certification de Conformite des Produits)**

- 제품명세서와 일치된 품질을 강조하면서, 공산품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정의된 기술적 규정 또는 기준과 일치된 품질 보증
- 인증관련업체 : 협동조합, 법인경영체, 중소기업, 유통업체 등 200여 업체이며, AQC 인증 정부공인기관은 19개소, 승인건수는 264개소

○ **AB(유기농업인증표시/Agriculture Biologique)**

- 환경중시 생산방식으로 얻어진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생산물의 '자연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 인증
- AB표시 유기생산물 농가들은 자연보호에 대한 노력과 함께 생산활동에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축 후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증
- 현재 1만여 농가가 유기농업을 수행중이며, 5천 5백여 가공업체가 있음

12. 합리적 농업규범 : 프랑스 FARRE 인증시스템

○ 개념

- FARRE(Forum de L'Agriculture Raisonnee Respectueuse de L'Environnement)
 - 프랑스 AOC, Rabel Rouge(붉은 상표), AQC, AB 등의 농산물인증 목표가 고객이라면, FARRE(합리적농업인증)는 국민을 대상으로 함
- 환경, 식량, 위생, 안전, 경제적 수익을 총체적으로 결합시키는 농업경작 방식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 경작 → 동물 → 자연 경관 → 상품·품질 → 경제적 가치 → 환경과 인간 → 글로벌 관계 ⇨ 지속 가능한 농업 지향
 - 수확물 인증이 아닌 합리적 농업의 실천·관리체계이며 특정 품목이 아니라 농산물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스템 인증
- 합리적 농업이란?
 - 잘하는 농가(정리, 정돈, 위생화)를 체계화, 기존농가의 참여화 실시
 - 합리적농업 포럼은 사업자간 참여하는 포럼이라는 것이 특징
 - 생산품 인증이 아니라 실천체계. 시스템에 대한 유일한 국가인증.
 - EerepGAP은 상업적(유통업자요구), 합리적농업은 환경친화적(자발적)
 - 98항목은 EurepGAP과 유사하지만, 나름의 가치와 지향을 포함
 - 실천체계- 관리체계 흐름 : 농산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생산품의 맛과는 무관. 맛, 건강 등 표현 곤란
 - 로고보다 문장으로 정확히 표현

○ 도입배경

- 환경오염 및 식품안전에 문제제기 : 도시와 농촌간의 대화 상실
- 유럽에서 농업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보고서 제출('76)

- '90년대초 식품안전 문제제기, '92년대중반 광우병발생등으로 농식품 신뢰 추락
- '92년 브라질 리오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농업/유기농에 대한 논의 시작
 - 농업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을 찾지못함
 - 농민인식 및 구체적 대응이 중요(친환경으로 전환위한 동기부여 필요)

○ 법적 정의

- 경작관리의 총체적 시스템 구성 : 법 이상의 것 실천
- 환경보존(존중)
- 경제적 수익성이 나도록 해야 함
- 환경보전과 농가수익성(경제성)의 연결, 식품안전에 대한 효과적 대처 동물복지와 농민, 농어촌작업자의 안전에 기여
- ※ 합리적 농업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참여한다
- ※ 합리적 농업이란 위생안전, 수익성, 환경존중, 식량안전을 연합시키는것

○ 목표

- 환경과 수익성 연계가 목표
- 식품위생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
- 동물복지, 작업농민 작업환경에 기여

○ 경고/주의사항

- 강제아닌 농민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 용어 국어사전 등재 : 환경, 식품위생안전, 경제적수익을 연계시키는 농업경작방식이다

○ 법적 규범항목

- 2000. 4. 농림부장관령에 의해 경작자의 이름 표기가능
- 2002. 5. CNNR(합리적농업국가위원회)는 98항목. 도위원회가 추가가능
- 지켜야 할 항목 : 98개 항목중 43개는 법령, 55개는 법보다 상위
 - CNNR 98항목 : 43항목(법에 규정) + 55항목(35항목은 농가에서 이미 시행중, 20항목 향후개선계획 제출).

○ 위원회 구성

- 농민, 농업기관(연구기관·국가기관 등), 농산품 공급업자(사료·자재 등 포함), 농산품 가공업자(농산물 유통업체 등 포함) 등 20여명으로 구성
- 협력 파트너 : 정부 부처, 소비자단체, 환경협회 등 단체

○ 가입현황

-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적극적 참여, 도시인들에게 산지 개방/소개
- '04년 1월 현재 56개 현에 402개 농가가 포럼에 참여 : 10개 농가 진행
- 유럽 6개국 참여(프랑스,독일,이태리,룩셈부르크,스웨덴,영국→공동규범 준비중(Codex가입예정). 6개국중 국가인증으로 해준것은 프랑스뿐임. 영국은 국가인증아님. 연합회는 EISA
- 연합회서 공동규범 작성(2002시작) : 아직 미발간상태

○ 도입과정

- '90년대 : 법 정비전 개별 표시. 99년 초기에는 기준 없었음(개인별 추진)

- '00년 : Paillotin(INHA연구원) 보고서 제출
 - 국가농업지도위원회(CSO)에 합리적 농업 표시에 대한 보호요청
 - 합리적농업에 대한 정의 및 조건 명시(4.28 ; 농림부장관령)
 - 14개 테마 98항목 제정(5.4)
- '01년 : 국회에서 새로운 법령에 합리적농업이라는 용어를 정의
- '02년 : 관련규정 검토 / 정의
- '03년 : 관련부처 협의회 개최하여 법으로 규정하는데 합의
 - 농가·컨설턴트를 위한 가이드 Book 제작, 검증회사 확대(3→15)
- '04년 시행
 - 합리적 농업 인증농가 탄생(3.28)
 - CNAR(국가위원회 구성) 창설(5.2) : 인증 및 98개 항목 기준 설정/연구
- CNCR(도 위원회 구성) :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2)

○ 인증조건

< 14개 테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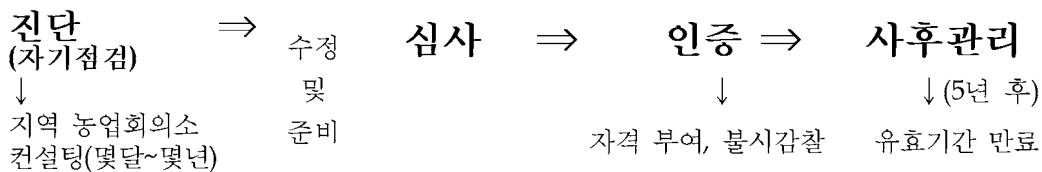
- 동물식별(이표 등), 동물 복지 및 건강, 사료, 위생·청결, 작업안전, 폐기물관리, 토양관리, 유기질비료, 자연경관, 생태계다양성, Traceability 실천, 환경과 농업지식, Irrigation(관개), 경작지 보호
- 1.2.3.13.14 : 총체적 관리 규정
- 4.5.6.7 : 경작을 위한 특별관리 규정
- 8.9.10.11.12 : 축산 관리규정

< 항목별 세부사항 >

- Chap 1 : 경작지와 그 환경에 대한 지식관리. 참여농가에 서적/잡지 등 소개
- Chap 2 : 농가의 기록관리 훈련(실행과정). 작업기록 훈련(이력추적 실천).

- Chap 3 : 농가 건강과 작업환경(안전). 비닐장갑, 마스크착용, 농약관리지침
- Chap 4 : 토양관리(농가의 자가진단 및 관리)
- Chap 5 : 유기·무기적 비옥화<액비시설설치 및 주변오염방지>
- Chap 6 : 경작지 보호(농가 스스로 병충해 관찰, 기준치 열람, 농약·비료 사용법 및 창고 관리사항)
- Chap 7 : 관개시설(Irrigation). 관개수로 계획관리(물의 양, 시기, 시간 관리)
- Chap 8 : 가축 식별(귀 이표 관리 등)
- Chap 9 : 가축 건강. 축사열 약품등 청결관리, 수의사 처방자료 보관 등
- Chap 10 : 가축의 영양공급. 사료관리→적합한 사료 사용여부
- Chap 11 : 동물 복지(쾌적한 환경관리)
- Chap 12 : 위생관리(치즈생산시 HACCP 기준, 외부 방문객 위생복 지급 등)
- Chap 13 : 쓰레기(폐기물) 관리(폐기물 등 분리 수거)
- Chap 14 : 주변경관과 생물다양성 보호(주변의 종 다양보호)

○ 인증절차 (4단계)



- 자기점검(진단) → 지역농업회의소 직원이 현지점검, 교육 등으로 수준향상
- 감사신청 : 준비후 농가가 COFRAC에 등제된 인증회사에 감사신청→CNNR에 보고서제출→CNNR이 인증여부 결정(합리적 농업)
- 인증회사에 인증감사서 제출

- 인증회사는 5년이내 불시감사 실시후 통과시 정기감사로 변경
 - CNNR에 정기보고서 제출(객관적 기술)
- 농가컨설팅은 절대 금함(정기점검시) : 인증회사는 농가와 접촉치 않고 체크기록하여 보고서작성 제출만 함
- 인증수수료는 우선 농가가 내지만 대개 지방정부 등의 기타지원 많음
- 검증기관-인증위원회 제출-문제발생시 전량(전항목) 재실시

○ 인증 비용

- 농가에서 인증비용 부담(경작면적에 따라 차등되나 평균 500~800유로)
 - 한 후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최고 100% 보조하는 자치단체(도)도 있음

○ 국가위원회 업무

- 인증서 발급
- 인증로고 사용 및 광고 방법 등에 관해 규정
- 상표권으로 홍보할 경우 인증받은 농가만 사용 가능
- 합리적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맛”, “향기”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없으며, Traceability 이행은 의무
- ☞ “위 농산물은 합리적 농업으로 인증받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임”이라고 표시

○ 향후 계획(협회)

- 협회차원에서 인증품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통업체홍보 및 프랑스전역에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
 - 가입농가 확대 추진(인증농가를 방문 권장)

- 일관성 · 단순성 추구(기존농업방식 인정, 각종정책과 일관성, 기존 품질관리정책과 일관성유지, 지원가능해야 함)
- 세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박람회 부스 설치하여 홍보할 계획 등
- '05.4월 현재 663농가가 인증 : 8,000여 농가가 인증받기 위해 교육중
- '08년까지 전체 농가의 30%(15만 농가)를 인증 목표로 추진 중

기후장 (후하시 정부)
FICHE D'ENREGISTREMENT ANNÉE

연도 연도

Cerafel Organisation de producteurs 생산과조직명 N° de producteur 생산과번호

Nom du producteur 생산과점명 N° Station APC번호

Parcelle : Nom ou N° 정각리(및리)번호 또는 이름 Surface en ha 면적

Commune 마을이름

Culture		Protection Phytosanitaire			
		Dates	Produits ou auxiliaires	Dose / ha	Observations : Motif, traitement localisé, préventif ...
Variétés	품종	일시	약품명		아유, 2병, 목령 등
N° de lot (plants, semences)	각목, 종자의 lot번호				
Date semis / repiquage	파종/식재일				
Densité	정각밀도				
Précédent	현 필리미터의 전각물(양확물)				
Date de récolte (Début / Fin)	수확일 (시작/종료)				

Fertilisation Apports organiques : mesurez les quantités épandues / parcelle et l'apport en N totale à l'aide des références types ou analyses. Ensuite, calculez l'apport en N efficace correspondant à l'aide du coefficient d'efficacité approprié au type de produit (voir page ou documents chambre).

Date	Type et teneur en N Total	Quantité en T/ha	Apport N Total / (ha)	Coefficient d'efficacité			Apport N efficace / (ha)
				N	P	K	
일시	비료형태	양 t/ha					

Date	Type d'engrais	Quantité en kg/ha	Apport / (ha)		
			N	P	K
일시	비료형태	양 kg/ha			

* Densité : fumier de bovin = 0.75 ; fumier de dinde = 0.5 ; fumier de volaille = 0.33 T/ha

TOTAL N org efficace = ...

Observations relatives aux différences entre le provisionnel et le réalisé :
태양이용량과 실제사용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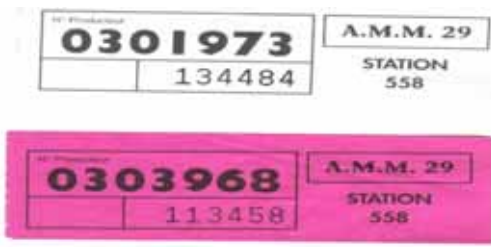
Dates	Autres opérations (binage, irrigation, épandements...)	Dates	Autres opérations (binage, irrigation, épandements...)	Dates	Autres opérations (binage, irrigation, épandements...)
일시	기타 작업 (관개...)				

Je soussigné, certifie sur l'honneur l'exactitude des renseignements portés ci-dessus. Signature 서명

Fait à : 장소 Le : 일시 → 위해 면서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Exemplaire détachable destiné à FOP

< 가가 APC >



<APC에서의 상자 부착번호>



<유통업체 매장의 상자 부착번호>



< EurepGAP 체크리스트 양식 >



< 내부요원에 의한 품질검사 과정 >



< 나무상자에서의 이력추적 식별번호 >

- Phytopole (BRETAGNE) Vegetables and Horticultural Industry
- Environnement-Qualitr 2005, Cerafel BRETAGNE
- CAHIER DES CHARGES EurepGAP, SICA
- Label Rouge, CERQUA
- 기록양식, Cerafel
- agriculture raisonnee, FARRE

1. 이력추적제

- EU에서는 핵심사항인 추적요건을 모든 단계, 모든 품목에서 준수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적 관리를 위한 정보요소와 유통업체 등 시장과의 거래관계에서 필요한 이력관리요소를 고려하여 이력추진 방식 설정
 - ⇒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추적성을 확보한 후, 선택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관리하도록 유도할 필요
 - ⇒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생산현장 입장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관리해야 함
- 이력추적제 추진과정에서 생산자사진, 전화번호, 상세재배정보, 출하일자 등은 공개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 이유도 있으나, 추적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며, 민간차원에서는 이력추적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관심
 - ⇒ 시스템 구축시 기록정보, 관리정보, 공개정보를 명확히 구분관리할 필요
- 유럽연합의 이력추적제는 안전성을 위해 필수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 명확함.

⇒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확보하려는 목표와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은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관련 사업자가 이력추적제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이력추적제는 추적성 확보 및 관리과정에 대한 입증수단이므로 이력추적제만의 단독도입보다는 품질관리기준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프랑스의 경우 이력추적제와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를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사체계와 인증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음

⇒ 이력추적제와 품질관리시스템을 내부검사하고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3자기관 검사/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필요

○ 프랑스의 이력추적관리는 품목 등에 따라 추진방식의 차이가 있음

⇒ 이력추적제 추진방식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지만, 품목특성에 따라 엄격하게 정보관리가 필요한 경우(축산등)와 추적성 확보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청과물등).

2. GAP 등 품질관리시스템

○ 유럽연합에는 다양한 유형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

⇒ 국가인증기준, 민간인증기준(공급자기준, 구매자기준), 상품인증, 시스템인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거래상대자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장에 대응하고 있음. 특히 EurepGAP, BRC 등 민간품질기준에 대해서도 내수시장, 수출품목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자가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상업적 거래관계에서 구매자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품질관리기준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화된 산지조직에서 내수시장 고객과 수출을 고려한 대규모 물량의 판매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

⇒ 06년부터 본격도입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추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진방식,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내외부검사 등 검사장치 및 신뢰성 제고수단이 전제되어야 객관적 품질기준으로서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함

⇒ 거래관계에서 선호되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검사·인증을 획득하는 등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함

5. GAP

(, 2007. 9. 10 ~ 9. 14)



I. 출장개요	211
II. 출장조사 내용	213
1. 일본의 농산물 관리제도	213
2. NPO법인 일본GAP협회	217
3. Moody사(JGAP인증기관)	225
4. 와고엔(인증농가)	228
5. 지바 정미공장	230
6. JUSCO(이온그룹), 센비키야	236
III. 출장자 의견	244
IV. 수집자료	
1. 일본 농림수산성 기초 GAP 체크리스트	347
2.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추진	363
3.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 · 모니터링 중기계획	369

GAP

1. 출장목적

- 최근 EurepGAP와 동등성인정을 체결한 일본의 GAP제도 운영실태 및 소규모 영농에 GAP 적용실태 조사를 통해
- 한국 GAP와 EurepGAP와의 동등성인정 추진을 위한 절차와 필요조건,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
- GAP 인증품 등의 생산, 수확후 관리 및 판매·유통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내 GAP제도 보완 발전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 출장기간 : 2007. 9. 10 ~ 9. 14(5일간)
- 출 장 자 : GAP 업무 관계자 4명(농림부 1, 농관원 1, 인증기관 2)
 - 농림부 : 소비안전과 사무관 조동근, 농관원 충북지원 박정수
 - 인증기관 : 유통공사 차장 이정섭, 이마트 과장 김봉규

3. 출장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국가 : 일본
- 방문기관 : 일본 농림수산업 소비·안전국, GAP협회(JGAP), 전농지바정미공장, GAP인증농가(와고엔), JUSCO

4. 조사일정 및 기관별 주요조사내용

일시		방문기관 (연락처)	기관별 조사내용
9.10(월)	09:25-11:25	○ 김포→하네다	○ 이동 (김포 →하네다 /OZ1025)
9.11(화)	10:00~11:30	○ 농림수산업 소비안전국 - 소비·안전정책과 - 표시규격과 - 생산유통행정규격반 - 생산국 기술개발과	○ 일본의 식품안전에 관한 위해관리 현황 및 방향 ○ 일본의 생산정보공표농산물인증제 추진현황 - 관리전문관 田中岳夫(03 - 3502 - 8111/내 81953) - 과장보좌 荒牧 秀俊 (03 - 3502 - 8111/내 4482) - 생산행정이력계장 小椋 容 (03 - 6744 -2098) - 계장 Naoki TATSUZAWA(03 - 6744 -2435)
	15:00~17:30	○千葉精米工場 (T 043-247-1112) (F 043-244-2755)	○ 이력추적관리, 생산자표기, 견학 등 - 千葉精米工場(지바현) 공장장 富塚 茂
9.12(수)	오전	○ NIHOMBASHI	○ 미시꼬시 백화점
	14:00~16:30	○ JGAP인증기관 (T 03-3669-7435) (F 03-3669-7410)	○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 사의 조직 ○ 신청수수료, 인증심사원 자격과 고용방법 등 ○ JGAP인증 절차 및 심사서류 사후관리 방법 등 확인 - 동경사무소 소장 Kiyo Sakai - 동경, 오사카 운영부장 Motoko Furusawa
9.13(목)	오전	이동(지바현)	○ 동경 → 지바현(09:30 ~ 11:30)
	13:00~17:30	○ 和郷園(와고엔) 영농법인 (T 0478-78-5501) ○ JUSCO(이온그룹)	○ 조직, 연혁, 주요사업 등 일반개요 ○ 채소류 JGAP 실천 현장 확인 - 이사 MASASHI SATO ○ 농산물 유통 상황
9.14(금)	10:00~12:20	○ JGAP (일본GAP협회) (T 03-3251-0831) (F 03-3526-9494)	○ 일본 JGAP협회 설립 배경 및 운영비 조달 방법 ○ 일본의 JGAP 및 증기관 지정 절차 및 현황 ○ EurepGAP과 동등성인증 취득 절차 및 범위 - 사무국장 式田太明(TAKEDA)
	20:05-22:20	일본→한국	○ 귀국(하네다 → 김포OZ1035)

1. 일본의 농산물 관리제도

가.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방문

□ 면 담 자

- 식품안전성 관리 추진 관리전문관 田中岳夫
- JGAP 생산·유통 행정 규격반 과장보좌 荒牧 秀俊
- JAS 생산·유통 행정 규격반 이력계장 小椋 容一, 계장 Naoki TATSUZAWA

나. 농산물 안전성 관리방향

① 일본GAP(농업생산공정관리)제도

□ 추진 배경

- 중국, 태국, 인도, 한국 등 자국의 GAP를 취득한 수입품이 일본시장에 유통될 경우
 -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 농산물이 가격경쟁에 휩싸일 위험 우려
- JGAP인증을 통해 일본의 산지와 생산농가 및 브랜드 보호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는 일본 시장에서 유통을 배제할 수도 있음(일본농업신문 내용/'07.6.21~28)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4년 농림수산성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다품목 생산에 적합한 “일본판 JGAP” 작성을 위한 용역의뢰, '05년도 작성완료
- 2005년 4월 1일 “JGAI협회” 설립
- 2006년 JGAP Ver.2.0에 의한 인증실시
 - 일본GAP협회로 명칭 변경

- 현재 5개의 인증기준을 EurepGAP기준이상으로 보완 통일추진
 - JGAP, 농림수산물, 도도부현, 유통업체, 생협
- '07년도 기초GAP 생산자용 및 산지용 관리리스트 제작배포
 - 시설야채, 노지야채, 과수, 쌀, 보리, 화훼 등 6개 종류
- 2011년까지는 야채·과수와 쌀, 보리 등의 산지를 대상으로 농가에 연수·지도 등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주요한 산지(2000 개소)에서 GAP의 도입을 목표

② 식품의 안전성 관리계획

- 식품안전기준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행정의 기준이념을 책정
-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관리, 리스크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 [리스크 분석] 도입
- 리스크 평가를 행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농림수산물과 후생노동성의 조직을 개혁
- 과학적 분석에 의한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를 고려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1)·모니터링(*2)을 5년간(2007~'11) 실시 계획
 - * 1: 문제의 정도, 또는 실태를 알기위해서 조사
 - * 2: 보완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경향을 파악 위한 조사
- 조사대상 : 첨부

③ JAS 규격 및 생산정보공표JAS 규격

-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는 일본농림규격으로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작성
- JAS규격은 일반적으로 적용범위·정의·기준·측정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은 아래 3가지 종류의 규격이 있음
 - 품위·성분·성능과 품질, 생산방법, 유통방법에 대한 기준

□ JAS규격 4 : 卽席類 등, 특정JAS(地鷄肉 등), 유기JAS(有機農産物, 有機加工食品 등), 생산정보공표JAS(牛肉 등)

□ 생산정보공표JAS 규격 제정경위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생산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소고기 개체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우선 도입함

- 2003.12. 1 : 생산정보공표우육
- 2004. 7.25 : 생산정보공표돈육
- 2005. 7.30 : 생산정보공표농산물
- 2007. 4.25 : 생산정보공표가공식품(두부, 곤약)
- 2007. 2.28 : 생산정보공표양식어 JAS규격은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회의결을 통해 기준제정

□ JAS 인정기관 등록 상황

	등록인정기관수	생산행정관리자수	소분 업자수
우 육	11	32	41
돈 육	10	12	14
농 산 물	9	9	11
가공식품	1	0	0



① 식품안전에 관한 위해관리 현황 및 방향

- 야채·과수와 쌀, 보리 등의 산지를 대상으로 농가에 연수·지도 등을 통하여 전국의 주요산지(2000개소)에 있어 GAP의 도입을 목표
- 과학적 분석에 의한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를 고려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모니터링을 5년간(2007~'11) 실시 계획
- JAS규격 4 : 卽席類 등, 특정JAS(地鷄肉 등), 유기JAS(有機農産物, 有機加工食品 등), 생산정보공표JAS(牛肉 등)

② GAP인증을 민간인증으로 도입한 이유 및 향후 추진방향

- 일본의 농산물 자급률은 40%로 수입농산물로부터 생산농가 및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외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증기관을 제3자 인증기관으로 지정
 - 와고엔은 GAP을 적용한 바나나, 망고를 태국 농장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입 판매 중이며,
- 현재 5개의 인증기준을 EurepGAP기준 이상으로 보완 통일추진
 - JGAP,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유통업체, 생협

③ GAP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례

- 인증대상 품목지정(현재 곡류, 과수 등 50개 품목)
- 기초GAP 생산자용 및 산지용 관리기준 매뉴얼 제작배포
 - 시설야채, 노지야채, 과수, 쌀, 보리, 화훼 등 6개 종류
- GAP시범단지 지정 농가부담액 50% 지원
- 안전성 조사계획에 의한 토양검사 결과 농가 제공

④ JAS규격 및 생산정보공표JAS 인증제 규격 현황

- JAS규격은 일반적으로 적용범위·정의·기준·측정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은 아래 3가지 종류의 규격이 있음
 - 품위·성분·성능과 품질, 생산방법, 유통방법에 대한 기준
- JAS규격 4 : 卽席類 등, 특정JAS(地鷄肉 등), 유기JAS(有機農産物, 有機加工食品 등), 생산정보공표JAS(牛肉 등)

□ 농림수산성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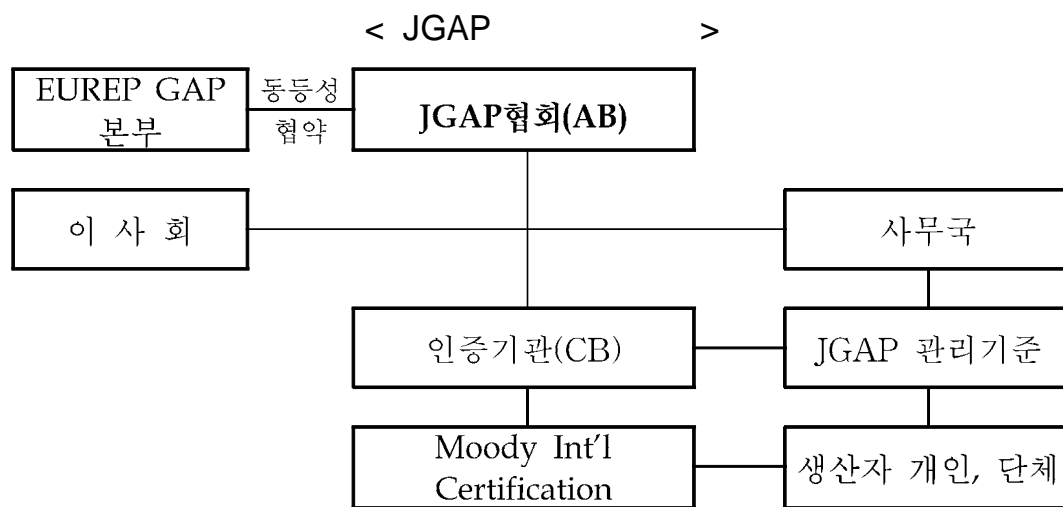
<농림부수산성 정문에서>

2. NPO법인 일본GAP협회

가. 일본GAP협회개요

- 설립 : 2005년 4월 1일
- 명칭 : NPO法人 日本GAP協會(JGAP협회)
- 주소 : 東京都 千代田區 神田須田町 2-23-15 第2芝崎 5층
- 전화 : 03-3251-0831, 팩스 : 03-3526-9494
- 조직 : 사무국직원 7명, 이사 5명, 회원 300명
 - 이사회 : 의사결정기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 GAP인증현황 : 인증기관 1, 인증농가 150개 농장
- 운영비(40백만엔/년) 및 연회비 내용
 - 입회비(25%), 연수비(50%), 국고지원(10%), 기타(15%)
 - 연회비 10천엔/농가,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농가 전체농가수의 90% 회비 납부, 약 5%할인
 - 소매·중식·외식·식품회원 연회비 200천엔
 - 농업관련 기업·단체회원 연회비 200천엔
- 면담자 : 일본GAP협회 사무국장 式田太明(TAKEDA)



나. 일본GAP협회 설립배경·경과

- 2004년 농림수산업성 보조사업(신선농산물 안전성확보 대책사업)으로 지역의 소규모 다품목 생산에 대한 농약살포 피해, 기상조건 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일본판 JGAP”을 작성
- 2005년 4월 1일 “JGAI협회” 설립
- 2006년 JGAP Ver.2.0에 의한 인증실시
 - 제18회 적정농업규범GAP 전국회의 개최, 일본GAP협회로 명칭 변경
 - 초년도는 GAP협회와 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인증실시

- 2006년 11월 NPO법인 설립 완료
 - * NPO :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인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
- 2007.8 JGAP Ver.2.1에 의한 EurepGAP 동등성 인정

다. 일본GAP인증 관련업무

① 인증관련 일반사항

- 농가는 일본GAP 인증제도 5개 중 선택
 - JGAP,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유통업체, 생협
 - * 5개의 관리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11년까지 통합 추진
- 관리기준 : 이력추적, 농약, 묘목관리 등 128개
- 인증대상 : 개인 또는 단체
- 관리기준 소유 및 발급 : 농림수산성, 일본GAP협회 등
- JGAP인증마크 표시 : 불가(유럽겍과 동등성 인정조건)
- 신청 대상자 : 생산자 개인 또는 단체
- 인증대상 품목지정(현재 곡류, 과수 등 50개 품목)
- 인증절차
 - 신청 → 견적산출 → 심사계약 → 현장실사 → 인증심사 → 인증서교부
 - 유효기간연장

② 일본GAP인증에 대한 관련자 역할

□ 정부지원 내용

- 인증대상 품목지정(현재 곡류, 과수 등 50개 품목)
- 기초GAP 생산자용 및 산지용 관리기준 매뉴얼 제작배포
 - 시설야채, 노지야채, 과수, 쌀, 보리, 화훼 등 6개 종류

- GAP시범단지 지정 농가부담액 50% 지원
- 안전성 조사계획에 의한 토양검사 결과 농가 제공
- 2011년까지 2,000개 산지 보급을 위해 농가교육비 지원

□ 일본GAP협회 업무

- 인증실적 : 150개 농장
- 회원등록 관리, 인증기관 심사비용 정산
- 인증 희망농가 교육 및 연수계획 수립 추진
- JGAP 관리기준의 수정 보완업무
- 인증기관 지정 관련검토 및 심의결정
 - 인증기관 1개소 :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
- 유럽겍과의 동등성 인정 추진
- JGAP 인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
- 인증서 발급 및 인증농가에 대한 심사보고서 관리

□ 일본JGAP협회 GAP인증을 위한 농가 이행사항

- 참여성격 : 회원 가입과 회비납부 등 자율적 참여
 - 농가는 JGAP 협회비납부 : 10천₩/연
- 인증수수료 : 개인(50천₩), 단체 (50천₩×농가수)×90%이상
-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비용 : 농가부담
- 토양검사 결과 : 정부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로 대체

□ 일본GAP협회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

- 인증기관 성격 : 제3자로 국제적 전문인증기관
 - 지정조건은 ISO 65에 의거 제품인증자격 소지자
- 지정근거 : 일본GAP사무국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정
- 지정업체 : 글로벌 인증사 1개소(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GS는 지정 검토 진행 중

- 심사표본 : 전체 농가의 20%
- 심사원수 : 법적제한 없이 계약직으로 별도채용
 - 심사원 6명 배치 : 동경 1, 이바라키 4, 도쿄 1, 지바 1
- * **Moody사의 심사원은 ISO 65에 의거 교육이수자 채용**
- 심사원자격 : 일본협회주관 3일 연수 및 심사보조 2회로 취득
- 심사수당 : 계약직으로 시간 수당지급
- 심사횟수 : 농가별 4시간 이내 범으로 규정
- 지원보조 : 출장비, 인건비 등을 협회가 지급
- 경영수지 : 비용을 산출하여 현상유지

③ EurepGAP 동등성 추진

□ 동등성 추진배경 및 경과

- 2004년 농업조합법인 화향원(和郷園)이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30백만엔)으로 일본GAP의 관리기준 작성을 위한 용역 수탁
 - 2004년도 아오모리현의 수출용 사과 재배농가 片山壽伸씨가 EurepGAP 관리기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인증신청
- 2005년도 片山壽伸씨와 木内博一씨가 EurepGAP 인증
 - 일본판 JGAP작성완료 및 보급을 위하여 JGAI협회설립
- 2006년 4월 27일
 - EurepGAP 최고책임자를 초청 일본의 GAP보급에 대해 논의
 - JGAP과 EurepGAP이 정식으로 협조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표명, 양자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속
- 2006년 5월 JGAP의 영어 번역 개시
- 2006년 8월
 - 일본GAP협회가 EurepGAP본부에 스텝을 파견하여 동등성 확인 작업을 개시

- 2007년 8월 AMCL approach(Approved Modified CheckList approach) 방식의 동등성 인정. 단 JGAP마크 사용 금지조건
- * EurepGAP의 동등성인정은 [농장관리의 기준]과 [심사/인증의 룰] 3개 요소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진행해야하나,
- * AMCL approach 방식이란 동등성 인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수단 으로 EurepGAP측이 제안하여 [농장관리의 기준]만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식임.

□ 일본 JGAP관리기준의 특징

- 인증관리기준을 내수와 수출용으로 구분 적용
- EurepGAP과 AMCL approach 동등성 인정내용
 - 농장관리기준에 한하여 동등성 인정협약 체결
 - 운영/심사/인증의 규칙에 대한 동등성은 EurepGAP 인증에 소요 되는 비용이 많아 수출용에 한하여 추후 검토 예정
- 인증서별 관리기준

구 분	JGAP심사/인증범위 1	JGAP심사/인증범위 2
이용 농장관리기준 * 동등성인정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청과물 <u>제2.1판</u>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청과물 <u>제2.1판</u>
이용 심사/인증의 룰 * 동등성 미 협약	JGAP <u>운영/심사/인증의 규칙</u>	<u>General Regulations</u> <u>Fruit and Vegetables</u> Version 2.1 - Oct 04)
인증서 발행	JGAP인증서 발급	JGAP, EurepGAP 인증서 발급
인증대상	내수용	수출용(과수)

NPO (GAP)

① 일본의 JGAP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실태

-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범위 및 EN45011 근거
 - ☞ ISO65에 의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국제적인 인증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설, 장비, 검사능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며, JGAP사무국에서 심의하여 결정
- JGAP인증기관 사후관리 요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및 처분절차
 - ☞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인증 기관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② 인증기관 운영비 및 인증심사비용 관련

- 인증기관 운영, 인건비 등비용 확보방법 및 국고지원 내용
 - ☞ 입회비(25%), 연수비(50%), 국고지원(10%), 기타(15%)
 - 연회비 10천엔/농가,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농가 전체농가수의 90% 회비 납부, 약 5%할인
 - 소매·중식·외식·식품회원 연회비 200천엔
 - 농업관련 기업·단체회원 연회비 200천엔
- 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 ☞ 인증기관 지정 신청수수료는 없음
- 인증농가 신청 비용 : 신청수수료, 심사원출장비, 농약검사비 등
 - ☞ 개인(50천¥), 단체는 90%이상이며, 심사원 출장비 협회 부담

③ 일본GAP와 EurepGAP 동등성 인정 추진

- 동등성인정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
 - ☞ 중국, 태국, 인도, 한국 등 자국의 GAP를 취득한 수입품과의 경쟁

력 확보

- ☞ JGAP인증을 통해 일본의 산지와 생산농가 및 브랜드 보호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동등성인정 추진 주체, 주요 절차
 - ☞ 일본GAP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절차는 유럽갭 동등성 벤치마킹 절차 (신청, 사전기술검토, 동등성 검토, 기술검토, 방문평가)와 동일
- 동등성인정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 및 해결 방법
 - ☞ 일본의 동등성은 농장관리기준에 대하여 인정 협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동등성 인정이 되지 않아
 - ☞ 일본GAP인증과 EurepGAP인증 제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마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 초래를 우려하여 유럽 갭 위원회에서 마크사용 금지 조건으로 동등성인정
- EurepGAP와 동등성인정 추진에 따른 인증농가의 추가비용
 - 동등성인정으로 EurepGAP본부의 납부기준과 동일
 - ☞ 동등성 인정 최종 계약체결 후 EurepGAP 사무국에 3,500유로를 지급해야 회원자격획득
 - 301 ~ 1,000농가의 경우 인증수수료 추가 납부(5 EUR/농가)
- EurepGAP를 위한 국제기구 IAF 및 MLA 가입여부
 - ☞ 동 국제기구에 가입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행으로 가입하지 않고 효과 거양
- GAP인증에 대한 홍보 및 향후 GAP 확대계획
 - ☞ 2011년까지 전체 농가를 상대로 홍보, 주요산지 2,000개 인증
- 일본에서 GAP인증을 위해 가장 어려운 부분
 - ☞ 전산정보 입력, 생산정보 기록 메모지 전달 법인이 대행 입력

□ 일본GAP협회 방문 사진



<JGAP 사무실 입구 간판>



<JGAP 직원과 기념촬영>

3.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JGAP민간인증기관)

- 설립 : 1911년(본사 런던)
 - 1948년 일본에 세계최초 해외지사 설립, 현재 60개국에 지사
- 주 소 : 東京都 中央区 日本橋 堀留町1-4-2 日本橋 빌딩4층
- 전 화 : 03-3669-7408, 팩스 : 03-3669-7410
- 상담자 : 동경사무소 소장 Kiyoko Sakai
동경, 오사카 운영부장 Motoko Furusawa
- 인증심사원 : 6명(영업사원 4명 별도)
 - 심사원 6명 배치 : 동경 1, 이바라키 4, 도쿄 1, 지바 1
 - * Moody사의 심사원은 ISO 65에 의거 교육이수자 채용
- 주요 인증업무
 - ISO 9001, 14001 :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시스템
 - AS 9100 : 항공기 제조 및 부품 기업 관리 시스템
 - ISO/TS 16949 : 자동차 부품 공급자의 품질관리
 - HACCP : 수산물 안전성 관리
 - JGAP 인증기관 지정
- 인증기관 성격 : 제3자로 국제적 전문인증기관
- 지원보조 : 출장비, 인건비 등을 협회가 지급
- 경영수지 : 인건비·출장비용을 협회와 협의 산출로 현상유지

- 심사원 채용방법
 - JGAP협회 주관 교육(3일간) 수료한 자에게 심사원 자격을 부여
 - 심사원은 2회 인증심사에 참여하여 연습한 후 정심사원으로 활동
 - 심사수당 : 계약직으로 시간 수당지급
 - JGAP협회에서 '07년 6월에 심사원에게 심사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 인증비용
 - 신청수수료 : 개인당 50천엔, 단체는 개인 농가수 기준의 90%
- 인증 심사대상 및 시간 : 단체의 경우는 신청농가수의 20%의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하되, 농가별로 4시간 이내에 심사
- GAP인증현황
 - '06년 : 100건(JGAP협회와 합동으로 인증)
 - '07년 7월 : 개인 20건, 단체 30건(독립적으로 인증)
- 인증농가 사후관리
 - 인증 후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한 1년 마다 인증을 갱신하면서 재심사

□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 방문 사진



<회사 간판>



<회사 기념촬영>



<질의응답>



<직원과 기념촬영>

□ 한국GAP과 JGAP 비교

구분	한 국	일 본		
목 적	국제적 관리기준 안전농산물 생산(GAP)의 생산능가 보급, 고품질 안전수출농산물 생산지원	GAP를 취득한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확보 및 일본의 산지, 생산 능가, 브랜드 보호		
인 증	대상품목	식량, 채소, 과수, 생약 등 100	곡류, 과수 등 50품목	
	관리기준	110개	128개	
	인증절차	신청 - 서류심사·접수 - 심사계획통보 - 토양·수질검사 - 현장심사 - 농약검사 - 인증심사 - 인증서교부 - 인증 품사후관리	신청 - 견적산출 - 심사계약 - 현장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교부 - 연장	
	관리기준(소유자)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일본GAP협회	
	신청유형	개별농업인, 농업인단체	개별농장 또는 집단농장	
	인증마크	포장지 표시 또는 스티커 부착	표시하지 않음, 동등성 인정조건으로 JGAP 마크부착 불허	
	인증서 종류	GAP인증서	JGAP(운영/심사/인증규칙) JGAP, EurepGAP(동등성 인정)	
	인증서연장	인증유효기간 연장요청 시	인증유효기간 연장요청 시	
	인증서발급	인증기관명의(유효기간1년)	일본GAP협회 명의(유효기간1년)	
	인증실적	7,743농가('07.9)	150개 농장('07.9.12일 현재)	
농 가 관 련	이력등록	농관원 등록	산정보공표AS인정(농립수산대신)	
	참여성격	가격보상에 관심	회원 가입비 납부 등 자율적 참여	
	신 청 수 수 료	신청 건별 5만원	개인 : 50,000¥ 단체 : (50천¥×농가수)×90%이상	
	수질검사	농가부담('07 일부 정부보조)	농가부담(농가가 검사 의뢰, 결과제출)	
	토양검사	농가부담('07 일부 정부보조)	농가부담(정부가 기초조사 자료제공)	
	제품검사	농가부담('07 일부 정부보조)	농가부담(농가가 검사 의뢰, 결과제출)	
	회 비		연회비 10,000엔/농가	
	출 장 비	농가부담	JGAP협회 지원	
	인 증 기 관	성 격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대학 등	제3자 국제적 전문 인증기관
		지 정	정부주도(농산물품질관리원)	일본GAP협회(제품인증자격 소지자)
지정근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본GAP협회 사무국기준	
지정 수		농유공 등 29개소(9월 현재)	1개소(Moody Int'l Certification)	
심사원 수		법규상 5인(상근2명 포함)	법적제한 없이 별도채용	
심사자수당		고용채용 급여지급	계약직으로 시간 수당지급	
심사원교육		농진청 40시간교육 이수	협회주관 3일 연수, 심사보조2회	
표본비율		10% ~ 54%	20%	
심사횟수		현장심사, 사후관리 포함 3회	1회(농가별 4시간이내 완료/법규정)	
지원보조		30,000원/인증농가(정부)	출장비, 인건비 등(협회)	
경영수지	적자(인건비 부담)	현상유지 (ISO,HACCP 수익)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법 (농관원 지정)	별도의 지정절차 없고, 관리기준에 포함하여 인증기관에서 동시 검사		
제제조치	시정명령, 표시정지, 인증취소	시정명령		
EU동등성인정	검토 중	JGAP Ver.2.1(농장관리 기준에 한하여 동등성 인정 '07.8)		

4. 와고엔(인증농가 법인)

가. 일반현황

- 설립 : 지바현의 90농가가 16년 전 설립(법인화는 9년 전)
 - 조직은 생산자 그룹과 이사회 그룹으로 구분되어 운영
- 취급품목 및 매출 : 45종의 야채로 연간 약 15억 엔의 매출
 - 주로 환경적인 농법에 의한 eco농산물(친환경농산물)을 28개 품목 생산

나. GAP인증 관련

- 인증 : 일본에서 처음으로 2004년 11월 EurepGAP 인증을 받음
 - 인증동기 : 세계적인 생산기술 습득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
 - * 와고엔은 '06년부터는 EurepGAP 인증비용 과다(50만엔)와 수출을 하지 않으므로 EurepGAP인증을 받지 않음
- 국고지원 : 2004년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EurepGAP인증을 받고, JGAP 협회가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JGAP협회는 농림수산성으로부터 2004년 와고엔, dole(KIFA), AGIC 3개 회사가 약 2,000만엔의 용역비를 받고 2006년에 설립
- 외국의 GAP 농산물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수입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GAP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함

다. 인증품 생산, 출하실태

- 출하형태 : 농가 개별적으로 직판, 포장, 절단 포장 등 3가지 형태
 - 판매 등의 총괄적인 사업은 법인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 해외생산 : 와고엔에서는 태국에 망고, 바나나 농장을 30ha 규모로 운영
- 출하처 : 생협, 슈퍼, 외식업체 등 50여 개소
 - 생협에 전체의 45%를 출하
- 주요품목 : 오이, 오박(깻잎 계통), 상추, 무, 토마토, 당근 등

- 생산정보 기록·관리
 - 농가 스스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매일 입력 내용을 본부로 전송
 - 본부에서 매일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영농정보를 제공
- 잔류농약검사 : 3단계로 검사
 - 자사에서 간이분석, 대학에서의 정밀분석, 외부전문기관에서의 분석
 - * 안심, 안전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약사용에 틀림이 없도록 관리자들이 특별히 관리

※ 와고엔의 활동이념

- 생산자의 자율
 - 자신들의 손으로 생산한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 건강
 - 누구라도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제일의 사명임
- 환경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차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산업으로의 계속이 아닌 생명의 존속이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
- 조화
 - 거래처, 소비자 그리고 일본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중의 농업 관계자와의 교류를 중요시하고 조화된 관계를 목표 함

라. 기타 사항

□ 지바 에코 농산물 생산 유통

- 와고엔에서는 지바현이 권장하는 에코 농산물 인증재배를 적극 추진
- * 에코 농산물
 -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을 절반 이하로 하고 있으며, 재배에 관한 정보관리가 잘 이행되는지를 관리
 -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 등에 대해 지바현이 설계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재배 계획부터 시설까지 지바현이 직접 조사하여 인증한 농산물

□ 와고엔 방문 사진



<와고엔 간판>



<와고엔의 설명>



<와고엔 간판>



<와고엔의 농장>



<와고엔의 농장>



<각종 기자재 보관>

5. 전농 펄라이스동일본(주) 지바 정미공장

가. 일반현황

- 전농 펄라이스 센터 : 일본에 5개 공장
 - 동경 2, 지바, 사이타마, 가나마나현에 각 1개소
- 공장설립 : 2003년
 - 농림수산성에서 7년 전 준비하고, 6년 전 농협참여

○ 지바공장 개요

- 공장면적 : 부지 5,406㎡, 건물 2,723㎡(연면적 7,587㎡)
- 공장 직원 : 약 40명(정사원 15명, 파견 10명, 위탁사원 15명)
- * 지바공장 제조본부 공장장 : 冨塚 茂(부총 무, 현황설명자)
- 연간 정미량 : 3만 5천톤(지바산 현미가 50%)
- 정미공장의 특징
 - HACCP의 생각과 방법을 도입하여 청결한 공장
 - 고도의 FA시스템으로 제품부터 반입원료에까지 이력추적관리를 실현
- 설비개요

설비	능력	설치수량	비고
정미분기	150마력 10t/h	1	
	75마력 5t/h	1	
	25마력 1.5t/h	1	
무세미가공기	5t/h	1	
광학식선별기	12t/h 200ch	1	
	7.5t/h 120ch	1	
	3.6t/h 40ch	1	
	10.5t/h	7	
	1.5t/h	1	
	5t/h	1	
정선기	25t/h	2	
	10t/h	1	
	5t/h	1×2	
	3t/h	1	
이물제거장치	30t/h	2	
	24t/h	2	
	10t/h	8	
금속탐지기	840대/h	5	
	10t/h	1	
	600대/h	1	
	20t/h	1	
포장설비	840대/h	5	
	600대/h	1	
	8t/h	1	
	12t/h	1	

나. 쌀의 가공시설관리, 품질관리 등

□ 가공시설 관리

- 전 공정을 컴퓨터로 제어 관리
 - 정미 작업시 이물 유입방지, 용이한 청소관리, 주문 생산에 대응
 - 컴퓨터로 생산 관리하므로 문제점 발생시 원인 파악 및 어디서 가공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음.
- 공기를 이용한 정미 이동으로 기존의 시설보다는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

□ 품질관리 및 청결상태

- 이물질 분리, 가공을 철저히 이행
 - 이물질 분리 가공과정은 8회, 무세미 가공과정은 10회
 - 청결관리구역을 설정하여 먼지, 이물질 혼입을 최대한 방지
 - 공장내부 바닥은 에폭시 처리로 먼지 등 이물질 발생 방지
-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후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음.
- 자체 실험실을 운영
 - 쌀 견본별로 취사를 하여 식미 등을 검사
 - 쌀 약 100립을 물에 20분 담근 후에 10개 이상 갈라질 경우 불합격

다. 이력추적관리 및 출하

□ 이력추적관리 체계

- 외부 주문이 컴퓨터를 통해 접수되어 정리되므로 로트관리가 가능
- 입출고의 관리가 컴퓨터를 통하게 되므로 출하된 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공장에서 가공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쌀 포장재에 로트번호를 표시하여 언제·어디서 가공하여 출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로트번호와 관련한 컴퓨터 데이터는 2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기록 내용을 출력하여 관리
- 로트번호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로트번호 “CHAHDAABBE” 중 “CH”는 지바 정미공장을 나타내며, “AHDAABBE”는 정미공장에서 부여하는 관리번호로 도정일자 등의 숫자를 문자로 암호화하여 표시한 것임.
- 로트번호 이외에도 식별번호를 숫자 6자리로 부여하고 있음. 식별번호는 생산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지역농협을 나타내며, 인터넷(www.kokken-kome.info)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출하방법

- 쌀은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문을 받은 후 가공작업을 함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우수 브랜드와 일반품을 섞어서 출하
- 포장단위 : 2kg, 5kg, 10kg 등으로 소포장임
- 출하품의 견본을 3개월간 보관

라. 지바 정미공장 가공개요

□ 가공공장 공정도



□ 가공과정별 주요 공정

○ 1층 : 하수·출하

- 하수호퍼(현미투입구) : 투입시 쓰레기 또는 먼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60cm 정도의 그물이 설치
- 제품출하구 : 출하의 효율화를 위해 트럭용 플랫폼을 4개 설치
 - 고속 셔터를 설치하여 새나 벌레의 투입을 방지함.
- 파렛트 리프트 : 2층에서 소포장한 상품을 파렛트 단위로 1층에 반송

○ 2층 : 포장

- 포장기 : 포장기의 바코드 리더기가 있어서 내용을 체크한 후 포장 작업
- 금속탐지기, 계량기 : 금속 조각, 내용물 확인
- 에어샤워 : 포장실(청결구역)에는 에어샤워기를 거친 후 입실

- 3층 : 정미가공 · 정미정선
 - 정미기 : 25마력의 작은 로트용 정미기
 - 에어슈터
 - 이물선별기 : 근적외선으로 쌀의 성분 이외의 이물을 분리해내는 장치
 - 색채선별기 : CCD카메라로 광의 투과율을 이용 이물 선별
 - 무세미 가공장치 : 5톤/h의 능력을 가진 무세미 가공설비
 - 공기운송 : 송풍작용으로 쌀을 이송하는 설비로 이물 유입 방지
- 4층 : 원료 · 정미관리
 - 반입한 현미 · 도정 후의 정미, 제품을 구분 관리함
- 5층 : 정선
 - 로터리 시프트 : 흔들어서, 미립보다 크고 작은 이물을 걸러냄

□ 지바 정미공장 방문 사진



<중앙제어실>



<품질검사실>



<청소도구 등 보관함>



<포장재 표시사항>



<화장실의 청결상태>



<공장 바닥의 청결상태>

6. JUSCO(이온그룹), 센비키야(고급과일 전문점)

가. 일본 농산물 유통 변화

- 농산물 유통은 산지 협동조합과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농산물 유통경로 : 생산자 → 도매시장 → 소매업자 → 소비자
- 출하단체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종합농협(JA) 임
- 그 외 생산자와 대형유통업체의 직거래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물량이 70% 대형할인점
- * 소매업자를 통한 직거래 물량이 30% 정도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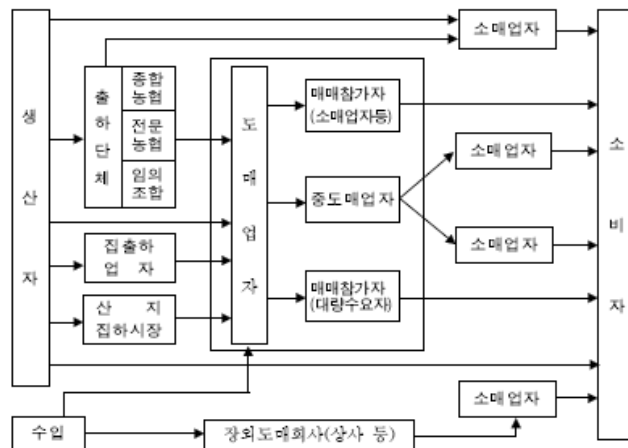


그림) 일본의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경로

- 일본 농산물 유통체계는 소비자 니즈 및 소비지 유통업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 생산자나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추세
- 유통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안심, 안전한 맛있는 상품 만들기에 가장 우선순위
 - 생산된 상품의 보다 효율적,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품목과 산지의 특수성을 살린 상품에 판촉 강화, 생산자와 파트너 쉽으로 연계 운영 ex) 이온그룹의 미니스탑 라이스 현황(계약재배).

Production regions	Rice kinds	Rice used to make...
Bifuka-cho, Nakagawa-gun, Hokkaido	Hakucho-mochi	Red rice, rice with red beans
Kamifurano-cho, Sorachi-gun, Hokkaido	Kirara 397	Sushi, etc.
Suburbs of Morioka-shi, Iwate	Hitomebore	Boxed meals, rice balls in Tokai region and west
Hanamaki-shi, Iwate	Hitomebore	Boxed meals, rice balls in Tokai region and west
Mogami & Okitama regions of Yamagata	Akita Komachi, Haenuki	Boxed meals, rice balls in Kanto region and north
Nasu region and Hagano region of Otawara-shi, Gunma	Koshihikari	Boxed meals, rice balls in Tokai region and west
Joso Hikari region of Ibaraki	Koshihikari	Boxed meals, rice balls in Kanto region and north
Koga region of Koga-gun, Shiga	Kinuhikari	Sushi, etc., in Tokai region and west

- 식품의 안전성에 관심고조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 생산자 단체 등에서 독자적인 인증 및 상품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통업체도 자사 브랜드(PB)를 활용하여 상품 차별화에 주력

나. 이온그룹(舊 자스코)

□ 일반현황

- 설립년도 : 1926년
- 이온그룹은 중국, 대만 법인을 포함 157개 자회사 로 구성
- 형태별 매장수(06년 2월 기준) : 매장규모 및 판매상품 형태에 따름
 -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 683개
 - Supermarkets - 623개



- Supercenters - 9개
- Department store - 2개
- Convenience store(프랜차이즈 포함) - 2,854개
- Drugstores - 2,08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매출액(2006년 2월 기준) - 4조4천억 엔
- 2001년 자스코에서 이온으로 사명 변경 현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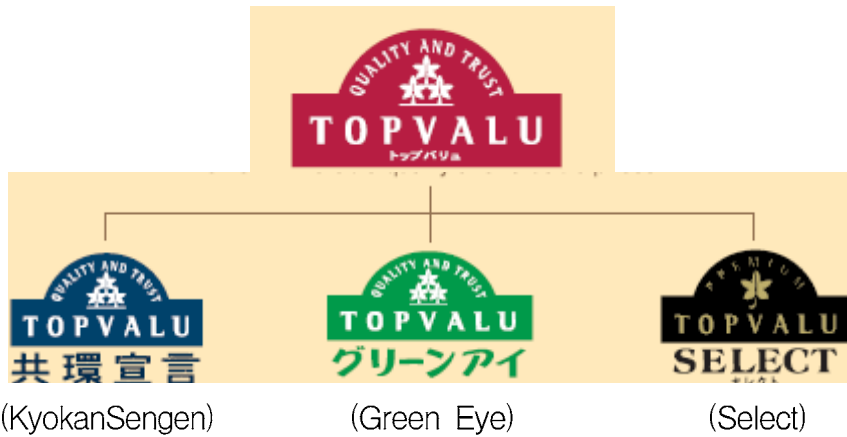
□ 매장운영 특징

- 테넌트(임대매장)와 자스코와 결합된 근린형 쇼핑센터로 매장이 구성되어 있음.
- 테넌트의 경우 스포츠, 서점, 의류 등 가족형 매장이 주를 이룸
- 구매시점 맞게 포커스를 둔 상품 운영을 하고 있음
(ex : 포도를 가장 맛있을 시점에 판매- 당도관리표)
- 벽면 쇼케이스, 냉장 평대 쇼케이스, 일반평대 등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으며 크게 청과, 야채, 편이식품으로 구분하여 진열
- 야채는 구근류, 양념류, 엽채류 등을 구분 청과의 경우 수입과일, 국산과일, 조각과일등으로 구분하여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여 운영
- 특히 국내 할인점 보다 편이식품(샐러드, 조각과일)를 확대 운영
☞ “작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일본 농산물 추세 변환



□ 이온그룹의 자사 브랜드(TOPVALUE)

- JAS 인증은 포장지에 표시하여 운영하되, JAS 인증품 보다는 자사의 PB상품 (TOPVALUE)을 중점 운영.
- 자사 상품에 환경친화성, 안전성, 품질 등을 고려하여 TOPVALUE 라는 PB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가지 종류로 구성.
 - * TOPVALUE Select : 최상의 재료를 이용한 최고의 품질로 상품 구성
- TOPVALUE 운영형태
 - TOPVALUE Kyokan Sengen ⇨ 환경친화적 상품으로 구성
 - TOPVALUE Green Eye ⇨ 농수축산물에 위해적 요소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구성



- 06년 2월 기준으로 3,100 종류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
- TOPVALUE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조건을 충족해야함
 - 고객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
 - 쉽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것
 - 고객에게 만족을 보장할 것

□ 이온그룹 식품 안전성 관리



- Green Eye라는 자사 브랜드로 시판되는 농산물 안전성검증
- Green Eye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인공적 색소, 방부제, 감미료 등을 일체 사용하지 말 것
 - 생산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등 화학물질 등이 최소 사용

- 최대한 자연상태로 만들어져 가능한 최상의 맛을 유지
- 환경 및 생태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정규범으로 생산
-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자발적으로 관리

○ Green Eye 브랜드 상품 운영 예시

-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양조사 등으로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는 지역과 계약재배 하여 이온회사에서 허용한 최소량의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도록 유도

Ex: 미니스탑 라이스 등

- 육류의 경우 유전변형으로 생산된 품종이 아닐 것,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동물성 사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장과 직접계약을 하여 Green Eye 브랜드를 사용운영

Ex: 타지매니아 소고기 등

□ 이력추적 관리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온그룹은 Farm Product Client Quality Control Standard를 도입하여 생산에서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사용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을 통제하고 이를 상품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
- TOPVALUE Green Eye 브랜드 상품은 상품 표면에 QR코드를 인쇄하여 핸드폰으로 스캔할 경우 소비자에게 생산자 정보,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등의 정보를 제공



- JAS 인증품 이력 추적은 현재 축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생산자 정보, 사료 및 농약 등 생산품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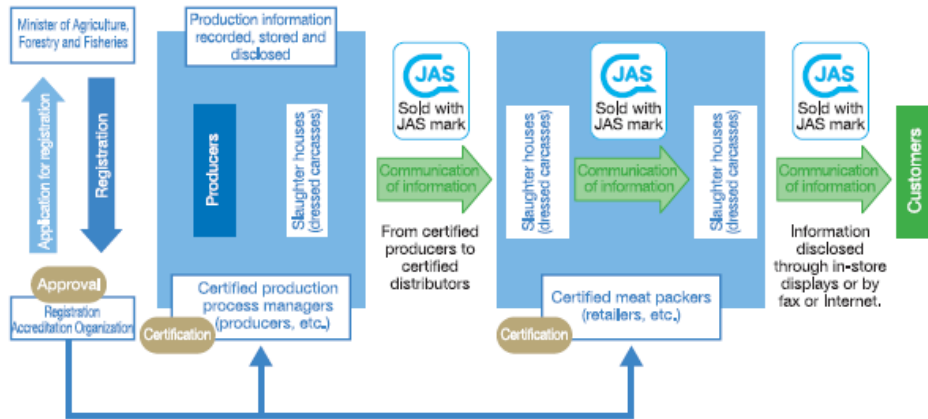


그림) JAS 인증 이력추적 정보제공 현황도(이온자료 발췌)

다. 센비키야 (고급 과일 전문점)

□ 일반현황

- 1834년 현재 일본의 닌교초에 「水菓子」 라는 과일점포 개설
 - 2대째부터 영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고급상점으로 전환
- 1881년 분점 개설(쿄바시 센비키야)
- 1925년 긴자마츠야에 후르츠 파라(후루츠 파라다이스) 출점
- 1971년 (주) 디 메테르 센비키야 발족
 - 후르츠파라 & 레스토랑, 연회장, 제과공장의 경영 등으로 일본 최대의 종합과일점으로 발전
- 1979년 (주)千商을 설립하여 와인, 과일통조림의 수입판매개시
- 1998년 6대 사장 오시마 히로시이가 취임, 현재까지 역임
- 2005년 니혼바시 미츠이타워에 니혼바시 본점 개점
- 운영점포 : 총 15점포 (관동지역 중심)
 - 고급백화점 (타카시마야, 이센탄 등) 8개소 설치

- 니혼바시, 동경역 등 주요 거점지역에 7개 점포설치
- 최근 공항 이용객을 목표로 한 하네다공항내 점포도 신설

□ 매장운영 특징

- 최상류층을 타겟으로 한 매장위치 선정 및 고급화
 - 최고급백화점 출점 : 8개점포 (타카시마야 5, 이세탄 2, 세부 1)
 - 다운타운 점포출점: 4개점포(니혼바시, 신나노쵸, 가스미가세키)
 - 전국커머 점포 : 3개 점포 (하네다공항, 동경역, 마이하마)
- 철저한 품질관리와 보증체계
 - 각 과일을 가장 맛있고 먹기 좋은 시기에 판매하고, 상품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불만이 있을 때는 상시교환
- 단순한 과일판매가 아니라 과일문화를 전파하는 명가정신
 - 2005년 현재의 본점 위치에 과일종합문화센터 설치운영
 - 과일매장 (1층), 고급과일레스토랑(2층), 과일테이크아웃(지하1)
- 당도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품목 당도표시
 - 당도표시가 필요 없는 (아보카도 등)품목은 제외
- 철저한 품질보증체계 및 고객만족제도
 - 모든 상품을 가장 맛이 있고 먹기 좋은 상태에서 판매
 - 보증서를 동봉하여 당도하락, 상처 등 불만이 있을 경우 무제한 교환
- 최고 품질의 상품화를 위한 엄격한 선별기준 유지
 - 사과 1박스의 상품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입하된 최고품질의 사과 3 박스를 중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그중 최고의 상품을 재선별해 1박스 마련
- 고급 소재의 진열대 등을 활용 전시판매(유리 케이스 등)
- 상품판매 뿐만 아니라 후루츠 파라(과일 및 아이스크림, 과일을 활용한 샌드위치, 카레등) 및 디 테메르 (고급 레스토랑) 운영

	
판매중인 머스크멜론 21000엔/18900엔	판매중인 복숭아 16800엔(5개입)
매장내 상품전시 전경	매장내 상품전시 전경

1. 일본GAP 추진현황

- 일본의 GAP관리기준은 관리주체별로 5개의 기준으로 생산자·소비자 등이 혼동의 우려
 - * 일본 GAP관리기준 : JGAP,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유통업체, 생협
 - 농림수산성에서 2011년까지 EurepGAP기준 이상의 인증관리기준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임

- “JGAP” 제정은 농림수산성의 용역을 받아 JGAP협회가 추진
 - JGAP협회가 2004년 농림수산성의 보조를 받아 EUGAP기준을 토대로 농산물 종류별로 마련
 - 관리기준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50개 품목에 대해 제정
 - * 우리의 관리기준은 농진청장이 하나의 규정으로 운영

- GAP인증은 1,000농가('07년)에 불과하고,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외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GAP인증을 실시
 - 일본의 GAP관리기준은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제3자 인증기관 (Moody int'l certification)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는 일본

GAP협회가 발행

- * 와고엔 외국 인증품 생산 : 바나나, 망고를 태국 농장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입판매 중임

□ 인증기관의 GAP사후관리는 인증농가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준수하므로 실시하지 않고 매년 재인증으로 확인하는 체제임

- * 우리는 사후관리를 1년에 2회 실시

□ 수확후 관리시설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 우리는 관리시설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시설에서 처리

2. 일본GAP과 EurepGAP 동등성 인정 협약체결

□ 추진배경

- 2004년도 아오모리현의 수출용 사과 재배농가 片山壽伸씨가 EurepGAP 관리기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인증신청

□ 동등성 인정 특징

- 일본GAP협회와 EurepGAP은 농장관리기준에 한하여 동등성을 인정('07.8.17)하는 AMCL approach 방식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수용과 수출용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원적으로 운영
 - JGAP인증서 발급 : 제2.1판의 관리기준과 JGAP의 심사/인증의 룰 적용
 - JGAP, EurepGAP인증서 동시 발급 : 제2.1판의 관리기준과 General Regulations Fruit and Vegetables Version 2.1- Oct 04(유럽 깎 일반 관리규정) 적용
- * 운영/심사/인증의 규칙에 대한 동등성은 EurepGAP 인증에 소요 되는 비용이 많아 수출용에 한하여 추후 검토 예정

□ JGAP 방식의 장점

- 유럽 캡에서 요구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춘 국제적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ISO65에서 요구하는 제3자 인증, 독립된 기관으로의 공정성 확보, 인증심사 기준 등 지정·교육절차 불요
- 일본협회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관리기준 실행의지가 강함
- 인증서 관리의 이원화로 소요시간과 농가부담 비용 절감
- 인증심사원을 계약직고용, 시간제 수당지급으로 인건비 절감

□ 한국 GAP와 EurepGAP과의 동등성 인정 추진방안

(제1안) : EurepGAP협회기준 벤치마킹

【 방 법 】

- 정부주도 추진
 - 한국 GAP의 관리기준을 EurepGAP기준으로 점진적 상향 발전시켜 국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 농관원을 농산물 AB(인정기관)로 지정, 국제기구 IAF 및 MLA 가입여부
- * 정부주도 동등성 인정 추진 : 중국, 태국, 인도, 케냐 등

【 장 점 】

- 정부기관이 동등성 인정 추진으로 대외 인지도 및 공신력 향상
- 관련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법 개정 등 체계적인 업무 추진 가능
- KOREAGAP 인증 위상제고 및 수출 경쟁력 향상

【 단 점 】

- 동등성 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다수로 원활한 진행애로
 - 농관원(관련법규, 인증기관지정), 농진청(관리기준 소유)

- 유럽지역의 특수성과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이 반영된 기준과 한국의 우수농산물관리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애로

(제2안) : 일본 JGAP협회기준 벤치마킹

【 방 법 】

- 일본JGAP협회와 유사한 관리기준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의 인증기관을 분리하는 이원화 인증제도 도입
 - 수출용은 제3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CB로 지정
- 수출용에 한하여 유럽 겹과의 동등성 추진

【 장 점 】

- 동등성 추진 기관 일원화로 원활한 진행
- 동등성 획득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과 농가부담 비용 절감
- ISO65의 요구내용 제3자 인증, 독립기관으로의 공정성 확보
-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전문 기관 육성
- 일본JGAP의 관리기준 이상으로 동등성 인정 수출경쟁력 확보
- 안전한 수입농산물 반입으로 소비자의 건강보호
-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IAF)회원가입, 국제다자간 상호인정 협정 (MLA) 체결 등 조치불요.

【 단 점 】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한 기준제정 및 전문기관 지정
- 수출농산물에 대한 관리기준 별도 제정

우리가 EurepGAP와 동등성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기준의 동등성(통일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3. 이력추적관리 추진실태

- 일본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등록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농림수산성의 관리기준에는 생산 작업을 수행한 날짜를 기재
- 이온그룹에서도 자체적인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이온그룹은 Farm Product Client Quality Control Standard를 도입하여 생산에서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사용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을 통제하고 이를 상품의 QR 코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
 - * TOPVALUE Green Eye 브랜드 상품은 상품 표면에 QR코드를 인쇄하여 핸드폰으로 스캔할 경우 소비자에게 생산자 정보,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등의 정보를 제공
-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이력조회가 가능하나, 일본처럼 **핸드폰을 통한 검색방법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지바 정미공장

- 지바 정미공장의 위생관리가 철저한 편임
 - HACCP 기준을 도입하여 청결관리가 철저하고,
 - 특히 현미의 이송시 밀폐성을 높이고 공기를 통한 운송으로 먼지 등의 발생 및 이물 유입이 않도록 하고 있음.
- 지바 정미공장의 이력추적관리는 컴퓨터를 통하여 실시
 - 외부 주문과 입출고 관리 등이 컴퓨터를 통해 접수 처리되어 로트관리 가능하고 문제 발생시에도 사후처리 가능
 - 포장재에 로트번호를 인쇄하여 가공 등의 정보 확인 가능
 - 로트번호와 관련한 컴퓨터 데이터는 2년간 관리
 - 로트번호이외에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확인

5. 와고엔 GAP실천농가

- 고품질의 야채 생산을 고집하고 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함
 - 지바현에서 실시하는 eco농산물 인증을 실천하고 있음
 - 한국의 친환경 저농약인증과 유사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농법임
 - 농장에서의 야채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으로 환원
- 생산물에 대한 수확 후 선별·포장관리 미흡
 - 수확 후 선별장에 대한 특정한 관리 규정이 없는 듯 하며,
 - 현지 확인 결과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됨
- 고품질의 야채 생산을 고집하고 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함

6. 농산물 유통실태

- 일본의 GAP 목적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GAP를 운영하고, 유통업체에서는 인증품 표시를 하지 않음
 - 다만, 유통업체가 납품과정에서 확인하는 차원으로 운영
- 유통업체에서는 GAP유통량이 적어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음
 - 다만, 안전성담보 차원에서 유통업체가 GAP인증을 요구함
- 일본 실정에 맞게 GAP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 조건으로 사용할 움직임을 보임
 - 우리도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GAP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고, EurepGAP와의 동등성 인증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일본 농림수산물성 기초 GAP 체크리스트 (347Page 참조)
2.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추진 (363Page 참조)
3.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
모니터링 중기계획 (369Page 참조)

< 참고자료 >

수집자료 목록

1. EU,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매뉴얼 253
2.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EUREP-GAP 일반규정
및 인증기준 277
3. EUREP-GAP 벤치마킹 시스템 절차
(Benchmarking System Procedure) 299
4. 일본 GAP 운영 □ 심사 □ 인증의 규칙 제2.1판 .. 321
5. 일본 농림수산성 기초 GAP 체크리스트 347
6.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추진 363
7.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 □
모니터링 중기계획 369

1. EU,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매뉴얼

EU,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매뉴얼

EU는 2002년 1월 28일, 식품에 관련하여 인간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 ‘식품법의 일반원칙과 유럽식품 안전기관 설립 및 식품안전에 관한 매뉴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No 178/2002’(이하 ‘식품법 규칙’이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이 식품법 규칙에서는 유럽식품안전기관(EFSA)의 설립, 조기경계 시스템(RASFF : EU의 각가맹국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가맹국, 유럽위원회, EFSA의 정보 네트워크)의 창설과 함께 식품일반,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 등(식품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식품법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식품법의 일반적인 요건 중에서, 식품사업자의 책무, 트레이스어빌리티,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의 식품의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식품법 규칙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2002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몇몇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글은 이미 공표된 ‘일반식품법에 관한 규칙(EC) No 178/2002의 제 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실시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개요를 EU의 식품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스어빌리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매뉴얼에 대하여

유럽위원회가 2005년 1월 중순에 공표한 이 매뉴얼은 식품법 규칙의 실행과 해석에 관한 각 가맹국, 각 사업자간에 컨센서스를 얻기 위해 유럽위원회의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이 수립하고, 각 가맹국 전문가에 의한 워킹그룹에서 검토를 거듭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며, 2004년 12월 20일에 개최된 EU의 푸드 체인·가축위생 상설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다.

또한, 이 매뉴얼은 푸드 체인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식품법 규칙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방법으로 정확하게 적용하는데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매뉴얼은 식품법 규칙에 있어서 적용개시 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조항 중,

- (1) EU역내로 수입된 식품 및 사료(제11조)
- (2) EU역외로 수출된 식품 및 사료(제12조)
- (3) 표시방법(제16조)
- (4) 책무(제17조)
- (5)트레이스어빌리티(제18조)

(6) 식품에 관한 책무 : 식품사업자(제19조)
(7) 사료에 관한 책무 : 사료사업자(제20조) 등의 조항에 대하여 해설한 것이다. 특히, 트레이스어빌리티(제18조)와 식품에 관한 책무 : 식품사업자(제19조)가 중심이 된다.

이하, EU의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책무

2.1. 규정이 의미하는 것

제17조 제1항에서는, 식품사업자에게 식품 또는 사료사업 활동에 관계된 식품법의 요건을 갖추는 의무와 관련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는 제17조 제1항에 명기되어 EU의 법정요건이기 때문에, 가맹국이 이러한 의무로부터 식품사업자를 면제하는 가맹국 독자의 법령규정을 유지 또는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식품사업자의 책무위반 등에 관한 소송 절차는 제17조에 기초하여 수행되지 않고, 각 가맹국의 법정명령 및 침해된 특정 식품법의 법정근거에 기초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제17조 제2항에서, 가맹국의 소관 관청에게 식품법 요건이 푸드 체인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시 및 관리하는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2. 규정의 기여 및 영향

2.2.1. 일반적인 준수 및 확인 요건

2005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은 모든 가맹국에서 모든 식품법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EU 전체에 적용되며, 이 규칙이 무역의 장벽 및 식품사업자간 경쟁 왜곡에 연계된 가맹국간의 식품법 요건 차이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2.2.2. 책무의 할당

제17조의 목적은 이하와 같다.

- ① 식품사업자 책무의 정의와 식품사업자 책무와 가맹국 책무의 구분
- ② 식품법 준수, 특히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1의 책임은 식품사업자에 있다는 원칙을 식품법의 전분야로 확대할 것

한편, 이 규정에서는 푸드 체인 다른 분야간의 책무 할당을 규정하는 EU의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는 없다.

가맹국의 법률에 관한 시스템 구조가 매우 달라, 사업자에게 형사상 벌칙 또는 민사상 책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책무에 관련된 토론을 수행할 때는 생산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간 상호 영향이 점점 복잡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 1차 생산자가 계약 상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요건을 갖출 의무를 가진다. 유통업자는 그들의 독자 브랜드명의 제품을 점점 많이 가지게 되므로 제품의 기본이념과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자보다는 푸드 체인 전체에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푸드 체인 각 부문은 각기 특정 활동에 관계된 식품법 요건에 따른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해 HACCP 원칙 및 다른 수단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어떤 제품이 식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푸드 체인 각 부문의 책무는 각 부문이 스스로 특정 책임을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3. 트레이스어빌리티

3.1. 규정이 의미하는 것

식품법규칙에서는 트레이스어빌리티를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통해 식품, 사료, 식품생산용 동물 또는 식품과 사료에 의도적으로 함유의 여부 또는 예상되는 물질을 추적하여 역추적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제3조제15항), 식품사업자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1) 제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2) 소관 관청의 도움을 얻어 소관관청이 상기의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이 요건은 ‘일보 전과 일보 앞 접근방법(one step back-one step forward approach)’으로 불리는 방법에 의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식품사업자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수행토록 한다.

- ①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자와 공급선을 해당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출 것
- ② 공급된 제품과의 관련을 확립할 것(즉, 어떤 제품이 어떤 공급자로부터 공급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 ③ 공급한 제품과의 관련을 확립할 것(즉, 어떤 제품을 어떤 공급선에게 공급하였는가를 확인할 것. 단, 식품사업자는 제품의 직접 공급선이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그 공급선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3.2. 규정의 기여 및 영향

쇠고기에 대해 이미 도입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푸드 체인 분야에서 ‘트레이스어빌리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식품 또는 사료의 직접 공급한 자와 공급선을 확인할 의무를 ‘모든 식품사업자’에 부과한다는 점을,

모든 가맹국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EU의 규칙 중에 명확히 규정한 것은 식품법 규칙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품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일반적인 의무가 창설되었다.

제18조에는 그 목표와 의도하는 성과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여 그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으로서 어떠한 것을 실시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의 식품사업자 각각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세한 사항 규정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총괄적인 내용만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는 실시에 있어, 요구하고자 하는 점을 식품사업자에게 보다 커다란 유연성을 주는 것이며, 식품사업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식품사업자에게 관련된 규칙 준수를 위한 비용 절감에도 연결된다.

3.2.1.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의 대상이 되는 범위

(1)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18조의 ‘의도적으로 식품 또는 사료에 함유 또는 예상되는 모든 물질’이라는 부분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식물용 약품, 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품 중에는 트레이스어빌리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EU의 특정 규칙(Regulations) 또는 지령(Directives)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제18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란, 그 제조, 조합, 처리하는 도중, 식품 또는 사료의 일부로써 함유되는 것」이 의도된 것이든 또는 예상되는 것이다. 즉, 식품 및 사료 원료의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며, 사료와 식품에 함유된 경우는 곡물도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재배를 위한 종자

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곡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식품 포장자재는 그 성분이 식품 중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에는 포함되지 않고, 제18조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이러한 식품의 포장자재의 트레이스어빌리티는 다른 특정의 규칙(식품 포장자재에 관한 규칙(EC)No 1935/2004)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식품위생규칙((EC)No852/2004)등에 기초하여 농가는 동물용 의약품과 식물용 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식품 또는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과 식물용 약품의 관련이 확실하게 된다.

(2)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 규정은 1차 생산물(식품생산용 동물, 수확물)로부터 식품 또는 사료의 가공, 유통까지의 푸드 체인 모든 단계의 식품사업자에게 적용된다(자선활동도 포함되지만, 각 가맹국은 이 규정의 집행 등에 있어서 자선활동과 기부활동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3조(기타 정의)의 제2항 및 동 제5항에 있어서 ‘식품사업’ 및 ‘사료사업’을 ‘식품 또는 사료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의 어느 단계에 관계된 것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송업자, 창고업자는 식품 또는 사료의 유통에 관계된 사업이며, ‘식품사업’ 및 ‘사료사업’의 정의에 포함되고, 이들 사업자도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사업자가 사업 활동 중 일부로써 수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전체로써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공급을 보조한 부문이 그 수취한 제품의 기록을 보관하게 되면, 수송부문이 배달한 제품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과 종자와 같은 농업생산자재가 트레이스어빌리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이들 농업생산자재의 제조업자는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아니다.

(3) 제3국의 수출업자에 적용하는 것(제11조 (EU역내에 수입된 식품 및 사료)과 관련하여

식품법 규칙의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규정은 EU역외의 제품,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치외법권’ 효과는 아니다). 즉, 이 규정은 EU역내에 있어서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 즉, 수입업자로부터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제11조에 의해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규정이 제3국의 식품사업자에 확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 조항은 EU에 ‘수입된’ 식품 또는 사료가 EU의 식품법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감한 특정부문을 위해 특별한 다른 나라간 합의가 있는 경우와 예를 들면 수의부문 등 EU의 특별 법정요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상대국의 수출업자는 EU역내에 부과되어 있는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법률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U의 수입업자는 그 제품이 제3국의 누구로부터 수출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이 수입업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이 규정의 목적은 충분히 부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규정에는 무역 상대에게 EU의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과 ‘일보 전과 일보 앞 접근방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EU의 식품사업자 중에도 일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EU의 식품사업자로부터의 요구는 사업에 관한 계약상의 내용의 일부이며, 식품법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다.

3.2.2.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의 실시

(1) 식품사업자에 의한 공급원 및 공급선의 확인에 대하여

식품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공급원 : 해당 사업자에게 식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한 모든 사람
여기서 ‘사람’이란, 예를 들면, 사냥꾼이나 죽순 채집자 등 개인일 수도 또는 법인일 수도 있다. 식품법 규칙 전문 29에 있어서도, 식품사업자는 적어도 식품 또는 사료 또는 동물 또는 식품 또는 사료에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을 공급한 사업자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단, ‘공급’이라는 말을 식품 또는 사료 또는 식품생산용 동물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이 규정에 있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푸드 체인의 트레이스어빌리티를 보증하기 위해 충분치 않다.

② 공급선 : 해당 사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법인)

단, 최종소비자를 제외

유통업자와 음식점과 같은 식품사업자간의 거래의 경우도,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요건은 적용된다.

(2) 내부 트레이스어빌리티

식품법 규칙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들어온 제품과 나가는 제품 사이의 관련(내부 트레이스어빌리티)에 대해 사업자가 확립토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개개 제품과 새로운 배치(제품의 한 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분할하고 결합하였는가를 증명하는 기록의 보관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내부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은 목표로 하는 것 보다 정확한 리콜에 공헌함으로써, 제품의 리콜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과 불필요한 혼란의 확대를 회피할 수 있어, 비용 절약이 가능하게 되며, 사업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EU라는 단일시장의 기능유지에도 공헌한다.

이러한 점에서 식품사업자가 식품의 가공, 보관, 유통 등 각각의 사업 활동의 성질에 관련하여 설계된 내부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해당 식품사업의 성질과 규모에 적합하도록 내부 트레이스어빌리티의 구체사항에 관한 수준의 판단은 해당 사업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3) 보관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제18조에는 식품사업자 및 사료사업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트레이스어빌리티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모든 정보는 각각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특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제1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정보의 보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제1분류 정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관 관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 ② 제2분류 정보: 보관을 강하게 장려하는 부가적인 정보

보관하여야 할 정보는 해당 식품사업자의 활동(사업의 특징과 규모) 및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특색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식품위기가, A사가 B사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한 회사 레벨에서 송장을 가진 제품의 상업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로부터 어느 장소로 이동하였는가 라는 제품의 물리적인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볼 때, 식품사업자 또는 사료사업자는 각각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제품의 물리적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며, 배달기록(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 등록)의 이용은 보다 효율적인 트레이스어빌리티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위한 시간

제18조는, 식품사업자 및 사료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제품 트레이스어빌리티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그 시스템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식품법 규칙 전문 28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을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갖추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되도록 빨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게 된다.

보관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중 제1분류에 속하는 정보는 소관관청이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며, 제2분류에 속하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한 내에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조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5) 정보의 보관기간

제18조에는 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한 기술이 없다.

일반적으로 상업상 서류는 과세관리를 위해 통상 5년간 보관된다. 5년간이라는 기간을 제조 또는 배달한 날로부터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정보의 보관기간으로 적용하는 경우, 제18조의 목적을 거의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 일반적인 규칙은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다.

① 와인과 같이 특정 품질보지기간이 없는 제품에서는 5년간이 일반적인 규칙이 된다.

② 품질보지기간이 5년간을 넘는 제품에서는, 기록은 해당 품질보지기간에 6개월간을 더한 기간 정도 보관되어야 한다.

③ 과실이나 야채, 프리 팩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과 같이, 상미기한이 3개월보다도 짧던가 또는 특정 상미기한이 없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보내어져 매우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서는, 기록은 제조 또는 배달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

4. 식품에 관한 책무 : 식품사업자

4.1. 규정이 의미하는 것

제19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식품사업자에게 식품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을 시장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이를 소관관청에 통지하는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품이 소비자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해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이미 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확실하게 철거시킬 수 있도록 푸드 체인 각각의 사업자 간의 필요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사업자가 시장에 출하한 식품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식품사업자에게 소관관청에 통지할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공급할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 또는 삭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동에 대해, 식품사업자가 소관관청에 협력할 일반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4.2. 규정의 기여 및 영향

4.2.1. 제19조 제1항

(1) 철거할 의무

제19조 제1항은, 식품사업자에게 식품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을 시장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이를 소관관청에 통지할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철거(withdrawal)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철거’란, ‘소비자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제품의 유통, 전시 또는 제공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모든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는 일반생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지령(2001/95/EC)을 참고하고 있다.

제19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도록 한다.

① 시장으로부터 철거이란,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뿐만 아니라 푸드 체인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도 실시된다.

② 소관관청으로의 철거에 대한 통지 의무는 철거할 의무의 결과이다.

③ 시장으로부터 철거 의무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에 맞을 때 적용된다.

① 철거의 계기가 원인이 되는 제1의 기준

문제의 식품에 대해 사업자가 식품안전 요건을 따르지 않았을 때

㉠ 철거의 계기가 되는 제2의 기준

식품이 시장에 출하되어, 발단이 된 식품이 사업자의 직접 관리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2의 기준은 제19조 제1항에 인용된 ‘시장으로부터의 철거’에 유래된 것으로, 식품이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 항에서는, 철거는 문제가 된 식품이 발단이 된 식품이 사업자의 직접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항의 틀에서 예견하고 있는 철거의 범위는,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실시되는 철거의 행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식품사업자의 직접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은 식품의 철거는 동 항에 규정한 철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단이 된 식품이 사업자의 직접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의 수단에 의해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19조 제1항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 표현은, 예를 들면, 가공시설을 벗어나, 다른 사업자 아래에 있을 것(즉, 푸드 체인의 과정에 있어서 단계의 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19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철거는, 소관관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철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시되는 대책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관관청으로부터 지시된 바와 같이 식품사업자는 직접 관리 하에 있는 식품을 철거하는 것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철거는, 식품사업자의 법적인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식품이 식품법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실천방법

실제로 철거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14조에 설치된 틀에서 2종류의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생략).

(3) 소관관청에 철거에 관한 통지

식품사업자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을 철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그 시설을 감독하는 소관관청에 철거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RASFF를 기동시키기 위해 가맹국의 중앙관청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사업자가 당해사업자의 ‘직접 관리 하’에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을 푸드 체인에서 철거할 때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해 소관관청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

(4) 회수와 소비자 정보

철거를 실시할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덧붙여, 제품이 소비자에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때에는, 제19조 제1항은 식품사업자에게 다음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소비자에게 철거의 이유를 알릴 것

② 필요하다면, 이미 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회수할 것. 즉, 소비자에게 이미 공급되었거나 소비자가 이용할 수도 있는 안전치 못한 제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식품사업자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모두 채택할 것. 회수는, 다른 조치에서는 고수준의 건강보호를 확보하기에 충분치 못할 때에는 필요하다.

(5) 제19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한 책무

모든 식품사업자(식품의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유통을 하는 사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철거 또는 회수 및 통지)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그들

규정을 해당 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활동범위 내에서 책무에 비례하여 적용토록 한다.

유통업자는,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빵 제조업과 같이 생산 또는 가공 활동을 하나의 점포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품사업자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7조에 관해 설명한 것처럼, 식품법 규칙은, 사업자의 책무(민사상, 형사상의 책무)를 규정한 법적인 국가 레벨의 시스템 범위를 보여주지 못한다.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에 관한 요건에 따르지 않고 직접 관리 하에 있는 원료 또는 재료를 철거할 경우에는, 요건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바로 그 공급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통지를 받은 공급한 사람은, 해당 사업자의 직접 관리 하에 없는 식품이 식품 안전에 관한 요건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믿을 만한 이유를 보여주는 정보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하여 공급한 사람에게는 철거 및 소관관청에게 철거의 통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입수한 정보가, 식품이 건강에 유해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인정할 때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유통업자가 내부관리를 수행한 결과, 부적합이 발견되어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로부터 공급된 식품의 철거가 필요하게 된다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에도 적용된다.

푸드 체인에서 각각의 단계간의 협력이, 제19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4.2.2. 제19조 제2항

제19조 제2항에서는 소매 또는 유통 활동을 수행하는 식품사업자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포장, 표시, 안전성 또는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정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요건에 따르지 않은 식품의 철거 및 관련된 정보를 전하여, 식품사업자에게 역할부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가 책임이 있는 식품을 철거 또는 회수할 때는, 전달된 정보를 통해 유통업자 또는 소매점은, 필요에 따라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푸드 체인에서 다른 사업자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19조의 적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식품사업자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어떻게 하여 촉진할까를 식품사업자가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2.3. 제19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식품사업자가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출하한 식품이 건강에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던가 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의 해당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관관청에 곧바로 통지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실시되는 처치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철거를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못하고, 잠재적인 리스크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채택된 처치에 관한 정보를 소관관청에 바로 전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3항의 목적은,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소관관청에 확실하게 통지토록 하는 것이다.

제19조 제3항의 적용을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의 몇 가지 사항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① 문제가 되어 있는 식품이 시장에 출하되어 있을 것.

‘시장에 출하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식품사업자에 의해 이미 생산 또는 수입되어 있고, 판매 또는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보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공도중의 식품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된 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문제가 되어 있는 식품은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또한, 제19조 제3항은 이하와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있을 것, 해당 식품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식되는 점을 전달하는 정보가 다른 정보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사업자가 사업자의 내부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철거하고, 그 것을 해당 식품을 공급한 사람에게 통지하였지만, 전달된 정보와 해당 공급한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모순되어 있어, 해당 공급한 사람이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제품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하는 정보가 있지만, 완전하게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발생 중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인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관관청이 조기에 경고를 받을 수 있을 것, 또는 잠재적(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여 세계적인 리스크 방지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그에 속하는 정보 또는 보다 확인된 정보에 의해 제품이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규정한 의무가 적용된다.

소관관청에 대한 정보제공에 책임을 지닌 사업자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하한 사업자이다.

제19조 제3항의 후반부분은,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 삭감 또는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종업원에 의한 협력을 위해 종업원이 소관관청에 협력하는데 있어 식품사업자가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4.2.4. 제19조 제4항

제19조 제4항에서는, 식품사업자가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던지 아니면 공급한 식품으로부터 발생한 리스크를 회피 또는 삭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처치에 대하여, 소관관청에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 식품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할까를 결정할 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사업자는 소관관청과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리스크가 불확실한 경우는, 사업자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목적에 따라, 소관관청과 연락을 취할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5. 종합

식품법 규칙에 의해 식품일반에 트레이스어빌리티가 의무화되었다. 식품법 규칙은 트레이스어빌리티의 일반적인 목적과 요건을 규정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트레이스어빌리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규칙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관계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활동 규모·특성 등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선택, 도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처럼, 이 규칙에 있어서는 ‘공식’ 또는 ‘한정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로부터도, 각 가맹국으로부터도,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실시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은 실시되지 않는다.

식품법 규칙의 해설과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 관한 정보제공에 의한 지원은 시행되어 왔다. EU 레벨, 가맹국 레벨, 지역 레벨에 있어서 업계 단체가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 목표로 하는 것의 정확한 철거 또는 회수와 이를 위한 시간과 불필요한 혼란에 관련된 잠재적 비용 절약 등, 식품사업자에 대해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회원기업 등에 대해 정보제공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일반적으로 업계단체의 연구회나 정책설명자, 나아가 각종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축산관계단체는 회원에 대해, 소위 e-mail이나 회의 개최를 통해 매뉴얼 작성의 워킹 그룹에서 검토상황과 관계된 자료 등을 수시로 전함과 동시에 각종회의에 참가를 통해, 회원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해당 워킹 그룹과 유럽위원회에 대해 제출하여 왔다. 각 가맹국도 각기 식품법 규칙의 이해 증진과 워킹 그룹에게 의견 등을 반영시키기 위해 각 국의 관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왔다.

이렇게 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한 식품법 규칙의 해설과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 관한 정보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식품사업자 등에 의한 식품법 규칙의 일치된 이해 촉진을 위해 작성하게 된 매뉴얼의 공표가 관계조항의 적용개시에 서로 간에 맞지 않았다하더라도, 각 사업자에 커다란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유럽의 축산관계단체에 의하면, 매뉴얼이 보다 빨리 완성되었다면, 각 사업자의 이해증진에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완성이 관계조항의 적용개시에 서로 간에 맞지 않았던 것이나 그 내용을 비난하는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요건을 잘 요약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관계단체 등에 의해 정보로서 제공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각 단체, 각 가맹국에 의한 정보제공의 방법이 유효하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비롯해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업은 그 매입에 힘을 쏟고 있으며,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전시회의 개최와 산업체 등의 전시회에서 시스템 전시를 통해 그 개발, 보급, 도입에 돌입하였다는 것도 식품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품법 규칙은 일반적인 것이며, 이 규칙과는 별도로 쇠고기에 관한 것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품목 한정적인 규칙이 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트레이스어빌리티를 요구하거나 또는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전달되는 정보량이 막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기농산물과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은 유럽에서는 그 생산과정과 제품의 성질을 증명하는 외에도 생산자재의 이동 파악과 상품인 식육 등의 축산물이 되기까지 가축의 적절한 취급 등, 보다 많고 넓은 폭의 정보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자이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 개발 동향과 함께 소비자가 농산물, 특히 축산물에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 <http://lin.lin.go.jp/alic/month/fore/forn.htm>에서
(허덕 huhduk@krei.re.kr 02-3299-4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EUREP-GAP
일반규정 및 인증기준

2.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EUREP-GAP 일반규정 및 인증기준

□ 일반규정

○ EUREP-GAP 인증목적

-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안전성,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 농작업자 보건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해소

○ 업무 추진방향

- 농자재로서 합성화학물질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적용
- 객관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영농기술을 규격화
- 최적의 영농기술 활용·개발·이해를 위한 지침서 제공
- 제3자에 의해 점검되는 독립적 인증 추진
- 소비자·생산자·수출입업체간 개방된 의사소통 체계 구축

○ EUREP-GAP기준의 기본원칙

- 식품안전성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원리에 근거
- 환경보호 :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영농기술을 적용
- 농작업자 보건복지 : 국제적 수준의 농작업자 보건복지 방안을 포함
- 야생동물 보호 : 국제적 수준의 야생동물 보호 방안을 포함

○ 인증절차

인증신청	- 개별농가 또는 영농단체 - EUREP-GAP을 벤치마킹하여 자체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개별농가 또는 영농단체
신청농가 조사	- EUREP-GAP에 등록된 독립인증기관이 신청농가를 방문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EUREPGAP [®] 인증서 발급
조사항목	- 214개 항목 : 필수이행 49, 준필수이행 99, 권장 66 - 필수이행항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준필수이행항목은 해당되는 항목수의 95%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장항목은 이행강제성이 없음.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N/A'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명시
인증 유효기간	- 1년
인증취소	- 경고, 보류, 취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인증취소

□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EUREP-GAP 인증기준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 추적가능성 (Traceability)		
1.1	판매된 농산물은 재배지 또는 소비자까지 추적 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로 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필수
2. 기록유지 및 자체진단 (Record Keeping and Internal Self-Inspection)		
2.1	보관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신의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UREPGAP 등록 이전의 기록은 소급 요구되지 않으며, 신규등록을 원하는 자는 등록조사일 이전 최소 3개월간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준필수
2.2	농가는 EUREPGAP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최소 일년에 1회 자체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수
2.3	점검기준에 따라 자체진단한 결과를 문서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필수
2.4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문서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필수
3. 품종 및 대목 (Varieties and Rootstocks)		
3.1 품종 또는 대목 선택		
3.1.1	종자/종묘 생산을 위한 채종작물 (Mother crop) 재배시 작물 보호제, 비료 등의 농자재 투입을 최소화하는 경작기술을 도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권장
3.2 종자/대목의 품질		
3.2.1	종자의 품질, 품종순도, 품종명, 생산기록, 공급자를 나타내는 기록 또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권장
3.3 병해충 저항성		
3.3.1	농가는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병충해 저항성/내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권장
3.4 종자 소독처리		
3.4.1	종자 또는 종묘 소독처리시 처리제품명 및 대상 병해충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3.5 묘(종묘)		
3.5.1	법적 규정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3.5.2	눈에 띄는 병해충 피해 흔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예; 입계치 이하).	권장
3.5.3	구입 묘의 품질 보증이나 인증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3.5.4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또는 병해충 육안확인 등 묘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신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준필수
3.5.5	실내 묘상의 생산기간동안 사용된 작물보호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에는 작물보호제 제품명, 처리일, 처리량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3.6 유전자변형작물		
3.6.1	(GMO작물 재배시) GMO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국가의 해당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필수
3.6.2	GMO 기술이 사용된 작물이 생산될 경우에는 이 작물의 재식 및 생산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준필수
4. 농지의 내력 및 관리 (Site History and Site Management)		
4.1 농지내력		
4.1.1	새 농지에 대한 'EUREPGAP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라 이전 토지사용 내역, 토양통, 침식, 지하수 수질 및 수고, 수원의 지속성, 인접지 영향 등을 고려한 식품안전성, 작업자 보건,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필수
4.1.2	발견된 위해요소의 강도, 발생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 위해요소를 사전방지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4.2 농지관리		
4.2.1	EUREPGAP 기록유지 요건에 따라 각각의 포장, 과수원, 온실에 대한 작물정보, 영농활동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필수
4.2.2	각각의 포장, 과수원, 온실은 지도, 표식 등을 이용하여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산된 기록도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고유번호, 명칭, 색상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준필수
4.2.3	운작에 대한 문서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권장
5. 토양 및 토양구조 관리 (Soil and Substrate Management)		
5.1 토양지도		
5.1.1	토양분석, 토층분류 또는 지역의 토양도에 근거하여 재배포장의 토양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권장
5.2 재배		
5.2.1	해당지역의 토양에 적합한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권장
5.3 토양 침식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5.3.1	경사지, 배수로, 피복식물, 녹비, 관목 등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재배기술이 사용된 근거가 시각적으로 또는 문서기록으로 있어야 한다.	준필수
5.4 토양 훈증		
5.4.1	토양훈증제를 사용한 근거가 문서기록으로 있어야 한다. 기록에는 장소, 날짜, 유효성분, 사용량, 사용방법, 작업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5.4.2	농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적 지식, 근거자료, 지역적으로 알려진 경험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 토양훈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장
5.5 농자재		
5.5.1	농가는 재활용한 농자재의 양과 재활용 일시를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재활용 교육 또는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권장
5.5.2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농장, 과수원 또는 온실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농장 밖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자재 소독을 실시한 업체의 이름과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필수
5.5.3	소독일(년월일), 화학제명 및 주성분, 사용장비, 소독방법, 소독자명을 올바르게 기록하여야 한다.	준필수
5.5.4	농자재 재활용시 해당 농자재의 소독방법으로 증기소독이 가능하다는 문서로 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권장
5.5.5	재활용되는 농자재는 출처가 어디인지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6. 비료 사용 (Fertilizer Use)		
6.1 비료 사용량과 비료의 종류		
6.1.1	농업기술 부문 책임자는 사용해야 할 비료의 양과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연수내용이나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로 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6.2 사용기록		
6.2.1	해당 농장, 과수원, 온실의 지리적 위치, 명칭 등 모든 비료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준필수
6.2.2	모든 비료사용일지는 년월일로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6.2.3	사용된 비료의 상품명, 종류(또는 N-P-K 조성)가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6.2.4	사용된 비료의 제품별 양 또는 부피가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6.2.5	시비시 사용된 장비 및 시비방법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6.2.6	비료를 사용한 자의 성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6.3 사용장비		
6.3.1	비료살포에 사용되는 장비 유지보수기록(일시 및 유지보수내역) 또는 유지보수부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6.3.2	정확한 양 시비를 위해 지난 12개월 이내에 전문업체,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전문기술자의 장비보정을 받았다는 문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보정기록에는 시간 및 면적당 시비량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권장
6.4 비료 보관		
6.4.1	재고보관에 관한 사항(종류 및 양)을 기록한 문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최소 매 3개월마다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준필수
6.4.2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질비료는 농약과 동일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준필수
6.4.3	무기질비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햇빛, 서리, 비와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준필수
6.4.4	무기질비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쓰레기나 오염물이 없어야 하고, 설치류의 서식장소도 없어야 한다.	준필수
6.4.5	무기질비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통기가 잘되고 빗물에 젖지 않아야 한다.	준필수
6.4.6	무기질비료는 주변 수원의 오염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홍수 위험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준필수
6.4.7	비료는 농산물, 종자, 종묘, 대목과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필수
6.4.8	농장에 유기질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원 및 표면수에서 최소 25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권장
6.5 유기질비료		
6.5.1	생활하수 또는 오니가 농장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필수
6.5.2	유기질비료 사용시에는 병원성미생물 및 잡초종자 함유, 퇴비 제조 방법 등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6.5.3	사용할 유기질비료의 N-P-K 양분조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6.6 무기질비료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6.6.1	지난 12개월동안 사용한 모든 무기질비료에 대해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권장
7. 관개/관비 (Irrigation/Fertigation)		
7.1 관개요구량 예측		
7.1.1	강우량계, 배수량계, 증발계, 장력계(토양중 수분%함량), 토양 지도 자료 등을 활용한 계산법이 있어야 한다.	권장
7.1.2	예상강우량 및 실제강우량에 대한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7.1.3	농가는 증발을 계산을 위해 어떤 자료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권장
7.2 관개/관비 방법		
7.2.1	관개시스템은 해당 작물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어야 하고 권장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권장
7.2.2	물 관리를 위한 절차와 조치방법이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서로 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권장
7.2.3	관개/관비를 실시한 일시 및 관개/관비량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7.3 관개수의 수질		
7.3.1	미처리 하수를 관개/관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처리된 하수를 사용할 때는 WHO의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Wastewater and Excreta in Agriculture and Aquaculture 1989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수
7.3.2	모든 관개/관비용 수원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권장
7.3.3	위해성분석 결과 일년에 1회 이상 관개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해성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관개수 분석 주기를 정하도록 한다.	권장
7.3.4	해당 실험실은 N, P, K, Ec, pH를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이어야 한다.	권장
7.3.5	위해성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검출된 미생물의 오염원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7.3.6	위해성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검출된 화학 잔류물질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7.3.7	위해성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검출된 중금속의 오염원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7.3.8	부정적 분석결과에 대해 취한 조치가 무엇이며 조치결과는 어떠했는지 기록으로 있어야 한다.	권장
7.4 관개/관비용 물공급		
7.4.1	지속적으로 물공급이 가능한 곳을 관개수 수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7.4.2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8. 작물보호 (Crop Protection)		
8.1 작물보호 기본요건		
8.1.1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 내용에는 사용사유, 대상 병해충 또는 잡초와 이들의 밀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필수
8.1.2	IPM 기술을 적용하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권장
8.1.3	병해충 또는 잡초에 대해 여러 번의 반복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저항성 발현 방지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필수
8.1.4	농업기술 부문 책임자는 공식적인 IPM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또는 외부 IPM 자문위원은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준필수
8.2 농약 선택		
8.2.1	라벨에 표시된 내용에 의거 대상 병해충 또는 잡초에 대해 적합한 농약을 선택하여야 한다.	필수
8.2.2	농약이 사용되는 해당 국가의 사용이 허가된 또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8.2.3	현재 재배되고 있거나 또는 지난 12개월동안 재배된 작물에 대해 사용이 허가되어 있거나 등록된 농약들의 목록이 최신의 정보로 갱신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 농약목록에는 상표명, 성분조성 또는 천적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2.4	현재 재배되고 있거나 또는 지난 12개월동안 재배된 작물에 대해 사용이 허가되어 있거나 등록된 농약들의 목록은 관련 법규정이 수정되는 것을 반영하여 최신의 정보로 갱신유지되어야 한다.	준필수
8.2.5	EU내 사용금지된 농약이 지난 12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농약사용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EU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의 경우)	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8.2.6	다른 사람의 자문에 의해 농약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자문을 한 자가 자문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증명서(자격증, 연수증명서 등)가 있어야 한다.	필수
8.2.7	농가가 직접 농약선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농가가 농약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증명서(자격증, 연수증명서 등)가 있어야 한다.	필수
8.2.8	농약의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 및 준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3 사용기록		
8.3.1	작물보호제 처리에 대한 내역은 처리된 작물명 및 품종명을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8.3.2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처리장소의 지리적 위치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농장,과수원, 또는 온실의 명칭이나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8.3.3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정확한 처리일(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8.3.4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제품명, 성분명 또는 천적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8.3.5	작물보호제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3.6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처리대상 병해충 또는 잡초의 일반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3.7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처리를 결정 또는 권장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준필수
8.3.8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처리량을 알 수 있도록 처리한 제품의 무게나 부피, 또는 물에 희석하였을 경우에는 물의 양과 희석배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3.9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처리에 사용된 장비명 및 처리방법(관개, 분말, 연막 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준필수
8.3.10	작물보호제 사용기록에는 수확시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수확전 처리간격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필수
8.4 수확전 처리간격		
8.4.1	수확전 처리간격을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처리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8.5 장비		
8.5.1	작물보호제를 처리하는 장비는 수리, 오일교체 등 정비유지에 대한 최신의 문서기록을 비치하여 최적의 정비상태로 보관되도록 한다.	준필수
8.5.2	작물보호제를 처리하는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지난 12개월 이내에 점검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점검은 공식적인 점검절차나 또는 점검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준필수
8.5.3	농가가 장비를 보정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8.5.4	작물보호제를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혼합할 수 있도록 눈금용기, 저울 등 적절한 장비 및 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준필수
8.6 잔여량 폐기		
8.6.1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고 남은 양이나 또는 살포탱크를 세척한 후 나오는 폐액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8.6.2 및 8.6.3항을 따라야 한다.	준필수
8.6.2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고 남은 양이나 또는 살포탱크를 세척한 후 나오는 폐액은 제품라벨에 표시된 기준약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땅에 폐기하고 이를 나타내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권장
8.6.3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고 남은 양이나 또는 살포탱크를 세척하여 나오는 폐액을 휴경지에 폐기할 때는 법적 저축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표면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권장
8.7 작물보호제 잔류분석		
8.7.1	농가는 작물보호제에 대해 매년 잔류분석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제3자가 실시하는 잔류모니터링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서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잔류분석 또는 잔류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농가에 대해 추적가능하여야 한다.	필수
8.7.2	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국가의 MRL 등 규제사항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필수
8.7.3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MRL보다 판매되는 지역의 MRL이 더 강화되어 있는 경우, 작물보호제 살포계획 변경, 잔류분석 결과 제출 등 판매지역의 MRL을 맞추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8.7.4	MRL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소비자에게 공고, 농산물 판매경로 추적 등)에 대해서 문서로 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8.7.5	시료채취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시료채취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실험실 또는 농가가 실시할 수 있다.	권장
8.7.6	잔류분석을 실시하는 실험실이 ISO17025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받았다는 문서로 된 근거 또는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8.8 작물보호제 보관 및 취급		
8.8.1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관련 법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준필수
8.8.2	작물보호제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설치된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준필수
8.8.3	작물보호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상 안전한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준필수
8.8.4	작물보호제는 과도한 온도변화를 방지하는 자재로 만든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준필수
8.8.5	작물보호제는 방화자재로 만든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최소 RF 30:30분).	준필수
8.8.6	작물보호제는 신선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어 유해한 기체가 환기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준필수
8.8.7	작물보호제는 표기내용이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나 인조채광이 충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준필수
8.8.8	작물보호제는 다른 물질과 격리보관될 수 있는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준필수
8.8.9	작물보호제를 보관하는 선반은 작물보호제가 유출되었을 때 흡수되지 않는 자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권장
8.8.10	작물보호제를 보관하는 시설은 외부환경으로의 사고유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농약액 저장용량 이상의 사고유출방지 시설이 되어있어야 한다.	준필수
8.8.11	작물보호제를 보관하는 시설 또는 이를 혼합하는 시설은 작물보호제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용기 및 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준필수
8.8.12	작물보호제를 보관하는 시설 또는 이를 혼합하는 시설은 작물보호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8.8.13	작물보호제를 보관하는 시설 또는 이를 혼합하는 시설은 모래함, 빗자루, 쓰레받이, 쓰레기봉투 등 작물보호제의 사고유출을 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지정된 장소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준필수
8.8.14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항상 잠겨있어야 하고, 작물보호제 안전 취급 및 사용 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필수
8.8.15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내역을 나타내는 재고현황이 문서로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최소 매3개월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준필수
8.8.16	작물보호제 제품 보관시에는 원래의 포장용기에 담겨있는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을 개봉하여 다른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원래의 포장용기에 있던 제품설명을 새 용기로 옮겨 부착하여야 한다.	준필수
8.8.17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작물보호제만 따로 표시보관하던가 목록으로 관리하던가 하여야 한다. 이외의 목적으로 보관되는 작물보호제는 분리보관하도록 한다.	준필수
8.8.18	액체형 작물보호제를 분제형 또는 입제형 작물보호제 위쪽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준필수
8.9 작물보호제 빈용기 처리		
8.9.1	작물보호제 빈용기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9.2	빈용기 폐기시 인체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빈용기와 사람의 물리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폐기 시스템(지정장소 임시보관후 폐기, 안전 취급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9.3	빈용기 폐기시 수로, 식물계, 동물계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 시스템(지정장소 임시보관후 폐기, 안전 취급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9.4	공식적인 수거 및 폐기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9.5	빈용기는 재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공식적인 수거 및 취급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빈용기가 적절히 임시보관, 표시, 취급되어 수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8.9.6	세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작물보호제 살포장비라면 이를 이용하여 빈용기를 세척한 후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물로 최소 3회 세척한 후 폐기하라는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9.7	빈용기를 세척할 때 나오는 물은 작물보호제 혼합탱크에 다시 넣어서 사용하도록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8.9.8	빈용기를 폐기하기 전에 임시보관할 수 있도록 지정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정장소는 농작물이나 포장재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표시 또는 물리적 출입통제).	준필수
8.9.9	작물보호제 빈용기의 폐기와 관련한 모든 법이나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준필수
8.10 폐기대상 작물보호제		
8.10.1	폐 작물보호제가 허가된 경로를 통해서 폐기되고 있다는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 작물보호제가 표시되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어야 한다.	준필수
9. 수확 (Harvesting)		
9.1 위생		
9.1.1	수확작업에 대한 위생적 측면의 위해성평가(국가, 업체, 개인)가 실시되고 매년 갱신된다는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필수
9.1.2	위 9.1.1항의 위해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생적인 수확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였다는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필수
9.1.3	위해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수확용 운반상자, 수확도구(가위, 칼, 전정가위 등), 수확장비는 깨끗하게 유지보관되어야 하고,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 및 소독계획(최소 1년에 한 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9.1.4	농장, 과수원, 온실에서 직접 포장 및 취급되는 농산물은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포장된 농산물 및 운송중인 농산물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을 씌워야 한다. 만일 수확된 농산물이 야외에서 보관된다면 보관장소는 깨끗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온습도가 조절 및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은 모두 위해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다.	필수
9.1.5	수확된 농산물을 농장에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운송장비(다른 목적의 운송에도 사용되는)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운송장비 청소계획(흙, 먼지, 유기질비료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은 모두 위해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다.	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9.1.6	수확 작업자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고정식 또는 이동식)이 작업반경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좋은 위생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필수
9.1.7	수확 작업자가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고정식 또는 이동식)이 작업반경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좋은 위생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준필수
9.2 수확/포장용 상자		
9.2.1	농산물 운송상자는 농산물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권장
9.3 수확지점에서 포장되는 농산물		
9.3.1	농산물 수확시 얼음이 사용된다면 이 얼음은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수로 만들어져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권장
10. 농산물 취급 (Produce Handling)		
10.1 위생		
10.1.1	농산물 취급과정에 대한 위생적 측면의 위해성평가(국가, 업체, 개인)가 실시되고 매년 갱신된다는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1.2	위 9.1.1항의 위해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생적인 취급절차(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오염물질에 대한)를 마련 및 실시하여야 한다.	준필수
10.1.3	농장 작업자가 용변을 보고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무향 비누 비치, 깨끗한 물 사용),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던지 하여 작업장에서는 화장실 문이 열려있지 않도록 한다.	준필수
10.1.4	농장 작업자가 농산물 취급과 관련한 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출석기록 또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위생교육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개인청결, 복장청결, 행동 등.	필수
10.1.5	농장작업자가 농산물 취급시 교육받은 위생교육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2 수확물의 세척		
10.2.1	최소 지난 12개월 이내에 세척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세척기로 물이 유입되는 지점). 분석기준은 WHO가 인정하는 기준 또는 관련기관에서 식품안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0.2.2	최종단계 세척에 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이 재활용수는 여과과정을 거쳐 소독된 것이어야 한다. pH, 소독제 농도, 소독제 처리시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기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여과과정은 고체 및 부유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필수
10.2.3	수질분석은 ISO17025의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받은(또는 받는 과정중에 있는) 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10.3 수확후 처리		
10.3.1	수확후 처리절차 및 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수확후 처리용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 사용기록, 처리한 농산물 포장 및 운송일 등). 수확후 처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사용지침이 준수되어야 한다.	필수
10.3.2	수확후 처리에 사용되는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는 해당국가에서 수확후 처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는 제품에 표시된 처리가능 농산물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필수
10.3.3	EU 판매용 농산물에 대해서 수확후 처리과정중에 EU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가 지난 12개월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필수
10.3.4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의 최신목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3.5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 목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 변경내용이 반영되고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3.6	농산물 취급과정의 기술담당자는 수확후 처리용 살생물제, 왁스,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나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3.7	수확후 처리제의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어떤 농산물에 처리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10.3.8	수확후 처리제를 사용한 장소의 지리적 위치, 농장명칭, 처리된 농산물을 취급한 장소가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10.3.9	수확후 처리제를 사용한 정확한 일시(년월일)가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0.3.10	수확후 처리제를 처리한 방법(분무, 침지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10.3.11	사용된 수확후 처리제의 상표명 및 주성분이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10.3.12	수확후 처리제의 사용량이 중량이나 부피(물 또는 용매 1리터 당)로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10.3.13	수확후 처리제를 처리한 작업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10.3.14	수확후 처리제로 처리하려고 하는 병해충의 일반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필수
10.3.15	수확후 처리제 사용에 대해서도 위의 8.7.1~8.7.4항 내용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조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필수
10.4 농산물 취급 및/또는 저장에 이용되는 농장시설		
10.4.1	시설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기울기, 배수로 등) 설계되어야 하며,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권장
10.4.2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프로세스 라인, 기계, 벽, 바닥, 보관지역, 팔레트 등)는 오염방지를 위해 청소계획에 따라 깨끗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4.3	부적합 농산물 및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지정장소는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고, 이에 대한 문서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10.4.4	농산물의 화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제, 윤활유 등은 농산물 및 농산물이 취급되는 지역에서 떨어진 지정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권장
10.4.5	취급과정상 농산물에 묻을 가능성이 있는 세척제, 윤활유 등은 식품에의 사용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문서근거(제품표시 또는 연구자료 등)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4.6	농산물을 선별, 계량, 저장하는 등의 취급장소 위에 설치된 전등은 전등이 깨졌을 경우 농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짐방지형 전등을 설치하거나 깨짐방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0.4.7	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에는 깨진 유리 또는 깨진 투명 강화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문서로 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권장
10.4.8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처리시설에 가축이 접근하는 것은 통제되어야 한다.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0.4.9	병해충의 침입 또는 병해충에 의한 오염 방지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모니터링 및 방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병해충 트랩을 설치하고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1. 폐기물 및 오염 관리, 재사용 (Waste and Pollution Management, Recycling and Re-use)		
11.1 폐기물 및 오염물질 확인		
11.1.1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11.1.2	농작업 과정에서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과다한 비료사용, 난방용 배기가스 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권장
11.2 폐기물 및 오염에 대한 조치계획		
11.2.1	폐기물 감축이나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문서화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권장
11.2.2	폐기물 및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권장
11.2.3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류를 제외한 나머지의 쓰레기류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농산물이 취급되는 실내는 1일 1회 이상 청소가 되어야 한다.	권장
11.2.4	쓰레기류를 버릴 수 있는 설치물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쓰레기류 종류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화학제 빈용기는 판매자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척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12. 작업자 보건, 안전 및 복지 (Worker Health, Safety and Welfare)		
12.1 위해성평가		
12.1.1	관련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작업조건 안전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권장
12.1.2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조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시간단계별 조치계획, 책임자 등)이 문서로 있어야 한다.	권장
12.2 교육훈련		
12.2.1	위험한 장비나 복잡한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사전교육 참가자들의 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출석기록 등). 외부 교육실시 업체나 기관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2.2.2	교육관련 기록(받아야 할 교육, 교육수료증 사본, 출석기록 등)은 각각의 개인 작업자별로 보관되어야 한다.	권장
12.2.3	농산물 재배, 운송, 취급 등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지난 5년 이내에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자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권장
12.2.4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시 농장 작업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문서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구두로도 전달되어야 한다.	준필수
12.2.5	농산물 취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위생교육(손씻기, 찰과상 조치,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및 식사 등)이 문서 및 구두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생교육은 자격을 갖춘 자(간호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교육 실시사항은 기록되도록 한다.	권장
12.2.6	농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농장의 개인위생 요구조건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방문자가 방문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농장의 개인위생 요구조건을 부착 명시 등).	권장
12.3 시설, 장비, 사고대처		
12.3.1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물이 구비된 구급상자가 작업장 근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도난의 우려가 있는 곳일 경우, 감독자가 작업시 소지하고 있거나 감독자 차량에 비치할 수도 있다.	준필수
12.3.2	폐기물 폐기장소, 연료탱크, 작물보호제 처리가 된 작물 등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곳에는 경고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권장
12.3.3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서로된 절차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대처요령에는 비상연락망, 제일 가까운 연락수단 위치, 경찰, 구급차, 병원, 소방서 등의 최신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3.4	작물보호제 보관장소 및 혼합장소 10m 이내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위 12.3.3항의 대처요령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3.5	작물보호제 및 비료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의 출입문에는 위험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2.4 작물보호제 취급		
12.4.1	작물보호제를 취급 및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능력 및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과정에 참가하였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4.2	가능하면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12.5 보호복 및 보호장비		
12.5.1	사용하려는 작물보호제 제품의 사용지침에 따라 작업에 적합한 보호복(고무장화, 방수복, 고무장갑, 얼굴 마스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필수
12.5.2	보호복을 사용한 뒤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5.3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는 농가가 제품 사용지침에 따라 보호복 및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또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5.4	모든 보호복 및 보호장비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물리적으로 작물보호제와는 격리가 되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필수
12.5.5	작물보호제 보관시설 및 이를 혼합하는 장소에는 오염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눈이나 손 등을 씻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나오는 비상제독시설)이 반경 10m 이내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구급함 및 비상시 대처요령, 응급 전화번호 등을 잘 표시하여 비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필수
12.6 복지		
12.6.1	작업자의 보건, 안전, 복지에 관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소재가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6.2	최소 일년에 2회 관리자와 작업자간에 근무상황 및 작업자의 보건, 안전, 복지 등에 대해서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결과는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12.6.3	농장내 작업자 숙소는 거주가 가능하도록 식수공급, 화장실, 배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준필수
12.7 농장 방문자 안전		
12.7.1	농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농장의 개인안전 요구조건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방문자가 방문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농장의 개인안전 요구조건을 부착 명시 등).	준필수

인 증 기 준		이행 수준
13. 환경문제 (Environmental Issues)		
13.1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1.1	농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영농행위가 주위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양분손실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권장
13.1.2	개별 농가 또는 농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권장
13.2 야생동물 및 자연보호 정책		
13.2.1	야생동물 보호방안에 관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준필수
13.2.2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야생동물 관리 및 자연보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13.2.4	위의 계획에는 농장내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지역, 분포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13.2.3	위의 계획은 지속가능농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권장
13.2.5	위의 계획에는 농장내 동식물 서식지 파괴는 피하고 파괴된 서식지는 복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13.2.6	위의 계획에는 농장내 동식물 서식지 환경 향상 및 생물다양성 증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13.3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		
13.3.1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은 동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보호 지역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권장
14. 이의제기 (Complaint Form)		
14.1.1	EUREPGAP 기준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양식을 농장에 비치하거나 또는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필수
14.1.2	EUREPGAP 기준 이행과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취해진 사후조치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한다.	필수

3. EUREP-GAP 벤치마킹 시스템 절차
(Benchmarking System Procedure)

All Scopes

version 1.2-June 2005

3. EUREP-GAP 벤치마킹 시스템 절차(Benchmarking System Procedure)

1. 배경 및 정당성 (1. BACKGROUND AND JUSTIFICATION)

□ 벤치마킹을 통한 타 농장 보장체계의 인정은 EUREP-GAP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시스템의 통합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TSC)는 동 EUREP-GAP 벤치마킹 절차를 승인하였다. EUREP-GAP 지도위원회(SC)는 외부의 역량있는 조직을 지정하여 기술검토 및 방문 감사(물리적 벤치마킹)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EUREP-GAP 사무국은 현재 EUREP-GAP 인정에 관련된 인정 기관들에게 입찰절차를 발표하였다. 신청인의 핵심 기준은 독립성, 기술력, 농업분야 인정자격(ISO 가이드 65)이다. 입찰은 EUREP-GAP 벤치마킹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국제적 자원과 기술, 조직 역량을 가진 바람직한 산업 신용을 가진 조직을 차별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호주-뉴질랜드 통합인정기구(JAS-ANZ)와 독일 DAP의 입찰이 지도위원회로부터 가장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2. 도입 (2. INTRODUCTION)

□ 제품(프로세스나 서비스 포함) 인증은 특정한 기준과 다른 규범 문서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 동 문서의 목적은 특정 기준 및 기타 규범 문서의 EUREP-GAP 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 과정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수용, 나아가 국제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 동 기준에 포함된 요구사항들은 특정 기준과 인증 시스템이 포함된 규범 문서들이 EUREP-GAP 기준과 인증시스템을 포함한 규범 문서들과 동등하다는 신뢰를 주기 위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 ISO/IEC 가이드 65(EN45011) 하에서 개발된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하는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3. 범 위 (3. SCOPE OF THIS DOCUMENT)

□ 이러한 절차는 EUREP-GAP 기준과 인증시스템을 포함한 규범 문서들이 다른 기준의 그것들과 동등성을 인정하게 될 때 FoodPLUS (EUREP-GAP 기준 및 규범 문서들을 운영하는 제품 인증기준 소유자)가 정하는 일반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그 절차는 부록 2의 도표에 나타나 있다.

□ 벤치마킹 절차를 통한 EUREP-GAP 동등성 인정 신청에 관심 있는 모든 회사와 조직 및 향후 EUREP-GAP 범주(과실 및 채소류, 화훼류, 농장인증, 어류, 커피 등)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4. 이 행 (4. IMPLEMENTATION)

□ 모든 공식 동등성 인증 신청자들은 EUREP-GAP Benchmarking Procedure(EUREP-GAP 벤치마킹 절차)에 기술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EUREP-GAP 동등성 인증에 관심이 있는 회사와 조직들은 벤치마킹 익스트라넷(<http://benchmarking.eurep.org/signup.html>)에 등록해야 하며, 아래의 외부 평가자(external assessor)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 a)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JAS-ANZ) Level 1, 6 Phipps Close, 2600 Deakin West ACT, AUSTRALIA
- 담당 : Mr. Keith Laws-Herd (이메일 : KeithLaws-Herd@jas-anz.com.au)
 - 전화 : +61-2-628-255-01 / 팩스 : +61-2-628-268-18
 - 담당 : Mrs. Kylie Sheehan (이메일 : Kylie@jas-anz.com.au)
 - 전화 : +61-2-628-212-99 / 팩스 : +61-2-628-268-18
- b) Deutsches Akkreditierungssystem Prufwesen GmbH(DAP) Ernst-Augustin Strasse 15, 12489 Berlin-Adlershof, GERMANY
- 담당 : Mr. Tilman Denkler (이메일 : denkler@dap.de)
 - 전화 : +49-(0)30-670-591-33 / 팩스 : +49-(0)30-670-591-25
 - 담당 : Mrs. Barbara Voon (이메일 : voon@dap.de)
 - 전화 : +49-(0)30-670-591-51 / 팩스 : +49-(0)30-670-591-25

5. 참고 (5. REFERENCES)

- EUREP-GAP Equivalent Certification System Owner Agreement
- ISO19011:2002 "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
- ISO/IEC Guide 7-1194 Guidelines for Drafting Standards Suitable for Use of Conformity Assessments
- ISO/IEC Guide 65-1996.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 ISO/IEC Guide 2
- ISO 8402

6. 정 의 (6. DEFINITIONS)

□ EUREP-GAP 기준 (6.1 EUREP-GAP Standard)

EUREP-GAP과 기타 규범 문서들에 명기된 기준은 ISO/IEC 가이드 65의 4.1.3 조항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동등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참고 및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FoodPLUS에서 이용 가능하다.

□ EUREP-GAP 인증시스템 (6.2 EUREP-GAP Certification System)

ISO/IEC 가이드 65와 EUREP-GAP 일반규정에서 정의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인증시스템

□ 동등성 기준 (6.3 Equivalent Standard)

동 문서에서 정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FoodPLUS로부터 동등성을 공식 인정받은 기준

□ 동등성 인증 시스템 (6.4 Equivalent Certification System)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회원으로서 ISO/IEC 가이드 65에 대하여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 가이드 65(EN45011)에 의거 인정을 받은 인증 시스템. 인증시스템은 동등성 기준에 대하여 상기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동 문서에서 정한 동등성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7. FoodPLUS (7. FOODPLUS, EUREP-GAP STANDARD MANAGER)

□ 참고 기준의 개발(7.1)

FoodPLUS는 EUREP-GAP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ISO/IEC 가이드 65

“라” 조항이 기준 개발의 지표 및 요구되는 조직 구조와 연관되는 한 상기 조항에 의거 EUREP-GAP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참고 인증시스템의 개발(7.2)

- FoodPLUS는 규범 문서에서 EUREP-GAP 일반규정, EUREP-GAP 기준을 운영하는 인증기관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마련한다.
- ISO/IEC 가이드 65에서 인증기관 인력 자격 기준에 대한 5.2조항, 감사에 관한 13조항, EUREP-GAP 상표 사용에 관련된 14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FoodPLUS는 EUREP-GAP 일반규정에 각 요구사항들을 명확히 한다.
- FoodPLUS는 EUREP-GAP 기준과 세부기준의 해석에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객관적인 안내가 있을 것을 보장한다.

8. 동등성 기준 (8. EQUIVALENT STANDARD)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준의 소유자는 그 기준이 ISO/IEC 가이드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개발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동등성 절차 (9. EQUIVALENCE PROCEDURE)

FoodPLUS는 특정 기준과 인증시스템이 EUREP-GAP 기준과 인증시스템과의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결과적으로 공식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운영한다. 특정 기준이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EUREP-GAP 기준에서 정한 모든 점검항목 및 세부기준(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을 준수해야 하며, 적용되지 않는 점검 항목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공정성 (9.1 Impartiality)

FoodPLUS는 동등성 인정절차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기술적 역량이 있으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행됨을 보장한다.

□ 신청 (9.2 Application)

○ 절차 정보 (9.2.1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FoodPLUS는 EUREP-GAP 기준과 신청인의 권리, 동등성 인정을 획득한 기준을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의무에 관한 알맞은 문서 양식(부록1참고)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동등성 인정 절차의 일부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FoodPLUS는 동등성 기준을 운영하는 인증기관과 동등성 기준 소유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것이다.

- i) 항상 공식 인정된 동등성 기준과 인증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 ii) 인증기관이 ISO/IEC 가이드 65를 포함한 EUREP-GAP 인증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 iii) 동등성이 받아들여진 범위에 한하여 동등성 관련 요구를 하여야 한다.
- iv) FoodPLUS나 EUREP-GAP을 분쟁으로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FoodPLUS가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권한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 동등성 상태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아야 한다.
- v) 동등성 상태의 보류나 취소 시에는 EUREP-GAP에 대한 참고를 포함하는 모든 홍보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관련서류는 FoodPLUS에 반환하여야 한다.
- vi)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기준 소유자는 1년 이내의 기간 안에 과정을 완료해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vii) 기술 변경 및 갱신 사항들을 동등성 기준에 추가시켜야 하며, 혁신과 개선 사항들은 FoodPLUS가 정한 기간 내에 FoodPLUS에 의해 수행되는 인증 구조에 반영시켜야 한다.

○ **기준 소유자에 의한 신청 (9.2.2 Application by a Standard Owner)**

동등성 인정 신청은 기준의 소유자가 벤치마킹 절차를 담당하도록 FoodPLUS에서 지정한 조직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FoodPLUS와 기준 소유자간 (초기)계약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이 계약은 종료일자, 취소약관, 독립적인 기술검토 조직에 의한 기준 감사에 대한 FoodPLUS의 권리, 경제상태,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평가절차에 대한 동의도 거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동등성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위원회로부터 성공적으로 권고되면 FoodPLUS와 동등성 인증 신청 기준의 소유자간 계약협정(동등성 인증 시스템 소유자 협약)이 이루어진다.

동등성 인정을 원하는 기준 소유자는 FoodPLUS에서 승인한 양식의 보고서를 직접 혹은 간접(제3당사자 의뢰)적인 방식을 통하여 영어와 자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i) 요약 :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준의 요약, 목적, 개발과 인증 시스템에 요구되는 운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 ii) 기술적 벤치마킹 문서 : EUREP-GAP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준의 조항별 상호참조 작성. 이 조항별 비교는 세부 기준을 상세히 열거해야 하며 동등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논거를 제공해야 한다.
- iii) 인증구조 벤치마킹 문서 :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증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은 EUREP-GAP 일반규정의 요구사항들과 상호참조되어야 하며, 검사와 인증요소의 동등성 혹은 보다 높은 엄격성을 증명해야 한다.

iv) 상위 언급된 문서의 공인 감수 번역 :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시 필요

○ 동등성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신청

(9.2.3 Application by a Certification Body working within an Equivalent Certification System)

FoodPLUS가 동등성 기준과 인증 시스템을 이미 인정한 경우,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EUREP-GAP 인증기관 승인절차에 따라 FoodPLUS로부터 정식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추진된다. 이 경우 동등성 인정을 받은 기준을 운영 및 인증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동등성 인증 기준의 소유자가 이의 없음을 나타내는 서면 증빙의 제출만으로도 신청으로 받아들여진다.

○ 승인된 기준의 요구사항 (9.2.4 Requirements of an Endorsed Standard)

기준은 반드시

- i) 증명된 법적 주체에 의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 신청이 되어야 한다.
- ii) 정확하고 규칙적인 해석을 위하여 표현과 용어에 있어 명확하고 엄밀해야 한다.
- iii)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해야 한다. 기준의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의 징수는 제한이나 제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 기술검토 (10. TECHNICAL REVIEW)

□ 사전 기술검토 (10.1 Preliminary Technical Review)

- FoodPLUS는 적절한 전문가 혹은 유능하고 독립적인 조직과 계약하여 영문 신청이 FoodPLUS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지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전문가 혹은 조직은 일

치성 평가에 있어 경력이 요구되며 7.2.2 항에 따라 인증기관 인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만일 어떠한 기술적 혹은 공식적인 사안이 발견된다면 신청은 수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이 경우 신규 신청이 요구된다.
- 사전 기술검토에 관한 정보는 2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동등성 검토 (10.2 Peer Review)

-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2~3개월간 동등성 검토가 진행된다. 동등성 검토는 EUREP-GAP과 주요 생산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정부, 학계와 EUREP-GAP을 운영하는 인증기관으로 구성된 EUREP-GAP 의회 회원들의 서면 자문으로 이루어진다. FoodPLUS는 상기 리스트의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리스트를 공개한다.
- 자문가들은 서면 기술소견 작성을 위해 소집되며, 정의는 영어로 제공된다.

□ 기술검토 (10.3 Independent Technical Review)

- 기준 소유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FoodPLUS로부터 지정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기술적으로 역량이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이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자문결과와 신청내용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개인은 적합성 평가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출된 기준과 인증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과 신청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7.2.2항에 나타난바와 같이 FoodPLUS에서 정한 인증기관 인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술검토는 모든 자문결과와 신청내용을 요약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 만일 이 검토에서 어떠한 기술적 혹은 공식적인 사안이 발견된다면 신청은 수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반송되며 신청인은 한 달 이내에 기술검토자에게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최종 보고서는 다음 중 하나를 권고 한다:
 - i) 동등성 인정
 - ii) 일부 합의된 수정안으로 동등성 인정
 - iii) 신청 거절

□ 방문 평가 (10.4 Independent Witnessed Assessment)

- 인증기관이나 기준 소유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FoodPLUS로부터 지정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기술적으로 역량이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이 현장 방문평가를 착수하며, 이 방문평가는 동등성 인증을 신청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인증 업무를 하는 인증기관의 감사를 평가함으로써 수행된다. 인증기관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한다.
- FoodPLUS로부터 지정된 개인 혹은 조직은 선택된 인증기관과 함께 검토된 기준 상호참조 및 세부기준 문서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입증한다. 이 방문 평가는 모든 상반된 점들과 의문점에 대한 증명들을 요약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 검토된 인증시스템 상호참조 문서의 시행에 관한 타당성 검증은 방문평가의 일부가 아니다. 이 검증은 동등성 인정이 승인된 후 신청인의 기준을 운영하는 각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인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이다. 이 검증은 신청인의 기준을 운영하는 각 인증기관의 인정서에 명시될 EUREP-GAP 일반규정의 준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 만일 이 검토에서 어떠한 기술적 혹은 공식적인 사안이 발견된다면 신청은 수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반송되며 신청인은 한 달 이내에 방문평가자 혹은 조직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방문평가자 혹은 조직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 중 하나를 권고 한다:
 - i) 동등성 인정
 - ii) 일부 합의된 수정안으로 동등성 인정
 - iii) 신청 거절

□ 기술표준위원회 검토 (10.5 Technical Standards Committee Review)

- EUREP-GAP 기준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표준위원회는 기술검토를 통하여 차후 회의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것인지, 수정을 전제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기술표준위원회가 기술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11. 공식적인 동등성 인정(11. FORMAL RECOGNITION OF EQUIVALENCE)

□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가 기술보고서 검토 후 동등성 인정을 권고하면 2주간 이 기준의 10.2항에 명시된 자문과정에 참여한 자문가들에게 동등성의 공식 인정에 관한 통지가 회람된다.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는 최종 소견을 고려하며, 중요한 시사점이 없을 경우 공식적으로 동등성을 인정한다.

□ 기술표준위원회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획득한 기준의 소유자와 FoodPLUS 간 적정한 계약 협정이 체결된다. 이 계약은 세부사항과 종료일자, 취소 약관 및 기술검토 조직의 기준 조사에 관한 FoodPLUS의 권리, 논쟁 절차를 포함한다. 검토 절차는 합의되어야 한다.

□ 동등성 인정절차의 결과물로서 서면 공식문서가 통지된다.

□ 동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단계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부터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 공식적 인정은 공개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i) EUREP-GAP 기준과 그 개정번호 및 일자
- ii) 개정번호 및 일자가 나타난 모든 규범문서를 포함한 동등성 기준

12. 이의제기 (12. APPEALS)

- FoodPLUS는 필요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기술적으로 역량 있는 이의제기 패널이 구성 되도록 서면 절차를 운영하고, 신청인은 부록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의제기의 권리를 갖는다.

13. 투명성과 기밀성 (13.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 동등성 인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되며 모든 문서들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자 및 FoodPLUS에 공개가 가능하다.
- 신청인으로부터 발행되고 기밀유지 표시가 된 모든 정보와 절차, 문서들(부록1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제외)은 동 문서에서 규정한 목적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나머지 정보들은 발간이 가능하다.

14. 비 용 (14. COSTS)

- 신청된 기준의 소유자는 지정된 외부 기술검토조직에 의해 현재 공개되어 있는 수수료 요율에 따라 동등성 인정절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추가적인 수수료는 EUREP-GAP 수수료 요율에 따라 그 기준의 계약된 인증자와 회원들에게 적용된다. 신청은 동등성 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준 소유자에게 열려있다.

15. 감 사 (15. SURVEILLANCE AUDITING)

- FoodPLUS나 지정된 독립적인 조직은 기준 소유자가 동등성 기준을 신청 당시의 합의된 절차에 의해 바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적절한 외부 감사절차를 이행한다.

16. 기준의 검토 및 갱신 (16. REVIEW AND UPDATES TO THE STANDARD)

- 벤치마킹 된 체계의 규범문서가 갱신되면 반드시 EUREP-GAP에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EUREP-GAP 역시 갱신내용이 발생할 시에는 벤치마킹 된 체계에 해당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 FoodPLUS는 동등성 인정된 기준의 소유자가 EUREP-GAP 기준의 갱신내용을 동일한 시기에 바르게 갱신하고 변화 추이를 따라 동등성 기준을 관리하며 EUREP-GAP 개정안을 적절히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록 3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붙임 1) :

문 서 양 식

(EXAMPLE PROFORMA DOCUMENTATION)

가. 기준 상호참조 및 세부기준

(Proforma : Standards Cross-Reference and Compliance Criteria)

EUREP-GAP 점검항목 및 세부기준		EUREP-GAP 점검항목 및 세부기준 내용	동등성 신청기준		동등성 신청기준 점검항목 및 세부기준 내용	동등성 신청기 준	동등성 신청기준 (자국어)	순응도
조항	수준		조항	수준				
1 CP			1					
1 CC								
2 CP			2					
2 CC								
3 CP			3					
3 CC								
4 CP			4					
4 CC								
번호순			번호순					

※ 수준 : 필수, 준필수, 권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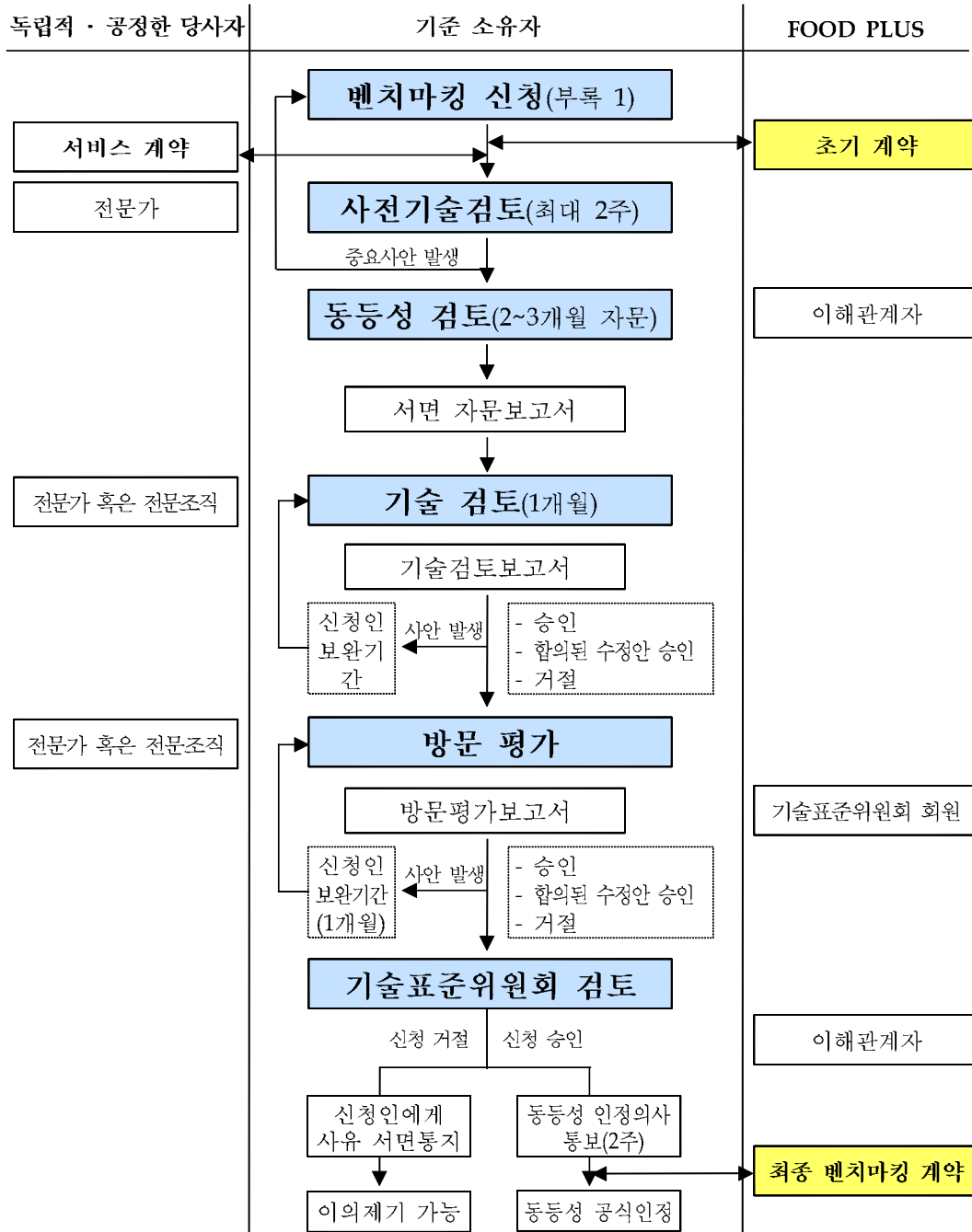
나. 인증시스템 상호참조

(Proforma : Certification System Cross Reference)

EUREP-GAP 일반규정 (조항)	EUREP-GAP 일반규정 (내용)	동등성 신청기준 (조항)	동등성 신청기준 (내용)	동등성 신청기준 (자국어)	순응도
1					
2					
3					
4					
번호순					

붙임 2)

제품 인증기준의 벤치마킹
(PRODUCT CERTIFICATION STANDARD BENCHMARKING)



붙임 3)

EUREP-GAP 참고 처리를 위한 개정 절차
(REVISION PROCEDURE TO HANDLE EUREP-GAP REFERENCE)

□ EUREP-GAP에 변화가 있을 경우의 관리사항(19.1)
(Management of changes to EUREP-GAP)

- EUREP-GAP 규범문서에 발생한 공식적인 변경 사항들은 모든 동등성 체계 문서와 인증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 FoodPLUS는 모든 공식적인 변경 사항들에 대하여 EUREP-GAP 동등성 기준 소유자들에게 서면으로 의사소통할 것이며, 기준 소유자들은 아래의 양식으로 회신해야 한다.

조항 (번호 및 내용/ 영어)	점검항목	세부기준	필수/준필수/권장
---------------------	------	------	-----------

- 동등성 체계의 소유자 및 인증기관은 FoodPLUS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동등성 체계를 운영하는 모든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생산 및 인증 요구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편입시키기 위한 동등성 체계의 충족 및 수정은 EUREP-GAP 기술위원회에 합당한 사유를 사전 통지할 경우 연기될 수 있다.
- 기준 소유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FoodPLUS로부터 벤치마킹 평가를 하도록 지정받은 독립 조직에 동등성 기준의 충족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와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수정사항이 발생된 완비된 체계 문서의 개정판
 - ii) EUREP-GAP 갱신내용에 영향을 받은 조항들로 구성된 동 문서의 부록 1 양식

- 독립적인 조직은 기준 소유자와 인증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기술 검토 단계부터 시작되는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부록 2 참고)
- 기술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 변경 사항의 중요도를 기초로 한 방문 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일 인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EUREP-GAP 기술표준 위원회에서 결정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 평가 절차는 동 문서의 10.3, 10.4, 10.5, 11 조항 및 부록 2의 절차 흐름도에서 설명된 대로 행해질 것이다.
- EUREP-GAP 갱신에 따른 동등성 체계의 평가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은 벤치마킹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기초로 FoodPLUS에서 공고할 것이다.
- 최소한 4년에 한 번 동등성 체계의 소유자 및 연계된 인증기관들은 EUREP-GAP 기준에 대한 그들의 체계 및 인증 시스템 갱신과 관련된 내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반드시 부록 1에 나타나 있는 양식을 통하여 서면화 되어야 하며, FoodPLUS로부터 지정된 동등성 검토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에 제출되어야 한다. 독립 조직은 즉시 승인을 하여야 할지, 부록 2의 흐름도와 같이 초기 벤치마킹과 동등한 평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기술표준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다.

□ 동등성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의 관리사항(19.2)

(Management of changes to EUREP-GAP equivalent schemes)

- 승인된 벤치마킹 문서와 관련 동등성 체계 및 인증 시스템에 발생한 변경 사항은 시행 전 FoodPLUS에 통지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가 지정한 조직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 i) 즉시 승인
 - ii) 벤치마킹을 담당하는 기술 조직에 의한 검토

- 변경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록 1의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조항들만 열거)
- a)의 경우, 책임 있는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는 변경 사항의 승인에 대하여 동등성 체계 소유자 및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b)의 경우, 책임 있는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는 벤치마킹 절차(10.3, 10.4, 11 참고)에 나타난 기술 검토에 의한 추가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등성 체계 소유자 및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 b)의 경우 체계의 소유자 및 인증기관은 공식적 회신을 받은 후 4주 이내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i) 기술 검토의 신청 또는
 - ii) 서면으로 EUREP-GAP 동등성 포기
- 독립 조직은 기술 검토 과정(부록 2 참고)을 시작한 체계 소유자 및 인증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할 것이다.
- 기술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 변경 사항의 중요도에 기초하여 방문 평가 필요성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일 변경 사항이 인증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경우의 결정은 책임 있는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가 담당한다.
- 기술 조직이 제출된 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변경 사항이 EUREP-GAP 요구사항과 맞지 않으며, 책임 있는 EUREP-GAP 기술표준위원회 역시 변경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체계 소유자 및 인증기관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i)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고 동등성 체계에 제안한 변경 사항을 철회한다.
 - ii) 8조에 나타난 이의 제기 절차를 따른다.
 - iii) 서면으로 EUREP-GAP 동등성을 포기한다.
- 동등성 체계의 변경 사항 평가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은 벤치마킹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기초로 FoodPLUS에서 공고할 것이다.

붙임 4)

개정판 갱신 및 유효버전의 등록
(EDITION UPDATES AND VALID VERSION REGISTER)

벤치마킹 절차 버전	교 체	효 려 발생시기	보완 및 수정 설명
1.1 (2005.4월)	1.0 (2003.5월)	2005. 4월	신규 EUREP-GAP 개정판 배경 및 정 당성(1), 방법(4), 두 번째 독립 평가조 직으로 DAP 추가, 번호 변경 및 부록 4 포함 EUREP-GAP 양식에 맞추어 양식 변경 동등성 인증시스템 소유자 합의 참고 추가 9.21 조항, 9.23 조항의 제목, 16.2 조항 변경
1.2 (2005.6월)	1.1 (2005.4월)	2005. 4월	DAP(4)의 신규 연락처

4. 일본 GAP 운영 □심사 □인증의 규칙 제2.1판

4. 일본 GAP 운영 □심사 □인증의 규칙 제2.1판

목 차

1. JGAP의 이념	323
2. 본 문서의 내용	324
3. JGAP의 운영	324
4. JGAP 심사·인증의 범위	326
5. JGAP 심사·인증의 흐름	327
6. JGAP 심사의 종류, 인증 및 인즈의 유효기간 ..	332
7. JGAP 심사원 및 단체 내부 감사원의 자격 요건 ..	336
8. JGAP 심사 기관의 자격 요건	337
9. JGAP 심사 판정위원의 자격 요건	338
10. JGAP 인증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인증취소 ...	338
11. JGAP 인증과 EUREPGAP 인증의 동시 취득 ...	340
12. 문서관리	343

1. JGAP의 이념

인간과 지구와 이윤 사이에 모순이 없는 농업생산의 확립과 생산·유통·소비의 신뢰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일본의 농장에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환경을 배려한 농업, 농업 생산자의 안전과 복지, 적절한 판매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JGAP는 개발되었다.

JGAP가 농장에 도입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확립함과 동시에 소비자·식품사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JGAP라 함은 일본의 생산환경에 적합한 농업생산공정관리의 절차이고, 일본의 농업생산자와 농산물유통업자의 양자가 협력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자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동시에 소비자·식품 사업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업생산공정관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JGAP는 농업생산자가 자주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경영 절차인 한편 그 도입의 달성 단계는 심사·인증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널리 인지되어야 하고 농업생산자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신뢰성을 표현하는 기준으로서도 기능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안정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확립하는 것이 JGAP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2. 본 문서의 내용

이 문서는 아래에 대해서 설명한다.

JGAP의 운영

JGAP 심사·인증의 구칙과 절차

심사를 받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심사를 행하는 심사기관과 심사원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 및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3. JGAP의 운영

JGAP의 개발 및 운영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일본 GAP협회(이하 일본GAP협회)가 행한다.

일본 GAP협회는 공평공정하게 운영되고 투명성이 높은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JGAP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서 일본의 농업경영 및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JGAP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JGAP에 관한 이하의 문장의 저작권은 일본 GAP협회가 보유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다.

「JGAP 운영·심사·인증의 규칙」 발행된 모든 版
기타 이에 관련되는 모든 문장

「JGAP 관리점과 적합 기준」 발행된 모든 版
기타 이에 관련되는 모든 문장

「JGAP 단체 사무국의 관리점과 적합기준」 발행된 모든 版
기타 이에 관련되는 모든 문장

「JGAP 마크 사용 규약」 및 이에 관련된 모든 문장
「JGAP 지도원 규약」 및 이에 관련된 모든 문장

「JGAP 운영·심사·인증의 규칙」 「JGAP 管理點과 적합 기준」 「JGAP 단체 사무국의 관리점과 적합기준」은 일본GAP협회 내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JGAP 마크 사용규약」은 일본GAP협회 내에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 다음 기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JGAP 운영·심사·인증의 규칙」에 입각하여 심사기관인증위원회, 심사원등록위원회, 심사판정위원회의 3 위원회는 활동을 한다.

「JGAP 지도원 규약」은 일본 GAP협회 내에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JGAP 심사·인증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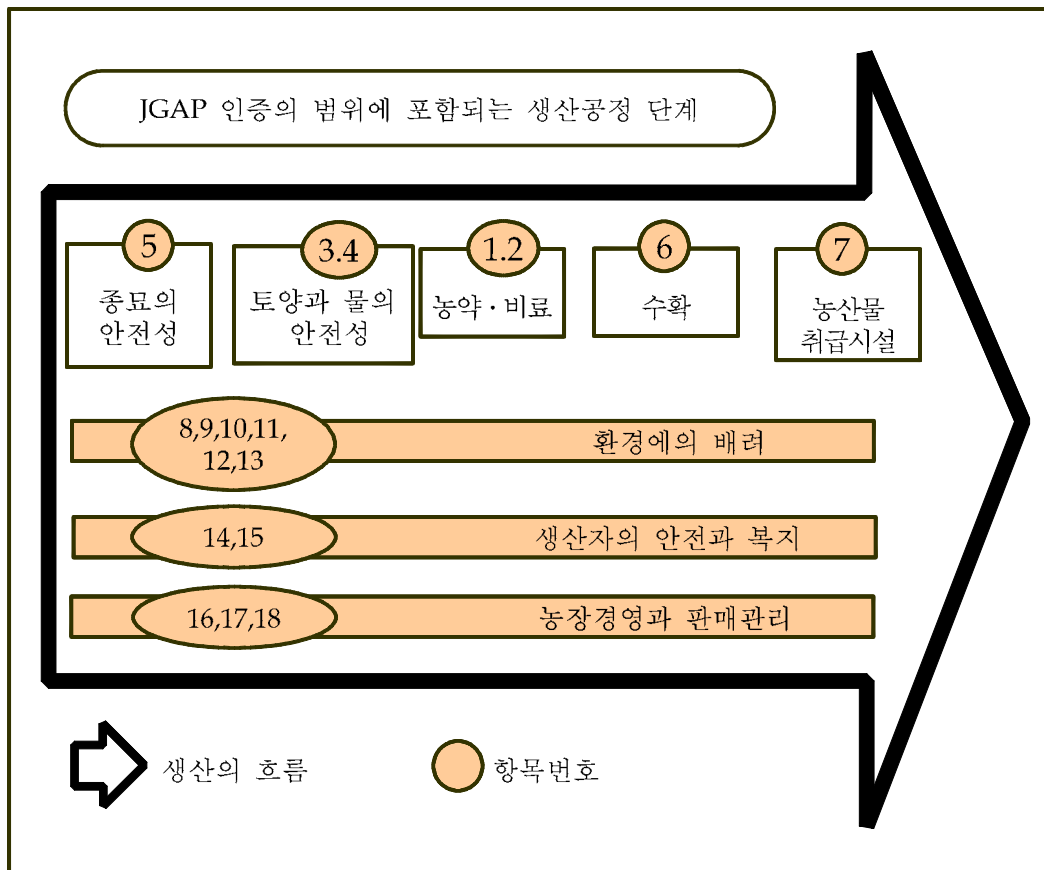
4.1. JGAP 인증의 범위가 되는 생산공정

JGAP 인증의 범위는 농장에서의 모든 농산물생산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토양·물의 관리와 종묘의 관리에서 시작하여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모든 작업, 그리고 농산물의 출하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

농산물 생산공정에 제조와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제, 세척, 선별, 단순절단, 정미, 정맥, 건조, 포장은 포함된다.

출하에 관한 작업은 농산물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행되기까지 혹은 공동선과·위탁판매의 경우는 관리책임이 수탁자에게 이행하기까지를 말한다.



4.2 농장의 정의

1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농장이라 함은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일체적인 관리체제를 가지는 경영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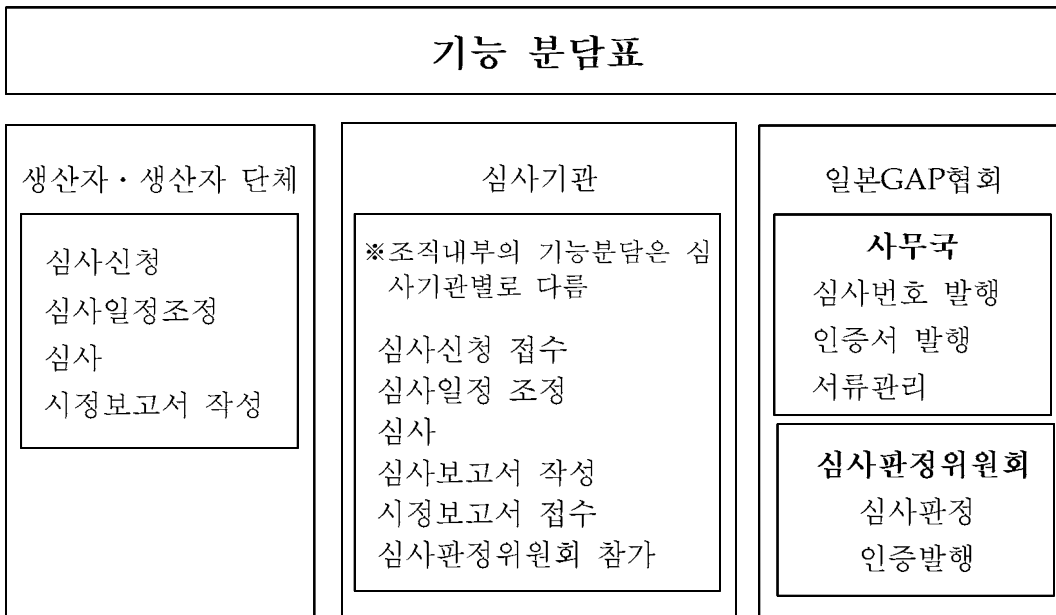
1농장에는 복수의 포장과 복수의 작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4.3 단체의 정의

복수의 농장이 모인 사무국을 보유하는 조직

사무국이라 함은 「JGAP 단체 심사 단체사무국 관리점과 적합기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직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JGAP 심사·인증의 흐름



7. 전체 프로그램

<p>① JGAP심사신청서(「JGAP심사 접수동의심사신청서」, 「심사대상농장의 정보입수」)</p> <p>② 심사신청창구에 심사신청서를 송부합니다.</p> <p>⑥ 심사를 받습니다.</p> <p>⑧ 시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p> <p>⑨ 시정보고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합니다.</p>	<p>③ 접수한 심사신청서로부터 직접 농장에 연락하여 심사일정을 조정합니다.</p> <p>④ 《심사번호발행 form》을 기입하여 일본GAP협회 심사담당자 앞으로 송부합니다.</p> <p>⑥ 심사를 합니다</p> <p>⑦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p> <p>⑪ 심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심사보고서, 시정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심사비용을 농장에 청구합니다.</p>	<p>⑤ 《심사번호발행 form》을 접수한 심사담당자는 심사번호를 발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농장이 일본GAP협회의 회원인지를 조사합니다. 심사번호는 《심사번호발행 form》의 반신용에 기입하여 심사기관에 송신합니다.</p> <p>⑩ 심사 담당자는 심사판정위원회를 소집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판정위원회</p> <p>⑫ 심사 판정을 합니다.</p> <p>⑬ 인증번호를 발행합니다.</p> </div> <p>⑭ 심사판정 결과보고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p> <p>⑮ 심사에 관한 서류를 관리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인증판정에 관한 비용을 심사기관에 청구합니다.</p>
--	--	--

5.1. 심사신청·일정조정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을 도입한 생산자·생산자단체는 JGAP심사기관에 심사신청을 합니다.

JGAP 심사기관이라 함은 일본GAP협회 심사기관 지정위원회가 「JGAP운영·심사·인증의 규칙」에 입각하여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그 이외의 기관이 실시한 심사 및 인증발행을 일본GAP협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① 농장은 각 심사기관에 직접 심사신청을 한다. 일본GAP협회가 정한 「표준JGAP심사신청서」 혹은 이에 준하는 심사기관이 정한 심사신청서를 사용한다.
- ② 심사기관은 농장에 직접 연락하여 심사일정을 조정한다.
- ③ 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심사처·심사일정·JGAP버전을 일본GAP협회 사무국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④ 일본GAP협회 사무국 담당자는 심사기관에 해당 농장의 심사번호를 전달합니다. 심사번호는 「심사기관 코드(세자리수) + 심사일(6자리수) + 기준식별번호(S : 청과물, K: 곡물) + 농장번호(9자리수)」로 되어 있다.

5.2. 심사 및 시정보고서 접수

- ① 심사기관은 심사원을 심사처에 파견한다.
- ② 심사원은 일본GAP협회가 지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서식은 아래와 같다.
 - 심사신청서
 - JGAP 체크리스트
 - 표준 JGAP 심사결과보고서
 - 표준 JGAP 부적합 일람

- ③ 심사는 심사신청서에 있는 포장 및 농산물 취급시설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포장이 복수인 경우, 농장의 관리 상태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포장을 두개 이상 샘플로서 심사하여 이것을 가지고 심사 결과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가 일원적이지 않은 경우 관리의 단위별로 2개 이상을 샘플로 하여 심사한다. 농산물 취급시설은 모두 방문하여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 생산자·생산자 단체는 적절하게 시정하을 하는 것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심사판정에서 심사 후 시정 내용을 재차 현지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시정 내용의 현지 확인 조건은 (A) 심사원에 의해 「시정의현지확인 필요」의 의견, (B) 심사 결과에서 필수 항목 70%이하인 경우. 다만, 실제로 시정 내용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심사판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시정보고의 접수는 심사일로부터 4주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 일수가 경과한 경우에도 접수한다.
- ⑤ 생산자·생산자 단체는 시정보고를 여러번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는 심사판정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5.3. 심사판정위원회

- ① 日本GAP협회는 심사판정위원회를 매월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각 심사기관은 심사판정위원회에 1명 이상 출석시킨다. 심사기관으로부터의 출석자는 판정에 관한 서류(심사보고서, 시정보고서)를 지참한다.
- ③ 심사판정위원회에서 심사 판정을 한다. 심사판정의 결과 재시정·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증발행은 일본GAP협회가 한다.

- ⑤ 인증서는 「표준JGAP인증서」를 사용한다. 인증번호는 인증심사번호 + n으로 한다. 인증서에 기재하는 품목은 「표준JGAP품목명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 심사서류의 열람에 대해서

- ① 2번째 이후의 심사에 대해서 심사원은 일본GAP협회에 대해 전회의 심사 판정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전회의 심사에 관계되는 서류의 확인을 권장한다.

5.5. 심사비용에 대해서

- ① 심사비용은 각 심사 기관이 가격을 설정하여 직접 농장에 청구한다

5.6. 판정인증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 ① 인증농장은 심사비용과는 별도로 일본GAP협회에 대해서 JGAP인증 등록료가 발생한다. 일본GAP협회는 아래의 비용을 각 심사기관에 청구한다.

- 심사판정료 : 2,500엔
- 인증발행료 : 2,500엔
- 농장등록료 : 5,000엔(일본GAP협회 회원 또는 2회차 이후의 심사에서는 무료)

- ② 단체에서의 심사의 경우는 아래의 요금 발생한다.

- 심사판정료 : 500 × 농장수
- 인증발행료 : 500엔 × 농장수
- 농장등록료 : 1,000엔 × 농장수(일본GAP협회 회원 또는 2회차 이후의 심사에서는 무료)

6. JGAP 심사의 종류,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6.1. 심사의 종류

JGAP에는 아래의 2종류의 심사가 있다.

- ① 개별심사 : 농장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 ② 단체심사 : 복수의 농장이 단체가 되고,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단체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3농장 이상이다.
- 형식에 관계없이 단체 공동의 규칙(농장관리매뉴얼 등)을 공유하고 있고,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 단체의 책임범위와 각 농장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 상기의 규칙을 운용하기 위한 주체가 되는 사무국이 단체 내부에 존재한다.

단체 심의 경우, 사무국 심사와 전 농장수의 제곱근의 농장수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을 심사한다. 농장의 선정은 심사기관이 심사일의 2주간 전에 단체 사무국에 통지한다.

단체에 소속된 농장은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기관으로부터 상기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심사에정일을 비워두는 것을 권장한다.

단체심사의 경우, 선정된 농장의 심사시간은 단순한 개별심사보다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심사하는 농장수는 최대한 1일 4농가 이하로 한다. 선정은 단체의 생산품목, 작형, 규모를 고려하여 단체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농장을 선정한다.

과거에 개별로 삼사를 받아서 이미 인증을 취득한 농가가 그 유효기간 이내에 새롭게 단체심사를 받는 농장으로 추가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개별 인증은 기한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6.2. JGAP인증의 적합 수준

- ① 관리점은 모두 심사 각각의 결과가 「적합」 「부적합」 「해당외」의 어느 하나로 결정된다. 「해당 외」로 하는 경우는 그 판단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심사 관리점에는 필수항목, 중요항목, 노력항목의 3개의 수준이 있다. 필수항목은 법률 준수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등의 관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관리점이다. 중요항목은 적합하여야 함이 강하게 요구되는 관리점이다. 노력항목은 심사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나, 보다 이상적인 농장관리를 위한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관리점이다.
- ③ 심사결과 아래의 기준에서 인증이 주어진다.

< 개별심사의 경우 >

JGAP인증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해당하는 필수항목에 100% 적합

해당하는 중요항목의 95%가 적합

JGAP 필수항목 합격 2007.5월말일자로 폐지한다.

< 단체심사의 경우 >

JGAP인증 「JGAP 단체사무국의 관리점과 적합기준」

해당하는 항목에 100% 적합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해당하는 필수항목에 100% 적합

해당하는 중요항목의 95%가 적합

6.3. 인증서, 인증일자 및 유효기간

JGAP 인증서라 함은 생산자·생산자 단체가 JGAP인증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로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일본GAP협회와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증일이라 함은 인증으로 판정된 심사판정위원회의 개최일을 말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특별로써 1년 이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심사결과 시정의 필요없이 JGAP인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는 JGAP2.1판 이후의 기준에 의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6.4. J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JGAP의 심사는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가 보유하는 농장관리의 실태와 그 운용을 심사하여 그 적합을 인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JGAP인증농장에서 인증된 농산물」이라 부르고 JGAP마크의 표시를 허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허가할 수 있는 농산물의 품목은 심사신청서에 기재된 농산물로 하고, JGAP인증서에 기재된다.

개별심사의 경우, 심사를 받는 기준(청과물, 곡물)에서 지정된 작물범위에 대해서 재배하고 있거나 혹은 1년 이상 재배할 예정인 품목을 모두 심사신청서에 기재한다.

단체심사의 경우, 단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거나 혹은 1년 이내에 판매할 예정에 있는 품목을 모두 심사신청서에 기재한다

심사 신청서 기재되어 있으면 심사원은 그 농산물에 관한 농장관리 실태와 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배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혹은 재배할 예정이 없는 품목명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5. 심사 시기

초회의 심사에서는 특별하게 심사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2회째 이후의 심사에서는 심사신청서에 기재된 농산물 중 1종류 이상의 작물이 심사에 존재하고 재배포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타의 작물에 대해서도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이 요구하는 관리의 상태에 있다고 심사기관이 확신하는데 충분한 상태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다라 함은 농장 내의 포장 또는 시설에 작물이 생육중이거나 후확 후 관리(보관·선별·조제·세척·포장) 중인 것을 말합니다.

6.6. J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

인증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전에 수확한 농산물부터 인증의 유효기간으로부터 3개월까지 수확한 농산물까지를 J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JGAP 마크의 표시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합니다.

6.7. JGAP인증농장으로서 등록된 포장 및 시설의 범위

심사신청서에는 심사에서 사용하는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의 작물범위(청과물, 곡물)에 포함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든 포장 및 농산물취급시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5.2에 입각한 심사가 이루어져 인증 농장으로서 일괄하여 등록할 수 있다.

6.8. 인증일 이후에 생산하는 품목을 늘리는 경우

일본GAP협회가 정한 「작물추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J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농장은 「작물추가신청서」 중에서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이 요구하는 관리 상태에서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9. 인증일 이후에 생산하는 포장 및 시설을 늘리는 경우

특단의 규정없이 J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7. JGAP 심사원 및 단체 내부 감사원의 자격

7.1. JGAP 심사원의 자격 요건

JGAP 심사원은 아래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농업, 보급지도원, 생산자단체의 영농지도원의 경험 3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하다고 일본GAP협회가 판단하는 자
- ② 일본GAP협회 인정 JGAP지도원 연수 합격
- ③ JGAP 심사 읍저버 경험 3농장 이상
- ④ JGAP지도의 경험 3인정농장 이상 혹은 JGAP상급심사원 입회에 의한 JGAP 심사 현장 훈련 3농장 이상
- ⑤ 일본GAP협회 인정 JGAP 심사원 연수 합격

심사원 자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⑥ 일본GAP협회가 개최하는 심사원 Follow-up(심사기술, 농약, 비료, 환경 및 생산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에의 참가 년2회 이상이 요구된다.
- ⑦ JGAP심사 년 3회 이상
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심사원 자격을 일시 정지하고 자격 복귀를 위해서는 ③과 ④항목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단체 내부심사원은 상기의 모든 것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③과 ④는 필수항목으로 한다.

7.2. JGAP 상금심사원의 독립성과 비밀유지 의무

- (1) 심사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활동도 행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심사일로부터 전후 3년 이내는 심사를 담당한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컨설팅이나 교육훈련활동을 행해서는 아니된다.
- (2) 심사원은 정보와 기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관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7.4. 심사원자격의 취소

아래의 경우에는 심사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의 판단은 심사원 등록위원회에서 행한다.

- (1) 심사를 담당한 생산자·생산자 단체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인으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심사원등록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또는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경우
- (2) JGAP 및 협회의 신뢰도에 손상을 준 경우

8. JGAP 심사기관의 자격 요건

- ① ISO가이드라인 65에 준거한 JGAP심상인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② 상기에 대해서 일본GAP협회 심사기관인정위원회의 심사(인정업무는 ISO 17011에 입각하여 실시한다.)를 받아서 인정을 받을 것
- ③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④ 심사비용이 타당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할 것
- ⑤ 심사판정위원은 1명 이상 보유하고, 심사판정위원회에의 출석이 가능할 것
- ⑥ JGAP 담당 기술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기술위원회에 제안 및 옵저버 출석이 가능할 것

9. JGAP 심사판정위원의 자격 요건

- ① JGAP 심사 경험 10년 이상
- ② 심사판정위원회의 옵버버 경험 2년이상
- ③ 일본GAP협회의 심사판정위원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JGAP 인증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인증 취소

10.1.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의무

인증 보유자는 스스로가 명시한 인증 범위 내에서 「JGAP 운영·심사·인증의 규칙」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JGAP 단체 사무국의 관리점과 적합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합할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등록이 완료된 생산자 혹은 생산자단체가 심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롭게 신청을 하는 심사기관에 대해서 현재의 심사기관(혹은 지금까지의 JGAP 등록을 하고 있던 과거의 모든 심사기관)이 교부한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자 혹은 생산자단체는 심사신청서를 동시에 복수의 JGAP인정기관에 대해서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인증농장으로서 등록된 생산자·생산자단체는 일본GAP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농장이나 생산물의 범위의 변경, 생산자단체의 가입/탈퇴 등의 테이터 변경에 대해서 신고의 책임을 진다.

인증 보유자는 GAP 인증의 범위가 되는 생산공정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외부 위탁업자는 JGAP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JGAP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JGAP 인증의 생산자 공정에 관계되는 모든 장소를 인증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0.2. 생산 및 생산자단체의 권리

심사기관에 대한 모든 애로사항과 이의신청은 심사기관이 정한 애로·

이의신청 대응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인정기관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GAP협회 일본GAP협회심사기관인정위원회에 대해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 혹은 생산자단체는 심사기관이 인정기관의 지위를 잃었을 경우 (제제조치, 파산, 혹은 기타의 이유)에도 취득한 인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10.3. 비밀유지의무

일본GAP협회와 일본GAP협회가 인정하는 심사기관은 신청자인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생산공정의 자세한 내용, 평가에 관한 보고서와 이에 관련된 문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비밀사항으로 취급한다.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전에 신청자에 의한 서류로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농장의 JGAP인증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인증취득과 동시에 「JGAP인증농자의 이름」 「J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기타 부수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본GAP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생산자/생산자단체는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 JGAP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의 판단은 심사판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인증취소 전에 심사판정위원회는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서 문서로 경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즉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고는 인증 취소의 4주전에 통보되지만, 경고를 받고 있는 동안은 생산자는 인증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JGAP마크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에 준한 정지상태가 된다. 인증취소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악질이고 사회적 신뢰에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GAP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 (1) 인증의 유효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심사를 받다 않은 경우
- (2)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에서 정한 필수항목의 JGAP위반에 관

한 크레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거나 3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 된 경우

- (3) 생산자단체의 내부감사 결과 소속된 생산자에게서 필수항목의 부적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고 그 생산자를 단체로부터 제명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4) 원산지표시 위반이나 JGAP 마크 사용 규정 위반 등의 부적절한 판매방업 등에 의해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거나 농업생산관련법규, 식품관련법규, 노사법규 기타 법령에 위반하여 JGAP인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심사판정위원회에서 판단된 경우
- (5) 심사 인증에 관한 규정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6)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회사 갱생, 파산, 민사 재생 등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신청을 한 경우, 어음의 부도처분, 세금의 체납처분, 또는 차압 등의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심사를 담당한 기관 혹은 심사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인이 되어 심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심사판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1. JGAP인증과 EUREPGAP 인증의 동시 취득

11.1. EUREPGAP 인증의 취득

JGAP심사(청과물)을 받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는 아래의 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EUREPGAP와 동등성인증을 가지는 JGAP인증서(청과물) 및 EUREPGAP인증서(Fruit and Vegetables)를 취득할 수 있다.

11.2. 심사기관

EUREPGAP과 동등성인증을 가지는 JGAP인증서(청과물) 및 EUREPGAP인증서(Fruit and Vegetables)을 발행하기위한 심사는 EUREPGAP의 심사 자격을 가지거나 일본GAP협회에서 인정한 심사기관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한다.

11.3. 심사에 사용되는 기준 문서

JGAP와 EUREPGAP 쌍방의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의 심사·인증은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청과물 2.1판」에 의거 「EUREPGAP General Regulation Fruit and Vegetable Version 2.1. Oct04」에 따라서 실시된다.

11.4. 심사원

JGAP와 EUREPGAP 쌍방의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의 심사·인증은 EUREPGAP의 심사원 자격 및 JGAP의 심사원 자격의 양쪽을 충족하는 심사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EUREPGAP의 심사원 자격은 「EUREPGAP General Regulations Fruit and Vegetable Version 2.1. Oct04」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JGAP의 심사원자격은 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다.

11.5. 인증서의 구별

EUREPGAP과 동등성을 가지는 JGAP인증서는 EUREPGAP과 동등성을 가지지 않은 JGAP인증서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EUREPGAP과 동등성을 가진 JGAP인증서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그렇지 않은 JGAP인증서와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EUREPGAP과 동등성을 가지는 JGAP인증서에는 이하의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11.5.1. 기본정보

- (1) EUREPGAP 로고
- (2) 심사기관의 명칭과 로고
- (3) 인정기관의 명칭 또는 로고, 혹은 명칭과 로고 모두
- (4) 인증농장의 명칭과 주소
- (5) 단체인증의 경우 단체 회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인증서에 첨부할 수 있다.

11.5.2. 인증의 대상

- (1) 인증농산물의 분류(「청과물」)
- (2) 인증농산물명
- (3) 농산물 취급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산물취급은 해당외」 라고 명기
- (4) 심사에 사용된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과 「EUREPGAP General Regulations Fruit and Vegetable」 의 판수
- (5) 인증의 유효기간

11.5.3. 심사의 흐름

- ① 생산자에 의한 심사기관에의 심사신청
- ② 생산자와 심사기관간의 심사일정 조정
- ③ 심사기관은 심사처·심사일정·JGAP의 판 번호를 일본GAP협회에 연락
- ④ 일본GAP협회에 의한 해당 농장의 심사번호 발행
- ⑤ 심사원에 의한 농장심사
- ⑥ 심사원은 심사보고서를 일본GAP협회 및 심사기관에 제출
- ⑦ 일본GAP협회가 개최하는 심사판정위원회에 의한 JGAP 심사판정
- ⑧ 심사기관에 의한 EUREPGAP 심사 판정
- ⑨ 심사기관의 판정에 의해 인증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기관에 의한

EUREPGAP인증서 발행

- ⑩ EUREPGAP인증이 인정된 경우 일본GAP협회에 의한 EUREPGAP과 동등성을 가지는 JGAP인증서 발행

補項

JGAP인증과 EUREPGAP인증의 동시 취득의 항은 JGAP와 EUREPGAP과의 동등성확인 후에 발효한다.

12. 문서관리

12.1 JGAP의 문서의 명칭과 판

JGAP에 관한 문서로서 아래의 문서를 정하여 운영주체인 일본GAP협회는 판을 관리한다. 모든 문서에는 발행년월일과 인증의 개시일을 기재할 수 있다.

- 「JGAP운영·심사·인증의 규칙」 및 이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 본 문서의 판은 판번호로 규정한다.
-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및 이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 본 문서의 판은 작물범위(청과물, 곡물) 및 판번호로 규정한다.
- 「JGAP 단체 사무국의 관리점과 적합기준」 및 이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 본 문서의 판은 판번호로 규정한다.
- 「JGAP 마크 사용 규약」 및 이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 본 문서의 판은 인정범위(개별인증, 단체인증) 및 판번호로 규정한다.
- 「JGAP 지도원 규약」 및 이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 본 문서의 판은 판번호로 규정한다.

12.2. JGAP의 언어 및 번역에 관한 규정

1항에서 정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일본어판을 원본으로 한다. JGAP를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일본GAP협회의 기술위원회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번역판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언어에서의 JGAP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12.3. 개정판의 통지

개정판의 발행은 일본GAP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 일본GAP협회는 필요에 따라서 심사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JGAP심사 심사결과 보고서

JGAP심사번호				
수검자 (농장)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FAX			
소속 단체명		일본GAP협회의 정회원(농업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경우		
심사원명				
JGAP심사일		<input type="checkbox"/> JGAP 청과물 <input type="checkbox"/> JGAP 곡물		
심사개시시간				
심사종료시간				
시정보고서제출기간		년	월	일
JGAP 7장(농산물취급시설) <input type="checkbox"/> 해당외 <input type="checkbox"/> 해당외 이유 _____		<input type="checkbox"/> 해당외		
심사총평				
<input type="checkbox"/>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심사자 사인

심사원 사인

JGAP심사 부적합 항목 일람

심사번호	
------	--

필수	중요	노력	항목번호	부적합내용	요사진

5. 일본 농림수산물 기초 GAP 체크리스트

5. 일본 농림수산성 기초 GAP 체크리스트

(2007년 3월 ver. 1)

[생산자용]

기초GAP(시설채소)

공정관리를 시작해보시겠습니까?

이 [기초GAP(시설야채)]은

법령준수사항, 농업환경규범을 반드시 실천하는 항목으로

토양의 유해물질오염방지, 병원성오염방지를 중요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

성명

목 차

- 체크시트
 - (1) 준비 351
 - (2) 육묘 352
 - (3) 재배관리 353
 - (4) 수확·조제·출하 354
 - (5) 전반 355
- 내년을 향해서 356

※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기입에 있어

- 주소, 성명은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농작업이 끝났으면, 잊기전에 [체크]란의 을 체크해 봅시다. 체크한 일자를 써놓으면 기록의 점검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여백에는 농작업의 일자, 그날의 날씨외에 농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써 봅시다.
- [내년을 향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씁니다. 주위의 생산자나 담당자, 지도자와 상담하여 기록하면 효과적입니다.

(1) 준비

체크항목	체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①연수회참가와 팜플렛트등에 의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②재배 메뉴얼, 재배기준을 읽었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시설토경재배만]</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③퇴비등의 유기질의 시용에 의해 토양 만들기를 실시했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양액재배에 대해서는]</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시설토경재배에 대해서는]</p>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미생물방지대책으로 중요합니다.</p> <p>④용수의 수원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하천, 지하수, 저수지 등)</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시설토경재배에 대해서는]</p> <p style="text-align: center;">토양의 유해물질오염방지대책으로 중요합니다.</p> <p>⑤토양의 카드뮴, 비소 등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은 없는지? 토지의 생산이력과 농장주변의 환경을 확인하였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p> <p>⑥</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2) 육묘(스스로 육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체크항목	체크(일자)
①종자증명서, 구입전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②농약은, 재배메뉴얼과 농약레벨에 기재되어 있는 약제, 사용량을 지켜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월 일()
※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③	<input type="checkbox"/> 월 일()
④	<input type="checkbox"/> 월 일()

(3) 재배관리

체크항목	체크(일자)
<p>[양액재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①배양액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②급수설비는 정상으로 가동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또,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③비료 또는 액비는 재배 메뉴얼에 의해서 비기준에 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④농약은 재배메뉴얼과 농약레벨에 기재되어 있는 약제, 사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⑤IPM(총합적병충해, 잡초관리) 실천지표의 관리포인트를 체크하였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p> <p>⑥</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⑦</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4) 수확·조제·출하

체크항목	체크(일자)
<p>병원미생물방지대책으로 중요합니다.</p> <p>①수확컨테이너의 청소등 수확물의 병원성 미생물등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을 실시하였습니까? (수확마다 체크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②농약사용의 수확전일수를 확인하고 적기수확을 실시하였습니까?(수확마다 체크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③선별·조제작업전에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체크하고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p> <p>④</p>	<p><input type="checkbox"/> 월 일()</p>

(5) 전반

체크항목	체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①작업기계등은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②난방기기의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③온실내의 보온대책(피복의 틈새의 점검/보수등)을 실시하였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④비료와 농약을 정리/정돈해 보관하고 있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⑤하우스용비닐과 멀칭등은 업자위탁으로 적정하게 폐기하였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반드시 실천해 봅시다.</p> <p>⑥비료와 농약의 상황등 재배이력의 기장을 실시하고, 구입전표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p> <p>⑦</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내년을 향해서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메모

주의(특이사항)한 것을 메모하여 두십시오.

(2007년 3월 ver. 1)

기초GAP(시설야채)

공정관리를 시작해 봅시다. !

이 [기초GAP(시설야채)]는
법령준수사항, 농업환경규범을 필수항목으로
토양의 유해물질오염방지, 병원성오염방지를 중요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명 _____

담당자명 _____

목 차

○ 체크시트	
(1) 준비	359
(2) 재배관리	360
(3) 수확·조제·출하	360
(4) 전반	361
○ 내년을 향해서	362

※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기입에 있어

- 산지명, 담당자명은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각 구조,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잊기전에 [체크]란의 을 체크해 보십시오. 기록의 점검을 위해 체크한 일자를 기입합니다.
- 여백에는 농작업의 일자, 그날의 날씨외에 농작을 할때 특이한 점을 기입합니다.
- [내년을 향해서]는 생산자와 보급지도원고k 충분한 의견 교환하여 기입합니다.

(1) 준비

체크항목	체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①식품안전GAP, 각도도부현의 병해충방제, 농업환경규범에 관한 연구회 개최와 팜프렛트 배포등에 의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②전년도의 기록을 기준으로 재배메뉴얼, 재배기준을 검토하고, 생산자에게 배포주지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양액재배에 대해서는]</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시설토경재배에 대해서는]</p>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미생물방지대책으로 중요합니다.</p> <p>③용수원의 병원미생물오염과 농지의 유해물질오염상황에 대해 기초적조사를 실시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또, 생산자에게의 정보제공을 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봅시다.</p> <p>④</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2) 재배관리

체크항목	체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①생육과 품종에 대한 적절한 시비지도 를 실시 하였는가?</p>	<input type="checkbox"/>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②사용농약의 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지도 를 실시 하였는가?</p>	<input type="checkbox"/> 월 일()
<p>※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봅시다.</p> <p>③</p>	<input type="checkbox"/> 월 일()

(3) 수확·조제·출하

체크항목	체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미생물방지대책으로 중요</p> <p>①수확컨테이너의 청소 등 수확물의 위 생적인 취급에 지도하였는가?</p>	<input type="checkbox"/>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②농약사용의 수확전일에 확인의 실시 에 대하여 지도하였는가?</p>	<input type="checkbox"/>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미생물방지대책으로 중요</p> <p>③정기적으로 집출하시설의 설비에 대하 여 청소/점검을 실시하였는가?</p>	<input type="checkbox"/> 월 일() <input type="checkbox"/> 월 일() <input type="checkbox"/> 월 일()
<p>※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봅시다.</p> <p>④</p>	<input type="checkbox"/> 월 일()

(4) 전반

체크항목	체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①작업기계등은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②시설원예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난방기기 점검/정비 및 온실내의 보온대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③야채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④야채의 찌꺼기등을 비료와 사료로 사용하였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항목</p> <p>⑤하우스용비닐과 멀칭등은 적정하게 폐기하도록 지도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⑥지구(역)내 생산자의 생산공정관리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p>※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p> <p>⑦</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월 일()</p>

내년을 향해서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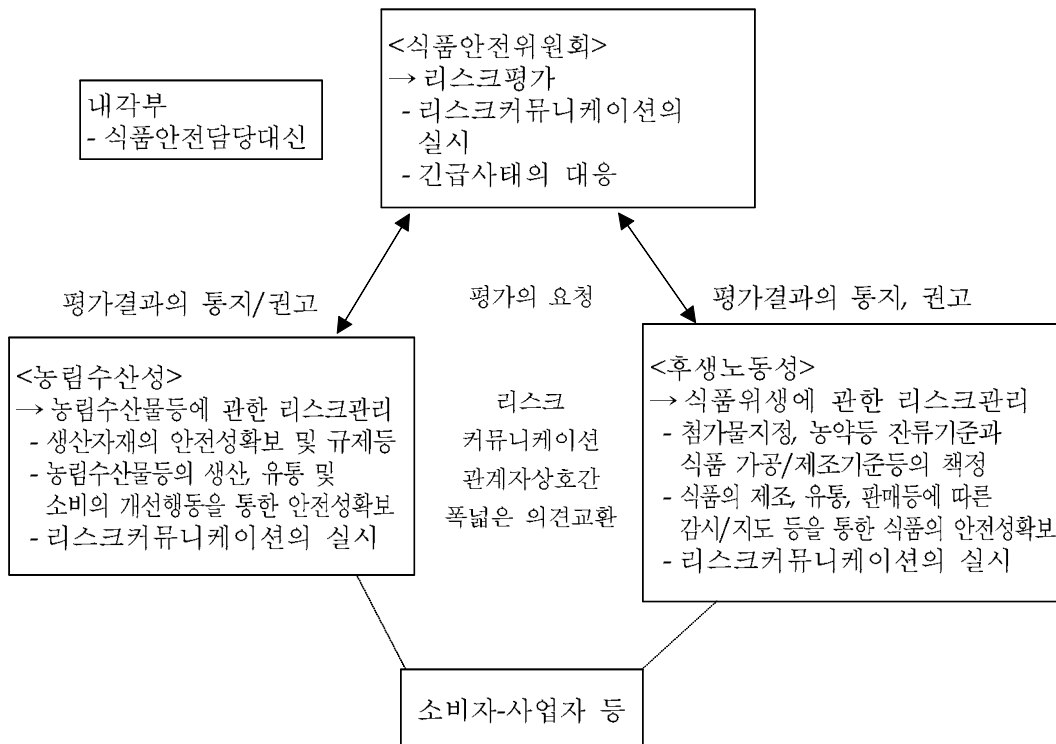
6.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추진

6.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추진

가.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제

- 식품안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의 발생 등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 ① 식품안전기준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행정의 기준이념을 책정
 - ②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관리, 리스크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된 [리스크 분석]의 생각을 도입
 - ③ 리스크 평가를 행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리스크관리를 행하는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의 조직을 개혁

나. 식품안전행정의 체제(2003년 7월 ~)



다. 리스크에 준한 조치

○ 리스크분석

<리스크관리>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을까를 실태조사 등으로 안다음 모든 관계자와 협의 하면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정책·조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른 적절한 정책·조치를 실시하는 것

<리스크평가>

식품중에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등을 섭취하는 것에 의해 어느 정도의 확률에 어느 정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리스크분석의 전과정에 있어, 소비자등 관계자간에 리스크에 관하여 정보/의견교환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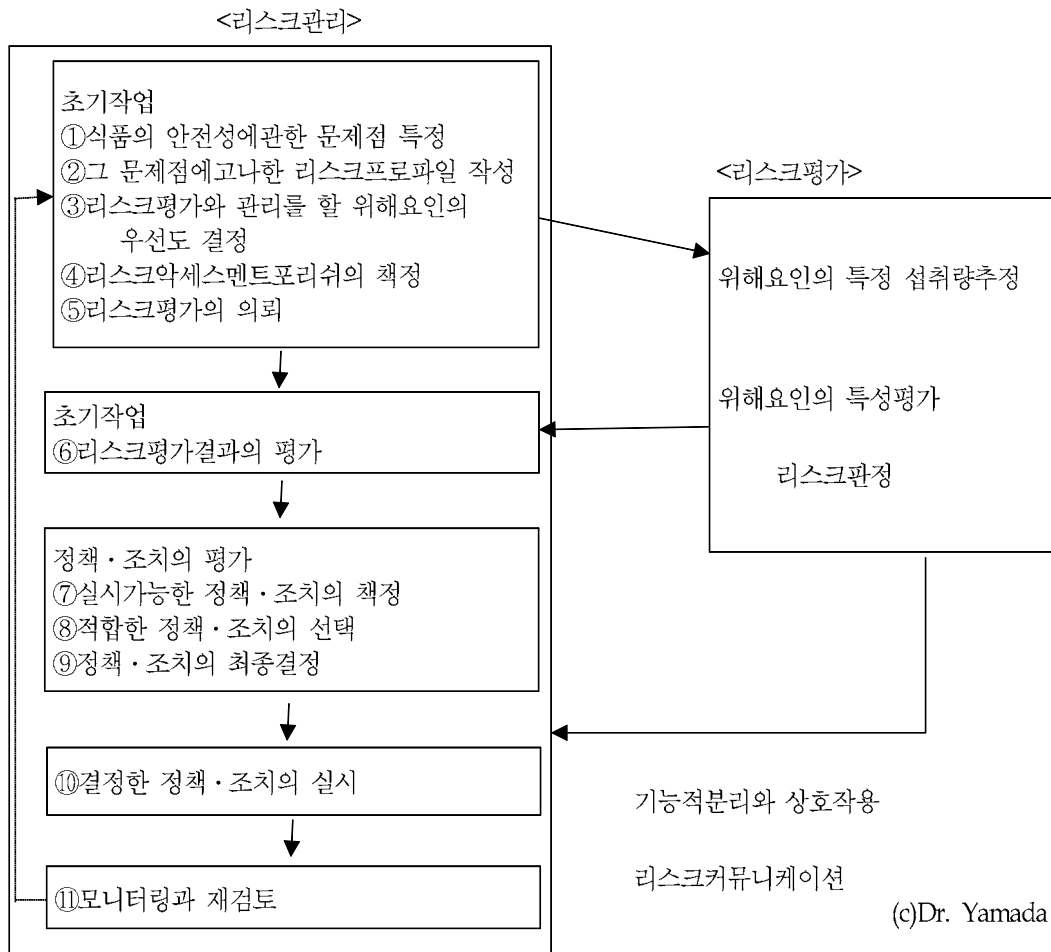
○ 과학에 기초한 <--WTO SPS 협정 제2안 2*

* 가맹국은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과학적인 원칙에 준하여 SPS조치를 적용하는 것 및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SPS조치를 유지못함

라. 법률에 준한 조치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재의 품질의 보전과 적절한 사용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판매, 사용 등을 규제(농약단속법, 비료단속법,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약사법(후생성공관) 등)

마. 농림수산물 및 후생노동성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표준절차서의 작성



<절차서 작성(2005. 8. 25의 배경)>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분석이 도입되어, 과학에 준한 행정의 추진이 과제화 되었다. 또, 세계무역기관의 [위생식품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국내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조치가 과학적 원칙 및 국제기준에 준한 것을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리스크관리기관으로 과학에 준한 식품안전행정을 일관적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표준절차서(SOP)를 작성하였다.

[식품안전에 관한 역할의 포인트]

- [건강의 보호]와[미연방지]가 목적으로 아래에 대해서도 고려
 -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저장법에 관한 지식
 - 리스크저감과 경비의 발란스 //
 - 소비자보호와 산업보호의 발란스
 - 이차적리스크에 고려(영양학적 고찰도 포함)
- 결정과 그실시의 투명성
- 모든관계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조사·분석에 있어서는 분석법의 타당성확인과 정도관리의 실시가 요건

7.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 □ 모니터링 중기계획

7. 일본 식품안전성에 관한 유해미생물의 서베이런스 □ 모니터링 중기계획

가. 기본적인 개념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분석이 도입되어 과학에 준한 행정의 추진이 과제로 되어지고, 그것에 과학적원칙에 준한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시점에 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게 되는 서베이런스(*1)모니터링(*2)의 실시가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5년간(2007-2011)에 걸쳐 서베이런스·모니터링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

* 1: 문제의 정도, 또는 실태를 알기위해서 조사

* 2: 교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가를 결정하기 위해, 경향을 알기 위해 조사

나. 대상으로 하는 위해요인의 분류

(1) 서베이런스·모니터링의 조사대상은 농림수산성이 우선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리스크관리를 행할 유해미생물의 리스크에 준해서, 조사대상마다, 최신의 연구보고와 조사목적에 합당한 검출·분석법의 유무를 고려하여 우선도를 결정한다.

(2) 우선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A : 기간내에 실시

B : 기간 내에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

(3) 리스크관리검토회장에서 기술적인 식견을 포함한 의견을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서베이런스·모니터링계획에 반영되어진다.

다. 조사대상 : 별지

라. 유의사항

- (1) 계획기간 중에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가 표면화 했을 경우,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까를 불문하고 긴급히 조사를 실시한다.
- (2)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오염상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3) 서베이런스·모니터링의 실시에 있어서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것 및 타당성이 확인되어진 분석법을 이용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붙임 1)

조 사 대 상

우 선 도	조사대상		조사계획
	위해요인	농림수산물	
A	칸피로바쿠타	닭고기	- 육용계농장(분편, 닭장등)으로부터 시작해, 가공, 유통단계까지 순차, 오염실태조사를 실시 - 저감대책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조사를 실시
	살모렐라	닭고기	- 육용계농장(분편, 닭장등)으로부터 시작해, 가공, 유통단계까지 순차, 오염실태조사를 실시 - 저감대책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조사를 실시
		계란	- 채란계농장(분편, 닭장등)으로부터 시작해, 가공, 유통단계까지 순차, 오염실태조사를 실시 - 저감대책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조사를 실시
	장관출혈성 대장균	소고기	- 육용우농장(분편, 축사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가공, 유통단계까지 순차 오염실태조사를 실시 - 저감대책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조사를 실시
B	장염비비리오	해산어패류	- 해산어패류, 연안지역의 토양·해수 등의 오염실태의 조사를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검토
	장관출혈성 대장균	생식용야채	- 오염실태조사의 추출을 실시하기 위해 스포라이트, 컷야채 등 생식용야채, 퇴비, 포장토양, 하천수, 지하수 등 예비적오염 실태조사를 검토
	노로바이러스	쌍각류조개	검출·분석법이 확립된다면 쌍각류조개, 하수, 하천수, 연안해수등의 예비적조사를 검토
	보툴리누스균	향후검토	밀봉식품, 비가열가공식품등에 오염실태조사 및 관련농림수산물의 오염실태조사를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검토
	리스테리아	향후검토	오염실태조사의 추출을 실시하기 위해 비가열가공식품(어란제품, 건어물 등) 축산가공품 및 관련농림수산물의 예비오염실태의 조사를 검토

붙임 2)

서베이런스 □ 모니터링 중기계획(조사대상)

<우선도A> 기간내의 서베이런스를 실시

조사대상		비 고
위해요인	조사대상 식품군·사료	
비소	농산물	- 2003-2005년산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총비소의 함유실태조사를 실시(분석은 2004-2006년) - 섭취 기여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분석법도 포함한 독성이 큰 무기태비소의 분석에 대해서 검토
다이옥신류 (코프라나 PCB를 포함)	농산물	- 다이옥신대책추진기본지침에 준해, 농축수산물의 실태를 파악
	축산물	- 다이옥신대책추진기본지침에 준해, 농축수산물의 실태를 파악
	수산물	- 다이옥신대책추진기본지침에 준해, 농축수산물의 실태를 파악
	사료	- 축산물의 잔류의 주요경로에 있는 사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
데오키시니 바레노르 (DON)	농산물	- 2002년-2005년에 실태조사를 실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토·실시 - 빨강 곰팡이벌의 대발생때 등의 실태파악이 필요
니바레노르 (NIV)	농산물	- 2002년-2005년에 실태조사를 실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토·실시 - 빨강 곰팡이벌의 대발생 때 등의 실태파악이 필요
오크라트 키신 A	농산물	- 2005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이 시판식품의 조사를 실시
제아라레논	농산물	- 2004년에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제이라레논이 정량된 시료를 있는것으로부터 2005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아크릴 아미드	가공식품	- 리스크관리연구(2006-2008년도)에 있는 토탈다이에트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여율이 높은 식품군을 선정, 그 결과에 준해 대상식품을 선정(2007년이후)
3-MCPD	가공식품	- 간장 및 아미노산액 이외의 대상식품은 리스크관리형연구(2005-2007)에 있어 토탈다이에트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여율이 높은 식품군을 선정, 그 결과에 준한 대상식품을 선정(2007년이후) - 2004년부터 간장 및 아미노산액의 실태조사를 실시
1,3-DCP	가공식품	- 리스크관리연구(2005-2007년도)에 있어 토탈다이에트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여율이 높은 식품군을 선정, 그 결과에 준한 대상식품을 선정(2007년이후) - 2005년에는 간장 및 아미노산액의 실태조사를 실시

<우선도A> 기간내의 모니터링을 실시

조사대상		비 고
위해요인	조사대상 식품군·사료	
카드뭴	쌀	- 생산단계에 있는 리스크관리(물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과에는 0.4ppm이상의 카드뭴을 검출되어지는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 등에서 생산된 쌀의 모니터링을 실시
	사료	- 사료중에 잔류기준치에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의 결과는 잔류기준치의 재검토에 활용
아플라톡신	사료	- 사료중에 잔류기준치에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의 결과는 잔류기준치의 재검토에 활용
잔류농약	농산물	- 주요농산물16품목에 대해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해당농산물에 상용되어지는 농약을 대상으로 실시 - 대상농약은 급성참조치의 국제적인 검토상황, 분석법의 개발상황 등을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년도마다 선정하여 실시
	수입농산물	-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와 함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실시등에 따라 식품사업자의 자주적인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매장단계에 있어 농약의 잔류상황을 조사 -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의 사람에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적음
	사료	- 사료중에 잔류기준치에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의 결과는 잔류기준치의 재검토에 활용

우선도B 기간내에 가능한 범위에서 서베이런스를 실시

조사대상		비 고
위해요인	조사대상 식품군·사료	
카드늄	수산물	- 1995년-2002년도에 주요수산물의 함유량조사를 실시하여 어패류마다 함유량의 경향을 파악이 끝난상태
비소	수산물	- 리스크관리연구반(2005-2007년도)에 있어 주요수산물에 대해 형태별 비소함유량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서베이런스 실시를 검토한다.
메칠렌수은	농산물	- 2003-2005년도산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초d수은 함유 실태조사를 실시(분석은 2004-2006) - 이후, 조사결과를 해석하여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추가적인 조사를 포함)을 검토할 예정
	수산물	- 섭취지도의 기초자료로 하기위해 2002-2004년도에 비교적고농도의 수은을 함유하는 어종(참치류 메카지키 등)에 대해 함유량조사를 실시 - 수산물중에 수은함유량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위생 부국이 조사를 실시
은	농산물	- 2003-2005년산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은의 함유실태조사를 실시(분석은 2007년에 종료) 이후, 조사결과를 해석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의(추가적인 조사를 포함)을 검토할 예정
	수산물	- 은의 특성으로 생물농축은 낮다 - 주요어패류의 조사결과(1997-1999년)은 대체로 검출하한 미만으로 존재, 현단계에서는 건강상의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
폴리 브로모 디페닐 에테르 (PBDE)	미정	- 209종의 화합물의 총칭에서 독성과 분석법이 확립되어져 있는 것은 적음, 이것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
파트린	사과과즙	- 2003년부터 국산의 원료용 사과즙의 실태조사를 실시 -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준한 규격규준을 정해져 있어, 향후에는 리스크저감대책의 검토를 중시

조사대상		비 고
위해요인	조사대상 식품군·사료	
후모니신	농산물	-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시판용식품의 실태조사를 실시
T-2 트키신 HT-2 트키신	농산물	- 2004년에 실시한 예비적조사에서는 검출된 시료는 없음 - 농작물중의 상세한 함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초산성 질소	농산물	- 야채로부터 초산성질소의 대사와 건강영향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많음, 국내에서 야채중에 초산성질소 함유량에 대한 기준치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베이런스결과의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 - 야채의 초산성질소의 함유량은 야채의 종류, 품종, 재배시기와 재배환경등에 의해 커다란 변동하는 것의 샘플링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	가공식품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가운데 JECFA가 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있다고 하여 향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한 것은 13 종류 - 리스크관리연구(2005-2007)에 있어 토탈다이에트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여율이 높은 식품군을 선정, 그 결과에 준한 대상식품을 선정(2007년이후)
프랑	가공식품	- 리스크관리연구(2005-2007)에 있어 토탈다이에트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여율이 높은 식품군을 선정, 그 결과에 준한 대상식품을 선정(2007년이후)
트랜스 지방산	가공식품	- 리스크관리연구(2005-2007)에 있어 토탈다이에트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여율이 높은 식품군을 선정, 그 결과에 준한 대상식품을 선정(2007년이후)

우선도 B 기간내에 가능한 범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조사대상		비 고
위해요인	조사대상 식품군·사료	
비소	사료	- 사료중에 잔류기준치에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의 결과는 잔류기준치의 재검토에 활용
메틸렌수은	사료	- 사료중에 잔류기준치에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의 결과는 잔류기준치의 재검토에 활용
은	사료	- 사료중에 잔류기준치에의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의 결과는 잔류기준치의 재검토에 활용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2-01

GAP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08년 6월 일 인쇄

2008년 6월 일 발행

발 행 농림수산식품부
편 집 유통정책단 소비안전팀
☎ 02)500-1996
인 쇄 한라인쇄
☎ 02)503-3011

<비매품>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www.gap.go.kr